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863-01

2021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2021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일반 과제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 12. 10

연구수행기관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윤재희 (영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공동연구원 김선희 (영남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
한진주 (영남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
연구보조원 김태영 (영남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김예영 (영남대학교 석박사과정)
김현아 (영남대학교 석사과정)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요약 ····· i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내용 및 방법 ····· 6
   1) 연구내용 ····· 6
   2) 연구방법 ····· 8

Ⅱ. 이론적 배경

1. 부모교육의 정의와 필요성 ····· 17
   1) 부모교육의 정의 ····· 17
   2) 부모교육의 필요성 ····· 18
   3) 예비부모교육의 정의와 필요성 ····· 24
2. 아동학대와 아동권리실현 ····· 27
3. 국내 부모교육 관련 연구 ····· 33
   1) 예비부모교육 관련 연구 ····· 33
   2) 부모교육 관련 연구 ····· 36
   3) 국외 부모교육 관련 연구 ····· 41

Ⅲ. 국내외 부모교육과 예비부모교육 현황 및 내용 분석

1. 부모교육 실행의 법적 근거 ····· 47
2. 국내 부모교육 내용 및 현황 분석 ····· 52
   1) 교육부 ····· 52

2) 보건복지부 ····· 59
3) 여성가족부 ····· 69
4) 육아정책연구소 ····· 75
5) 국가인권위원회 ····· 77
3. 국내 학교 예비부모교육 내용 분석 ····· 83
1) 학교 교육과정 개요 ····· 83
2) 교과서 및 교재 내용 분석 ····· 87
4. 국외 부모교육 및 학교 예비부모교육 내용 분석 ····· 96
1) 국외 부모교육의 현황 ····· 96
2) 국외 학교의 예비부모교육 ····· 108

Ⅳ.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실태조사

1. 설문조사 ····· 127
1) 조사대상 일반적 특성 ····· 127
2) 부모교육 실태조사 ····· 129
3) 부모의 인권 및 아동권리 인식 ····· 139
4) 부모의 아동학대 및 체벌 인식 ····· 148
5)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변인 탐색 ····· 158
6) 부모를 위한 아동권리교육에 대한 요구 ····· 163
2. 부모 및 전문가 면담 ····· 184
1) 부모 대상 면담조사 ····· 184
2) 전문가 대상 면담조사 ····· 198

Ⅴ. 결론 및 제언

1. 예비부모교육 관련 제언 ····· 219
2. 부모교육 관련 제언 ····· 221
1) 부모 대상 아동권리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제도화 ····· 222
2)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양질의 콘텐츠 제공 ····· 224

3) 전 국민 인권교육을 통한 아동권리증진 ····· 227

참고문헌 ····· 229

부록

1. 부모교육 안내서(안) ····· 247
2. 설문문항 ····· 259
3. 부모 대상 면담 문항 ····· 269
4. 전문가 대상 면담 문항 ····· 272

표 목 차

<표 Ⅰ-1> 아동학대 신고접수, 아동학대 의심 사례 건수, 아동학대 사례 건수 ·· 3
<표 Ⅰ-2> 연도별 유형별 아동학대 사례 중 부모가 가해자인 사례 ····· 4
<표 Ⅰ-3> 학교 예비부모교육의 내용 분석 범위 ····· 9
<표 Ⅰ-4> 부모 대상 아동권리교육 실태 및 요구조사의 하위변인, 문항내용 및 문항수 · 10
<표 Ⅰ-5> 부모의 양육태도 설문지 하위요인, 문항번호 및 문항수 ····· 11
<표 Ⅱ-1> 세계인권선언과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국가와 부모의 의무와 역할 ···· 20
<표 Ⅱ-2> 학대행위자 특성 ····· 29
<표 Ⅲ-1>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법적 근거 ····· 53
<표 Ⅲ-2>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설립 법적 근거 ····· 55
<표 Ⅲ-3> 전국학부모지원센터 부모교육 주제(키워드 '코로나, 미디어') · 58
<표 Ⅲ-4>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 법적 근거 ····· 60
<표 Ⅲ-5> 공통부모교육 동영상 주제(2021년 11월 기준) ····· 62
<표 Ⅲ-6> 공통부모교육 3개년 운영실적(대면 기준) ····· 64
<표 Ⅲ-7> 임신 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상담 분야 및 내용(2021년 11월 기준) ··· 65
<표 Ⅲ-8>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법적 근거 ····· 66
<표 Ⅲ-9> 아동권리보장원 위탁 교육 내용(2021년 11월 기준) ····· 68
<표 Ⅲ-10>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 법적 근거 ····· 69
<표 Ⅲ-11> 여성가족부 부모교육 매뉴얼 주제(2021년 11월 기준) ····· 71
<표 Ⅲ-12> 여성가족부 부모교육 상담 주제(2021년 11월 기준) ····· 72
<표 Ⅲ-13>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설립 법적 근거 ····· 74
<표 Ⅲ-14>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부모교육 주제 ····· 75
<표 Ⅲ-15> 육아정책연구소 설립 법적 근거 ····· 76
<표 Ⅲ-16>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법적 근거 ····· 77
<표 Ⅲ-17>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수과정 주제(2021년 11월 기준) ····· 79
<표 Ⅲ-18> 국가인권위원회 온라인교육 주제(2021년 11월 기준) ····· 80
<표 Ⅲ-19> 내용 분석 범위 ····· 83

<표 Ⅲ-20>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예비부모교육 관련 교육과정 개요 ·· 85
<표 Ⅲ-21> 학교급별 예비부모교육 교육과정 체계 및 내용 요소 ····· 86
<표 Ⅲ-22> 키워드 정제작업의 예 ····· 88
<표 Ⅲ-23> 국내 학교 예비부모교육 내용 키워드 출현 빈도 ····· 90
<표 Ⅲ-24>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 94
<표 Ⅲ-25> 미국에서 시행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예 ····· 97
<표 Ⅲ-26> 영국에서 시행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예 ····· 100
<표 Ⅲ-27> 뉴욕주 학교급별 예비부모교육 시기와 교육과정 ····· 110
<표 Ⅲ-28> 중등: 인간발달과 관계 ····· 110
<표 Ⅲ-29> 고등: 핵심 ····· 112
<표 Ⅲ-30> 고등: 인간서비스 및 가족 연구 ····· 112
<표 Ⅲ-31> 영국 학교급별 예비부모교육 시기와 교육과정 ····· 114
<표 Ⅲ-32> 초등: 관계교육 ····· 114
<표 Ⅲ-33> 중고등: 관계 및 성교육 ····· 115
<표 Ⅲ-34> 호주 학교급별 예비부모교육 시기와 교육과정 ····· 117
<표 Ⅲ-35> 1학년~10학년의 연계 확장된 내용 ····· 118
<표 Ⅲ-36> 국가별 예비부모교육 관련 교육과정 영역과 운영 시기 비교 ··· 123
<표 Ⅳ-1> 설문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 128
<표 Ⅳ-2> 부모교육 필요 여부 ····· 130
<표 Ⅳ-3> 부모교육으로 필요한 내용(중복 응답) ····· 131
<표 Ⅳ-4> 부모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중복 응답) ····· 132
<표 Ⅳ-5> 부모교육 참여 경험 여부 ····· 134
<표 Ⅳ-6> 가장 최근에 참여했던 부모교육 경험 ····· 135
<표 Ⅳ-7> 가장 최근에 참여했던 부모교육의 유형 ····· 137
<표 Ⅳ-8> 가장 최근에 참여했던 부모교육의 주제와 내용 ····· 138
<표 Ⅳ-9>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 139
<표 Ⅳ-10> 평소 '인권'을 접하는 정도 ····· 140
<표 Ⅳ-11> 평소 '인권'을 접하는 경로 ····· 141
<표 Ⅳ-12> 우리 사회에서 '인권' 존중 정도 ····· 142

<표 Ⅳ-13> 인권교육 경험 여부 ····· 143
<표 Ⅳ-14> 부모의 '아동권리' 인지도 ····· 144
<표 Ⅳ-15> 우리 사회에서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아동권리 ····· 145
<표 Ⅳ-16> 부모가 인지하는 '아동권리' 인식 정도 ····· 145
<표 Ⅳ-17> 부모가 인지하는 자녀의 '아동권리' 존중 정도 ····· 146
<표 Ⅳ-18> 아동권리교육 경험 여부 ····· 147
<표 Ⅳ-19>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의 심각성 정도 ····· 148
<표 Ⅳ-20>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인식 ····· 149
<표 Ⅳ-21> 가정 내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 ····· 151
<표 Ⅳ-22>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 ····· 152
<표 Ⅳ-23> 자녀에게 가하는 체벌 행위에 관한 생각 ····· 153
<표 Ⅳ-24> 양육과정에서 자녀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의심한 상황 ····· 154
<표 Ⅳ-25> 양육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상황 ····· 155
<표 Ⅳ-26> 부모교육 참여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및 체벌에 대한 인식 차이 ··· 156
<표 Ⅳ-27> 인권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및 체벌에 대한 인식 차이 ··· 157
<표 Ⅳ-28> 아동권리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및 체벌에 대한 인식 차이 ··· 158
<표 Ⅳ-29>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정적 양육태도 차이 ····· 160
<표 Ⅳ-30>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도에 따른 부정적 양육태도 차이 ··· 161
<표 Ⅳ-31> 체벌 행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른 부정적 양육태도 차이 ··· 162
<표 Ⅳ-32> 아동권리교육 필요 여부 ····· 164
<표 Ⅳ-33> 아동권리교육이 필요한 이유(중복 응답) ····· 165
<표 Ⅳ-34> 아동권리교육 참여 의향 ····· 166
<표 Ⅳ-35>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요일 ····· 167
<표 Ⅳ-36>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시간대 ····· 168
<표 Ⅳ-37>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소요시간 ····· 169
<표 Ⅳ-38>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교육횟수 ····· 170
<표 Ⅳ-39>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수강형태 ····· 171
<표 Ⅳ-40>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강사 ····· 172
<표 Ⅳ-41>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교육기관 ····· 174

<표 Ⅳ-42>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교육유형 ····· 175
<표 Ⅳ-43>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교육내용 ····· 176
<표 Ⅳ-44> 아동권리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 177
<표 Ⅳ-45> 부모 면담 참여자 정보 ····· 184
<표 Ⅳ-46> 특별한 부모를 상담하거나 관리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 185
<표 Ⅳ-47> 전문가 면담 참여자 정보 ····· 198

그 림 목 차

[그림 Ⅰ-1] 부모 및 전문가 면담 과정 ····· 13
[그림 Ⅲ-1] 육아종합지원센터 공통 부모교육 주제 ····· 61
[그림 Ⅲ-2] 분석 절차 ····· 89
[그림 Ⅲ-3] 국내 학교 예비부모교육 내용 키워드 출현 빈도 시각화 ····· 92
[그림 Ⅲ-4] 국내 학교 예비부모교육 내용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 ····· 94
[그림 Ⅲ-5] 영국 정부 공식 홈페이지 Childcare and Parenting ····· 100
[그림 Ⅲ-6] 호주 교육부 홈페이지의 부모교육 관련 내용 ····· 102
[그림 Ⅲ-7] 뉴질랜드 교육부 홈페이지의 부모교육 관련 내용 ····· 103
[그림 Ⅲ-8] 홍콩 교육부 홈페이지의 Parent's Talk 메뉴 ····· 105
[그림 Ⅲ-9] 가정학교 협력위원회 홈페이지의 부모교육 관련 내용 ····· 105
[그림 Ⅲ-10]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유아교육 및 가정교육 메뉴 ····· 106
[그림 Ⅳ-1] 부모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중복 응답) ····· 132
[그림 Ⅳ-2] 가장 최근에 참여했던 부모교육의 유형 ····· 137
[그림 Ⅳ-3]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 139
[그림 Ⅳ-4] 평소 '인권'을 접하는 정도 ····· 140
[그림 Ⅳ-5] 평소 '인권'을 접하는 경로 ····· 141
[그림 Ⅳ-6] 우리 사회에서 '인권' 존중 정도 ····· 142
[그림 Ⅳ-7] 부모의 '아동권리' 인지도 ····· 144
[그림 Ⅳ-8] 우리 사회에서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아동권리 ····· 145
[그림 Ⅳ-9] 부모가 인지하는 '아동권리' 인식 정도 ····· 146
[그림 Ⅳ-10] 부모가 인지하는 자녀의 '아동권리' 존중 정도 ····· 146
[그림 Ⅳ-11]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의 심각성 정도 ····· 149
[그림 Ⅳ-12]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인식 ····· 150
[그림 Ⅳ-13] 가정 내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 ····· 151
[그림 Ⅳ-14]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 ····· 152
[그림 Ⅳ-15] 자녀에게 가하는 체벌 행위에 관한 생각 ····· 153

[그림 Ⅳ-16] 양육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상황 ····· 155
[그림 Ⅳ-17] 아동권리교육이 필요한 이유(중복 응답) ····· 165
[그림 Ⅳ-18] 아동권리교육 참여 의향 ····· 166
[그림 Ⅳ-19]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요일 ····· 167
[그림 Ⅳ-20]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시간대 ····· 168
[그림 Ⅳ-21]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소요시간 ····· 169
[그림 Ⅳ-22]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교육횟수 ····· 170
[그림 Ⅳ-23]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수강형태 ····· 172
[그림 Ⅳ-24]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강사 ····· 173
[그림 Ⅳ-25]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교육기관 ····· 174
[그림 Ⅳ-26]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교육유형 ····· 175
[그림 Ⅳ-27]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교육내용 ····· 177
[그림 Ⅳ-28] 아동권리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 178

요 약

○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아동의 권리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교육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 예방을 부모교육의 실태를 조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부모교육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부모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료(안)을 제안하는 것임

○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부모교육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및 법제도 검토를 통한 인권친화적 양육 태도의 개념 및 범위를 정립함. 국내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한 부모교육 시행 현황, 체계, 내용을 조사 및 분석함.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예비부모교육 현황 파악을 위해 국외 교육과정 조사 및 국내 교과서 내용을 분석함. 부모교육 실태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대상 아동권리교육 요구조사를 함.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대상 아동권리교육 자료를 제안함

○ 구체적으로 국내외 부모교육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부모교육 및 예비부모교육 현황을 조사하였음.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 부모교육의 실태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대상 권리교육의 요구 및 개선 사항 등을 파악하여 부모교육 개선 방안을 제안함

○ 설문조사는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초등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시행함. 총 603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활용됨. 최종 선정된 연구대상의 성별은 어머니 318명, 아버지 285명이었고 자녀의 연령은 영유아 283명, 초등학생 320명이었음

○ 면담은 16명의 부모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 2회씩 반구조적인 방식으로 시행했음. COVID-19 확산으로 인해 면담은 주로 원격으로 진행했고 부모교육 관련 경험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

○ 이 연구에서 아동권리교육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까지 포함하고 있음

○ 부모교육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첫째, 다수의 부모교육 연구는 부모교육의 현황을 파악하여 개선점을 제안하고 있었음. 둘째, 다수의 부모교육 연구는 부모와 자녀에게 미친 부모교육의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하고 있었음. 셋째, 다수의 부모교육 연구는 부모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요인을 밝히고 있었음. 넷째, 기존 부모교육에서 소외되는 부모에게 적합한 교육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었음. 다섯째, 학대를 예방하는 차원보다 부모들의 아동권리인식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부모교육이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음

○ 부모교육 관련 법제도 검토 결과 「건강가정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은 부모교육 시행을 위한 기본이자 중심인 법령이었음. 이러한 법령의 총칙과 정책 등에 의해 중앙부처기관의 산하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이 설립되어 목적에 따른 부모교육을 하고 있었음.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교육에 관한 내용이 명시된 법에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유아교육법」이 있었음.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근간으로 삼고 있음

○ 기관별 국내 부모교육 시행 현황, 체계, 내용은 법령에 근거한 국가 재원이 투입된 공적인 기관에서 실행하는 부모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육아정책연구소, 국가인권위원회의 부모교육을 분석함. 자료수집은 각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부모교육 관련 자료를 통해 실시했고 확인할 수 없는 자료는 해당 기관에 공문 요청으로 보충함. 2018년 1월부터 2021년 11월 사이 시행된 부모교육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COVID-19 이전과 이후의 부모교육 운영현황에서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았음. 분석 결과는 설립 목적과 운영현황(프로그램, 대상, 유형, 수강집단 형태, 주제) 그리고 COVID-19에 따른 부모교육으로 나누어 제시함

○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예비부모교육 내용을 국내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개발된 출판사별 인정교과서와 대학 교양 강좌에서 활용된 교재를 토대로 분석했음. 키워드 네트워크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상위 6위까지의 출현 빈도는 '부모됨준비' 35회, '건강가족관계' 30회, '발달' 25회, '성발달' 24회, '가정폭력' 22회로 나타났음. 예비부모교육 내용의 키워드 중심성은 연결·근접·매개 중심성으로 살펴본 결과 연결중심성은 '건강가족관계', 근접중심성은 '건강가족관계', 매개중심성은 '다양한가족'이 가장 높은 키워드로 나타났음

○ 국외 부모교육 내용 분석은 미국, 영국, 호주와 뉴질랜드, 홍콩, 일본, 캐나다 홈페이지에 안내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내용의 체계와 범위를 국가별로 비교 분석함

○ 미국, 영국과 호주의 교육과정에 포함된 예비부모교육 내용과 체계를 우리나라와 비교한 결과, 첫째, 미국, 영국, 호주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예비부모교육 내용은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둘째, 국가별 예비부모교육의 실시 방법과 시기에서 차이가 있었음. 셋째, 아동보호를 위한 학대 및 폭력 내용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남. 아동학대 관련 내용이 교과서 및 교재에 언급되고 있었음. 하지만 해외 교육과정은 인간에 대한 존중과 태도에 초점을 둔 반면 우리 교육과정은 성폭력, 가정폭력 등 상황과 대처 및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구성됨

○ 설문조사의 내용은 부모교육 실태, 부모의 인권 및 아동권리 인식, 부모의 아동학대 및 체벌 인식,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변인 탐색, 부모를 위한 아동권리교육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함

○ 설문조사 결과 부모교육의 필요 여부는 부모의 성별, 거주지역,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음. 하지만 응답자 대다수는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동의함. 부모교육에 필요한 내용은 자녀와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 긍정적 훈육 방법 및 양육태도, 자녀의 인성, 문제행동 순이었음.

반면, 아동학대 예방, 부모의 권리 인식 및 인권감수성에 대한 요구는 매우 낮았고 가장 최근에 참여했던 부모교육에서 아동권리교육을 주제로 다룬 빈도 역시 매우 낮았음

○ 설문조사 응답자 중 부모교육에 참여한 비율은 응답자의 33.7%에 불과했고 남성 참여율(15.1%)이 여성(50.3%)보다 매우 저조했음. 부모들이 가장 최근에 참여했던 부모교육은 주로 평일(월~목요일) 오전 시간대에 실시되었으며 자녀의 교육기관에서 주최한 교육이 가장 많았음

○ 설문 참여자들은 평소 '인권' 단어를 자주 접하지 못하며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부족했음. 부모들이 '인권'이라는 단어를 접하는 경로는 주로 TV(뉴스, 시사프로그램 등) 및 인터넷(포털, 블로그, SNS 등)이었음

○ 부모가 인식한 아동권리는 주로 아동존중, 아동학대, 아동보호와 관련이 있었고 아동권리교육 경험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됨. 부모에게 '아동권리'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아동존중'이 가장 많았고 '아동학대', '아동보호' 순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음

○ 응답자 대부분 아동학대의 주요 가해자를 부모(친부모, 계부모, 양부모)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변함.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을 자녀 및 사회·문화적 요인보다 부모 및 가족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또한,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양육 어려움에 대한 부모의 스트레스 해소'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 설문조사에 참여한 부모들은 대부분 훈육을 위한 체벌은 필요하며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자녀에게 체벌하는 행위에 대한 부모의 생각을 조사한 결과 '체벌이 올바르다고 할 수 없지만, 훈육이나 교육 목적이 있을 경우 허용될 수 있다'가 62.5%로 가장 많았음. 부모들은 체벌이 자녀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억제하거나 개선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 조사 결과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부모들은 그렇지 않은 부모보다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더 심각하다고 인식함. 인권교육이나 아동권리교육 경험이 있는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 집단 모두 '체벌이 올바르다

고 할 수는 없지만, 훈육이나 교육의 목적이 있는 경우 허용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체벌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인권교육이나 아동권리교육을 받은 부모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에서 차이가 있었음. 즉, 인권교육이나 아동권리교육 경험이 있는 부모들은 체벌에 대한 허용도가 낮았음

○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관련 변인을 탐색한 결과 부정적 양육태도가 낮은 부모일수록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음. 반면 부정적 양육태도가 높은 부모일수록 체벌 행위를 관대하게 생각함. 부정적 양육태도와 부모의 일반적 특성 차이를 탐색한 결과 연령대, 거주지역, 직업, 자녀 연령, 자녀 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부모의 연령대는 20대와 40대, 거주지역은 수도권, 직업은 전업주부, 자녀 연령은 초등 고학년, 자녀 수는 많을수록 부정적 양육태도가 높았음

○ 아동권리교육의 필요 여부는 부모의 성별, 최종학력,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대부분 부모가 아동권리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동의했음. 아동권리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최종학력은 대학원 졸업, 직업은 공무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부모가 전체 603명 중 384명으로 63.7%를 차지했음. 아동권리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아동권리존중 양육 방법을 습득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음

○ 아동권리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부모는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요일, 시간, 수강형태와 교육기관에 차이를 보였음. 응답에 참여한 부모들은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한다면 주로 평일(월~목요일) 오전 시간대를, 소요 시간은 30분~1시간 미만, 교육 횟수는 1년에 1~2회를 가장 선호했음. 하지만 선호하는 요일과 소요 시간에 있어서는 부모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여성은 평일 1시간~1시간 30분을 선호했으나 남성은 토요일 30분~1시간 미만을 선호함. 수강형태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1순위는 소집단, 2순위는 중집단으로 동일했지만 3순위에서 여성은 대집단이었고 남성은 개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교육기관도 여성은 자녀의 교육

기관을 선호하였으나 남성은 공공기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 아동권리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부모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수강형태, 강사와 교육유형에 차이를 보였음. 선호하는 수강형태의 경우 1순위 소집단, 2순위 중집단으로 동일했지만 3순위에서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는 개인을,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는 대집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선호하는 강사는 비율의 차이가 있었지만 1순위 육아관련 전문가, 2순위 심리교육 전문가, 3순위 가족상담사 순으로 동일함.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관련 전문가의 비율이 60%이상으로 매우 높았으나 초등기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관련 전문가와 심리교육 전문가를 선호하는 비율이 비슷하게 조사되었음. 선호하는 교육유형은 자녀 연령과 무관하게 1순위가 부모교육 전문가에 의한 초청 특강이었음. 하지만 2순위에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는 부모참여 프로그램 및 참관수업이었으며 초등기 자녀를 둔 부모는 면담 및 상담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아동권리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교육내용으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양육 방법 및 실제를 69.5%로 가장 많이 요구했음. 부모들은 아동권리교육의 내용으로 아동학대 예방보다 구체적인 아동권리존중 방법 및 실제와 같은 인권친화적 양육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 부모와 전문가 면담 결과 첫째, 면담 참여자 대부분은 부모로서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높이고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부모교육을 요구함. 둘째, 부모들은 훈육과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체벌이 아동학대와 연결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셋째, 부모 대상 아동권리교육 시행 필요성에 동의했으나 의무화에 대한 의견에서 차이를 보임. 넷째, 예비부모부터 단계별로 적합한 아동권리교육을 수강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른 부모교육이 제공되어야 함. 다섯째,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위치와 관계없이 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참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부모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설문조사와 면담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교육을 개선점을 제안하면 첫째, 가정 내에서 아동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아동권리실현 의무이행자인 부모의 부모교육 접근성을 높여야 함. 가족구조와 역할 변화 등으로 인한 실질적 양육 담당자의 부모교육 접근성 역시 제고되어야 함. 둘째, 부모가 자녀의 권리실현을 위한 의무이행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이 포함된 부모교육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셋째, 가정 내 아동권리실현을 위해 부모교육을 체계화할 수 있는 관계부처 협동 기구 혹은 위원회가 필요함. 넷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함. 다섯째,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를 위한 양육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함. 여섯째, 부모가 체벌을 포함한 아동학대는 물론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권리침해를 민감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야 함

○ 예비부모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함. 첫째,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친화적인 기초적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해야 함. 둘째, 예비부모교육의 효과 검증을 위해 공통의 목표, 내용, 성취기준을 개발해야 함. 셋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대학교육에서 예비부모교육 강좌 및 가정폭력 관련 내용을 강화해야 함

○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부모의 양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가정 내 아동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부모 대상 아동권리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제도화,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양질의 콘텐츠 제공, 전 국민 인권교육을 통한 아동권리증진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정부는 1991년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 가입 후 0~18세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다. 그 결과 아동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 부여, 가정환경 및 대안 보호, 기초 보건 및 복지와 교육·여가 및 문화 활동 측면에서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률적·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발달권 중 교육받을 권리를 예로 들자면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이 무상 의무교육으로 시행되었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상보육·교육이 확대되었다. 아동의 원가족 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유아기 학습결손 예방,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 전 계층 가정양육수당 지급 등 보완 정책도 시행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비준국인 우리나라는 협약의 이행사항을 종합하여 아동권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가장 최근 제출한 제5-6차 국가보고서(대한민국정부, 2017)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아동·청소년정책 추진 성과와 인권 진전 상황을 종합하고 있다. 2019년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아동영향평가제도, 온라인 출생신고제도, 만 7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지급제도 도입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비차별,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 체벌을 포함하는 아동에 대한 폭력 등에 관한 시급한 조치를 권고했다. 특히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가정 내 재학대 방지를 위한 효과적 대책 부재와 특정 환경에서 체벌의 합법적 허용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관련하여 위원회는 법률 및 관행상의 "간접체벌" 및 "훈육적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1]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참여형 아동 양육 형태를 촉진할 것을 권고했다.

---

1) 일반논평8호 「체벌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는 체벌을 "아무리 가벼운 정도라 하더라도 얼마간의 고통이나 불편을 줄 의도로 사용되는 모든 처벌"로 정의했다. 일반논평8호는 체벌의 구체적인 형태로 손이나 도구-채찍, 막대기, 벨트, 신발, 나무 숟가락 등-로 때리는 것("찰싹찰싹 때리는 것", "철썩하고 때리는 것", "엉덩이를 때리는 것")... 차는 것, 흔드는 것 혹은 아동을 던지는 것, 할퀴는 것, 꼬집는 것, 무는 것, 머리카락을 당기거나 뺨을 때리는 것, 불편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화상을 입히는 것, 데이게 하는 것 혹은 억지로 음식을 섭취하게 하는것(예로 비누로 아동의 입을 세척하거나 매운 향신료를 삼키도록 강요하는 것)등을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협약 가입 이후 아동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이들의 신체적·사회적 회복을 위한 지원,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접수·감독·조사 및 기소 등에 관련한 법령 개선 등 국가 차원의 제도 확립, 관련 재원 및 인력 확충, 학대 관련 통계수집체계 등을 마련했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가 형법 영역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했다(최준혁, 2021).[2] 2015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3] 2020년 4월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악용되던 민법 제915조(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의 삭제를 요구했고 2020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같은 조항의 삭제를 권고했다. 2021년 1월 훈육 목적의 체벌을 인정하는 법률 조항이었던 민법 제915조가 삭제되어 가정 내 아동학대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사회적 개입이 강화되었음에도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아동 인구 규모가 8,885,533명에서 7,678,893명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동학대 증가 추세는 심각한 수준이다(심의선, 2021). 실제로 인구 1,000명당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은 2015년 1.32명에서 2020년 4.02명으로 4배가량 증가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

2) 가정과 함께 아동의 주요한 생활 공간인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1), 영유아보육법(2015)과 영유아교육법(2016)이 개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이들 법령은 교육적인 지도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교사가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3) 일반논평 13호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에 따르면 정신적 폭력은 심리학적·정신적·언어적·정서적 학대 또는 무시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1) 아동과의 지속적 상호작용 중 아동에게 유해한 모든 형태의 상호작용, 2) 겁주기, 공포 조성, 위협; 착취 및 타락시키기; 퇴짜와 거절; 고립, 묵살, 편애, 3) 감정적 대응의 부인(정신건강·치료·교육상의 필요 무시), 4) 모욕, 욕설, 굴욕, 비하, 조롱, 그리고 아동의 감정을 해치는 것, 5) 가정폭력에의 노출, 6) 독방감금, 격리, 또는 굴욕적이거나 품위를 떨어뜨리는 구금조건, 7) 성인 또는 다른 아동에 의한 심리적 집단 따돌림과 신고식, 8) 여기에는 휴대전화와 인터넷 같은 정보·통신 기술(ICTs)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의 피해 아동 발견 비율이 1,000명당 약 9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집계된 국내 통계는 실제 발생한 아동학대 일부만을 반영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표 Ⅰ-1〉 아동학대 신고접수, 아동학대 의심 사례 건수, 아동학대 사례 건수

단위: 건

구분 / 연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아동학대 의심 사례 건수	신고접수 대비 의심 사례 비율	아동학대 사례 건수	의심 사례 대비 학대사례 비율	전년대비아동학대 사례 증가율
2015	19,214	16,651	86.7%	11,715	70.4%	-
2016	29,674	25,878	87.2%	18,700	72.3%	59.6%
2017	34,169	30,923	90.5%	22,367	72.3%	19.6%
2018	36,417	33,532	92.1%	24,604	73.4%	10.0%
2019	41,389	38,380	92.7%	30,045	78.3%	22.1%
2020	42,251	38,929	92.1%	30,905	79.4%	2.9%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아동학대 신고접수 대비 아동학대 의심 사례 비율은 평균 90.2%로 높았고 의심 사례 중 실제 학대로 판정되는 비율은 74.4%였다. 즉 100건의 신고 중 70여 건이 신체, 정서, 언어, 방임, 성학대로 판정되었다. 학대행위자 중 부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75% 이상이었고 아동학대 발생 장소 역시 '아동 가정 내'가 월등하게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성학대를 제외한 신체, 정서, 방임 학대의 가해자는 부모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집계된 신체·정서·성학대와 방임의 학대행위자 2/3 이상이 부모였고 성학대 사례의 1/3 역시 가해자가 부모였다. 언론이 입양·재혼가정에서 발생한 학대 사례를 자극적으로 다루면서 특정 가족 유형과 아동학대가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2020년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 20,095건 중 친부모가정에서 발생한 건수가 18,059(58.4%)이다. 연도별, 유형별 아동학대 사례 중 부모가 가해자인 사례는 아래 표 Ⅰ-2와 같다.

〈표 Ⅰ-2〉 연도별 유형별 아동학대 사례 중 부모가 가해자인 사례

단위: 건(%)

연도 \ 구분		신체	정서	성	방임	합계
2015	전체	6,661 (37.7)	7,197 (40.7)	629 (3.6)	3,175 (18.0)	17,662 (100)
	부모	5,338 (80.1)[4]	5,999 (83.4)	252 (40.1)	2,780 (87.6)	14,369 (81.4)
2016	전체	10,875 (38.2)	12,262 (43.1)	753 (2.6)	4,592 (16.1)	28,482 (100)
	부모	8,875 (81.6)	10,117 (82.5)	292 (38.8)	3,969 (86.4)	23,253 (81.6)
2017	전체	13,200 (38.6)	15,346 (44.9)	1,087 (3.2)	4,545 (13.3)	34,178 (100)
	부모	10,391 (78.7)	12,174 (79.3)	372 (34.2)	3,930 (86.5)	26,867 (78.6)
2018	전체	14,023 (37.6)	17,334 (46.5)	1,610 (4.3)	4,336 (11.6)	37,303 (100)
	부모	11,343 (80.9)	13,801 (79.6)	386 (24.0)	3,698 (85.3)	29,228 (78.4)
2019	전체	17,448 (37.9)	21,750 (47.2)	1,542 (3.3)	5,318 (11.5)	46,058 (100)
	부모	13,594 (77.9)	16,989 (78.1)	390 (25.3)	4,267 (80.2)	35,240 (76.5)
2020	전체	17,464 (37.1)	23,313 (49.5)	1,101 (2.4)	5,172 (11.0)	47,050 (100)
	부모	14,647 (83.9)	19,745 (84.7)	348 (31.6)	4,493 (86.9)	39,233 (83.4)

※ 중복학대 포함

과거에 비하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사법적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사법 처리[5] 건수는 2015년 3,564건에서 2020년 10,367건이었다. 하지만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에 따라 내려진 대법원판결을 분석한 결과 실형보다 집행유예 선고가

4) 괄호 안의 수치는 보건복지부의 통계에서 보고된 학대 발생 사례 중 부모가 가해자인 사례의 비율이다.

5) 사법 처리는 고소 및 고발과 수사의뢰, 응급조치에 따른 수사개시 등 사법절차가 진행된 경우를 의미한다.

2~3배가량 많았다(최준혁, 2021). 실제로 경미한 아동학대는 처벌에서 제외되거나 아동학대행위자와 자녀가 적절한 조치 없이 함께 지내게 되면서 악화한 형태의 학대가 재발생하기도 한다. 아동권리위원회가 지적한 것처럼 가정 내 재학대 방지를 위한 효과적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아동보호 사건이나 형사사건으로 규정되기 전 피해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학대행위자 강제규정이 필요하고(최준혁, 2021) 가족 재결합 이후 6개월까지 초기 개입을 통한 중점적 아동보호 서비스 등(윤수경, 2021)이 지원되어야 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사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담당하는 부모의 인식 변화와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양육 역량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의 빈번한 발생 외에도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학대가해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보건복지부, 2017)이라는 점은 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보다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의 보호자 대상 인권교육 규정을 마련했다. 2020년에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대상으로 아동의 보호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시행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교육 대상과 교육내용 측면에서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입양 등 요보호 아동의 경우에만 의무교육으로 부과되며 교육내용도 주로 신고 의무와 절차에 관련한 내용을 다루는 등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가정은 아동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환경이다. 모든 아동은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고 양육 받을 권리가 있고 아동권리협약의 여러 조문은 가정에서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부모가 양육책임을 다하고 가정 내에서 아동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는 부모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지원에는 부모가 자녀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부모교육이 포함된다. 아동과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아동의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가 아동을 권리 주체이자 독립된 인격체로 인식하지 못하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에 대한 폭력을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자녀의 권리를 존중하는 인권친화적 양육을 가능하게 하는 아동권리교육으로 확

장될 필요가 있다. 아동권리교육을 통해 부모는 아동의 전반적 발달과 권리실현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되며 동시에 주요한 삶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부모 대상 아동권리교육은 자녀는 물론 부모에게도 필요한 교육이다.

지금까지 논의를 토대로 가정 내에서 아동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권리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교육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는 가장 일차적으로 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생존권과 보호권의 심각한 침해이다. 아동학대는 장기적으로 아동의 신체발달 및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김세원 외, 2019; 배태상, 이희영, 2021; Heilmann et al., 2021). 학대를 받은 아동은 신체발달의 지체 혹은 낮은 자존감, 우울감, 불안 등의 정서적 손상을 입게 되며, 공격행동이 증가하여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송영혜, 김경선, 이경하, 2001; 정선영, 2003; Grogan-Kaylor, 2021; Pears & Capaldi, 2001). 이 연구는 1) 국내외 부모교육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2)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부모교육 및 예비부모교육 현황을 조사하고, 3)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 부모교육의 실태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대상 아동권리교육의 요구 및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여 부모교육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 예방을 부모교육의 실태를 조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부모교육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부모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료(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내용과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내용

(1) 부모교육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및 법제도 검토를 통해 인권친화적 양육태도의 개념 및 범위를 정립

① 교육학, 아동복지학, 가족학 등 관련 분야의 부모교육 이론 및 연구 검토

② 인권친화적 양육태도 정의와 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른 인권친화적 양육태도의 범위 구체화
③ 국가별 부모교육 관련 법률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조사
④ 자녀의 권리와 부모의 권리의 가치 충돌에 관련한 이론적 검토

(2) 국내 부모교육 시행 기관별 부모교육 현황, 체계, 내용 조사 및 분석

① 법률적·행정적 조치에 근거하여 시행된 부모교육의 체계와 내용 분석
② 교육부나 광역자치단체 교육지원청에서의 부모교육 정책추진체계 조사
③ 주요 관련 기관(한국보육진흥원,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부모교육 시행 현황 및 체계 조사

(3)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예비부모교육 현황 파악을 위해 국외 교육과정 조사 및 국내 교과서 내용 분석

① 국내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대학 강좌 강의안에 포함된 예비부모교육 관련 내용 검토
② 초등학교 실과, 중학교 기술가정,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예비부모교육 관련 내용 분석
③ 대학교에서 교육, 심리, 가족학 등 관련 학문 비전공자를 위해 개설된 예비부모교육 강좌 교재 분석
④ 미국 뉴욕주, 영국 잉글랜드, 호주의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된 예비부모교육 관련 내용 조사

(4) 부모교육 실태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대상 아동권리교육 요구조사

① 아동 최선 이익 실현을 위한 부모교육의 국내외 사례조사
② 설문 및 면담조사를 통한 부모교육 실태조사

(5)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대상 아동권리교육 자료 제안

① 권리주체인 아동 개념을 제시
② 자녀의 생애주기별 권리실현을 위한 조력자 혹은 옹호자 역할을 명시적으로 제시
③ 위기 부모가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조력 체계 정보를 수록

2) 연구방법

이 연구의 자료수집은 문헌조사, 설문조사, 면담조사로 이루어졌다. 문헌조사는 국내외 학교 예비부모교육의 내용 분석과 국내에서 시행 중인 부모교육 내용 및 현황으로 나누어 검토했다. 설문조사는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 및 초등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면담조사는 부모와 전문가로 구분하여 시행했고 부모교육 경험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1) 문헌조사

가. 국내외 부모교육 내용 및 현황 분석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대상 아동권리교육의 당위성과 교육에 필수적으로 포함될 내용을 추출하고 효과적인 운영체계를 제안하기 위해 부모교육 관련 법률 및 보고서, 선행문헌 및 기존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국내외 부모교육 내용 및 현황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자료에서 교육학, 아동복지학, 가족학 등 관련 분야의 부모교육 이론 및 연구를 검토했다. 국가적 수준에서 제도화할 수 있는 부모교육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 국내 중앙부처기관의 부모교육 현황을 검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육아정책연구소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부모교육 시행 현황 및 체계를 조사했다. 아울러 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국내외 사례를 조사했다. 미국 등 영어권 국가와 EU 회원국 중 일부를 선정하여 국가별 부모교육 현황을 조사하고 성공적인 부모교육 요인을 분석했다.

나. 국내외 학교 예비부모교육 내용 분석

부모교육의 일부인 예비부모교육의 내용과 현황을 분석했다. 국내외 학교 교육과정의 예비부모교육 내용 분석 범위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자료의 분석 범위는 교육과정, 교과서 및 교재를 중심으로 했다.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된 예비부모교육 관련 내용을 추출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대학교 예비부모교육 강좌의 표준강의안을 검토했다. 예비부모교육 관련 교육과정 내용에 근거하여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및 대학교재 총 59권의 내용을 분석했다. 국외 자료의 범위는 미국과 영국, 호주의 교육과정이다. 세 국가 모두 개별 주마다 교육과정 적용에 자율성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학교 예비부모교육 내용 분석의 범위는 표 Ⅰ-3과 같다.

〈표 Ⅰ-3〉 학교 예비부모교육의 내용 분석 범위

국가	교육과정	교과서
한국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2020)	실과5 교과서(2019년) 출판사별 6종 실과6 교과서(2019년) 출판사별 6종
		기술가정1 교과서(2017년) 출판사별 12종 기술가정2 교과서(2017년) 출판사별 12종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2017년) 출판사별 12종
	대학생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표준 강의안(여성가족부, 2016)	대학교 교양 교재(2017~2021년) 11종
미국	뉴욕주 학습 표준과 교육과정(New York State Education Standards and Curriculum)	
영국	개인, 사회, 건강 및 경제 교육(Personal, social, health and economic education)	
호주	호주 교육과정(Australian Curriculum, version 8.4)	

둘째, 분석 방법은 내용 분석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했다. 국내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대학의 강의안을 내용의 연계성과 확장성을 비교하기 위해 내용 분석을 실시했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및 대학교재는 예비부모교육 내용을 키워드로 정제하여 내용 간 연결 정도를 살펴보는(이수상, 2018)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했다. 해외 교육과정은 국가별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교육 목표, 영역, 하위범주, 세부 내용 등으로 분석했다.

(2) 설문조사

이 연구는 연구수행기관 영남대학교의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목적과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등 연구 전 과정의 주요 절차와 내용에 대한 승인(NO: 2021-07-001-006)을 받은 후 시행되었다. 모든 연구진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다음 연구에 참여했다.

가. 연구대상

설문조사 대상은 자녀의 연령(영유아 및 초등)과 지역(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을 고려하여 표본을 구축하였고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설문조사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총 771부를 배부하였고 675부(87.55%)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설문지 72부를 제외한 603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연구대상의 성별 및 자녀 연령의 경향을 살펴보면 어머니는 318명, 아버지는 285명이었고 자녀의 연령은 영유아가 283명, 초등학생이 320명이었다.

나. 조사내용

부모 대상 설문의 내용은 부모의 일반적 배경, 부모교육 실태, 아동학대 및 아동권리교육 실태 및 요구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대상 아동권리교육 실태 및 요구조사의 구체적인 하위변인, 문항내용 및 문항수는 다음 표 Ⅰ-4와 같다.

〈표 Ⅰ-4〉 부모 대상 아동권리교육 실태 및 요구조사의 하위변인, 문항내용 및 문항수

하위변인	문항내용	문항수
응답자의 일반적 배경	응답자의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최종학력, 월소득 수준, 직업, 자녀의 생년월일, 성별 등	13

하위변인	문항내용	문항수
부모교육 실태	부모교육의 필요성, 부모교육 참여 여부 및 경험	17
아동권리교육 실태 및 요구	성인 및 아동 인권 인식도	9
	아동학대 및 양육태도 인식도	8
	아동권리교육의 필요성 및 요구도	13
전체		60

부모의 양육태도는 Shaefer의 이론에 기초하여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측정했다. 부정적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는 Shaefer의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MBRI)를 이원영(1983)이 번안하고 배문주(2004)가 다시 수정·보완한 것이다. 배문주(2004)의 척도는 Shaefer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태도, 거부적 태도, 자율적 태도, 통제적 태도로 구분하였으며 이 중 거부적·통제적 태도가 부정적 양육태도에 해당한다. 부정적인 양육태도의 구체적인 하위요인, 문항번호 및 문항수는 다음 표 Ⅰ-5와 같다.

〈표 Ⅰ-5〉 부모의 양육태도 설문지 하위요인, 문항번호 및 문항수

요인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부정적인 양육태도	거부적 태도	2, 4, 6, 7, 8, 9, 19, 20, 21, 22, 23, 24	12
	통제적 태도	1, 3, 5, 10, 11, 12, 13, 14, 15, 16, 17, 18	12
전체			24

다. 조사방법

설문조사는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졌다. COVID-19 확산 예방을 위해 전화와 공문으로 설문 참여 기관을 모집했으며 설문지는 우편을 통해 배부 및 회수했다. 설문지는 연구대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밀봉된 상태로 배부하였으며 설문 결과가 노출되지 않도록 회신용 접착 봉투를 동봉했다.

(3) 부모 및 전문가 면담

가. 연구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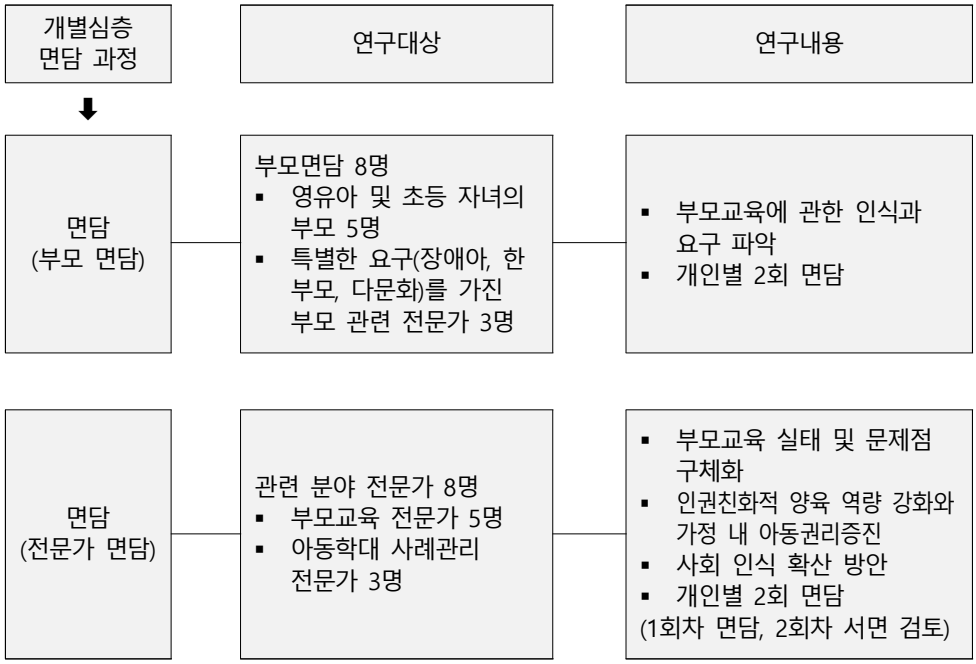
면담대상은 부모와 전문가 16인이다. 구체적으로 부모 대상 면담의 참여자는 특별한 요구를 가진 부모 관련 전문가(장애아, 한 부모, 다문화) 3명을 포함한 8명이다. 다양한 양육 상황에 있는 부모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특별한 요구를 가진 부모를 대신하여 이들을 상담하거나 관리한 경험이 있는 현장 전문가가 부모 면담에 참여했다. 전문가 면담의 참여자는 다양한 양육지원 서비스 체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이론 및 현장 전문가 8명이다. 면담 대상자는 전문성 영역을 고려하여 부모교육 전문가 5명, 아동학대 사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되었다.

나. 조사내용

면담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구조적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부모 대상 면담은 부모교육 참여 경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및 권리존중 양육 실천,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참여형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및 지원과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전문가 대상 면담은 일반적 양육지원 서비스 지원 특징, 학대 예방 부모교육 및 서비스 지원, 인권친화적 양육태도 형성을 위한 부모교육 관련 질문으로 구성하였다(부록 3, 4 참조).

다. 조사방법

COVID-19 확산으로 인해 부모와 전문가 면담은 주로 원격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부모 면담은 참여자별로 각 2회 실시되었으며 부모의 상황과 요구에 맞추어 원격화상회의 프로그램(ZOOM) 또는 전화를 활용하였다. 전문가 면담 역시 각 2회씩 실시하였다. 1회차는 원격화상회의 프로그램(ZOOM)을 활용했고 2회차는 이메일 활용하여 서면 검토 방식의 디브리핑(debrifing)을 했다. 구체적인 면담 과정은 그림 Ⅰ-1과 같다.



[그림 Ⅰ-1] 부모 및 전문가 면담 과정

II. 이론적 배경

1. 부모교육의 정의와 필요성
2. 아동학대와 아동권리실현
3. 국내 부모교육 관련 연구

1. 부모교육의 정의와 필요성

1) 부모교육의 정의

부모교육은 예비 부모를 포함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태도를 바람직하게 증진하는 교육으로 부모의 자질과 소양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포괄한다. 부모교육을 통해 형성한 지식, 기술, 태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다각적으로 적용되고 부모의 양육태도(parenting attitude)에도 영향을 미친다(구희정, 2016; 최연화, 2020; Ponzetti, 2016). 부모교육이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부모에게 제공되는 경험의 목표나 내용에 따라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6] 부모교육이나 부모훈련은 부모에게 미치는 일방향적인 영향을 의미하는 반면, 관계나 협력을 포함하는 용어는 부모와 기관 사이의 양방향적 영향력을 나타낸다.

부모교육은 범위와 시기 측면에서 다르게 정의된다. 협의의 부모교육은 "가족체계 혹은 자녀돌봄 체계에서 자녀 양육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변화 혹은 향상시키기 위한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노력(Brock, Oertwein, & Coufal, 1993: 88)"이다. 반면 광의의 부모교육은 "건강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와 양육자를 지원하거나 이들의 능력과 자신감을 향상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 및 자원"이다(Carter, 1996). 후천적 학습의 관점에서 부모교육은 부모에게 지식과 기술을 전하여 부모 역할 지원 및 부모역량을 증진하는 교육적 활동으로 정의되기도 한다(신용주, 김혜수, 2011; 이재림, 김지애, 차동혁, 이향희, 2013). 부모교육의 범위와 무관하게 부모교육은 이미 성인이 된 사람 또는 예비부모를 위한 성인교육이라는 공통점이 있다(한국유아교육학회, 1997).

시대에 따라 부모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달라지면서 부모교육 정의 역시 달라졌다(임은미, 김종운, 2014; Ponzetti, 2016). 과거의 부모교육은 부모 역할 수행에

---

6) 부모교육은 부모교육(parent education), 부모훈련(parent training), 부모참여(parent participation), 부모개입(parent involvement/intervention), 부모상담(parent counseling), 부모지지(parent support), 부모역할 배우기(parenting), 부모(가정)-의사소통(parent/home-school communication), 부모협력(parent cooperation), 부부(기관)-관계(parent/home-school relationship)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김희진, 2014).

도움을 주는 정보와 지식 그리고 양육기술을 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대의 부모교육은 부모교육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에서 벗어나 부모가 주체성을 갖고 자녀의 교육을 도모하는 개념으로 확장하고 있었다. 이는 부모교육이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과거의 부모교육이 부모를 자신이 수행할 역할에 필요한 역량이 부족한 존재라고 보았다면 최근에는 점차 부모를 이해와 협력의 파트너로 인식한다.

2) 부모교육의 필요성

현대 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개인이 삶의 주체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와 가치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개인이 살아가는 사회적 맥락 중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족의 역할과 기능도 변화했다. 특히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부모는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부모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이정주, 이종연, 2014). 부모는 자녀의 신체, 인지, 언어, 사회, 정서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치며 자녀를 사회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자녀의 발달에 핵심적이다(Sherr, Skar, Clucas, Tetzchner, & Hundeide, 2014). 하지만 생물학적 부모됨(biological parenthood)과 달리 사회·문화적 부모됨은 학습과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므로 체계적인 부모교육이 요구된다(Reynaert, Bouverne-de-Bie, & Vandevelde, 2009). 부모-자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부모 역할을 하는 모든 성인은 부모기(parenthood)에 대한 올바른 인식,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 사회변화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 등 여러 측면의 교육이 필요하다. 도덕적인 부모(moral parenthood)는 최선의 자녀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돌봄, 관심과 애정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되었다(Archard, 1993). 따라서 부모교육은 부모가 자신과 자녀를 대하는 태도나 신념에 관한 성찰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부모교육은 개별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사회 유지를 위해 활성화되어야 한다. 자녀 양육을 여성의 몫으로 간주하는 전통 관념, 부모 역할에 대한 사회 인식 부족이나 개인의 부모 역할에 대한 준비 부족 등은 저출산의 요인이 된다. 부모교육은 부모됨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육아정책연구소, 2010). 또한, 부모교육은 가

족의 건강성 함양에 공헌한다.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는 긍정적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가족 문제 해결에 구체적인 방안을 얻을 수 있다. 실제로 사회의 복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대부분의 부모교육은 '건강한 가족'을 지향한다(Dunst, Trivette, & Thompson, 1990).

부모교육은 가족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동학대, 아동권리침해, 부모의 혼란과 같은 어려움이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효과를 가진다(이재림 외, 2013). 아동은 권리 주체자이나 취약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동의 권리는 성인과 국가의 조력을 통해 실현되는 특성이 있다. 아동의 삶에 참여하는 성인, 특히 부모가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 아동의 권리는 낮은 수준에서 실현된다(김진숙, 서영숙, 서혜정, 2010). 긍정적 양육태도의 부모는 자녀의 권리에 대해 높은 수준의 인식을 보였지만 부정적 양육태도의 부모는 자녀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경우가 많았다(이은주, 정계숙, 2012). 자녀를 미성숙한 존재로 인식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에서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배제하였다(신지현, 김경화, 2005). 부모는 부모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유형이나 자녀 발달에 학대가 미치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녀를 올바르게 지도하는 방법이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하지만 0~5세 영유아의 부모 중 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한 부모는 미이수 부모의 1/4 수준에 불과했다(성영화, 이숙자, 2018).

부모교육은 국가의 의무이며 가정을 지원하는 방법이자 아동의 인권실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Whittaker & Cowley, 2012). 부모교육의 필요성 부각에 따라 부모교육의 대상이 영유아기와 청소년기 부모, 학령기, 성인기, 예비부모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었다. 아울러 조부모, 장애아동, 다문화, 저소득층 등 교육 대상의 세분화가 진행되고 있다(이진, 임선아, 2020). 부모교육의 중요성이 사회적 공감을 얻으면서 다양한 가족 형태 및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부모가 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모교육 대상의 확대와 세분화는 가족 내 아동의 인권실현에 토대가 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인 Head Start 프로그램은 부모교육 대상의 확대와 세분화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 빈곤층 아동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가정의 빈곤 악순환을 예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이다(정옥분, 정순화, 2016).

세계인권선언과 아동권리협약은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와 부모의 의무를 표 Ⅱ-1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표 Ⅱ-1〉 세계인권선언과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국가와 부모의 의무와 역할

조약명	조항	내용
세계 인권 선언	제25조 2항	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
	제26조 3항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
아동 권리 협약	제 2조	1. 협약의 당사국(이후 '당사국'이라 한다)은 아동이나 그 부모,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인종적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여부,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법정 후견인 또는 다른 가족의 신분과 행동, 의견이나 신념을 이유로 차별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조 2항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법정 후견인 및 기타 아동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해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입법적 행정적으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5조	당사국은 아동이 이 협약이 명시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나 현지 관습에 의한 확대 가족, 공동체 구성원, 법정 후견인 등 법적 보호자들이 아동의 능력과 발달 정도에 맞게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과 권리가 있음을 존중해야 한다.
	제 7조 1항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하며, 가능한 한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아야 한다.
	제 9조	1. 당사국은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사법당국이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경우 외에는, 아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모와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나 유기, 부모의 별거로 인한 아동의 거취 결정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을 시행하는 절차에 있어 모든 이해당사자는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한쪽이나 양쪽 모두로부터 떨어진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관계를 갖고 만남을 유지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4. 부모나 아동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 퇴거 또는 사망(당사국이 억류 하고 있는 동안 사망한 경우 포함) 등과 같이 당사국이 취한 조치로 인해 아동과 부모가 분리된 경우, 당사국은 아동에게 해롭지 않다고 판단되는 정보 제공 요청이 있을 때 부모나 아동, 다른 가족에게 부재중인 가족의 소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 의뢰가 관련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아동 권리 협약	제 10조	1.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에 따라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 아동이나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이나 출국 신청을 했을 경우 당사국은 이를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요청이 신청자와 그 가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2. 부모가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인 상황 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를 갖고 만남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협약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 당사국은 아동과 그 부모가 본국을 비롯한 어떠한 국가로부터도 출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이 권리의 제한은 협약이 인정하는 다른 권리와 부합되는 범위에서 국가안보와 공공질 서, 공중보건, 도덕,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때에만 가능하다.
	제 14조 2항	당사국은 아동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나 법정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 발달에 맞는 방식으로 아동을 지도할 권리와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
	제 1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있어 양쪽 부모가 공동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공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지며 그들은 기본적으로 아동에게 무엇이 최선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2.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양육 책임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부모와 법정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과 시설, 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취업 부모의 자녀들이 아동 보호 시설과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법정 후견인, 다른 보호자로부터 양육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이러한 보호 조치 속에는 아동 및 아동의 양육 책임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 계획의 수립과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아동 학대 사례에 대한 다른 형태의 방지책, 학대 사례를 확인□보고□조회□조사□처리□추적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적 개입이 가능한 효과적인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 21조	입양 제도를 인정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이익이 가장 먼저 고려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또한 가. 아동의 입양은 적용 가능한 법과 절차에 따라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정보에 기초해 이루어져야 하며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허가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관계당국은 부모나 친척, 법정 후견인과 관련된 아동의 신분 상태를 고려해 입양의 허용 여부와 필요한 경우 부모나 친척 등 관계자들이 협의해 입양에 대한 분별 있는 동의를 했는가 하는 점을 결정한다. 나. 해외 입양은 아동이 위탁 양육자나 입양 가족을 구하지 못했거나 모국에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양육될 수 없는 경우 아동양육의 대체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아동 권리 협약	제 22조	1. 당사국은 난민의 지위를 요청하거나 적용 가능한 국제법이나 국내법, 다른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규정된 아동이 부모나 다른 보호자의 동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협약 및 해당 국가의 국제인권 또는 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권리를 누림에 있어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도록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해 당사국은 유엔 및 유엔과 협력하는 자격 있는 정부기관이나 비정부기구들이 이러한 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 재결합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해 난민 아동의 부모나 가족 추적에 기울이는 노력에 대해 적절한 협조를 해야 한다. 부모나 다른 가족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정 환경을 박탈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 협약에 규정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 23조 2항, 3항	2. 당사국은 특별한 보호를 받을 장애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며 활용 가능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아동과 부모, 다른 아동양육자의 사정에 맞는 지원이 신청에 의해 해당 아동과 양육 책임자에게 제공되도록 장려하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 3. 장애 아동의 특별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이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부모 등 아동양육자의 재산을 고려해 가능한 한 무상 지원을 해야 하며, 아동이 교육과 훈련, 의료 지원, 재활 지원, 취업 준비 및 오락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안을 장애 아동의 사회 참여와 문화적□정신적 발전 등 개인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마련해야 한다.
	제 24조 2항	라. 산모에게 적절한 산전 산후 건강 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마. 부모와 아동을 비롯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수유의 장점, 위생 및 환경정화, 사고 예방에 관한 기초지식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 바.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 부모 교육, 가족 계획 교육과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조치
	제 27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발달에 맞는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2. 부모 또는 아동을 책임지는 보호자는 능력과 재산의 범위 안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조성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3. 당사국은 재정 범위 안에서 국내 상황을 고려해 부모나 아동을 책임지는 보호자가 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히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해 물질적 원조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4.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아동의 재정 책임자로부터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아동의 재정 책임자가 아동과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국제협약 가입이나 체결 등 적절한 조치를 세우도록 추진해야 한다.
	제 29조 1항	다. 자신의 부모와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현 거주국과 출신 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적인 문명에 대한 존중

아동 권리 협약	제 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해 아동의 나이에 맞는 처우를 받아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과 함께 수용되는 것이 아동에게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 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해 가족과 연락할 권리가 있다.
	제 40조 2항	나. 형사 피의자나 형사 피고인이 된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받는다. ⑴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는다. ⑵ 피의 사실에 대한 변론 준비와 제출에 있어 직접, 또는 부모나 법정 후견인을 통해 신속하게 법률 지원을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⑶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의해 법률 지원 및 다른 적절한 지원 하에 법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통해 지체 없이 판결을 받아야 하며,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는 판단이 없는 한 특별히 아동의 나이나 상황, 부모나 법정 후견인 등을 고려해야 한다.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18세 미만 아동에게 자국 군대의 자발적 입대를 허용하는 당사국은 최소한 다음의 안전 조치들을 유지해야한다. 가. 입대가 순수하게 자발적일 것 나. 입대가 당사자의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의 동의 통보와 함께 이루어졌을 것
	아동매매·아동성매매·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아동 보호 및 국가 간 입양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국제 아동 유괴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협약, 부모의 책임 및 아동 보호조치에 대한 관할, 적용 법률, 승인, 집행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및 즉각적 제거조치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82 호를 포함해 아동 보호에 관한 국제 법률 문서의 규정들을 주목한다.
	개인청원절차에 관한 선택의정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이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아동이나 그 부모,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 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여부, 태생, 신분 등과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인정하는 것에 주목한다.

3) 예비부모교육의 정의와 필요성

예비부모교육이란 결혼 및 자녀 출산 이전의 학생이나 부부를 대상으로 부모됨에 관련한 전반적인 지식, 기술, 가치와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즉 미래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을 사전에 대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예비부모교육이다(육아정책연구소, 2010). 예비부모교육은 부모교육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교육 대상 측면에서 부모교육과 차별화된다. 부모교육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를 위한 것이라면 예비부모교육은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다. 예비부모교육의 대상은 자녀를 출산하기 이전의 부부나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있는 가임기에 속한 남녀 결혼적령기 청년뿐만 아니라 대학생 또는 중고등학생 등이다(김수경, 2018; 김정미, 2004; 오은영, 최새은, 2019).

내용적 측면에서도 예비부모교육은 부모교육과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교육은 부모가 현재 양육하고 있는 자녀의 발달 특성과 구체적인 양육기술 등을 다룬다(이재림 외, 2012; 정보미, 김낙흥, 2016). 반면 예비부모교육은 예비부모 자신의 발달과 미래 가족 형성, 가족관계 등 자기이해교육에 초점을 둔다(김수경, 2018; 여성가족부, 2016). 예비부모는 발달하는 과정 중에 있으며 가정에서 자녀의 위치에 있다. 따라서 예비부모교육은 예비부모가 자신을 먼저 이해한 다음 부모됨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중심된다. 요약하면 예비부모교육은 다양한 요구를 가진 여러 연령층에게 인간발달과 관계 및 가족 등의 관점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예방적 부모교육이다.

최근 사회적 변화와 아동학대의 증가는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가족 환경이 핵가족화되면서 젊은 부모들은 윗세대로부터 가족관계, 자녀 양육 방법과 의사소통 기술 등에 도움이나 조언을 받지 못하여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김정미, 2004; 정보미, 김낙흥, 2016). 또한, 개방적 성문화에 따른 연애관과 결혼관의 변화, 청소년 미혼모의 증가로 준비되지 못한 채 부모가 되기도 한다(정옥분, 임정하, 정순화, 박연정, 김경은, 2008; 지수연, 2012; Lee, Wilsie, & Brestan-Knight, 2011). 부모의 역량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정적 양육태도, 부부 갈등, 높은 스트레스 등 열악한 상황에 있는 부모들은 아동학대 위험성

이 높다(김혜경, 2010; 이세현, 양인화, 박병기, 2018). 그러므로 부모의 어려움 때문에 발생하는 아동학대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부모교육은 물론 예방적 차원의 예비부모교육이 일찍부터 필요하다.

예비부모교육은 90년대 부모교육 관련 내용이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되면서 다양한 기관에서 시작되었다. 학교와 비영리단체, 종교기관, 국가부처 등은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김정미, 2004; 신혜영, 1997; 육아정책연구소, 2010; 원성희, 유영달, 2006; 최총명, 2014). 이 중 두드러진 성과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예방적 차원으로 시행된 예비부모교육으로 볼 수 있다. 실태조사(육아정책연구소, 2010)에 의하면 대학생의 77%가 고등학교 시기에 예비부모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기술가정 교과목을 통해 배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90년대부터 중등학교에서는 '발달', '부모-자녀 관계' 등의 내용이 가정과 교육과정에 추가되었고 대학에서는 '부모교육' 및 '부모되기 교육' 등이 교양과목으로 개설되었다(전선옥, 2019). 그러므로 고등학교의 가정과 대학교의 예비부모교육 강좌는 현재까지 대다수 예비부모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예비부모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예비부모교육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후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 교과목 내에 포함된 예비부모교육 관련 내용의 연계성 확보와 예비부모교육의 방법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2016년 한국가정과교육학회는 기술가정 교과목을 통해 학교에서 청소년기 예비부모교육의 구체적인 접근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가정과 수업에서 예비부모교육 내용 해석, 적용 수업사례, 교육과정 기반 프로그램 개발 등이 이루어졌다(김지숙, 이경숙, 2016; 노희연, 조재순, 채정현, 2017; 전미경, 2016). 정순화(2017)는 중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 내용과 대학생 예비부모교육 표준강의안의 내용 비교를 통해 교육과정 간 연계성과 위계성이 높았다고 보고했다. 또 남민우와 이운지(2017)는 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예비부모교육은 내용 연계성은 높았지만, 효과성은 보통 수준이라고 밝히며 예비부모교육의 내용이 기술가정 교과 외에도 보건이나 사회 등 다른 교과목에서도 다루어질 가능성을 제안했다. 다른 연구에서는 실습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 등 방법적 차원에서 예비부모교육 운영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다. 고등학교 가정 교과에 기초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한 노희연 등(2017)은 청소년이 부모역할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예비 관점에서 현재의 생활에서도 바람직한 변화를 이루는 데 목적을 두고 방법적 개선을 시도했다. 이에 17차시의 프로그램을 실천적 문제해결, 지역사회와의 교류, 프로젝트, 가정 내 실습 활동 등 구체적인 학습 활동으로 조직했다. 아울러 선행연구는 10대 청소년을 위한 예비부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예비부모교육, 나아가 부모교육의 사각지대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은정, 장미경, 2020; 오은영, 최새은, 2019; 지수연, 2012).

둘째, 대학에서는 다양하게 실시되었던 예비부모교육 내용을 체계화하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있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여성가족부(2016)가 '대학 부모교육 강의 사례집'을 통해 대학마다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던 예비부모교육의 내용과 구성 체계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부모교육 강의 사례집은 대학에서 실시되는 예비부모교육 관련 강좌의 실태와 방향을 제시한 표준강의안이다. 사례집에 의하면 예비부모교육은 부모됨 가치, 예비부모의 성장과 인성 이해, 자녀 발달과 양육 역할, 현대 사회 부모됨의 장애물과 대안 등의 목표에 근거하여 세부 내용이 16주(한 학기)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에서 예비부모교육 강좌를 수강한 학생들은 부모됨에 대한 지식과 문제해결능력, 부모 역할 자신감, 예비부모교육 가치와 태도 등이 증진된 것으로 보고됐다(김선주, 2016; 박은주, 2020; 이승아, 2020).

이처럼 예비부모교육은 부모가 되기 전 부모가 될 가능성을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해 부모됨의 개념과 의미, 방법, 과정 등을 전달하는 교육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되게 반복되는 예비부모교육은 매우 효과적이며 이것은 학교 교육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학교 교육은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부모교육 관련 지식과 부모됨을 생각해보는 경험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기회가 많다. 학교에서 시행되는 예비부모교육을 통해 예비부모는 자녀로서 현 가족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게 된다. 또한, 미래의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이들의 권리가 실현하기 위한 기초적인 역량을 갖추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비부모교육은 현대 사회의 가족을 지원하는 중요한 지원 체계의 역할을 한다.

2. 아동학대와 아동권리실현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조는 부모를 아동권리실현의 일차적 책임자로 명시하고 있다. 부모는 양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부모로서 자녀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최선의 역할을 해야 하는 도덕적·법적 의무가 있다. 부모는 자녀의 권리실현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지만 동시에 권리를 제한하기도 한다. 이는 아동권리가 침해되는 대표적인 사례인 아동학대 현황에서도 잘 나타난다. 2020년 아동학대 현황에 의하면 부모가 학대가해자인 사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보건복지부, 2021).

아동학대 발생 요인은 부모의 학대받은 경험, 양육기술의 부족, 학대행위자의 기질적·심리적 특성, 양육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사회문화적 변인들로 다양하다(Cash, 2001). 과거에는 부모나 자녀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발달론적 관점이나 정신병리학적 관점에서 아동학대의 원인을 찾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회심리학적 관점이나 생태학적 관점에 근거하여 가족을 둘러싼 맥락에서 학대의 원인을 찾는다. 2017년 통계(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원인은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부부나 가족 갈등 등이었다. 그 중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에서 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아동복지시설종사자, 학교교직원, 위탁모 등) 모두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아동학대의 가장 두드러진 원인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 상황에서 부모의 욕구가 실현되지 않으면 자녀돌봄이 약화되고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자녀에게 전가되어 자녀를 학대하고 방임하게 된다(이주희, 이선화, 2020).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의 부족은 부실한 양육이나 양육 부재를 초래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와 아동보호 체계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개별 가정에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양육기술이 부족한 부모는 자녀와의 갈등 상황에서 강압적 태도나 체벌을 사용하여 자녀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도하지 않았지만, 학대하게 될 수도 있다. 대부분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권위가 훼손되었다고 느낄 때 체벌을 사용하

여 힘과 통제력을 회복하려고 한다(이미영, 2017). 또한, 자녀가 통제 불능이 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자녀를 바르게 성장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인해 신체적 처벌을 사용한다(이재연, 윤선화, 2004). 힘을 사용하는 모든 훈육이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은 훈육이나 교육적 목적의 체벌과 학대를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Brownlie & Anderson, 2006). 최근에는 관심이 높아진 언어·정서 학대 역시 신체적 체벌만큼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Ward, Grogan-Kaylor, Pace, & Lee, 2021).

아동기에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부모는 자녀를 학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이선화, 이주희, 2020). 부모의 폭력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자녀가 이를 학습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할 위험이 큰데 이를 폭력의 세대 간 전이라고 한다. 세대 간 전이를 일반화하는 것은 피해자를 다시 가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관련 연구는 폭력이 세대 간 전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가해와 피해 경험의 교차를 밝혔다. Ehrensaft, Knous-Westfall, Cohen과 Chen(2015)은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와 성인기의 후속 양육의 연관성을 과거 30년간 수집된 지역사회 표본에서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했다. 신체적·성적 혹은 중복학대 피해는 이후 행동 장애로 이어진다.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 장애와 범불안 장애 등은 타인을 돌보는 행위나 공감 학습을 제한하여 자녀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부모의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은 부모교육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특성으로 아동학대 감소와 직결되어 있다(윤수경, 2021; Fortson, Klevens, Merrick, Gilbert, & Alexander, 2016; Lee, Altschul, & Gershoff, 2015; Marcus, Rivett, & Kruja, 2021).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징계권 삭제[7]를 통한 신체적 체벌의 전면 금지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학부모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녀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특정한 실수를 할 때 신체적 체벌과/혹은 가혹한 언어적 비난이 필요하다는 믿음이 공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Marcus, Rivett과 Kruja (2021)는 사회규범에 의해 유지되는 아동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부모교육의 효과를 증대하는 여러 요인을 검토했다.

7) 2021년 12월 63개국이 가정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의 체벌의 전면적 금지를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26개국이 법률 개정 중에 있다(End Corporal Punishment, 2021).

〈표 II-2〉 학대행위자 특성[8)]

특성	2013		2014		2015		2016		2017	
	건 수	비율	건 수	비율	건 수	비율	건 수	비율	건 수	비율
신체적 장애	208	1.0	252	.8	235	.7	353	.8	156	.4
정신적 장애	179	.8	231	.8	194	.6	256	.5	154	.4
장애의심	278	1.3	328	1.1	341	1.0	501	1.1	280	.7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7,099	32.6	10,076	33.1	11,171	33.7	16,737	35.6	8,388	22.2
중독문제	1,275	5.9	2,026	6.7	2,247	6.8	2,747	5.8	1,103	2.9
질환문제	261	1.2	260	.9	513	1.5	726	1.5	325	.9
성격 및 기질 문제	1,543	7.1	2,134	7.0	2,261	6.8	2,873	6.1	1,676	4.4
위생문제	415	1.9	502	1.6	475	1.4	617	1.3	251	.7
나태 및 무기력	324	1.5	423	1.4	430	1.3	540	1.1	291	.8
난독해, 난작문	28	.1	35	.1	35	.1	28	.1	14	.0
사회, 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4,883	22.4	6,200	20.4	6,296	19.0	8,372	17.8	4,933	13.1
어릴 적 학대경험	393	1.8	536	1.8	542	1.6	695	1.5	372	1.0
폭력성	939	4.3	1,491	4.9	1,791	5.4	2,242	4.8	927	2.5
전과력	136	.6	164	.5	199	.6	249	.5	92	.2
성문제	212	1.0	261	.9	378	1.1	418	.9	144	
원치 않는 아동	229	1.1	282	.9	217	.7	264	.6	136	.4
부부 및 가족 갈등	2,049	9.4	3,050	10.0	3,607	10.9	4,901	10.4	2,721	7.2
종교문제	57	.3	69	.2	89	.3	130	.3	44	.1
특성없음	748	3.4	1,667	5.5	1,735	5.2	3,726	7.9	4,133	10.9
파악안됨	532	2.4	469	1.5	417	1.3	585	1.2	11,651	30.8
계	21,788	100	30,454	100	33,173	100	46,960	100	37,791	100

국내외 많은 선행연구(보건복지부, 2013; 성영화, 이숙자, 2018; 이재연, 윤선

8)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화, 2004; Barth, 2009; Lundahl, Nimer, & Parsons, 2006; Prinz, 2016)는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부모교육의 효과를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Lundahl 등(2006)은 총 23개의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부모교육이 부모의 학대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고 자녀 양육기술을 향상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부모교육의 아동학대 예방 효과를 토대로 이재연과 윤선화(2004)는 보건학 모델을 적용한 부모교육의 프로그램을 1~3차 아동학대 예방 수준으로 나누어 탐색했다. 1차 예방 수준의 부모교육은 아동학대가 발생하기 전 대중매체나 캠페인, 부모역할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이다. 2차 예방 수준의 부모교육은 고위험군 집단을 대상으로 가정지원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의 기능을 높이는 것이다. 3차 예방 수준의 부모교육은 이미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에서 학대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심도 있는 부모교육과 훈련을 하는 것이다. 이재연과 윤선화(2004)는 여러 형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개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2013)의 연구보고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제도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는 국내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의 제도화를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취약 집단이나 고위험군 집단의 요구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고위험군 집단에 속하는 학대부모는 재학대 예방을 위해 부모교육 이수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rinz(2016)는 부모 대부분이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강압적인 방식의 훈육을 하며 일부 부모들은 자주 신체적 체벌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Prinz(2016)는 가정 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전략으로 가정 내 문제해결 및 구체적인 양육기술을 제공하는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은 부모의 인식을 변화시켜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식하고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부모교육에서 다루어야 한다. 다수 문헌(김하정, 2018; 안사라, 2012; 양순경, 2012; 이은주, 2012; 현정희, 정채옥, 2015)은 부모의 높은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과 긍정적인 양육태도와의 상관관계를 보고했다.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부모 집단은 그렇지 않은 부모 집단보다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높았다

(김선희, 2021; 정익중, 강지영, 이수진, 2020). 인권교육을 통해 부모의 인권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가 변화되고 인권친화적 양육이 가능하다(김선희, 2021). 이를 종합하면 가정에서 발생하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부모 대상 아동권리교육의 필요하다. Day, Peterson-Badali과 Ruck(2006) 및 Morine(2000)는 부모가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질수록 아동에게 자율성을 보장하고 의사결정 기회를 준다고 보고했다. 또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뿐만 아니라 체벌도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었다(Gallitto, Veilleux, & Romano, 2019).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대상 아동권리교육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통한 부모의 인식과 태도의 개선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우진경(2020)은 부모와 가정 관련 아동권리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여 부모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방향에 비교해 구체적인 부모교육 실태나 부모 요구를 탐색하는 연구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출간된 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한 문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금희(2020)는 부모에게 아동권리존중 및 인식에 관한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효과와 적용 가능성을 조사했다. 구체적으로 부모에게 제공된 아동권리존중 및 인식에 관한 정보와 프로그램은 가정통신문 형태의 아동권리존중 부모교육 자료, 가정연계 방식의 활동(규칙 만들기, 아동권리존중 공모전 등),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아동권리 존중 프로그램(권리방패 퍼즐 맞추기, 아동권리 프로젝트 등)이다. 제공된 정보와 프로그램은 부모의 인식을 변화시켜 가정에 인권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으며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과 부모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김윤희(2017)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인식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조사했다. 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전체 참여부모의 50.9%였고 이들 중 다수는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교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부모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부모보다 적었다. 교육 필요성을 느낀다는 부모는 전체 50%였으나 교육을 실시한다면 참여하겠다는 부모는

36.3%에 불과했다.

장혜진과 이현진(2018)은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에 부모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모 변인별 특성을 파악하여 참여 독려 방안을 찾고자 했다. 연구결과 아동권리에 대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부모는 97.1%인데 반해 참여의사는 76.2%로 낮았고 부모의 성별, 직업, 가정소득, 자녀의 수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아동권리에 대한 중요성을 부모가 인식하고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부모의 개인적 조건이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참여 의사에 차이가 있어서 이를 고려한 지원과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교육 수요자인 부모의 요구를 파악하고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부모교육의 참여율과 효과를 높이는 데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부모교육의 실태를 조사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부모교육 참여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교육 참여율과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밝히고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에는 아동학대 예방 차원을 넘어 아동권리실현과 같이 적극적 실천을 강조하는 부모를 위한 아동권리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이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소극적인 행동이라면 아동권리존중은 권리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권리 개념은 추상적이어서 아동권리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이호균 외, 2014) 아동권리존중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장혜진, 이현진, 2018). 남미경과 박봉환(2019)에 의하면 부모들은 아동권리존중 양육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실행도는 낮았다. 부모들은 자신이 자녀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는 인식하고 있었지만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해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김정화, 이영애, 2013). 실제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동권리존중을 실천할 수 있는 매뉴얼과 교육을 요구하기도 했다(김선희, 윤재희, 2020). 이는 아동권리존중 및 인권친화적 양육에 관한 실제적 정보가 부족하여 부모가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부모 대상 아동권리교육은 아동권리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아동권리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기술과 가치와 태도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우진경, 2020). 이러한 교육을 통해 부모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과 가정 내에서 아동권리실현 수준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3. 국내 부모교육 관련 연구

1) 예비부모교육 관련 연구

초기 예비부모교육은 결혼 후 자녀 출산과 양육을 앞둔 이들의 선택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예비부모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간접적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2010)는 예비부모교육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 고등학생 770명과 271개교의 고등학교 가정·기술 교사, 대학생 936명을 대상으로 실태와 요구를 조사하였다. 고등학생에게는 예비부모교육 실시에 대한 의견을, 교사 집단에게는 예비부모교육의 현황을, 대학생에게는 고등학교 예비부모교육 경험을 파악한 이 조사에서 대다수 대학생이 고등학생 1학년 시기에 가정·기술 교과를 통해 예비부모교육 내용을 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88%의 고등학교에서 1학년 시기에 가정·기술 교과가 편성되어 있으며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 성과 임신, 출산,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내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학교 교과과정에 포함된 예비부모교육의 중요성만큼 개선점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민우와 이운지(2017)는 예비부모교육 효과 증진과 개선을 위해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교사 189명과 학생 1,767명을 대상으로 요구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6개 교과에 예비부모교육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주요 내용은 학생의 특성과 사춘기의 발달을 고려한 가족과 가정의 중요성이었다. 중학교와 비교해 고등학교는 교과와 내용 빈도가 감소했으나 양육기술과 의사소통기술 등 더 폭넓은 내용이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효과적인 예비부모교육을 위해 교사들은 고등학교 예비부모교육의 수준 확대를 요구했지만 학생들은 심층적인 교육내용을 요구했다. 교사들은 정규 교과나 비교과 활동을 통한 예비부모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의 예비부모교육은 현재보다 강화 및 확대된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학생들은 현재 교육내용에 대해 자녀 양육기술, 부모역할에 대한 실습, 부모 인성과 역량 등의 내용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했

다.

중고등학생의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은 다양한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박은주, 2021; 이현자, 김성길, 2017; 지은혜, 최새은, 2020). 예비부모와 부모 270여 명을 대상으로 예비부모교육 인식 및 프로그램 요구조사를 시행한 이현자와 김성길(2017) 역시 유사한 결과를 보고했다.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한 이들은 전체 참여자의 82.5%였고 선호하는 내용은 가족관계와 부모 역할, 자녀 양육 방법, 배우자선택 및 결혼, 임신과 출산, 자기 이해 순이었다. 실시기관과 횟수는 공공기관에서 정규과정으로 월 1회 정도였다. 예비부모교육의 시기는 고등학교 졸업 후, 결혼식 직전, 첫아이 임신기, 중고등학교 재학 순이었다. 선호하는 교육방식은 소그룹 워크숍이었다.

지은혜와 최새은(2020)은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예비부모교육을 파악하기 위해 고등학생 32명과 면담을 하였다. 면담은 포커스 그룹 면담으로 각 90분씩 진행되었다. 면담 참여 고등학생들은 가정 교과에서 예비부모교육을 받았지만, 예비부모교육이라는 용어를 익숙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예비부모교육을 부모됨의 선택과 준비 능력으로 인식했고 성교육, 임신, 출산, 부모역할과 양육 등 실제적인 내용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예비부모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의 부모를 이해하게 되었고 부모 대상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은혜와 최새은은 부모교육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내용적 연관성을 고려한 가정과 교육의 시행을 주장했다. 또한, 여학생들이 가진 부모교육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고려하여 부모됨의 의미와 가치에 양성평등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은주(2021)는 고등학생 195명을 대상으로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고등학생들의 98.5%가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80.0%가 '부모 역할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예비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시간이 되면 예비부모교육에 참여할 것이라는 응답 비율(67.7%)이 무조건 참여할 것이라는 응답 비율(28.7%)보다 2배가량 높았다. 고등학생들이 원하는 예비부모교육 내용은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법이 51.8%로 가장 높았고 참여자 중 52.3%는 교과목보다 전문가의 특강을 통해 교육받기를 원했다. 또한, 학생들은 예비부모교육이 필요한 시기를 결혼 전, 대학 재학 중, 결혼 후, 10대 순으로 생각했다.

예비부모교육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자아정체성 형성, 건강한 가족에 대한

관점, 양육 지식 및 태도, 아동학대 예방, 위기 상황 대처 능력 증진 등에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김선주, 2016; 전미경, 이은주, 유난숙, 왕석순, 최새은, 2017; 최총명, 2014). 중학생 1, 2, 3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13회기의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한 최총명(2014)은 가족, 결혼, 나, 성, 양육태도와 관련하여 실험집단 참여자에게서 관찰된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했다. 분석-설계-개발-실행-평가 모형(Analysis -Design-Development-Implementation-Evaluation: ADDIE)에 따라 개발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가족과 결혼을 이해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성에 대한 바른 태도와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형성하는 목표에 따라 13차시의 활동으로 구성되었으며 5개월간 시행되었다. 프로그램 종료 후 실시된 사후·추후 검사를 통해 나타난 참여자의 예비부모교육 관련 지식과 태도 영역에서 나타난 정적 변화의 지속을 보고하면서 연구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전미경 등(2017)은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부모됨, 부모역할 수행, 성역할,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인식 제고를 위해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97명에게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했다. 시행된 예비부모교육은 여성가족부 주관 한국가정과교육학회에서 개발한 교육으로 총 17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시는 45분 정도 소요된다. 부모교육 프로그램 시행 전후 자기기입식 조사를 하여 도출된 결과는 장기간의 예비부모교육의 효과성을 증명했다. 즉 예비부모교육에 포함된 양육기술과 정보는 학생들이 인식하는 높은 양육 부담감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역할 수행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 또한, 예비부모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중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와 자아존중감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대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 역시 결혼과 자녀 양육에 대한 관점 변화와 지식습득 및 문제해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주, 2016; 박은주, 2020; 이승아, 2020; 최인숙, 2019). 김선주(2016)은 부모역할훈련 교과목을 수강한 여자 대학생 97명을 대상으로 예비부모교육의 긍정적 영향을 조사했다. 교육 시행 이전에 조사된 참여자의 예비부모에 대한 기본 자질, 지식과 가치 및 태도는 평균 점수 3점에 미달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즉 참여자들은 좋은 부모에 대한 이상은 가지고 있으나 지식이 부족했다. 그러나 부모역할훈련 교과목을 수강

하면서 참여자들은 역할 갈등 상황에 대한 문제해결능력과 육아 체험 등을 통한 부모역할 지식이 증가하였고 바람직한 양육관과 양육태도, 사회 내에서의 부모 역할과 태도 측면에서 향상을 보였다. 이는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됨 교육이 지식 차원뿐만 아니라 가치관 정립 차원에서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대학생 53명을 대상으로 웹 기반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 이승아(2020)는 예비부모교육의 학습 동기와 학습 동기 하위 전략으로 양육 지식, 문제해결과정, 부모역할 자신감 효과 등을 검증했다. 영상, 퀴즈 등을 활용한 교수방법은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참여자의 주의를 집중시켰고, 실생활 정보와 예시 및 비유를 활용한 교육내용을 통해 참여자의 교육 주제에 관한 관심을 높였다. 예비부모교육 학습 내용 요약본을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제공하고 자녀 양육 상황에 대한 문제해결 기회와 피드백(칭찬과 도움)을 주어 학생의 자신감과 만족감을 증진하였다. 시청각 매체와 문제해결 시도 활동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문제해결안 생성과 선택기술 역시 높아졌다. 연구결과에 따라 이승아(2020)는 예비부모교육의 동기 향상과 유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온라인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학습 환경의 동기적 측면을 구축하는 교수학습법을 제안했다.

2) 부모교육 관련 연구

국내 부모교육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출간된 영유아와 초등기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문헌을 검토했다. 지난 5년간 국내에서 출간된 문헌은 연구의 주요 목적을 중심으로 다섯 범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선행문헌은 부모교육 현황을 파악하여 개선점을 제안하는 연구, 부모교육의 효과를 밝히는 연구, 부모교육 효과를 높이는 요인을 밝히는 연구, 참여 의사가 낮거나 특별한 요구를 가지는 부모교육 대상에게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리는 연구, 아동권리인식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부모교육이 변화해야 함을 제기하는 연구로 구분된다.

첫째, 다수의 부모교육 연구는 부모교육의 현황을 파악하여 개선점을 제안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부모의 교육 요구나 인식을 살펴보는 실태조사(남지영, 정혜원,

2016; 배옥현, 2018; 성영화, 이숙자, 2018; 임현정, 문정희, 김성순, 2017; 정보미, 김낙흥, 2016; 최희선, 최정혜, 2020)와 부모교육 관련 선행연구나 정보를 검토한 동향 분석(고경필, 2017; 유희정, 2019; 최미숙, 전인수, 2021; 최지현, 2020) 연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영유아기와 초등 저학년 자녀 부모들은 양육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부모들은 양육정보를 습득하여 양육의 어려움을 감소하기 위해 부모교육에 참석했다(구희정, 2016; 박현숙, 최혜경, 2020; 심미경, 2018; 이윤진, 이정림, 임준범, 2017; 최경화, 홍상욱, 2016; 최주현, 김인홍, 2019). 과거의 부모교육 연구는 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했지만 최근에는 아버지와 다문화가족 및 비정형 가족 대상 연구가 증가했다(고경필, 2017; 최경혜, 한유진, 2020). 이러한 변화는 어머니에게 편중되어 있던 양육책임이 부부 공동의 몫이라는 인식 전환과 다양한 가족 형태의 증가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부모교육의 현황을 파악한 선행문헌은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교육의 차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박혜진, 김용영, 2019).

이윤진 등(2017)의 연구결과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는 부모교육을 신청할 때 온라인(34.9%)보다 오프라인(65.1%) 방식을 이용했고 주로 소형 강의식(62.3%) 교육에 참여하고 있었다. 고경필(2017)은 '양육태도 및 행동', '양육 효능감', '양육 스트레스' 등의 부모교육 관련 주제가 꾸준하게 연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6년 사이에 출간된 부모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 102편 중 어머니 대상 연구가 52편(50.9%)으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 대상의 연구는 17편(16.6%), 다문화가족 및 비정형가족 대상 연구는 7편(6.8%)에 불과했지만, 그 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박혜진과 김용영(2019)의 연구결과 초등 저학년 자녀 부모들이 '연령별 학습 및 문제행동 상담기법 개발'을 요구했다.

둘째, 다수의 부모교육 연구는 부모와 자녀에게 미친 부모교육의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했다.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가 겪는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감소했고 부모 역할에 관한 자신감이 상승했다(강서연, 김낙흥, 2019; 오지영, 홍용희; 2018, 이재희, 박원순, 2018). 자녀의 특정 영역 발달을 지원하는 부모 역량 증진을 위해 개발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는 자녀의 신체·언어·인지·사회성·정서 발달 등 전인적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김윤숙, 신문자, 2016; 심미경, 2018; 한유진, 강민수, 안복희, 2019). 자녀의 언어발달과 무관한 주제의 부모교

육에 참여한 때도 교육 참여 결과 개선된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이 자녀의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승선, 곽경화, 안연경, 2017; 심미경, 2018).

백승선, 곽경화와 안연경(2017)은 감정코칭 부모교육을 통해 어머니들이 감정표현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높이며, 역량 발휘를 도왔다. 그 결과 어머니들의 정서반응태도가 지지적으로 변화하여 양육의 어려움이 개선되었다. 아울러 자녀들도 사회정서 발달, 의사소통, 문제해결 능력 등 전반적 발달이 증진되었다(백승선, 곽경화, 안연경, 2017). 영아기 건청 자녀를 둔 청각장애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활용한 부모의 전략적 상호작용'이라는 부모교육을 시행한 김신영과 임동선(2021)은 내러티브 능력 등 자녀의 언어역량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발견했다. 강지훈(2019)은 초등 저학년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신체활동 증진 교육모듈'을 실시하여 아동의 신체발달과 사회발달이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다수의 부모교육 연구는 부모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요인을 밝히고 있었다. 여기에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시행 및 효과 검증 연구(이은미, 김현례, 2017; 이희영, 김문정, 2018)와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의 효과를 메타분석한 연구(김종민, 최은아, 2018; 이진, 임선아, 2020)가 있다. 이들은 연구결과에서 적절한 기간 및 규모의 운영방법, 부모교육의 언어·활동 정도에 따른 적절한 교수방식, 부모교육 프로그램 유형 등을 부모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요인으로 제시했다. 이들 연구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모교육의 개선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조은영과 이신동(2020)은 부모교육 프로그램 횟수가 9~16회일 때, 참여자 규모가 11~20명일 때 부모교육의 효과가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이는 6~10회기로 구성된 부모교육을 10~19명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때 효과가 높다는 김종민과 최은아(2018)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조은영과 이신동(2020)은 언어와 활동의 통합교수 방식으로 구성한 프로그램이 비언어중심 활동교수 방식, 언어중심 강의교수방식, 통합교수방식 중에서 가장 효과가 높았음을 밝혔다. 통합교수방식은 언어 중심 교수법과 활동 중심 교수법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교수법이다. 이를 통해 활동과 이론이 융합된 교수방식을 적용한 부모교육 효과의 제고를 추론할 수 있다. 이진과 임선아(2020)의 연구는 부모효율성훈련(PET)과 교류분석(TA)유형이 높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부모효율성훈련은 부모와 자

녀의 요구를 중심에 두고 수용성 수준을 파악해서 접근하고 교류분석은 소집단 상담 형태로 부모의 정서적 지지를 동반하여 개별적 필요를 충족시켜준다. 부모교육은 그동안 대집단 형태로 대부분 진행되었고, 부모의 개별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 하지만 부모효율성훈련과 교류분석을 적용한 부모교육의 경우 부모와 자녀의 요구에 중심을 두고 소집단 상담 형태 등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높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기존 부모교육에서 소외되는 부모에게 적합한 교육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김길숙, 김지현, 이혜민, 2016; 박창현 외, 2019; 최은영 외, 2019). 이들은 부모교육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부모와 자녀의 다양한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부모교육을 계획·운영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인식 변화를 통해 모든 부모가 부모교육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언급했다. 아버지 대상 연구(강서연, 김낙흥, 2019; 김성은, 2017; 정숙향, 정희정, 2020)는 아버지의 부모교육 접근성이 어머니보다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근무 여건을 고려한 교육이나 지역사회 인프라 연결 등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장애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김신영, 임동선, 2021; 전혜인, 손지영, 심은정, 2020; 천성혜, 임동선, 2016)는 부모들의 개별적 요구에 대한 실제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다문화 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김은정, 정세미, 정지영, 2017; 이선희 외, 2018; 최정혜, 2017)는 부모교육의 보편성과 다문화가족의 특수성을 함께 반영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윤진, 김아름과 임준범(2016)은 일과 후 집 근처 기관에서 혹은 점심시간에 직장에서 부모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모의 직업에 따른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부모교육의 운영을 다양화하면 자영업과 직장인 아버지의 교육 참여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인프라와의 연결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부모교육 운영을 제안했다(이윤진 외, 2016).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실제적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동료상담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우후남, 정종화, 2016). 이 결과는 동료상담교육을 전국의 특수학교와 장애인가족지원 기관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선희 등(2018)은 다문화가족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다문화

부모의 한국어 수준을 고려하여 일대일 교육방식의 부모교육을 제안했다.

다섯째, 학대를 예방하는 차원보다 부모들의 아동권리인식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부모교육이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도미향, 2016; 성영화, 이숙자, 2018; 우진경, 2020; 이현진, 장혜진, 2017; 장혜진, 이현진, 2018). 이 연구들은 부모교육에 아동권리의 개념과 실천 방법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왜냐하면 부모가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인권친화적 양육태도를 갖게 되면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의 실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 폭력 예방은 물론이며 '아동권리 옹호자'로서 부모가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가치 및 태도의 획득을 지원하는 부모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안하고 있었다.

2010년 이후 부모와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권리 연구가 크게 증가했다(우진경, 2020). 우진경(2020)은 가정 내에서 실천적 측면을 고려한 자녀권리존중 양육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혜진과 이현진(2018)의 연구 역시 아동권리 존중에 대한 개념 이해와 일상에서의 실천성이 함께 반영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권리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인권 및 권리교육은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이끌어 자연스럽게 학대 예방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인권 및 권리교육 관련 선행연구에 따르면 예비유아교사, 유아교사, 초중고등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대상에게 시행되는 인권 및 권리교육이 자신은 물론 타인의 권리를 인식하고 존중하도록 이끄는 것을 밝혔다(고영자, 2018; 김수연, 김석주, 2020; 김정아, 이쌍철, 2021; 김정화, 2020; 김혜련, 정명숙, 2017; 조혜영, 2018). 인권 및 권리교육을 받는 다양한 대상 중 부모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부모들이 인권 및 권리교육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게 되어 학대 예방이 실천됨을 알 수 있다. 김금희(2020)의 연구결과 역시 아동권리존중 및 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의 아동권리 인식이 증진된 것을 밝히고 있었다. 종합할 때 부모교육에서 아동권리교육이 우선되어야 아동학대의 예방이 가능함을 추론할 수 있었다.

3) 국외 부모교육 관련 연구

Chen과 Chan(2016)은 아동학대를 줄이고 관련 요인을 수정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조절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메타분석을 실시했다. 프로그램은 아동학대 위험요인을 줄이고 보호요소를 강화함으로써 아동학대 가능성을 낮췄으나 부모의 우울증, 스트레스 경감 측면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또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중산층 및 고소득 국가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고, 1차, 2차, 3차 아동학대 개입이 적용될 때 아동학대 감소에 효과적이었다. 부모교육의 시작 시점 역시 프로그램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는데 태아기 이전에 시작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 전반적으로 아버지 대상 프로그램이 효과가 작았으며 이는 아버지의 요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재구성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Spencer, Topham과 King(2020)은 온라인 교육과 프로그램이 보편화됨에 따라 그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했다. 이들은 온라인 프로그램이 부모의 긍정적인 육아를 강화하며 부정적인 부모-자녀 상호작용, 자녀 문제행동, 부정적인 훈육전략, 부모 갈등, 부모 스트레스, 자녀 불안, 부모의 분노 및 우울증을 감소시킨 효과를 밝혔다. 그러나 Spencer 등(2020)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전문가와 연계)을 병행했던 프로그램과 온라인 교육만 진행한 프로그램의 효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Anthony, Oehme, Bruker, Arpan과 Opel(2018)은 이혼의 정서적 영향, 갈등 완화, 부모협력 기술 등을 다루는 무료 온라인 이혼교육과정(Successful Coparenting After Divorce)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고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이혼 후 자녀 공동양육을 위해 법원이 요구하는 부모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해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부모 행동의 예와 아동의 증언이 담긴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다. 비디오 자료는 이혼한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이혼 후 양육과 자녀의 요구에 집중할 필요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이들은 온라인의 주의 집중시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상의 길이를 적절하게 편성하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기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혼한 부모가 영상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

록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유튜브에 영상을 탑재하여 반복 시청할 것을 강조했다.

비대면 교육과 같은 접근성이 좋은 부모교육의 효과가 높았다.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되지 않아도 비대면 부모교육을 통해 부정적 부모-자녀 상호작용, 아동 문제 행동, 부정적 훈육전략, 부모 양육 갈등, 양육 스트레스, 자녀의 불안, 부모 분노와 불안이 감소하는 유의미한 변화가 발견되었다(Spencer et al., 2020).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갈등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혼 후 교육을 비대면으로 진행한 때에도 부모의 행동과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및 자녀 중심적인 태도 등에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Ferraro et al., 2018).

부모교육이 목적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Bamberger, Coatsworth, Fosco, & Ram, 2014). SFP(Strengthening Families Program: For Parents and Youth Ages 10-14) 프로그램 세션에 참여한 가족의 구성원 간 의견 불일치와 갈등(tension)은 프로그램 참여 횟수와 관련이 있었다. 만성적으로 높은 갈등(chronic high-tension)과 많은 도움이 필요한 가족은 그렇지 않은 가족들과 비교해서 참여율과 부모교육의 효과가 낮았다. 이를 통해 부모의 자발적, 능동적인 참여가 형식적인 부모교육 참여와는 질적으로 다른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부모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부모교육의 체계적인 운영 및 적극적인 부모교육 홍보를 통해 부모교육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장혜진, 이현진, 2018).

가정 방문 프로그램은 부모의 개별적 요구를 반영하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부모의 양육 효능감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부모와 전문가의 정기적인 접촉을 통해 육아 기술, 자녀 발달에 대한 교육, 부모-자녀 관계, 정신 건강과 경제 문제, 교육 및 고용, 적절한 건강 관리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Asawa, Hansen, & Flood, 2008). 부모 역할 기대 개선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 아동의 요구에 대한 부모의 민감성과 반응성을 높이는 프로그램, 영상 기반 피드백을 통한 프로그램 등 가정 방문 프로그램은 다양한 민족·문화적 특성이 있는 부모를 지원할 수 있었고 장시간에 걸친 프로그램으로 효과가 높았다(Gubbels et al., 2021). 저소득층의 3~4세를 위한 유아교육 프로그램에서 매달 1회 이상의 가정 방문과 부모의 주도적 학습을 포함하는 집중적인 개입을 제공했을 경우 아동의 인지적 성취에 유효한 수준의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Grindal et al., 2016).

취약 집단 부모교육 프로그램(SFP: Strengthening Families Program: For Parents and Youth Ages 10-14)은 효과적 훈육과 가족 커뮤니케이션, 일관성 있는 훈육법 등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부모 집단의 특성에 따라 ① 일반부모에 대한 교육, ② 취약 집단에 대한 교육, ③ 고위험 집단에 대한 교육의 3가지로 구분된다(이인선, 2013). 취약 집단 부모교육은 약간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의 부모 및 이혼 부모와 10대 부모 대상이다. 고위험 집단에 대한 교육은 아동학대 가해 부모와 친권이 박탈된 부모 등이 대상이다. 고위험 집단 부모교육 프로그램 중 IFPS(Intensive Family Preservation Services)는 0~15세 자녀에게 폭력을 가하여 상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녀를 일시 보호하며 부모의 분노 조절, 문제해결 능력, 갈등 조정 능력 교육을 시행한다. 고위험 집단 부모교육 프로그램 중 Multisystemic Therapy Program은 아동학대와 정신질환 및 약물 문제를 보이는 문제행동의 부모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양육 문제해결을 위한 치료와 교육을 시행하고 부모의 분노 조절과 약물중독을 치료적으로 접근하며 가족 문제해결 능력과 의사소통 문제 해결법을 교육하고 있다.

Stewart-Brown 등(2004)은 10주 동안 운영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 기간을 조사했다. 프로그램이 종료된 다음 6개월과 12개월 시점에 아동행동목록, 일반건강설문지, 육아 스트레스, 자아평가척도 등 을 사용해 효과를 검증했다. 면담에서 부모들은 자녀의 행동문제가 상당히 감소했으며 자신의 정신건강도 긍정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고했다. 추가적인 상담의 필요성에 부모 대부분이 동의했고 참여를 희망했다. Stewart-Brown 등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유아는 물론 부모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 일부 가정에 추가 지원을 제공하거나 프로그램을 반복하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Ⅲ. 국내외 부모교육과 예비부모교육 현황 및 내용 분석

1. 부모교육 실행의 법적 근거
2. 국내 부모교육 내용 및 현황 분석
3. 학교 예비부모교육 내용 분석
4. 국외 부모교육 및 학교 예비부모교육 내용 분석

1. 부모교육 실행의 법적 근거

국내 부모교육 내용 및 현황 분석에서는 국가적 수준에서 제도화할 수 있는 부모교육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국내 부모교육 실태와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부모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 부처 및 각 부처 내 기관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 법령은 헌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건강가정기본법,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평생교육법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부모교육을 수립 및 지원,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모교육의 실행과 개선 방향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령을 우선 검토하고자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은 부모교육 시행을 위한 기본이자 중심인 법령이다. 이러한 법령의 총칙과 정책 등에 의하여 중앙부처기관의 산하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이 설립되어 목적에 따른 부모교육을 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에서 명시된 부모교육에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의 유지 및 발전, 문제해결,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밝히고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한 가정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제32조(건강가정교육) 제1항은 건강가정교육의 실시 및 의무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2항은 건강가정교육의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으로 밝히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부모교육은 가족이 되기 위한 시작 단계부터 가족의 가치실현까지 가족에 대한 모든 과정을 다루고 있어 가장 넓은 범위의 부모교육을 지원하고 시행하고 있다.

둘째,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

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부모 가족'이라는 특정 가족에 관해 명시하고 있으며 '사회구성원'을 부모교육 대상으로 명시하여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보편성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주어 영유아와 보호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9조의2(보호자 교육)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을 따르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 주제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영유아 자녀를 둔 보호자를 부모교육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받아야 할 부모교육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부모교육과 관련한 법령 중 내용 면에서 '영유아의 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명시하여, 교육의 시행을 의무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넷째,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출생하여 성장하기까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 보장을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동법 제7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6항과 제7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권리를 위한 교육과 홍보, 아동의 보호자를 위한 교육적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4가지 법령 모두 부모교육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부모교육이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사회구성원들도 부모교육을 받아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건강가정기본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과 같이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법은 부모교육을 사회구성원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형태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아동복지법」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 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2017년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1 보호자교육과 같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법은 부모교육 내용을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보육법」은 2017년 부모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였다. 개정된 내용은 국가가 보호자를 대상으로 영유아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영유아보육법」의 제정·개정 이유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하여 보호자에게 영유아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아 아동복지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교육에 관한 내용이 명시된 법에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유아교육법」이 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근간으로 삼고 있다. 「아동복지법」2011년 일부 개정되면서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독립된 형태로 다루기 시작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 아동보호 규정안 마련 등의 내용을 명시하는 「아동학대처벌법」은 2014년 제정 및 시행되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의 내용은 「아동복지법」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아동복지법」은 안정적인 아동의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와 효과적인 아동정책 수행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2011년 8월 4일에 전부개정하고 2012년 8월 5일 이후부터 시행하였다. 「아동복지법」 제3장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제1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의무는 아니지만, “아동의 보호자 등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 것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었다. 2020년 12월 29일 「아동

복지법」 이 일부개정 될 때 제26조의2 제2항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대상으로서 “아동의 보호자”라는 용어가 추가되었다. 이는 「아동복지법」 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대상에 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아동의 보호자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동복지법」 제22조제1항제2호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 교육 · 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22조제6항에는 보장원이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해 수행할 업무를 밝혔다. 제22조제6항제5호에서 구체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를 명시하고 있다. 앞선 조항들에 따르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의 책임은 규정되어 있지만 아동의 보호자에 관한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 사후 조치에 관한 법규도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후 조치를 위한 법령으로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제공) 제1항에서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규정과 사후 조치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들 간의 연계성은 부족하다. 학대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의 제55조는 교육 대상과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하나의 조항으로 밝히고 있었다. “법무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사건의 조사와 사례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 이 법에서 정한 절차, 관련 법제도,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아동의 인권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동법 제55조에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과 같이 아동학대 사건

과 직결되는 전문종사자 대상의 교육 명칭 및 내용이 다른 조항에 비해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또한, 「유아교육법」 제8조의3(교육명령) 제1항에서 역시 “교육부장관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이 제8조의2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사전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아동학대 사후조치를 위한 조항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조항보다 대상 및 교육 명칭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법령에서는 아동학대의 예방보다 사후조치에 비중을 더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내 아동학대 신고의무교육 조항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와 사후조치를 동시에 보여주는 법규이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2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2020년 10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동법 제10조제2항의 제1~25호에 명시된 직업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명시하고 있었다. 확대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 동법 제10조제2항제13호에 따라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등’은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 아동학대신고의무 대상자가 변했다. 기존에는 없었으나 새로 신설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역시 동법 제10조제2항제14호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등’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로 교육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위의 내용과 같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유아교육법」 조항들에 따르면,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법적 조

항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20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결과에 따르면,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에서 아동의 보호자(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97.0%이다. 이를 토대로 아동학대 관련 법적 체계 내에 아동의 보호자에 관한 조항이 추가·보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사후 조치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보호자에게 사후 조치로서 개입하는 것은 개인의 사적영역에 관여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으며, 가정 내 여러 환경과 특성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2. 국내 부모교육 내용 및 현황 분석

부모교육 현황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 재원이 투입된 공적인 기관에서 실행하는 부모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교육부(유아교육진흥원, 전국 학부모지원센터), 보건복지부(육아종합지원센터,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아동권리보장원), 여성가족부(건강가정지원센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육아정책연구소, 국가인권위원회의 부모교육을 분석했다. 자료수집은 각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부모교육 관련 자료를 통해 이루어졌다. 확인할 수 없는 자료의 경우 해당 기관에 공문을 요청하여 보충했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1월 사이 시행된 부모교육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COVID-19 이전과 이후의 부모교육 운영현황에서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설립 목적과 운영현황(프로그램, 대상, 유형, 수강집단 형태, 주제) 그리고 COVID-19에 따른 부모교육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1) 교육부

(1) 유아교육진흥원

가. 설립 목적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교육 정보를 제공하여 학부모의 사교육 경감, 유아·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위한 교육 복지 실현의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부모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법적 근거는 유아교육법(제3조, 제6조)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제6조의2)이다. 유아교육진흥원은 각 시·도마다 설립되어 있으며 교육청 아래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법적 근거[9)]

법령	내용
유아 교육법	제3조(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
	제6조(유아교육진흥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교원 연수 및 평가, 유아 체험교육 등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교육관련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아 교육법 시행령	제6조의2(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는 경우 유아교육진흥원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을 위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유아교육 분야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유아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유아교육진흥원의 분원(分院)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유아교육진흥원은 담당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할 수 있다.

나. 부모교육 운영현황

S시, G시, D시의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학부모 캠퍼스', '맞춤형 가족지원프로그램', '가족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 캠퍼스는 만 3세~만 5세의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을 좀 더 세분화하여 부부공동,

9)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2021. 11. 30. 인출.

조부모, 아버지, 다문화, 한부모, 장애, 새터민 대상 부모교육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 중에서 부부공동 대상 부모교육이 가장 많이 시행되었고 교육대상자 중 다문화, 한부모, 장애, 새터민에게는 부모교육 기회를 우선으로 제공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유형은 전문가 강의 및 토론, 부모로 구성된 동아리 활동이다. 수강집단 형태는 1회기 당 중집단(30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시·도 유아교육진흥원마다 자체적으로 부모교육을 계획하여 실시하므로 지역별로 부모교육 주제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연수 운영'을 추구하기 때문에 시행된 교육의 주제를 분석하여 현재 유아기 부모들이 선호하거나 요구하는 부모교육 주제를 유추해볼 수 있다. 주로 실시되는 부모교육 주제는 '부모의 역할 및 유아교육의 이해'로 구체적인 내용은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따른 놀이의 이해였다. 다음은 '자녀의 진로 및 교육'으로 유·초 연계 및 초등학교 준비에 관한 내용이었다. 부모교육 주제 중 '아동학대'나 '권리·인권'이 직접 언급된 교육은 조사된 기간 동안(2018년~2021년) 3건으로 확인되었고 내용은 모두 유아 성교육 관련 교육이었다.

둘째, 맞춤형 가족 지원 프로그램은 만 3세~만 5세의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내담자)를 중심으로 한다. 맞춤형 가족 지원 프로그램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관계 형성 및 올바른 가족 기능을 강화를 위해 면담 및 상담이나 (가정)방문 형식으로 진행된다. 수강집단 형태는 개인이나 소집단(부부, 15명 이내)이며 상담 주제는 긍정적 훈육 방법과 양육태도 및 유·초 생활 적응과 관련한 것이었다. 모든 유아교육진흥원이 전문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전문상담사를 통해 상담의 신뢰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S시의 경우에는 부모뿐만 아니라 유아기 자녀를 대상으로 모래·미술 상담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셋째, 가족 체험 프로그램은 만 3세~만 5세 유아기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유형은 부모-자녀프로그램 형태로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참여함으로 가족 간 협력 및 문화를 공유하여 유대감을 높이고자 한다. 수강집단 형태는 자녀-부모로 구성한 소집단이다. 체험 주제는 유아의 발달영역에 맞춘 체험으로 언어, 조형, 신체, 요리 등의 내용이며 주제에 적합한 체험자료를 함께 제공한다. 가족 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부모는 바람직한 자녀 교육관을 정립하고 유아 놀이를 이해할 수 있다.

다. COVID-19와 부모교육

2020년 S시 유아교육진흥원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COVID-19 확산과 휴업 장기화로 인하여 대면 방식으로 운영하는 학부모 캠퍼스와 가족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G시의 경우에도 2020년 학부모연수를 전면 취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COVID-19의 영향을 받는 모든 시·도 유아교육진흥원에도 해당하는 어려움임을 예상할 수 있다.

COVID-19 상황에서 유아교육진흥원의 부모교육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다. 학부모 캠퍼스와 가족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대면 교육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2020년부터 온라인 대면 교육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원격화상회의 프로그램(ZOOM 이나 edwith)를 활용하여 COVID-19 상황에서도 부모의 교육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다. 가족 체험 프로그램의 체험자료는 '드라이브 스루(자동차에 탄 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방식)'로 배부하여 제한적이지만 부모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 전국 학부모지원센터

가. 설립 목적

학부모지원센터는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와 교육 참여 활동 및 정부의 교육 관련 정책정보를 학부모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부모가 학교 교육의 중요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학부모지원센터 설립 법적 근거는 아래 표 Ⅲ-2와 같이 평생교육법 제19조, 교육기본법 제3조, 헌법 제31조에서 찾을 수 있다.

〈표 Ⅲ-2〉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설립 법적 근거[10)]

법령	내용
평생 교육법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5.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의 구축 6. 제20조에 따른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7.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8.「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9. 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의 통합 관리·운영 9의2. 문해교육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9의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0.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제5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교육 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나. 부모교육 운영형태

전국 학부모지원센터에서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학부모 ON누리와 각 시·도 학부모지원센터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

10)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2021. 11. 30. 인출.

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 ON누리는 유아기부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을 좀 더 세분화하여 부부공동, 아버지로 나누어 부모교육을 하고 있으며 '부부공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가장 많았다. 유형은 동영상으로 한 강의 당 1차시~15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는 60% 이상 이수 진도율 및 4시간의 교육 시간을 충족하면 강의에 대한 이수증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교육 대상 중 다문화 가정의 부모를 배려하여 동영상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자막을 제공하고 있다. 동영상 강의 방식 특성상 형태는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학부모 ON누리에서는 매년 50~60건 이상 부모교육을 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21년에는 77건의 부모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중 40건은 2020년과 동일한 주제로 부모교육을 하고 있다. 이외에 시대 흐름, 교육정책과 이슈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주제의 부모교육이 추가되고 있다. 전국 학부모지원센터에서 발간되는 교육자료는 각 시·도 학부모지원센터나 교육청 간에 공유할 수 있다. 부모교육 주제를 세부적으로 나누면 자녀의 교육기관, 행복교육, 경제교육, 인성교육, 자기주도 학습, 진로·진학 등이다. 이 중 자녀의 학교, 학습, 진로 교육 관련 주제의 교육이 전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자녀 양육태도 및 바람직한 의사소통과 관련하였다. 아동학대나 권리·인권이 주제에 명시된 부모교육은 2019년부터 매년 3~5건 정도로 낮은 비율이었다. 아동학대 관련하여 자녀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자녀교육 전문가와 함께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있었고 권리·인권은 자살 예방교육과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이 있었다.

둘째, 각 시·도 학부모지원센터 중 D시는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모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모범적인 지역이다. 학부모역량개발센터를 통하여 자녀의 성장단계에 따라 부모가 알아야 할 내용을 교육과정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부모교육 대상은 학부모 ON누리와 같지만 세부적인 대상에서 차이가 있다. 대상을 세분화하여 부부공동, 자녀-부모, 아버지, 조부모, 다문화, 한부모로 나누고 있으며 부부공동 교육이 가장 많았다. 제공된 부모교육의 유형은 부모참여프로그램, 동영상, 상담(온라인)과 방문이다. 상담의 경우 학부모역량개발센터 홈페이지에 부모가 상담 요청글로 신청하면 전문가가 사례별로 직접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방문형의 경우 자녀의 학교, 직장, 사회복지기관 등 신청기관으로 직접 전문가가 방문하여 부모교육을 한다. 수강집단 형태는 부모참여프

로그램의 경우 대집단(100명)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방문형(직장)의 경우 신청기관의 집단에 따른다. 상담은 개인별로 진행하고 동영상 강의는 수강집단 형태를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 부모교육 주제는 자녀의 학교, 학습, 진로 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녀의 연령에 따른 학교생활, 과목별 공부법, 입시제도 등과 같은 것이었다. 자녀의 학업을 제외하면 긍정적 훈육 및 양육태도가 자주 다루어진 주제였다.

다. COVID-19와 부모교육

전국 학부모지원센터의 학부모 ON누리는 비대면 형식인 동영상 교육을 하고 있어서 COVID-19에 따른 변화가 다른 기관에 비해 크지 않았다. COVID-19가 시작된 2020년부터는 COVID-19 관련 정보와 예방법 관련 주제로 부모교육이 새로 개설되었다. 또한, 올바른 미디어 사용법과 지도방법을 위한 부모교육 횟수가 증가하였다. COVID-19 및 미디어와 관련한 주제 및 내용은 표 Ⅲ-3과 같다.

직접 대면 형식 부모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했던 시·도 학부모지원센터의 경우 2020년부터 부모교육이 감소했다. D시의 학부모역량개발센터에서 2020년과 2021년에 실시된 부모교육 횟수는 2019년 부모교육 횟수보다 50% 이상 감소하였다. 특히 COVID-19코로나19가 가장 심각했던 2020년 2월부터 10월까지 부모교육을 전면 취소했고 2020년 10월 이후에는 집단으로 실시하던 기존 부모교육을 개인으로 실시하거나 온라인 대면으로 진행했다.

〈표 Ⅲ-3〉 전국학부모지원센터 부모교육 주제(키워드 '코로나, 미디어') [11]

연도	주제	
2019년	미디어	스마트폰은 정말 아이들에게 나쁜 걸까?
2020년	미디어	폭력 없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다양한 인터넷 환경 속 중독을 피하는 방법
		유튜브 시대, 건강하게 사용하기
		디지털 세상에서 아이를 키우는 방법
		자녀와의 스마트폰 전쟁 끝내기
		학부모를 위한 인터넷 윤리교육
	COVID-19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직접 알려드립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합니다.
		코로나가 바꿔놓은 우리 직업의 미래
2021년	미디어	폭력 없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다양한 인터넷 환경 속 중독을 피하는 방법
		유튜브 시대, 건강하게 사용하기
		디지털 세상에서 아이를 키우는 방법
		자녀와의 스마트폰 전쟁 끝내기
		학부모를 위한 인터넷 윤리교육
		클릭 미디어 리터러시
	코로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직접 알려드립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합니다.
		코로나가 바꿔놓은 우리 직업의 미래
		비대면 시대, 학교가 대면할 변화는?
		코로나19 예방 학교생활

2) 보건복지부

(1) 육아종합지원센터

가. 설립 목적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지원·관리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육아 지원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목적에 따라 부모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2013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설립 법적 근거는 다음 표 Ⅲ-4에 제시된 영유아보육법(제7조에)에 명시되어 있다. 중앙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필두로 각 시·도·군·구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다.

11) 학부모ON누리 홈페이지. http://www.parents.go.kr/, 2021. 11. 30. 인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표 Ⅲ-4〉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 법적 근거[12)]

법령	내용
영유아 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③ 삭제 <2011. 8. 4.>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신체 등의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9.>

나. 부모교육 운영형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중앙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배부하는 공통 부모교육과 각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센터별 부모교육이다. 보육정보센터가 2013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양육지원 사업(부모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이 실시되었고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지역 간 부모교육 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통 부모교육 운영이 요구되었다. 이에 2016년 전국 공통 부모교육인 클로버 부모교육이 개발되었고 각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확산 및 보급되었다. 그 결과 중앙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필두로 모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편적이고 일관된 부모교육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20).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통 부모교육은 만 0세~만 5세까지 영유아기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부모교육의 대상은 자녀-부모, 부부공동, 어머니, 아버지, 조부모, 장애 영

12)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2021. 11. 30. 인출.

유아 부모, 임산부, 예비부모 등이다. 부부공동 대상 부모교육이 가장 많았으나, 내용 면에서는 부부공동 대상이라기보다 어머니에 집중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자녀-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를 만 나이로 구분하여 발달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유아부모를 위주로 교육하는 유아교육진흥원과 달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아' 부모를 위주로 교육하고 있다. 교육 유형은 부모참여프로그램과 동영상이다. 동영상 교육은 중앙 육아종합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업로드하고 댓글로 부모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수강집단 형태는 부모참여프로그램의 경우 소집단(5~15가정)으로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다. 부모교육 장소는 대부분 육아종합지원센터이지만 이 밖에도 어린이집, 구청, 주민센터, 장난감 도서관 등 부모들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서도 시행하였다. 부모교육 주제는 자녀 양육에서부터 부모의 스트레스 관리까지 폭넓고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이와 함께 성장하기', '아이 마음 헤아리기', '내 마음 토닥이기'로 나누어진다. 또한, 주제에 맞는 체험자료, 척도, 교재, 활동지를 교육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공통 부모교육의 전체적인 주제 및 세부 내용은 그림 Ⅲ-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Ⅲ-1] 육아종합지원센터 공통 부모교육 주제[13)]

13) 중앙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600061/600221.jsp.에서 2021. 11. 30. 인출.

동영상 교육은 하나의 주제로 자녀용과 부모용 영상을 함께 제공하여 자녀와 부모가 함께 교육하고 소통할 수 있다. 유튜브 채널 중앙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공통 부모교육의 주제는 표 Ⅲ-5와 같다.

〈표 Ⅲ-5〉 공통부모교육 동영상 주제(2021년 11월 기준)[14]

연도	내용	
2018년	아이와 함께 성장하기 (클로버 부모교육)	자녀와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 (대화 cctv, 생각을 여는 질문하기, 존중받는 아이로 키우기 위한 대화법, 위험한 칭찬, 위대한 칭찬 알아보기, 중립언어로 말하기, 멋진아이 골든벨 등)
2019년	아이마음 헤아리기	자녀 권리존중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12회차)
	내 마음 토닥이기	양육 스트레스 관리 부모교육
2020년	아이와 함께 성장하기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교육(3회차, 아이, 부모용)
	아이마음 헤아리기	영유아 성 행동을 위한 부모교육(3회차, 아이, 부모용)
2021년	아이와 함께 성장하기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아이 마음 헤아리기	영유아 성행동 이해(3회차)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나 권리·인권과 관련한 부모교육은 아이 마음 헤아리기 주제의 교육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945건, 2019년 973건, 2020년 366건으로 꾸준히 교육하고 있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교육은 영유아 성교육을 주로 다루고 권리·인권 관련 교육은 아동권리, 다문화, 성인지, 놀이를 다루고 있다.

둘째, 각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모교육 대상은 부모와 자녀-부모이다. 좀 더 세분화하면 자녀-부모, 부부공동, 어머니, 아버지, 조부모, 장애 영유아 부모, 임산부, 예비부모 등이 교육 대상이다. 세부 대상 중 자녀-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부공동 대상 교육이었다. 부모교육 유형은 부모참여프로그램과 부모교육전문가 초청특강이다. 수강집단 형태는 공통 부모

14) Youtube 채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https://www.youtube.com/channel/UCkxbAUwPcX5EF_XmCHQWoGg, 2021. 11. 30. 인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교육과 같다. 센터별 부모교육은 공통 부모교육보다 주제 측면에서 더 다양하고 폭이 넓었다. 자녀-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자녀의 발달에 맞는 언어, 신체, 미술, 요리, 음률 등 여러 가지 영역의 주제를 다룬다.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부모의 자기계발을 위한 교양과 문화 관련 주제가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석고 방향제 만들기, 요리 활동, 플라워 힐링 같은 원데이 클래스, 육아 토크, 어머니의 자존감 회복이나 스트레스 관리 등이다. 다음으로는 긍정적 훈육 방법 및 양육 태도와 자녀의 건강과 안전관리에 관한 주제의 교육이 많이 실시되고 있었다. 자녀의 건강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내용은 자녀의 영양 관리와 미디어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 등이다.

각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조사된 동안(2018~2021년) 부모의 자기계발 교양과 문화 관련 주제의 교육이 135건 정도 실시됐지만 아동학대와 권리·인권 주제의 교육은 각각 65건과 11건이었다. 아동학대 교육은 성교육이 대부분이었고 일부 가정에서 발생하는 학대 교육이었다. 권리·인권의 세부 내용은 아동 권리, 성인지와 다문화 등이다.

다. COVID-19와 부모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중앙부처기관 중 가장 많은 4,000~5,000건 부모교육을 시행했다. 표 Ⅲ-6에서 제시된 것처럼 중앙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공통 부모교육 3개년 운영실적은 2020년에는 공통 부모교육의 실시 횟수와 인원수가 2019년에 비해 4배 이상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OVID-19 상황에서 부모교육 시행 횟수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중앙부처 기관과 비교하면 활발한 편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COVID-19에 대응하여 직접 대면인 부모교육을 온라인 대면으로 전환하고 우편이나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부모교육 자료를 가정으로 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Ⅲ-6〉 공통부모교육 3개년 운영실적(대면 기준)[15]

구분	2018		2019		2020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총계	4,671	84,599	5,216	92,072	1,831	24,835
부모대상	1,467	21,145	1,309	18,279	328	3,444
부모-자녀체험활동	3,204	63,454	63,454	73,793	1,503	21,391
포괄적 양육정보 안내 부모교육	279	5,511	34,519 (자료 배포로 대체)		28	300
가정 내 놀이환경 점검 부모교육	389	4,613	359	5,294	170	1,802
부모 양육태도 점검 부모교육	367	6,702	643	10,738	382	4,716
자녀 권리 존중	598	10,285	598	9,973	248	3,072
아동학대 예방	347	6,535	375	7,942	118	1,386
영유아 발달 이해 부모교육	333	5,498	603	10,318	369	4,507

(2) 임신종합포털 아이사랑

가. 설립 목적

임신종합포털 아이사랑은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양육자의 여건에 따라 부모가 상시로 부모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나. 운영형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부모교육 대상은 예비부모와 부모이다. 부모교육 유형은 상담으로 각 게시판에 상담 요청 내용을 작성하는 방식과 전화 및 온라인 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상담은 임신부터 출산, 육아 전문가로 이루어진 상담위원을 통해 실시된다. 특히 분야별로 산부인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15)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central.childcare.go.kr/ccef/main.jsp, 2021. 11. 30. 인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의, 소아·청소년, 소아안과 전문의가 직접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을 통한 부모교육은 신분 노출을 꺼리는 부모들에게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분야별 하루 동안 상담 건수가 5건 이상일 경우 답변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또한, 예약 후 상담이 진행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상담을 받기는 어렵다. 수강집단 형태는 개인이며 부모교육 주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정책, 지원제도 등이다. 분야별 자세한 상담 주제는 표 Ⅲ-7과 같다.

〈표 Ⅲ-7〉 임신 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상담 분야 및 내용(2021년 11월 기준)[16]

분야	내용	
임신	산부인과	계획임신, 난임, 임신 중, 출산전후 등
	성건강 임신유지종결	피임, 월경, 성매개감염병, 임신중절 관련 합병증 등 ('러브플랜'을 통하여 제공)
출산	모유수유	모유수유 방법, 모유수유 문제
	산전후 우울증	임신, 출산, 육아 기간 중 우울증
육아	인구보건복지협회	영유아 행동심리, 영유아 양육방법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 행동심리, 영유아 양육방법, 어린이집 이용
	소아청소년과	영유아 성장발달, 건강문제,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아, 영유아 청력
	영유아눈건강	취학 전 아동의 주요 눈 질환(굴절이상, 약시 등), 눈 관련 모든 의료적 사항
심리 · 정책	성건강 · 임신 출산 · 육아	성 건강, 영유아 눈 건강, 임신출산육아 관련 갈등 및 관련 정부 정책정보, 전문 기관연계, 스트레스 등 정서적 문제

다. COVID-19와 부모교육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은 모든 부모교육을 비대면 상담으로 운영하여 COVID-19에 영향을 받지 않고 부모교육을 하고 있다. 2020년 이후에도 상담 횟수 감소 없이 게시글이 매년 주제별로 300건 이상 업로드되었고 전화상담을 포함하면 그 이상으로 상담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담을 통한 부모교육은 직접 대면을 부담스러워하는 부모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적합한 방식이다.

16)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http://www.childcare.go.kr/cpin/main1.jsp, 2021. 11. 30. 인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3) 아동권리보장원

가. 설립 목적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 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 제11조에 명시된 아동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해야 한다. 따라서 법적 근거와 목적에 따라 아동의 보호·학대·권리·입양과 관련한 정책과 부모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표 Ⅲ-8과 같다.

〈표 Ⅲ-8〉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법적 근거[17]

법령	내용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2. 제7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제8조제2항의 시행계획 평가 지원 3. 제10조의 위원회 운영 지원 4. 제11조의2의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5.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6조의2의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기술지원 6.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제22조제6항 각 호의 업무 7.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제48조제6항 각 호의 업무 8. 지역 아동복지사업 및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9.「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 가.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나.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다.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라.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10. 아동 관련 조사 및 통계 구축 11. 아동 관련 교육 및 홍보 12. 아동 관련 해외정책 조사 및 사례분석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7)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2021. 11. 30. 인출.

	③ 보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보장원에는 보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원장을 두며,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보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보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⑧ 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부모교육 운영형태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부모교육 운영으로 입양 부모교육, 가정위탁 교육, 실종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양 부모교육은 입양을 계획하고 있는 특별한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인 부모가 아닌 법적 절차를 통해 선별된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 과정을 거친 후에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다. 입양 부모교육 유형은 전문가에 의한 강의이다. 부모교육 주제는 입양과 관련한 것으로 「민법」에 근거한 일반 및 다문화아동 입양, 「입양특례법」에 근거한 주제로 진행한다. 과정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자녀의 발달과 적응 및 아이와 부모의 행복한 소통법이다.

둘째, 가정위탁 부모교육은 위탁을 하고자 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선별된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입양 부모 대상 교육과 동일하다. 가정위탁 부모교육 유형은 전문가에 의한 강의와 부모 간의 토의이다.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부모는 가정위탁 부모 양성 교육 10회, 가정 위탁 부모 보수교육 12회기로 이루어진 강의를 모두 이수해야 한다. 부모교육 주제는 위탁 관련한 것으로 양성교육과 보수교육 과정으로 실시한다. 위탁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은 표 Ⅲ-9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Ⅲ-9〉 아동권리보장원 위탁 교육 내용(2021년 11월 기준)[18]

주제	내용
위탁부모 양성교육	가정위탁 사업의 이해
	위탁 보호자의 역할과 의무
	위탁아동의 특성과 위탁 양육의 실제
	문제 행동의 원인과 대처방법
	효과적인 부모역할 실시
	집단 프로그램(위탁 사례발표, 질의응답)
위탁부모 보수교육	위탁보호자의 역할과 의무
	아동문제행동의 대처방법 및 양육기술훈련
	효과적인 부모자녀 관계 및 대화기술(친자녀 및 위탁아동)
	친가정에 대한 이해
	양육사례 연구

셋째, 실종 예방 교육의 대상은 아동(만 3세~만 18세), 지적 장애인과 부모이다. 부모교육 유형은 방문형으로 교육 신청기관으로 전문가가 찾아가 교육을 진행하며 수강집단 형태는 신청한 기관에 따라 달라진다. 부모교육 주제는 실종에 대한 이해, 예방, 대처 방법이다. 주제에 따른 세부 내용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엄마 까투리 애니메이션을 활용하여 미아와 유괴 관련 교육을 한다. 아동 실종 예방 수첩을 제공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활용할 수 있다. 만 6세~18세 아동 및 지적 장애인의 경우 실종 이해, 실종 유인 유형 및 예방수칙, 실종 및 발견 시에 따른 행동 지침에 관하여 교육하고 있다. 부모 대상 교육은 실종의 정의, 현황, 원인 실태, 실종·유괴되는 아이들, 실종 유인 유형 및 예방수칙, 실종 및 발견 시에 따른 행동 지침에 관련한 내용을 다룬다.

다. COVID-19와 부모교육

아동권리보장원의 경우 대면으로 진행하던 입양과 가정위탁 교육을 COVID-19 이후 모두 비대면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부모교육 유형은 동영상 강의이며 입양, 위탁, 실종예방 목적에 맞게 제공되는 동영상 강의를 100%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다문화아동 입양교육은 직접 대면과 비대면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

18)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2021. 11. 30. 인출.

위탁 교육은 부모 간 토의 교육을 진행할 경우 대면으로 실시하고 있다. 실종 예방 교육의 경우 직접 대면 형태로 운영했으나 COVID-19 이후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신청기관에 영상 및 워크북을 제공하는 형태로 변경하였다. 또한, 실종 예방 관련 전문가가 기관을 방문하지 못하므로 신청기관의 담당자가 직접 교육하고 있다.

3) 여성가족부

(1) 건강가정지원센터

가. 설립 목적

여성가족부는 양육·부양 등 가족 기능을 지원하고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의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 양육 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 모임을 지원하고 생애주기를 고려한 부모교육을 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요 전달체계로서 다양한 가족 지원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가족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생애주기별 가족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 법적 근거는 표 Ⅲ-10과 같이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선두로 각 시·도·군·구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으며 지자체별로 부모교육을 하고 있다.

〈표 Ⅲ-10〉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 법적 근거[19)]

법령	내용
건강가족 지원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9)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2021. 11. 30. 인출.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④ 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나. 부모교육 운영형태

여성가족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부모교육 매뉴얼」을 개발·배포하여 자녀 양육정보와 가족의 발견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코너도 운영하고 있다. 각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자체적 부모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부모교육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교육 매뉴얼」은 예비부모와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비 부모는 청소년, 성인으로 나누어지며 부모는 영유아기,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와 아버지로 나누어진다. 또한, 가족을 세분화하여 맞벌이, 한부모, 재혼, 다문화, 조손, 비동거 가족으로 나누고 있다. 조사된 중앙부처 기관 중 부모교육 대상을 가장 자세하게 세분화하여 부모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 대상에 적합한 동영상과 부모교육 자료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부모교육 주제는 여성가족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부모교육 매뉴얼」에 따른다. 매뉴얼은 자녀 연령별, 가족 특성별 양육정보로 구성되어 있어서 부모의 현재 환경에 맞추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매뉴얼은 총 1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론, 공통, 예비 부모(중·고등학생, 대학생), 영유아기, 학령기(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버지, 가족 특성, 상담 등을 다루고 있다. 주제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은 표 Ⅲ-11과 같다.

〈표 Ⅲ-11〉 여성가족부 부모교육 매뉴얼 주제(2021년 11월 기준)[20]

분야	내용	
부모 교육	총론	부모교육 매뉴얼의 개요, 구성내용, 활용방법, 평가지표
	1권(공통)	부모됨이란?, 부모로서의 자기 이해, 부모의 발달 과업, 부모-자녀 관계, 사회적 돌봄
	2권, 3권 (청소년 예비부모)	가족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부모와 아이, 부모됨의 준비와 책임 부부 공동양육, 사회적 부모됨
		부모됨의 의미, 성숙한 사랑, 세대 간 소통, 자녀발달과 부모역할, 놀이를 통한 부모자녀 관계증진, 정서적 지원과 공감
	4권 (성인 예비부모)	자기 이해, 친밀하고 평등한 교제, 결혼 제대로 이해하기, 부모됨의 의미와 준비, 임신과 출산
	5권 (영아부모)	영아의 개별적인 특성에 적합한 양육방식, 영아의 생활습관 형성 및 식습관 형성, 영아와의 의사소통 및 애착형성, 영아 양육환경과 육아관련정보 선별, 자녀 출산 후 부부간 역할분담 및 역할갈등 개선
	6권 (유아 부모)	자녀 발달 특성 이해, 자녀의 놀이 지원, 자녀와의 관계 맺기, 학습 기초 다지기, 유아기 양육 정보
	7권 (초등학생 부모)	초등학생 발달 특성, 학교교육에의 부모참여 및 의사소통, 자녀의 학습습관 형성 및 재능 탐색, 자녀의 또래관계, 가족문화 형성
	8권, 9권 (중·고등학생 부모)	중고등학생 발달특성과 부모역할, 인성·생활지도, 진로탐색을 위한 부모역할, 자기주도성 발달을 위한 부모의 지원, 부모의 성장지원
	10권(아버지)	아버지됨이란?, 아버지의 양육참여, 아버지의 놀이지원, 아버지의 의사소통, 아버지 역할
	11권 (가족특성별)	맞벌이, 한부모, 재혼, 다문화, 조손, 비동거 가족의 건강한 자녀 키우기
	12권(상담)	부부 갈등의 이해, 부부갈등의 영향, 자녀와의 대화법, 스마트폰과 의존, 집단 따돌림, 왕따, 비행

둘째, 홈페이지의 '자녀 양육정보'란은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유형은 게시글 방식이다. 자녀의 성장주기에 적절한 양육정보를 제공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놀이, 훈육, 애착, 형제자매 키우기(동생이 생길 때), 아이의 건강한 생활 리듬(식사, 수면, 배변), 부모가 되는 마음, 출생 후 두 살까지의 사회-인지 발달,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을 때, 자녀의 스마트폰 관리, 기질 등이다.

셋째, 가족의 발견 주제의 정보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데 부부나 부모 자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유형은 동영상 시청이며 총 44회로 구성되어 있고 부모교

20)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index.do. 2021. 11. 30. 인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EBS와 공동 제작했다. 부모교육 주제는 가족의 의미로 인문학자, 철학자, 교육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연한 영상이다. 주제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은 가족관계 개선 및 향상, 어머니, 아버지 마음 돌보기, 부부관계 개선, 조부모와의 관계 등이다.

넷째, 상담 코너는 부모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화, 문자, 온라인을 통하여 상담받을 수 있으며 1차 전화상담(1644-6621) 후에 심층 상담이 필요할 경우 지역 가족센터의 전문상담사와 연계하여 대면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게시판을 통하여 상담을 문의하고 답변받는 방식도 제공한다. 상담 주제는 자녀 양육을 위한 정부 지원 및 정책에 관한 것이다. 상담내용을 종합하면, 부모가 자녀를 원활하게 양육하는 데 필요한 생활 및 환경,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한 법률, 재정 및 심리·정서 지원 등이다. 상담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표 Ⅲ-12에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표 Ⅲ-12〉 여성가족부 부모교육 상담 주제(2021년 11월 기준)[21]

분야	내용	
전화 상담	임신출산갈등	정보제공, 심리·정서 초기상담, 기관 연계 등
	양육비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양육지원(면접교섭), 추심지원, 사건진행 사항, 법률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
	한부모	미혼모·부 초기상담, 한부모지원서비스, 정부 지원 자격 안내, 출산 및 양육, 시설 안내, 기관 연계 등
	심리·정서	심리·정서 상담, COVID-19 대응 정부 지원 안내, 기관 연계 등
	가족서비스 종합	건강가정사 자격 안내, 아이돌봄 서비스, 지역 가족센터 운영 서비스
온라인 상담	자녀 양육, 생활일반, 주거, 정부정책, 취업, 복지시설, 자녀교육, 기타	

다섯째, 각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체 부모교육은 예비 부모, 부모, 자녀-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부공동, 아버지, 조부모, 자녀, 다문화, 한부모, 임산부 등이 대상이다. 부부공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녀-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은 영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세부 대상 중 이혼가

21)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index.do, 2021. 11. 30. 인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정, 다문화가정, 미혼모·부 가정 등과 같이 특별한 요구를 가진 가정에 대해서 지속적인 상담, 가족 참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가족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실시 유형은 부모참여프로그램, 부모교육전문가에 의한 초청특강, 방문형(직장)이다. 실시 유형 중 방문형 부모교육의 경우 직장으로 인해 부모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부모를 위해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서 부모교육을 한다. 수강집단 형태는 소집단으로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S시, B시, D시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부모교육 주제를 살펴본 결과 부모를 대상으로 원만한 부부관계, 부모의 정신건강 및 심리지원과 관련한 주제가 가장 많았다. 주제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부부 상담, 부부 사이의 대화법, 부모 스트레스 관리, 힐링 프로그램 등이다. 자녀와 관련한 부모교육은 자녀의 발달영역에 따른 활동과 긍정적인 훈육 방법 및 양육태도를 주로 다루고 있다. 자녀의 발달영역에 따른 활동은 자녀의 연령에 맞는 요리, 미술, 신체, 과학 등 놀이 및 체험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자녀 대상으로 성 인권 및 권리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었으나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나 권리·인권과 관련한 교육은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각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체 부모교육에서 아동학대, 권리·인권을 주제로 하는 교육은 다른 주제에 비해 낮은 비율로 실시되고 있었다. 아동학대와 권리·인권과 관련한 교육의 세부 내용은 자녀의 성교육, 성인지 감수성 관련 교육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다.

(2)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가. 설립 목적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행복한 꿈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상담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이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부모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설립은 청소년복지지원법(제2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Ⅲ-13과 같다.

〈표 Ⅲ-13〉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설립 법적 근거[22)]

법령	내용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22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① 국가는 청소년복지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삭제 <2021. 3. 23.> 2. 삭제 <2021. 3. 23.> 3. 삭제 <2021. 3. 23.> 4. 삭제 <2021. 3. 23.> 5. 삭제 <2021. 3. 23.> 6. 삭제 <2021. 3. 23.> 7. 삭제 <2021. 3. 23.> 8. 삭제 <2021. 3. 23.> 9. 삭제 <2021. 3. 23.> ② 청소년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상담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연구 2. 청소년 상담·복지 사업의 개발 및 운영·지원 3. 청소년 상담기법의 개발 및 상담자료의 제작·보급 4. 청소년 상담·복지 인력의 양성 및 교육 5.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기관 간의 연계 및 지원 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및「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지도 및 지원 7. 청소년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8.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9. 국가가 설치하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 및「청소년 보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유지·관리 및 운영 10. 그 밖에 청소년상담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사업 ③ 청소년상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④ 청소년상담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⑤ 청소년상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나. 부모교육 운영형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으나, 대부분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하고 있다. 부모교육 운영형태는 상담이며 수강집단 형태는 소집단이다. 기본 운영방안은 대면이었으나, COVID-19 이후 일부 온라인 대면으로 실시하고 있다. 2021년 현재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확인할

22)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2021. 11. 30. 인출.

수 없었다. 부모교육 주제는 부모의 정신 건강 및 심리지원, 자녀의 건강과 안전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에 진행된 부모교육은 유사한 주제로 부모교육을 하고 있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진행한 부모교육의 주제는 표 Ⅲ-14와 같다.

〈표 Ⅲ-14〉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부모교육 주제[23)]

연도	주제
2018년	• 올바른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습관을 위한 부모교육 (자녀의 인터넷,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갈등 해결, 자녀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습관에 대한 부모교육, 부모 자신의 감정 자각과 이해, 자녀와의 관계 개선)
	• 나의 감정 만나기 (부모 자신의 화나는 감정에 대한 자각과 이해, 자녀와의 관계 개선)
	• MBTI를 통한 부모-자녀 성격 이해
	• 엄마들을 위한 편안한 수다모임 (자녀 양육과정에서 빚어지는 갈등 해결, 엄마로서 경험하는 어려움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비구조화 집단)
	• 부모 대상 나의 감정 만나기
2019년	• 올바른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습관을 위한 부모교육 (자녀의 인터넷,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갈등 해결, 자녀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습관에 대한 부모교육, 부모 자신의 감정 자각과 이해, 자녀와의 관계 개선)
	• 부모 대상 나의 감정 만나기
	• 나의 감정 만나기 (부모 자신의 화나는 감정에 대한 자각과 이해, 자녀와의 관계 개선)
2020년	• MBTI를 활용한 자녀 진로지도 부모교육
	• 부모 대상 나의 감정 만나기

4) 육아정책연구소

가. 설립 목적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를 국가 인적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육아 정책연구

23)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 https://www.kyci.or.kr/userSite/index.asp, 2021. 11. 30. 인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를 수행하며 부모를 위해 육아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모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다. 육아정책연구소 설립 법적 근거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표 Ⅲ-15와 같다.

〈표 Ⅲ-15〉 육아정책연구소 설립 법적 근거[24]

법령	내용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② 연구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연구기관의 장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④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부모교육 운영형태

육아정책연구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부모지원자료」를 개발·배포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부모교육과 자녀-부모 놀이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모교육의 대상은 부모이며 2017년 여성가족부와 협력하여 개발한 부모교육 매뉴얼 13권 중 공통, 영유아, 초등학생, 아버지, 성인 예비 부모교육 관련하여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부모교육 주제는 부모교육 매뉴얼에 따른 주제와 재난극복 심리방역이다. 부모교육 매뉴얼에 따른 세부 내용은 자녀의 발달적 특성 및 양육태도와 교육, 부모 준비 및 역할, 임신과 출산, 양육과 관련한 내용이다. 재난극복 심리방역은 COVID-19에 대응하여 '내 아이, 엄마, 아빠 재난 스트레스 다루기, 재난 속 부모-자녀 분리 상황 다루기, 재난 후 준비하기, 감염병 재난극복을 위한 영유아 심리방역 매뉴얼'이다.

둘째, 자녀-부모 놀이는 자녀와 부모를 함께 대상으로 하며 참여 자녀의 연령은

24)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2021. 11. 30. 인출.

개정 누리과정에 따른 '유아기 자녀' 이다. 부모교육 유형은 '동영상'이며 영상에 따른 '워크숍 자료집'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자료집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연구한 「유아놀이중심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놀이자료 개발: 부모 놀이워크숍 '유아들의 꿈은 놀이에서 자란다'」 이다. 부모교육 주제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따른 유아 중심 놀이이며 놀이 이해와 제공 방법에 대한 것이다. 세부 내용은 신문지, 풍선, 책 등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를 활용하여 놀이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5) 국가인권위원회

가. 설립 목적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과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 · 향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인권 의식과 생활 속 인권 존중 향상에 필요한 기술·태도를 습득하기 위해 교육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근거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1조, 제3조)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은 위원회의 인권교육과 홍보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세부 내용은 표 Ⅲ-16과 같다.

〈표 Ⅲ-16〉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법적 근거[25)]

법령	내용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25)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2021. 11. 30. 인출.

	①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초·중등교육법」제23조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인권교육과 인권에 관한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훈련 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18조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장과 협의하여 인권에 관한 연구를 요청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나. 부모교육 운영형태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고 있다. 그중 인권 강사, 공공기관, 학교, 언론방송인은 따로 분류하여 인권 직무역량, 인권 리더십, 인권 감수성 향상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모든 시민 안에 부모가 포함되며 아동과 관련한 인권교육을 하고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 운영형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센터를 통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인권연수 과정, 기타 인권교육, 사이버 인권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에서 아동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연수 과정은 공공기관, 학교, 사회·시민,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중 아동과 관련한 종사자는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담당자, 교사, 교직원, 학교 관리자를 포함한다. 교육 운영형태는 참여프로그램과 방문형(직장)이며 1회기당 중집단(20명~30명)으로 구성하여 교육하고 있다. 인권연수 과정 중 아동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표 Ⅲ-17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Ⅲ-17〉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수과정 주제(2021년 11월 기준)[26]

주제	내용	
아동	공공영역	아동·청소년의 권리,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체계, 부모 및 보호자의 역할과 책임, 상황별 아동인권 이슈와 보호방안
	학교영역	다양성 존중 및 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 학생 인권에 대한 이해, 인권, 노동인권 및 청소년 노동인권의 이해, 노동인권 수업 사례 공유 및 효과적 수업방식 개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인식 및 인권보호 방안 등,

둘째, 기타 교육과정은 인권특강과 인권도서관, 인권체험관 견학으로 모든 시민과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유형은 방문형, 토의 및 시연, 참여프로그램이다. 방문형은 강의를 의뢰한 기관·단체에 인권 강사가 방문하여 강의를 진행한다. 의뢰기관의 현장 접목을 통하여 인권 실천을 할 수 있는 강의와 토의, 시연, 평가 방식으로 교육하고 있다. 참여프로그램은 인권사무소 내 도서관과 인권체험관을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방식이다. 인권체험관은 인권 체험교구(워크시트)를, 인권도서관은 관련 콘텐츠(영화, 책 등)를 활용하여 인권정보 제공 및 교육을 하고 있다. 수강집단 형태는 중집단(10명~40명 이내)이다. 교육 주제는 인권특강의 경우 인권의 이해와 인권에 기반한 실천으로 기업·노인·스포츠·아동·청소년·영유아·이주(다문화)·장애(정신건강 포함)·청소년노동 인권,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한 내용이다. 인권체험관과 인권도서관은 국민의 인권 감수성 향상과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인권 체험 및 전시물 관람, 인권위 및 인권도서관 소개, 인권도서관 홈페이지 수록 인권정보 활용 교육, 도서관에 비치된 장애인 독서 보조기기 체험활동과 같은 내용으로 교육하고 있다.

셋째, 사이버 인권교육은 공무원, 교원,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유형은 동영상이다. 총 21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90% 이상의 진도율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재·교육 자료실을 통하여 인권과 관련한 영상 및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사이버 인권교육은 21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인권 의식 향상에 필요한 지식 및 결정 사례 등 사례 학습을 통하여

26)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s://edu.humanrights.go.kr/academy/main/main.do, 2021. 11. 30. 인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생활 속 인권 존중 및 향상에 필요한 기술·태도를 습득할 수 있다. 21개의 주제 중 직접 아동과 관련된 주제는 학교 폭력 예방교육,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가 있다. 교재·교육 자료실에서 유일하게 부모를 위한 아동 인권 주제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 인권교육을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사이버 교육 주제는 표 Ⅲ-18과 같다.

〈표 Ⅲ-18〉 국가인권위원회 온라인교육 주제(2021년 11월 기준)[27]

주제	내용	
온라인 교육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고 인권감수성 및 인권증식 증진을 위한 과정
	인권의 이해	인권의 개념과 역사적 발전 과정, 원칙 등의 학습을 통해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축적하는 과정
	인권의 이해 입문편	인권의 기초와 역사에 대한 개론적 과정
	인권의 이해 권리구제편	인권의 존중과 발전, 관련 제도를 학습하여 지식을 보다 두텁게 하는 과정
	차별예방교육	차별의 기본 개념, 발생, 국내외 차별관련 현황을 소개하고 다양한 차별을 다룬 과정
	인권 공부 첫걸음	인권, 일반론으로서 인권을 이해하고 인권의식을 증진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소개
	성차별 예방 교육	성차별의 개념, 법적 근거 등 학습을 통하여 성차별에 대한 이해, 성차별 예방을 위한 과정
	성희롱 예방 교육	인간관계 및 조직 내 성희롱 사례 등을 통하여 생활 속 성희롱을 예방하고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인식을 함양하는 과정
	기업과 인권	기업인권의 개념, 관련 제도 등의 학습을 통해 인권의식을 제고하고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과정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권에 바탕을 둔 사고와 관점을 갖출 수 있도록 인권감수성 및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이해 증진
	스포츠와 인권	선수, 지도자 등 스포츠 종사자의 인권과 관련하여 인권의 연결 관점에서 탐구하는 과정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해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인권적 관점에서 설명
	신 행정과 인권	정책의 집행과 인권, 다문화 등 10개의 주제를 통해 다양한 인권이슈에 대해 학습하는 과정
	학교폭력 예방 교육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과 예방 기법을 인권적 관점으로 설명
	이주민과 인권	생활, 여러 시설 및 관계 속에서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존중에 대해 학습하는 과정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인권 원칙과 그 내용을 확인

	노인 인권의 이해	생활 속 노인의 인권과 관련한 사례를 소개하고 노인 인권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는 정보 소개
	군인 인권의 이해	군인, 군 종사자 등 군대 관련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 인권의식을 증진할 수 있는 기본정보 소개
	선생님을 위한 인권플러스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에서의 인권 존중과 보호에 대하여 학습
교재・교육 자료실	부모를 위한 아동인권(돌봄은 누구의 책임일까?, 정상발달은 없다, 모두가 아이를 지켜주세요, 놀이도 권리다, 아이의 인간관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도 의사결정할 수 있어요)	

이상으로 국내 중앙부처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모교육 내용 및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교육 대상은 부모와 자녀-부모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아버지, 조부모, 예비부모 순이었다. 이 외에도 다문화, 한부모, 장애, 새터민, 입양, 위탁 부모대상 교육도 제공되고 있었다. 부모 대상 부모교육은 부부공동으로 구분되어 있었지만, 실제 부모교육 주제나 내용을 살펴보면 어머니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교육이었다. 자녀-부모가 대상인 교육은 영유아기부터 초등학생 저학년 자녀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이 많이 실시되고 있었다.

둘째, 부모교육 유형은 동영상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모 참여프로그램, 상담 순이었다. 이 외에도 방문형, 토론, 부모교육전문가에 의한 초청 특강 등이 실시되고 있었다. 동영상 교육은 대다수 기관에서 많이 실시하는 유형이었는데 부모가 시간, 장소,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미 구성된 교육을 일방적으로 들어야 하며 강의자와 상호소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부모 참여프로그램은 체험을 위주로 하는 방식이며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이 대부분이었다. 체험프로그램은 체험 주제에 맞는 자료와 워크북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었다. 상담은 온라인, 전화, 대면으로 진행하며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상담하고 있었다. 상담은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대부분 예약제로 시행하고 있어서 즉각적인 부모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셋째, 부모교육 주제는 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기

27)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s://edu.humanrights.go.kr/academy/main/main.do, 2021. 11. 30. 인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관별로 실시하는 부모교육 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진흥원은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따른 놀이 이해와 유·초 연계 및 초등학교 준비 등을 교육하였다. 전국 학부모지원센터는 대부분 자녀의 학교, 학습, 진로 교육과 관련한 주제의 교육을 진행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교육은 자녀 발달영역에 따른 체험활동, 양육정보, 놀이환경 및 양육태도 점검, 자녀 권리존중 및 아동학대, 양육 스트레스 관리, 부모의 자기계발을 위한 교양, 문화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교육은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한 정책과 지원제도 등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 위탁, 실종 및 유괴 예방과 관련한 주제로 부모교육을 하고 있었다. 여성가족부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부모교육 주제는 자녀 양육을 위한 정부 지원 및 정책, 원만한 부부관계, 자녀 발달에 대한 이론 등이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부모의 정신건강 및 심리지원과 자녀의 건강 및 안전관리 주제의 교육을 진행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자녀의 발달적 특성 및 양육태도와 놀이 등과 관련한 주제로 부모교육을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향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실현의 내용을 교육하고 있었다. 이중 아동과 관련한 교육내용은 아동·청소년의 권리,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체계, 부모 및 보호자의 역할과 책임, 상황별 아동 인권 이슈와 보호 방안이었다.

넷째, 모든 중앙부처기관의 부모교육에는 아동학대 및 권리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동학대 및 권리교육 내용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자살 예방교육, 성인지 감수성 증진 교육, 아동권리, 다문화 가정의 권리, 놀이, 가정폭력 등이었다. 하지만 대부분 교육내용이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아동권리에 대한 부모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을 포함하여 폭넓은 아동권리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부모가 아동의 권리실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부모 대상 아동권리 교육이 필요하지만 부모 자신의 인권에 관한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COVID-19가 시작되면서 부모교육 운영형태에 변화가 있었다. 부모교육 참여프로그램, 방문형, 부모교육전문가에 의한 초청특강과 같은 대면 방식의 교육이 COVID-19 이후 원격화상회의 프로그램(ZOOM이나 edwith)을 활용한 온라인 대면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부모교육 자료는 우편이나 드라이브 스루로 제공

하고 있었다. 동영상 교육이나 비대면 방식의 상담은 COVID-19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횟수가 증가하였다. 부모교육 주제 측면에서도 COVID-19와 미디어 관련 교육이 추가되었다. 이는 COVID-19로 인해 자녀들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학교 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면서 TV, 스마트폰 등 미디어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3. 국내 학교 예비부모교육 내용 분석

학교 예비부모교육 내용 분석에서는 국내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된 예비부모교육 내용을 살펴본다. 국내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개발된 출판사별 인정교과서와 대학 교양 강좌에서 활용된 교재를 분석했다. 대부분의 학교 교육은 교과서 및 교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과서 및 교재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된 예비부모교육 내용의 체계와 범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내용 분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표 Ⅲ-19〉 내용 분석 범위

국내
2015년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
초중고등학교 인정 교과서
대학 예비부모교육 강의 표준안
대학 교양 강좌 교재

1) 학교 교육과정 개요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된 예비부모교육 내용은 시기별로 차이가 있다. 첫째,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별도의 '예비부모교육' 교과목은 없으나 예비부모교육 관련 내용이 포함된 교과목이 편성·운영되고 있다. 교과서에 포함된 예비부모교육 내용을 선별하기 위해 여성가족부(2016)에서 개발한 대학생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표준강의안을 참고했다. 예비부모교육 내용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과」, 「기술가정」 교과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2018a,

2018b, 2020)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에서 「실과」와 「기술가정」 과목은 실천 교과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연계된 내용이 반복되거나 확장된다. 「실과」는 초등학교에서, 「기술가정」은 중학교에서 각각 필수과목으로 편성되지만, 고등학교에서 「기술가정」은 일반 선택과목이다.

둘째,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다른 학년에 비해 예비부모로 진입할 여지가 높은 시기임을 고려하여 예비부모교육 교양 강좌를 편성하고 있다. 대학의 예비부모교육 강좌는 「예비부모교육」, 「결혼과가족」이나 「인간발달」을 포함한 강좌명으로 개설된다. 그러나 대학의 강좌는 학교마다 개설 여부가 다르고 개설된 경우 주로 선택 교양으로 개설되어 있다. 아울러 개설된 강좌는 교수자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는 상황이다. 이에 여성가족부(2016)는 '대학생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표준강의안'을 개발하여 예비부모교육의 기초과정을 제시하였다.

학교 교육과정과 대학의 표준강의안에서 분류된 예비부모교육 관련 교육과정의 목표와 영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는 의무교육과정으로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실과5」, 「실과6」과 「기술가정1, 2」는 먼저 자신의 발달 이해와 긍정적 자아 정체감 형성에서 출발하여 가족관계 속에서 배려와 돌봄을 통한 건강한 가족 유지 방법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해당 교과목의 5가지 교육과정 영역에서 2가지인 '인간발달과 가족', '가정생활과 안전'에서 발달, 관계와 안전을 핵심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초중등 교육과정과 연계 확장된 예비부모교육 내용을 포함한다. 연계된 측면에서 고등학교 「기술가정」[28] 교과 역시 '인간발달과 가족', '가정생활과 안전' 영역에서 발달, 관계, 안전을 핵심 개념으로 제시한다. 확장된 측면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은 예비부모교육의 토대인 자신의 발달과 가족관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가족을 이루고 구체적인 부모됨 준비에 초점을 둔 사랑과 결혼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셋째, 대학생을 위한 예비부모교육과정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된 내용을 모두 포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여성가족부(2016)가 개발한 표준강의안은 부모됨의 가치, 자신에 대한 이해, 생애주기별 발달특징과 양육 지식과 기술 태도를 모두 제시한다. 또한, 대학의 예비부모교육은 현대 사회 변화에 따른 실제적인 가족 문제 및 해결

28)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는 「기술가정」 외에도 「가정과학」이 편성되어 있으나 이는 생활교양군의 진로 선택과목으로 다수의 선택을 받는 과목이 아니므로 이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과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이 포함하고 있어 더욱 전문적인 부모교육의 내용이 다루어진다.

〈표 Ⅲ-20〉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예비부모교육 관련 교육과정 개요[29)]

성격	보통 교과		일반 선택	교양 선택
교육과정	초등학교 실과5,6	중등학교 기술가정1,2	고등학교 기술가정	대학교 대학생을위한예비부모교육
목표	(초중등 공통) 1. 자신의 발달과 가족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긍정적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배려와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위한 관계형성능력과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을 기른다. 2. 가정생활과 관련된 실천적 문제를 이해하고 노작활동과 체험, 비판적 사고와 반성적 행동을 통해 개인과 가족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실천적문제해결능력과 생활자립능력을 기른다.		1. 사랑과 결혼, 부모됨의 선택이 새로운 가족 형성의 기반이 됨을 이해하여 가족원 간의 배려와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관계형성능력과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을 기른다. 2. 가정생활 문화를 유지·발달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 개인과 가족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이성적 행동 능력 기른다.	1. 부모됨의 다양한 가치를 안다. 2. 나의 성장과정과 인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예비부모로서의 나를 이해한다. 3.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태도, 기술을 습득한다. 4. 현대사회의 부모됨의 장애물과 대안을 모색한다.
핵심개념	인간발달과가족(발달, 관계) 가정생활과안전(생활문화, 안전)			-

예비부모교육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예비부모교육에 해당하는 핵심 개념별 내용 요소를 학교급별로 구조화하고 비교하였다. 초등학교에서는 「실과5」와 「실과6」을 통해 아동기의 발달과 아동기 성 발달, 나와 가족의 관계, 가족의 요구 살피기와 돌봄을 다룬다. 중학교에서는 「기술가정1」과 「기술가정2」 과목에서 청소년기 발달특징, 청소년기 성과 친구 관계, 가족의 변화와 건강 가정, 가족관계, 가족 의사소통과 갈등 관리, 청소년기 개인적 생활문제와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을 배운다. 고등학교에 개설된 「기술가정」은 사랑과 결

29) 초등학교 교육과정 별책2(교육부, 2018a: 302), 중학교 교육과정 별책3(교육부, 2018b: 224), 고등학교 교육과정 별책10(교육부, 2020: 33), 대학 부모교육 강의 사례집(여성가족부, 2016: 7-8)에서 발췌

혼, 부모됨의 준비, 임신 중 생활과 출산, 자녀 돌보기, 가족문화와 세대 간 관계, 가족 생애주기별 신변안전, 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학습한다. 대학교에서는 「예비부모교육」, 「결혼과가족」과 「인간발달」 등의 교재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성장기, 예비부모로서 나), 태내기 부모역할,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사회변화와 부모역할, 다양한 가족에서의 부모역할, 민주적 의사소통 방식, 영아기/유아기/아동·청소년기 부모역할, 부모 양육태도, 자녀의 발달에 따른 가족생활의 변화, 역기능적 부모역할 등의 내용을 접하게 된다.

〈표 Ⅲ-21〉 학교급별 예비부모교육 교육과정 체계 및 내용 요소

		보통 교과		일반 선택	교양 선택
교과서/교재		실과5, 6	기술가정1, 2	기술가정	예비부모교육 결혼과가족 등
영역	핵심개념	내용 요소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	대학교
인간발달과가족	발달	아동기 발달 특징 아동기 성의 발달	청소년기 발달의 특징 청소년기의 성과 친구관계	사랑과 결혼 부모됨의 준비 임신 중 생활과 출산	나를 이해(성장기) 나를 이해 (예비부모로서나) 태내기 부모역할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관계	나와 가족의 관계 가족의 요구 살피기와 돌봄	변화하는 가족과 건강 가정 가족관계 가족의 의사소통과 갈등 관리	자녀 돌보기 가족문화와 세대 간 관계	사회변화와 부모역할 다양한 가족에서의 부모역할 민주적 의사소통 방식 영아기 부모역할 유아기 부모역할 아동 청소년기 부모역할 부모양육태도 자녀의 발달에 따른가족생활의변화
가정생활과안전	안전	-	청소년기생활문 제와 예방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가족의 생애주기별 안전 가족의 치유와 회복	역기능적부모역할

2) 교과서 및 교재 내용 분석

(1) 분석 대상

이 조사에서 분석된 교과서 및 교재는 예비부모교육 내용을 포함한 초등학교의 「실과5」와 「실과6」, 중학교 「기술가정1」, 「기술가정2」와 「고등학교 기술가정」, 대학교 「예비부모교육」과 「결혼과가족」 등이다[30]. 분석 대상 교과서와 교재는 출판사별로 각각 6~12종으로 총 59권이다.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는 출판사별 실과와 기술가정 교과서 48권을 모두 분석 대상에 포함했다. 대학교재는 6개 출판사에서 예비부모교육, 결혼과 가족, 인간발달, 아동의 이해 등의 내용을 포함한 대학교재 11종을 선택하였다. 대학교재의 선택기준은 2016년에 여성가족부에서 대학생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표준강의안을 개발한 시점을 고려하여 표준강의안 사례집에 소개된 교재 중 최근 5년 이내에 출판되거나 개정된 것으로 선정하였다. 단, 목차 분석을 통해 특정 대상(보육, 교육, 가정 등 관련 예비전문가, 현재 부모)을 위해 제작된 교재는 제외하였다. 분석된 59권의 교과서 및 교재 정보는 참고문헌에 제시했다.

(2) 분석 방법

교과서와 교재에 포함된 예비부모교육의 기초적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키워드 네트워크 방법을 활용했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이란 언어로 된 교과서 및 교재에 포함된 개념과 핵심어, 주제어 등을 키워드로 추출하여 출현 빈도 및 키워드 간의 관계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이수상, 2018). 교과서 및 교재를 키워드 네트워크로 분석한 이유는 예비부모교육과 관련된 내용의 범위와 종류, 교과서 및 교재 간 연결성과 내용의 영향력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이다.

교과서 및 교재의 내용 분석은 다음의 과정을 거쳤다. 첫째, 출판사별 초중고등

30) 남민우와 이운지(2017), 노희연 등(2017)과 정순화(2017) 등의 연구는 가정과 교과(실과, 기술가정 등)의 내용을 부모교육 혹은 예비부모교육의 기초적 내용으로 보고 수행된 연구로 이 조사의 범위 선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준다.

학교 교과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여 선정했다. 이때 Excel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교급별 교과서 및 교재의 종류와 출판사, 저자, 학년, 영역별(핵심 개념) 주제어의 항목을 만들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교과서 및 교재에서 소제목 중심으로 4~6개의 키워드를 추출했다. 소제목 수준의 목차가 구성되지 않은 교재의 경우 세부 내용을 검토한 뒤 핵심 주제어를 선정했다.

둘째, 분석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키워드 정제 단계를 거쳤다. 키워드 정제는 핵심 주제어 중 의미가 유사한 단어를 통일하거나 분석 프로그램에 사용하기 적합하게 단어를 바꾸는 과정으로 교정, 통제, 제거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교정 작업은 띄어쓰기와 불필요한 조사 등의 단어를 정리하여 하나의 키워드로 만드는 작업이다. '나와 가족관계'이나 '가족관계' 등의 단어를 '가족관계'로 바꾸는 것을 들 수 있다. 통제 작업은 유사한 의미를 담은 키워드를 하나의 키워드로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기 성적 발달 변화', '몽정과 초경'이나 '몸의 변화' 등 같은 의미를 가진 주제어를 '성발달'로 통일하는 것이다. 제거 작업은 연구내용과 맞지 않는 키워드를 삭제하는 것으로 관련 주제어 중에서 '가족 관련 직업 탐색', '동물들의 가족관계' 등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정제작업을 통해 최종 65개의 키워드를 도출하고 신뢰성 확보를 위해 참여연구원 3인과 상호점검하는 과정을 거쳤다. 키워드 정제 단계와 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 Ⅲ-22〉 키워드 정제작업의 예

정제 단계	예시
교정 작업	• 스트레스의 예방과 대처 → 스트레스예방과대처 • 가정생활의 중요성 → 가정생활중요성 • 가정생활의 공통점 → 가정생활공통점 • 나와 가족 관계 → 가족관계 • 건강 발달을 위한 조건 → 건강발달조건 • 성적 의사결정의 중요성 → 성적의사결정 • 성폭력 예방과 대처 방안 → 성폭력예방과대처
통제 작업	• 건강한 가정생활, 건강 가정생활 조건, 건강한 가정생활 조건, 건강한 가정생활 실천 → 건강가족관계 • 다양한 가족의 가정생활, 다양한 가족 모습, 다양한 가정, 다양한 가족 유형, 결혼과 가족의 다양화 → 다양한가족 • 배려 돌봄으로 가족 생활 실천, 배려 돌봄의 가족 → 가족간배려돌봄

	• 부모됨의 이해 및 준비, 부모됨의 준비, 부모됨, 부모의 첫 걸음, 부모됨과 부모역할, 책임있는 부모 역량, 태아기발달과 부모역할, 영아기발달과 부모역할, 유아기발달과 부모역할, 아동기발달과 부모역할, 영유아기 부모, 아동기청소년기의 부모, 영아기와 걸음마기발달과 가족, 유아기발달과 가족, 아동기발달과 가족 → 부모됨 준비, 발달 • 청소년 성적 발달, 청소년 성적 발달 특성, 아동기 성적 발달 변화, 성적 발달, 몽정과 초경, 아동기 성 발달 특징, 몸의 변화 → 성발달 • 결혼과 가족, 결혼, 약혼과 혼례, 결혼 제도, 결혼과 결혼 생활 → 결혼 • 계획임신, 태아 발달과 임신 중 생활, 출산, 임신 중 생활과 출산, 출산준비와 분만 → 임신과출산 • 정서 사회적 발달, 청소년기 정서 발달, 청소년의 정신적 발달 → 정신건강
제거 작업	가정 관련 직업 탐색, 쉬어가기, 소단원마무리, 중단원 문제풀이

셋째, 정제된 키워드는 코딩을 거쳐 빈도분석과 키워드 네트워크로 분석됐다. 교과서 및 교재의 단원별로 4~6개로 추출된 키워드를 정제작업을 거쳐 엑셀 프로그램으로 정렬했다. 코딩된 자료로 빈도를 산출하고 워드아트생성기[31]를 활용하여 시각화했다. 그리고 키워드 간 관계 분석을 위해 UCINET 프로그램으로 '교과서/교재 순번×키워드'의 이원모드(2-mode) 형식의 데이터를 '키워드×키워드' 형태의 일원모드(1-mode) 데이터로 변환했다. 변환된 데이터는 UCINET프로그램으로 연결 정도를 알아보고 Netdraw로 네트워크를 시각화했다.



[그림 Ⅲ-2] 분석 절차

31) https://art.wordrow.kr/

(3) 분석 결과

가. 키워드 출현 빈도

교과서 및 교재 59권에서 최종 선정된 키워드 65개의 출현 빈도는 다음과 같다. 상위 6위까지의 출현 빈도는 '부모됨준비' 35회, '건강가족관계' 30회, '발달' 25회, '성발달' 24회, '가정폭력' 22회이다. 각 핵심어에 따른 내용을 살펴보면, '부모됨준비'의 내용은 영유아부터 청년기까지 자녀 발달 단계를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양육기술 및 역할을 익히는 것이다. '건강가족관계'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한 구성원들의 역할부터 가족 문제에 대한 회복과 치유, 해결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발달'에 해당하는 내용은 자녀의 발달단계별 신체, 인지, 정서, 사회적 발달을 이해이며 '성 발달'의 내용은 남녀의 성적 발달과 수정 및 임신 과정 등이다. 그리고 '가정폭력'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부, 아동, 노인학대 원인과 영향, 예방과 대처를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이상 출현 빈도가 높은 키워드는 표 Ⅲ-23과 같고 이를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 Ⅲ-3과 같다. 그림 Ⅲ-3은 키워드 출현 빈도를 워드아트생성기로 시각화한 것으로 출현 빈도가 높은 키워드는 크고 굵게, 출현 빈도가 낮은 키워드는 작고 얇게 표현된다.

〈표 Ⅲ-23〉 국내 학교 예비부모교육 내용 키워드 출현 빈도

순위	키워드	빈도	순위	키워드	빈도
1	부모됨준비	35	34	인지발달	9
2	건강가족관계	30	35	자살충동예방	8
3	발달	25	36	부부관계	7
4	성발달	24	37	가족간배려돌봄	6
5	가정폭력	22	38	자기관리방법	6
6	결혼	21	39	부부폭력	6
7	성폭력	21	40	가정생활중요성	4
8	사랑과이성교제	21	41	건강발달조건	4
9	임신과출산	19	42	부모교육	4
10	가족관계	19	43	생활문제	4
11	가족구성원역할	15	44	발달개인차	3

12	배우자선택	14	45	생애주기별가족관계	3
13	효과적가족의사소통	14	46	신변안전사고예방과대처	3
14	가족문제종류와영향	14	47	부모자녀관계	3
15	성폭력예방과대처	13	48	예비부모교육	3
16	정신건강	13	49	가정생활공통점	2
17	아동학대	13	50	건강발달을위한노력	2
18	부모역할	13	51	부모됨동기	2
19	가족변화	13	52	서로다름존중	2
20	가족갈등관리	12	53	학교폭력	2
21	가족문화	12	54	바른성가치관	2
22	분노조절장애예방과대처	12	55	발달특징	2
23	사회적발달	12	56	가족구성원요구	1
24	중독문제예방과대처	12	57	가족생활주기	1
25	다양한가족	12	58	가족적응지원	1
26	스트레스예방과대처	12	59	다양한가족의어려움	1
27	성적의사결정	12	60	미래가족전망	1
28	우울증예방과대처	11	61	배우자상고정관념	1
29	가정폭력예방과대처	10	62	성매매	1
30	자아정체감	10	63	아동권리	1
31	노인학대	10	64	친족관계	1
32	신체발달	10	65	부부갈등	1
33	건강가정	9			



[그림 Ⅲ-3] 국내 학교 예비부모교육 내용 키워드 출현 빈도 시각화

나. 키워드 중심성

예비부모교육 내용의 키워드 중심성은 연결·근접·매개 중심성으로 살펴보았다.[32]. 연결중심성은 '건강가족관계', '다양한 가족', '부모됨준비', '가정폭력', '가족문제종류와영향', '발달', '배우자선택', '성발달', '성폭력', '결혼' 순이다. 연결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예비부모교육 내용으로 자주 등장하며 동시에 다른 개념과 다수 연결되는 것이다. 근접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건강가족관계', '다양한가족', '부모됨준비', '발달', '부모교육', '성발달', '결혼', '사랑과이성교제', '부모역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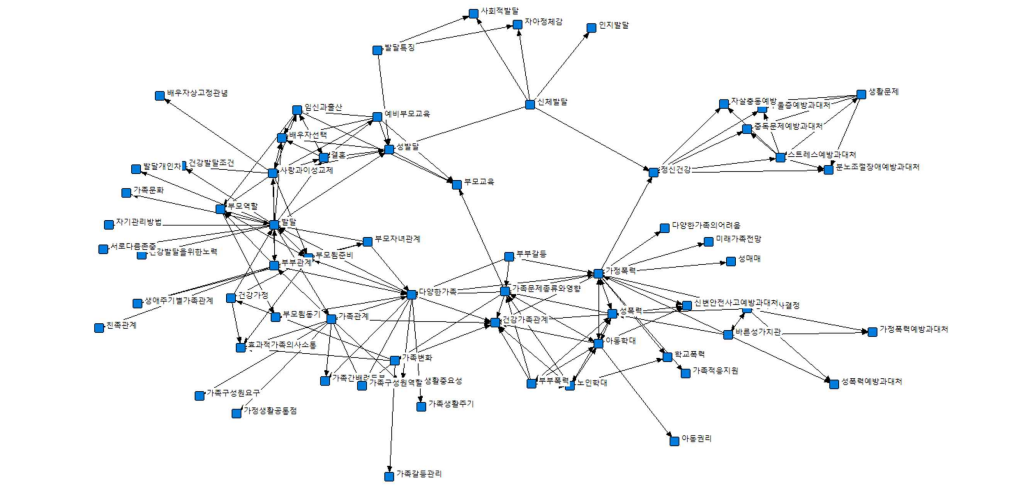
32) 이수상(2018)은 키워드 중심성에 대한 세부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연결중심성은 네트워크 속에서 노드 간 서로 연결이 많은 것을 의미하며 근접중심성은 특정한 노드가 다른 노드와 가까이 연결된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결과값이 높을수록 네트워크의 가운데에 위치한다. 매개중심성는 노드 사이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면서 서로 다른 영역의 노드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다. 이것은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와 가깝게 연결된 정도를 보여주므로 수치가 높은 것으로 도출되는 '건강가족관계'와 '다양한가족'은 네트워크의 중앙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예비부모교육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건강자족관계'와 '다양한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매개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다양한가족', '발달', '가정폭력', '사랑과이성교제', '가족문제종류와영향', '부모됨준비', '부부관계', '가족관계', '성발달', '정신건강'이다. 매개중심성이 높은 '다양한가족'이나 '발달' 등은 핵심 키워드의 내용과 연결되는 데 필요한 키워드이다. 예를 들어, 발달이라는 키워드는 '사랑과이성교제, 배우자선택, 결혼 등'의 개인적 (성)발달 관련 내용과 '부모됨준비,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등의 내용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위 빈도 10순위 안에 있는 핵심어 중 연결·매개 중심성이 모두 10순위 안에 포함된 핵심어는 '부모됨준비', '발달'과 '성발달'이다. 세 가지 키워드는 모든 교과서와 교재에서 자주 등장하면서 다른 내용과 연결되어 예비부모교육 관련 내용으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내용이라고 분석된다. 그러나 상위 빈도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가족'의 경우, 세 가지 키워드 중심성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독특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빈도만으로 본다면 '다양한가족'은 자주 등장하지 않아 중요한 내용으로 분석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키워드와의 관계 차원에서 '다양한가족'은 키워드를 서로 연결해주면서 핵심 내용 사이에 존재한다. 또한, '건강가족관계'는 연결중심성은 높지만, 매개중심성은 매우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건강가족관계'가 예비부모교육에서 자주 소개되지만 다른 키워드와는 독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가정폭력' 키워드는 연결중심성이 높으나 근접중심성이 낮았다. 이는 가정폭력이라는 키워드가 '가정문제종류와영향과 성폭력, 아동학대' 등의 내용과 가깝게 연결되고 '건강가족관계, 부모됨준비, 발달' 등의 내용에서는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사랑과이성교제'의 경우 연결중심성은 낮았지만, 근접·매개 중심성은 높았다. 다시 말하면 '사랑과이성교제'는 다른 핵심어와 연결되기보다 다른 핵심어들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표 Ⅲ-24〉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순번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1	건강가족관계	.141	건강가족관계	.233	다양한가족	8.295
2	다양한가족	.109	다양한가족	.221	발달	7.561
3	부모됨준비	.109	부모됨준비	.221	가정폭력	4.857
4	가정폭력	.094	배우자선택	.206	사랑과이성교제	3.943
5	가족문제종류와영향	.094	발달	.203	가족문제종류와영향	3.348
6	발달	.094	부모교육	.198	부모됨준비	2.897
7	배우자선택	.094	성발달	.198	부부관계	2.426
8	성발달	.094	결혼	.190	가족관계	1.914
9	성폭력	.094	사랑과이성교제	.190	성발달	1.782
10	결혼	.078	부모역할	.188	정신건강	1.488
11	부모역할	.078	효과적가족의사소통	.185	부모역할	1.035
12	사랑과이성교제	.078	부모됨동기	.173	결혼	.843
13	아동학대	.078	부부관계	.172	건강가정	.719
14	부모교육	.063	가족구성원역할	.170	가족변화	.666
15	효과적가족의사소통	.063	건강발달조건	.169	성폭력	.612
16	가족구성원역할	.047	가정생활중요성	.159	아동학대	.566
17	노인학대	.047	가족간배려돌봄	.159	스트레스예방과대처	.273
18	부부관계	.047	가족관계	.159	임신과출산	.169
19	분노조절장애예방과대처	.047	생애주기별가족관계	.159	노인학대	.050
20	신변안전사고예방과대처	.047	가족생활주기	.148	예비부모교육	.008



[그림 Ⅲ-4] 국내 학교 예비부모교육 내용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

학교급별 교과서 및 교재에 수록된 예비부모교육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서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 및 교재는 예비부모교육의 기초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교급별로 연계·확장되고 있어서 예비부모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정과 교과서와 교재는 '발달'과 '성발달', '부모됨준비'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밖에도 '건강가족관계', '가정폭력'과 '결혼' 등의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학생들은 학교 교육을 통해 자신의 (성)발달을 이해하고 나아가 향후 부모가 되었을 때 발달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부모됨을 준비할 수 있다. 또한,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건강하지 않은 가족에게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한 지식과 대처 능력을 학습할 수 있다.

둘째, 학교 교육에서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기초적 내용을 제시하는 시기의 적절성을 고려해야 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 포함된 '부모됨준비', '(성)발달' 등의 내용은 개인의 발달과 가족관계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향후 부모기로의 진입 시 배우게 될 발달과 건강한 관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경험을 10대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예비부모교육을 위한 기초적 내용이 자기 이해와 인간 존중에서 시작된다고 볼 때 초등학교에서 실과 교과목으로 실시되는 발달과 가족 관련 지식 및 기술, 태도는 아동들을 위한 기초교육으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등의 구체적인 신변안전교육이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대학교육 교재에서 강조될 필요가 있다. 분석된 대다수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아동학대를 포함한 가정폭력 내용이 포함된다. 또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교과과정을 보조하기 위해 별도로 "폭력예방및신변보호교육[33]"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 선정된 대학교재의 경우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내용은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학대 등이 중등학교 교과서에서 꾸준히 언급되는 것에 반해 대학교 교재 11종 중 아동학대를 다룬 교재는 4종에 그친다. 대학교육의 개별성을 고려하더라도 예비부모교육의 대상 중 부모기로 접근성이 가장 높은 대학

33) 교육부(2016)는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2016-90호)를 통해 폭력예방및신변보호교육을 유치원 및 초등학교 연간 8시간, 중고등학교 연간 10시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을 위한 교재에 아동학대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하여 초중고등학교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학생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하고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는 예비부모 입장에서 자녀의 권리침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4. 국외 부모교육 및 학교 예비부모교육 내용 분석

1) 국외 부모교육의 현황

외국의 부모교육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각국 정부 홈페이지에 안내된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했다.

(1) 미국

Children's Bureau, 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에서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CWIG)를 통해 자녀 양육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CWIG에서는 아동·청소년 및 가정의 안전과 지속적인 안녕을 위하여 아동 복지, 아동학대 및 방임, 가정 외 돌봄, 입양 등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정보, 자원, 도구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동 복지 실천 개선을 위한 인쇄 및 전자 출판물, 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학습 도구들이 있으며 이를 부모 및 가정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4] CWIG는 아동학대나 방임이 의심되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위기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므로 관련 신고 및 상담은 별도의 기관(Childhelp® 800.422.4453)으로 문의해야 한다. CWIG는 10개의 주제를 다루는데 그 중 아동학대 및 방임 예방 프로그램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35]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긍정적인 훈육 기술, 연령별 아동 발달 단계와 그에 따

34) https://www.childwelfare.gov/aboutus/, 2021. 12. 1. 인출.
35) https://www.childwelfare.gov/topics/preventing/prevention-programs/parented/, 2021. 12. 1. 인출.

른 적절한 교육 등 부모의 양육 실천과 행동을 강화하고 부모-아동 간의 긍정적인 역할과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서비스와 지원의 위치와 접근 방법을 안내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연계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아래 표 Ⅲ-25와 같다.

〈표 Ⅲ-25〉 미국에서 시행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예 (2021년 12월 기준)

프로그램명	주관	방식	특징
ACT-Raising Safe Kids (ACT-RSK) program[36]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8주, 회기 당 2시간	-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및 성인 -강사: 교육받은 ACT 촉진자(facilitator), 교수 및유관기관 종사 전문가 -특징: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초기 개입으로서 효과적인 양육 기술 및 안전한 환경 조성에 중점 -내용: 아동 발달 및 폭력 예방교육의 중요성, 자녀 교육을 위한 긍정적인 기술과 전략 -자료: ACT 촉진자 키트(PPT, 브로슈어 외) 및 핸드북
Parent Learning Groups[37]	Changing Children's World Foundation	온라인 및 지역별 ICDP 커뮤니티 대면교육	-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강사: 아동 교육·보육 및 관련 종사 전문가를 촉진 선정 -특징: 부모교육 및 지원을 위한 국제 아동-부모 개발 프로그램(ICDP) 활용, 대상별 주제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설 -내용: 아동 발달, 부모역량 강화 등
The Circle of Security[38]	The Circle of Security International	온라인 및 촉진자 연계 시스템 제공	-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및 위탁 부모 -강사: 기관에서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수료한 자 -특징: COSP 모델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활용, 주제별 비디오 영상, 관련 서적, 매뉴얼 등 제시, 코로나19와 관련한 아동 지원 방안(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무력감 다루기) 및 관련 자료 및 기사 제시 -내용: 자녀의 정서 및 감정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부모-자녀 관계 형성 지원
The Incredible Years[39]	The Incredible Years	집단(12~20주, 회기 당 2~3시간) 및 온라인 영상제공	-대상: 0세~12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특징: 자녀 연령에 따른 세분화된 프로그램(0~1세,1~3세, 3~6세, 6~12세) 제공 -내용: 아동의 학업, 사회적, 정서적 능력 촉진 및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양육 방법

Just In Time Parenting[40]	Just In Time Parenting	이메일 뉴스레터 제공	-대상: 예비부모 및 신생아 부모 -특징: 연구에 기반한 부모교육 자료를 팩트시트(factsheets), 뉴스레터로 제공하며, 부모에게 자녀 연령별 자원 및 전문가 조언 연계 -내용: 태아기, 신생아기 월별 발달 정보 및 바람직한 부모 역할
The Nurturing Parenting Programs[41]	Nurturing Parenting	워크숍 (비용발생, 평균 350달러)	-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강사: 기관에서 진행자 및 트레이너 양성 과정을 수료한 자 -특징: 자신 및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형성에 중점, 부모와 자녀가 참여하는 가족 기반 프로그램 제공, 특정 연령대와 인종 인구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제공 -내용: 약물 치료 및 회복 가족을 위한 양육 프로그램, 성 소수자 가족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청소년 양육 프로그램 등 특정 프로그램의 교육 워크숍
Parenting Inside Out® Program[42]	Parenting Inside Out	온라인 (웨비나) 및 강의 자료제공	-대상: 교도소 수감, 가석방 중인 부모 -특징: 가족관계와 양육 능력을 향상시켜 부모의 재범 및 범죄 행동을 줄이도록 함 -내용: 아동 발달 및 비폭력 훈육법, 가족 재통합 등 -자료: 육아 코치 매뉴얼, 졸업 증명서, 평가 도구 등
Parents as teachers virtual training[43]	Parents as Teachers	COVID-19로 대면교육 중단, 온라인 모듈 및 실시간 교육운영	-대상: 부모 교육자 -특징: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교사로서의 학부모 양성 -내용: 아동발달, 부모 양육 기술 등 주제 및 내용에 따라 40시간, 30시간, 16시간, 10시간 인증 프로그램 온라인 제공
PEP – Educating Parents, Enriching Families[44]	Parent Encourage-ment Program	COVID-19로 대면교육 중단, 온라인 (웨비나) 및 강의자료 제공	-대상: 모든 지역사회의 부모, 조부모, 교사 등 -특징: 2~4세 유아, 5~12세 학령기 아동, 13세 이상 청소년 부모를 위한 그룹별 부모교육, 워크숍 및 자료 제공, 온라인 및 지역 워크숍 프로그램으로 구분, 코로나19와 관련한 아동 지원 방안 자료 제공 -내용: 아동 발달, 부모 양육 기술 등
Triple P - Positive Parenting Program[45]	Triple P	온라인 프로그램	-대상: 0~12세 아동 및 10~16세 청소년 부모 -특징: 자녀 양육 방법을 알려주기보다 부모의 지식, 기술, 태도 향상으로 부모 스스로 긍정적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내용: 6~8개 모듈, 한 모듈 당 30~60분 소요, 팟캐스

			트, 이메일 등의 자료 제공으로 다단계 맞춤형 육아 전략 제시
Tuning in to Kids[46]	Tuning in to Kids	온라인 프로그램	-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특징: 자녀 정서 발달 촉진을 위한 비디오 프로그램 구입 및 이용(예: TIKOL – 10개 동영상, 각 8~20분, 워크시트 제공) -내용: 자녀 정서 중심 기반 감정 코칭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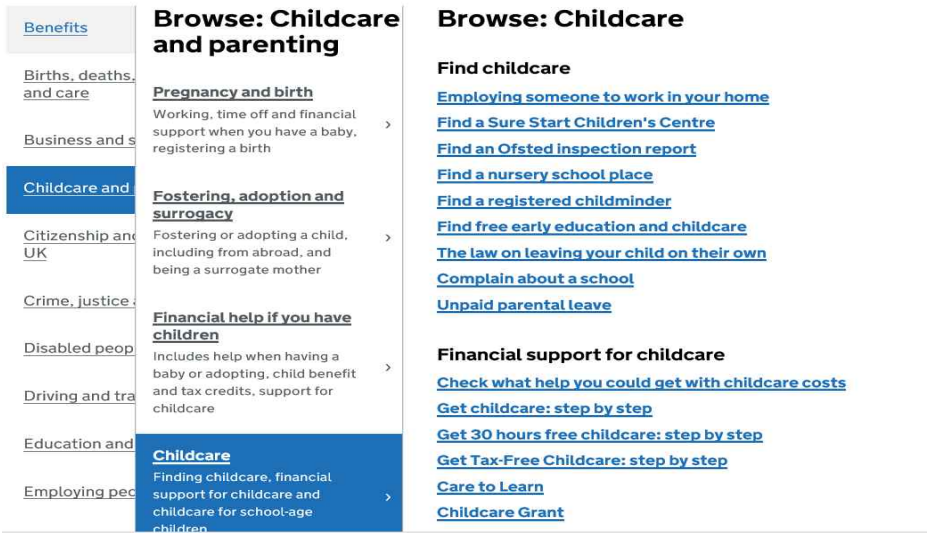
미국의 경우 부모교육의 하나로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가정방문 지원 프로그램인 Healthy Families America(HFA)는 아동학대 예방과 부모와 자녀의 상호관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HFA는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지원요청 등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를 도모한다(오향숙, 2017). 미국 조지아주의 Early Childhood Home Visitation(ECHV) 프로그램은 가정을 방문하여 가족에게 아동의 건강, 발달, 돌봄에 관한 훈련과 정보 및 양육자 지원을 제공한다. ECHV의 경우 개별 프로그램의 모델에 따라 대상과 내용이 상이하다(Division of Violence Prevention, 2016).

(2) 영국

영국의 부모교육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웹사이트가 정부 공식 홈페이지로 통합되어 있으며 16개 항목 중 해당 정보를 선택하면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형식이다. ‘birth, deaths, marriages and care’, ‘childcare and parenting’, ‘education and learning 주제 범주에서 주로 아동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47]

36) https://www.apa.org/pi/prevent-violence/programs/act, 2021. 12. 2. 인출.
37) https://www.changingchildrensworlds.org/, 2021. 12. 2. 인출.
38) https://www.circleofsecurityinternational.com/, 2021. 12. 2. 인출.
39) https://incredibleyears.com/, 2021. 12. 2. 인출.
40) https://jitp.info/, 2021. 12. 2. 인출.
41) https://www.nurturingparenting.com/, 2021. 12. 2. 인출.
42) http://www.parentinginsideout.org/welcome-to-parenting-inside-out/, 2021. 12. 2. 인출.
43) https://parentsasteachers.org/, 2021. 12. 2. 인출.
44) https://pepparent.org/, 2021. 12. 2. 인출.
45) https://www.triplep-parenting.net/global/triple-p/, 2021. 12. 2. 인출.
46) https://tuningintokids.org.au/, 2021. 12. 2. 인출.
47) https://www.gov.uk, 2021. 12. 4. 인출.

'Birth, death, marriages and care' 범주에서는 아동수당 청구 방법 및 자녀 출생 증명서 발급 등에 대한 정보를 다루며 'education and learning'에서는 자녀 학교 입학 및 교육과정, 수업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다룬다. 자녀 양육에 관한 내용은 'childcare and parenting' 범주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임신, 출생 및 양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 유아교육 및 보육, 학교 교육에 대한 정보를 다룬다. 각 하위 영역들의 내용은 수요자가 상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림 Ⅲ-5와 같다. 영국에서 시행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예는 표 Ⅲ-26과 같다.



[그림 Ⅲ-5] 영국 정부 공식 홈페이지 Childcare and Parenting[48)]

〈표 Ⅲ-26〉 영국에서 시행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예

프로그램명	주관	방식	특징
The Family Nurse Partnership (FNP)	Department of Health & Social	가족 간호사의 가정방문	-대상: 24세 이하의 부모 -특징: 취약한 젊은 부모를 위한 구조화, 개별화된 집중 지원 서비스로 임신 초기부터 자녀가 2살이 될 때까지 전문 간호사가 정기 방문하

48) https://www.gov.uk/browse/childcare-parenting/childcare, 2021. 12. 2. 인출.

	Care		여 서비스를 제공. 영국 전역 59개 지역에서 FNP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 간호사당 최대 25명의 가족을 지원하는 형태 -내용: 부모-자녀 애착, 모유 수유, 영아 예방 접종, 자녀 발달 및 학교 준비, 부모의 정신 건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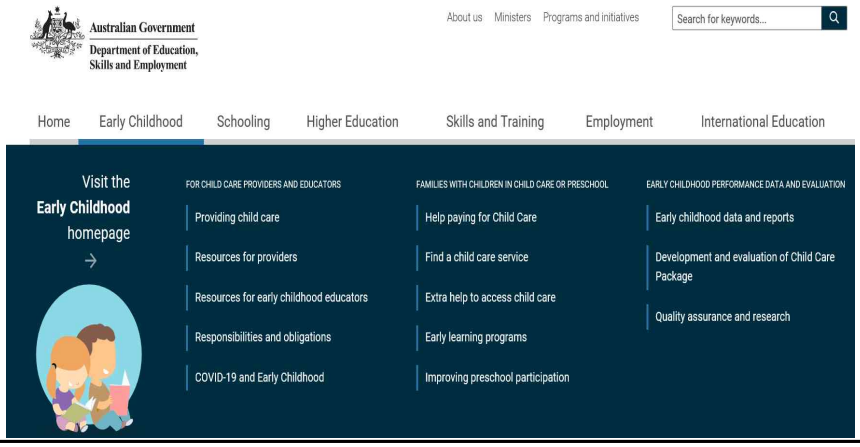
(3) 호주와 뉴질랜드

호주 정부의 교육, 기술 및 고용부(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홈페이지에서는 유아기(Early Childhood), 학교교육(Schooling), 고등 교육(Higher Education), 기술 및 훈련(Skills and Training), 고용(Employment), 국제교육(International Education)으로 나누어 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유아기(Early Childhood)[49]’는 유아교육·보육, 부모 지원 및 유아 학습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유아보육·교육 종사자 및 부모로 대상을 나누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부모를 위한 자료로는 코로나19 관련 자료와 더불어 보육·교육 기관 검색 서비스, 정부 지원금 신청·수령 방법, 유아기 학습 프로그램 안내 등이 있다. 이 자료들은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한 실제적이고 제도적인 지원 방안 등을 안내한다. ‘학교교육(Schooling)[50]’역시 대상별로 나누어 학생 및 학부모, 교사, 학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중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내용으로 학교 정보 제공, 부모가 학생의 학습과 웰빙을 지원하는 방안, 취업 준비 등이 있다. 또한, ‘학습을 위한 가족-학교-지역사회 파트너십 지원(Supporting Family-School-Community Partnerships for Learning)’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모 및 가족이 아동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교사라고 명시하며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아동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부모가 자녀의 학습 및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 취약 계층의 학생 및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학부모 참여 구현을 위한 가이드 등을 제시한다.

49) https://www.dese.gov.au/early-childhood
50) https://www.dese.gov.au/schoo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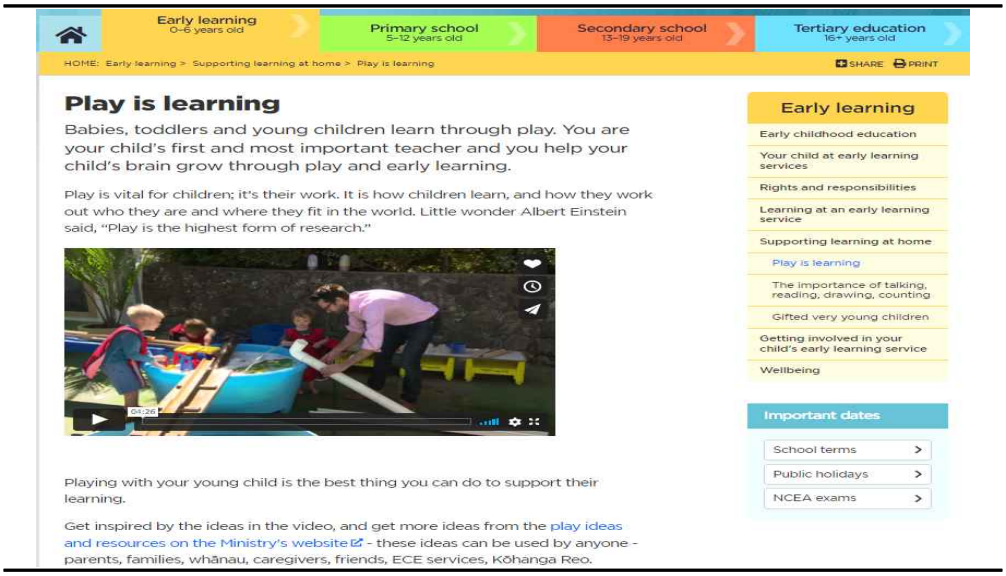
호주의 부모교육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주로 자녀의 성공적인 학습 성취를 위한 부모의 역할 및 이를 위한 자료들을 다수 제시하고 있으며 이외에 유아기 자녀를 위한 양육 및 부모 역할 등이 안내되어 있다.



[그림 Ⅲ-6] 호주 교육부 홈페이지의 부모교육 관련 내용 51)

뉴질랜드는 교육부 홈페이지 내에 학부모를 위한 홈페이지가 별도 개설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부모와 보호자를 위한 교육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52) 관련 자료와 정보는 4개 연령군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부모가 자녀의 연령에 부합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4개 연령군은 early learning(0~6세), primary school(5~12세), secondary school(13~19세), tertiary education(16세 이상)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0~6세 영유아기의 경우 유아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 권리와 책임(rights and responsibilities), 가정에서의 학습 지원(supporting learning at home), 웰빙(wellbeing) 및 유아기 자녀를 위한 다양한 학습 서비스53) 등으로 나뉜다. 그림 Ⅲ-7과 같이 항목별로 상세한 설명과 관련 자료가 제공되는데, 예를 들어 가정에서의 학습 지원 항목에서는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과 동영상을 제시하고 있다.

51) https://parents.education.govt.nz/early-learning/, 2021. 12. 1. 인출.
52) https://parents.education.govt.nz, 2021. 12. 4. 인출.
53) 구체적으로 Your child at early learning services, Learning at an early learning services, Getting involved in your child's early learning service 등이 해당된다.



[그림 Ⅲ-7] 뉴질랜드 교육부 홈페이지의 부모교육 관련 내용 54)

Early learning은 주로 가정에서의 놀이 및 양육지원 방법과 유아 건강 발달 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며 유아기 자녀가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wellbeing에 대한 정보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Wellbeing에서는 약 생후 6주~5세 아동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 및 후속 지원인 Well Child Tamariki Ora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훈련된 간호사와의 연계를 통해 자녀 및 가족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예방 접종 정보, 구강 건강, 시력 및 청각, 유아교육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영국이 정부 홈페이지에서 자녀 양육의 주요 정보를 다룬다면, 뉴질랜드에서는 부모를 위한 별도의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으며 자녀 양육 방법 및 부모 역할에 대해 자녀의 연령대별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호주의 Parents under Pressure Program(PuP)은 2~6세 자녀를 둔 가정을 방문하여 부모에게 자아 성찰, 감정조절 기술, 문제행동 지도기술, 사회적 지지 지원 확대 방법 등의 내용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봉제, 권기남, 2016)[55]. Tuning in to Kids(TIK)[56]는 부모와 유아기부터 청소년기 자녀의 정서적 유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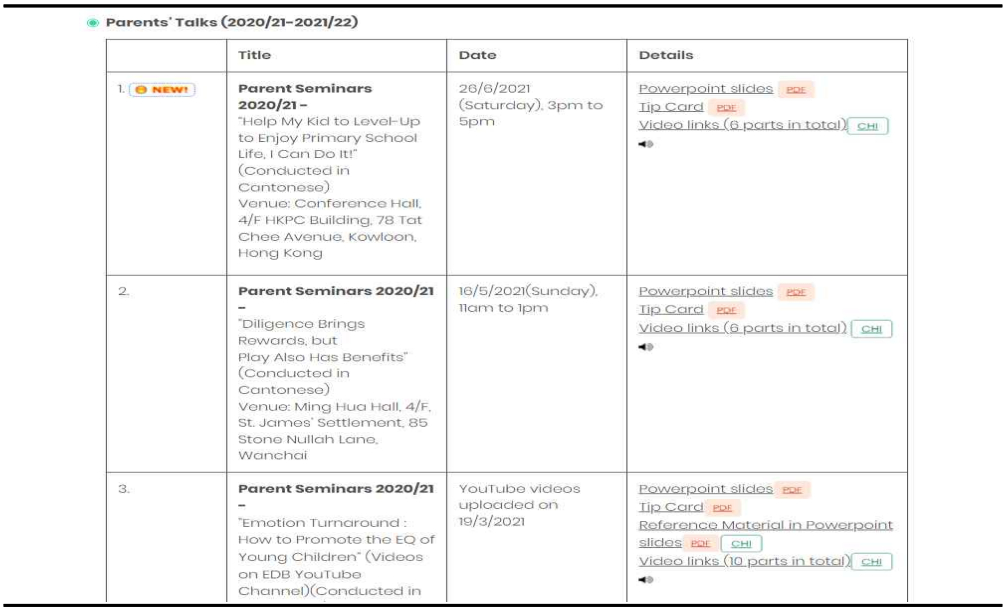
54) https://parents.education.govt.nz/early-learning/, 2021. 12. 4. 인출.
55) https://www.pupprogram.net.au, 2021. 12. 2. 인출.
56) https://tuningintokids.org.au, 2021. 12. 2, 인출.

증진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1주 2시간씩 6회기로 구성되며 아래와 같은 다섯 단계의 감정코칭을 중심으로 하는 부모교육으로 유아와 부모의 정서적 연결을 강조하고 있다. 부모들은 유아의 감정을 알아차리고(a단계) → 친밀함과 교육의 기회로 유아의 감정을 읽으며(b단계) → 감정을 수용하고 이해하며(c단계) → 유아들에게 그들의 감정을 언어로 기술하는 법을 도우며(d단계) →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한계를 설정하여 문제해결 과정을 조력할 수 있다(e단계).

TIK 이전에 개발된 Triple P(positive parenting program), 즉 긍정적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개별 대상으로 진행될 때 주 1회 총 10회기로 구성되며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될 경우 주 1회 8주간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될 수 있다(Sanders, 2003). Triple P 프로그램에서는 가정지원센터 근무자, 의사, 간호사, 심리학자, 상담사, 교사, 경찰, 사회복지사 등 포괄적인 범위의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부모에게 전문적인 자료를 지원한다.

(4) 홍콩

홍콩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교육시스템 및 정책, 커리큘럼 개발, 학생 및 학부모 관련, 교사 관련, 학교 관리, 공공 및 행정 관련 등으로 정보가 구조화되어 있다. 이 중 학생 및 부모 관련(Students and Parents Related) 메뉴 내에 부모 관련(Parents Related)에서는 유치원 단계의 학부모 교육 정보(Parent Education Information at Kindergarten Stage), 가정-학교 협력(Home-school Co-operation, 부모 이야기(Parent's talk), 전자 게시판(e-Bulletin for Parents)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치원 단계의 학부모 교육 정보'에서는 유치원 교육과정 및 유아 특성 이해 등을 다룬다. Parent's talk에서는 주제별 학부모 세미나를 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현장 강의 녹화 또는 유튜브 녹화 비디오 자료, PDF 자료, 관련 자료 링크 등을 다국어로 제시하여 온라인 부모교육을 그림 Ⅲ-8과 같이 제공한다.



Parents' Talks (2020/21-2021/22)

	Title	Date	Details
1. NEW!	**Parent Seminars 2020/21 –** "Help My Kid to Level-Up to Enjoy Primary School Life, I Can Do It!" (Conducted in Cantonese) Venue: Conference Hall, 4/F HKPC Building, 78 Tat Chee Avenue, Kowloon, Hong Kong	26/6/2021 (Saturday), 3pm to 5pm	Powerpoint slides PDF Tip Card PDF Video links (6 parts in total) CHI
2.	**Parent Seminars 2020/21 –** "Diligence Brings Rewards, but Play Also Has Benefits" (Conducted in Cantonese) Venue: Ming Hua Hall, 4/F, St. James' Settlement, 85 Stone Nullah Lane, Wanchai	16/5/2021(Sunday), 11am to 1pm	Powerpoint slides PDF Tip Card PDF Video links (6 parts in total) CHI
3.	**Parent Seminars 2020/21 –** "Emotion Turnaround : How to Promote the EQ of Young Children" (Videos on EDB YouTube Channel)(Conducted in	YouTube videos uploaded on 19/3/2021	Powerpoint slides PDF Tip Card PDF Reference Material in Powerpoint slides PDF CHI Video links (10 parts in total) CHI

[그림 Ⅲ-8] 홍콩 교육부 홈페이지의 Parent's Talk 메뉴[57]

홈페이지 내 구체적인 부모교육이 명시된 것은 Home-school Co-operation 메뉴이며 가정학교 협력위원회(Committee on Home-School Co-operation, 이하 CHSC)를 개설하여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58] CHSC에서는 연령별 육아 방법 및 육아·교육 정보, 생활 정보(안전 및 건강, 정신 건강, 가정생활 교육 등)를 그림 Ⅲ-9와 같이 제공한다.



[그림 Ⅲ-9] 가정학교 협력위원회 홈페이지의 부모교육 관련 내용[59]

57) https://www.edb.gov.hk/en/student-parents/parents-related/parent-info/index.html, 2021. 12. 1. 인출.
58) https://www.chsc.hk/, 2021. 12. 1. 인출.

(5) 일본

일본은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내에 교육 카테고리가 있으며 이 중 유아교육 및 가정교육이 제시되어 있다. '유아교육 및 가정교육' 메뉴 내에는 가정교육지원팀(家庭教育支援チーム)의 설명 및 역할이 안내되어 있다.[60] 일본의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가정교육지원팀은 육아 서포터, 교수진, 복지위원회 위원, 아동위원회 위원, 공중보건간호사, 학교 상담원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족교육지원단을 구성, 학부모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61] 다른 나라와 달리 부모교육보다는 가정교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가정교육 학부모 학습 프로그램을 그림 Ⅲ-10과 같이 운영하고 있다.



[그림 Ⅲ-10]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유아교육 및 가정교육 메뉴[62]

59) https://www.chsc.hk/main.php?lang_id=1, 2021. 12. 5. 인출.
60) https://katei.mext.go.jp, 2021. 12. 5. 인출.
61) https://katei.mext.go.jp/contents4, 2021. 12. 5. 인출.
62) https://katei.mext.go.jp/contents4/4-2.html, 2021. 12. 5. 인출.

예를 들어 미야기현(宮城県)에서는 지진 후 스트레스를 받는 부모를 위한 심리 회복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참여 워크숍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하여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나는 곧 부모가 됩니다', '균형 잡힌 아이 양육과 일' 등의 주제로 PDF 워크시트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다.[63] 후쿠시마현(福島県)에서는 부모 양육지원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주로 자녀의 바른 생활 습관, 식품 교육, 미디어 교육, 배변 훈련 등 일상적인 자녀 양육에 필요한 부모 역할에 대해 안내한다.[64]

(6) 캐나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인 Nobody's Perfect는 1980년대 초에 아동의 건강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개발되었다. 중산층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빈곤, 배우자 없는 양육자, 교육 수준과 문해력이 낮으며 사회, 문화, 지리적으로 고립된 부모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것이다. 성인학습모델에 기반하여 학습자 주도형 프로그램이며 학습자의 강점에 기반을 두고 있다. Nobody's Perfect는 지역사회와 사회적 지원을 유능한 양육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자원으로 간주한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가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부모가 서로에게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부모 그룹을 형성하도록 지원한다. 영유아의 부모에게 적합하며 각 참여자의 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Nobody's Perfect에 참여한 부모는 긍정적인 훈육 전략(문제상황을 가르치는 기회로 사용, 왜 잘못된 것인지 차분하게 설명, 자녀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의 선택 허용)의 사용이 증가했고 부정적이거나 징벌적 훈육(때리거나,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 등)이 감소하였다.

Matusicky와 Russell(2009)은 캐나다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캐나다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주제의 부모교육은 출산 준비와 관련한 의학적 주제를 주로 다루고 첫 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둘째, 프로그램 대부분은 문제해결책에 집중하여 좋

63) https://www.pref.miyagi.jp/site/katei/oyanomanabi-index.html, 2021. 12. 5. 인출.
64) https://www.pref.fukushima.lg.jp/site/edu/sykaikyoiku12.html, 2021. 12. 5. 인출.

은 부모-자녀 관계의 확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생략하고 있었다. 셋째, 대부분 프로그램은 매주 1시간, 6~8회의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동 발달에 대해 충분히 다룰 수 없었다. 넷째, 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되어 새로 태어난 아기가 기존 가족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2) 국외 학교의 예비부모교육

전 세계적인 가족 축소와 개방적 성 문화로 인해 예비부모교육이 이른 시기에 시작되고 포괄적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인다(김정미, 2004; Caron & Wynn, 1992; Lee, Wilsie, & Brestan-Knight, 2011). 일반적인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부모가 자녀 양육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 역량을 갖추는 것에서 시작된다. 학교 역시 10대 미혼부모나 중고등학생을 위한 기초적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김정미, 2004; McDermott, 2004). 미국, 영국과 호주에서는 18세 이전의 학생들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 속에 기초적인 예비부모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다. 세 국가는 모두 역량 중심의 국가 주도 교육과정을 사용하는 동시에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어 비교 분석에 적합하다. 이 장에서는 대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의 교육과정[65]을 참조하여 세 국가의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된 예비부모교육 관련 내용을 분류하고 교육 체계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1) 국가별 예비부모교육 내용

가. 미국 뉴욕주

미국은 주(州)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였던 교육법 및 정책을 1992년부터 연방정

65) 여성가족부(2016)에서는 대학 부모교육 강의 사례집을 통해 예비부모교육을 위한 표준강의안을 제시했다. 이 자료에서는 부모됨의 가치, 나의 성장과정과 인성을 통한 나의 이해,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지식/기술/태도, 현대사회 부모됨의 장애와 대안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세부 내용을 참조하여 국가별 교육과정 내에서 예비부모교육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출하였다.

부 차원에서 학습 표준(standard education)을 개발하는 것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여전히 주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다. 주정부는 국가의 학습 표준을 고려하여 자체적인 학습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세부 과정(course)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 차원의 학습 표준을 기반으로 개발된 뉴욕주의 학습 표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뉴욕주의 학교는 유치원 과정 이후 초등 5년, 중등 3년, 고등 4년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각 학교의 표준 교육과정은 11개 과목으로 구성되며 이중 예비부모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직업과 기술 교육(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CTE)」 과정이다. 해당 과정은 다시 6개 내용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가족 및 소비자 과학(Family and Consumer Sciences: FACS)' 영역에 예비부모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가족 및 소비자 과학' 영역에 제시된 세부 내용은 뉴욕주에서 규정된 3단계의 학습 표준(초-중-고급)[66]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주제(resources)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단위학교의 교육 계획과 실행에 참고자료로 사용된다. 가족 및 소비자 과학 교육 주제의 목표는 생애주기별 발달과 성장을 이해하고 가족 및 직장 등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며 향후 가족 및 소비자 과학 분야의 직업적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뉴욕주에서는 '가족 및 소비자 과학' 영역과는 별도로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에게 성교육 및 약물중독 등의 「보건 교육(Health Education)」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보건 교육의 핵심 내용은 뉴욕시 학습 표준(각주 1번)에 근거하여 단위학교에서 개발하여 적용한다. 보건 교육의 학습 표준은 아래 가족 소비자 과학에서 다루어지는 표준 내용과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족 소비자 과학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학교 별 예비부모교육의 영역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67]. 초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가족 및 소비자 과학' 영역의 수업은 농업, 비즈니스마케팅, 인간발달

66) 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Learning Standards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and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at Three Levels(2017) (http://www.nysed.gov/, 2021. 6. 7. 인출.)

67) "가족 및 소비자과학(FACS)" 교육과정의 중급(Intermediate Level, Grades 5-8), 상급(Commencement Level, Grades 9-12) 수준 지침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http://www.nysed.gov/, 2021. 11. 21. 인출.)

과 관계 등을 포함하여 6개 중급 수준으로 구성된다. 초중등학교에서는 6가지 주제 중 '인간발달과 관계(Human Development and Relationships)'를 학습한다. 고등학교의 '가족 및 소비자 과학' 영역은 식품 및 영양, 인간서비스와 가족 연구 등을 포함하는 6개의 핵심 주제로 이루어진다. 영역별 주제 범위는 개인과 가족의 요구부터 진로(직업) 및 기술 준비까지 포괄되어 있어 예비부모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예비보육교사를 위한 전문 기술까지 확장하여 학습할 수 있다. 고등학생들은 기본 과정인 '핵심(Core)'과 '인간 서비스 및 가족 연구(Human Service and Family Studies)'를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다.

〈표 Ⅲ-27〉 뉴욕주 학교급별 예비부모교육 시기와 교육과정

시기(연령)		기본학제 (뉴욕주)	예비부모교육 관련 교육과정	
초등	6-10	Grade 1-5	가족 및 소비자 과학 (FACS)	-인간발달과 관계 (Human Development and Relationships, 5학년부터 가능)
중등	11/12-13/14	Grade 6-8		
고등	13/14-16/17	Grade 9-12		-핵심(Core) -인간 서비스 및 가족 연구 (Human Service and Family Studies)

중고등학교의 관련 내용 하위범주와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성장과 발달' 범주의 세부내용은 인간의 신체, 정서, 사회, 인지적 발달과 영유아 돌보기가 포함된다. 자아개념 형성을 위해 개인 및 타인과의 관계 이미지를 구성하며 '또래 영향과 스트레스 관리'는 또래 집단 속에서의 개인의 영향력과 스트레스 원인 및 관리를 다룬다. 그리고 중등학교에서 긍·부정적 인간관계와 가족의 역할에 대해 학습하고 육아(parenting)를 하위범주에 포함하여 양육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내용이 제시된다.

〈표 Ⅲ-28〉 중등: 인간발달과 관계[68]

하위범주	세부 내용
인간의 성장과 발달 (human growth	• 전 생애 인간의 성장과 발달 단계 • 인간 성장과 발달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지적 측면 간 관계 및 특성

& development across the lifespan)	• 영유아 돌보기 •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방법
자아개념과 자아상 (self-concept & self-image)	• 자기 개념 용어를 정의, 자기 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긍정적 자아개념과 부정적 자아개념의 특성 비교 • 자아개념의 변화 • 외모, 언어적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동을 통한 개인 이미지 • 사회 및 직장 환경에서 관계 발전에 대한 첫인상
또래의 영향과 스트레스 관리 (peer influence & stress management)	• 또래와 또래 압력 용어 • 의사 결정에 대한 가족, 동료, 미디어 및 기타 사람들의 영향 비교 • 또래 집단 내에서 개인의 선택을 주장하는 방법과 또래 압력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 청소년들의 공통적인 문제 • 스트레스의 원인, 관리 방법
인간관계 (human relationships)	• 건강한 인간관계의 특징 • 부정적 인간관계의 특성 • 인간관계 강화 방안
가족의 역할 (family role in society)	• 가족의 중요성과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 개념 • 가족 구조 및 변화 • 문화적 전통과 다양성 이해에 미치는 가족의 역할 • 청소년의 자아 개념, 성격 및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의 영향 • 가족 기능 수행을 위한 지원 그룹, 기관 및 지역사회 조직
육아 (parenting)	• 개인과 가족의 복지 강화에 대한 양육 역할과 책임의 영향 • 양육의 역할과 책임 • 육아 준비도와 관련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요인

둘째, 고등학교의 예비부모교육은 ‘핵심’과 ‘인간서비스 및 가족 연구’로 구성된다. 생애주기별 발달을 기초과목인 ‘핵심’을 이수하면 심화 과목인 ‘인간 서비스 및 가족 연구’를 선택할 수 있다. ‘가족 및 소비자 과학’ 주제의 목표는 생애주기별 발달과 성장을 이해하고 가족 및 직장 등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며 향후 가족 및 소비자 과학 분야의 직업적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68) NYS Education Department(2018). Human development and relationships. (http://www.nysed.gov/, 2021. 11. 21. 인출.)

〈표 Ⅲ-29〉 고등: 핵심

하위범주	세부 내용
생애주기 연구 핵심내용 (lifespan studies core)[69]	• 생애주기 성장과 발달 • 뇌발달 • 태내 발달 • 아동기 • 청소년기 • 성인기 • 노인기 • 생애주기 연구의 현재 이슈와 사건 • 생애주기 연구의 진로 방향

〈표 Ⅲ-30〉 고등: 인간서비스 및 가족 연구

하위범주	세부 내용[70]	
아동발달과 심리학 (child development and psychology)[71]	• 아동 발달 및 심리학 소개 • 아동 관찰 • 아동, 가족 및 지역 사회 연결 • 태내 발달 • 산후 기간의 신생아	• 영아기 • 걸음마기 • 유아기 • 학령기 • 특별한 요구를 가진 아동
육아 (parenting)[72]	• 육아 이해 • 가족 구조 및 선택 • 부모 되기 • 아동 및 가족 돌보기	• 아동 지도 • 가족 관리 • 양육 문제 및 가족 변화 • 지역사회 및 가족 지지
유아교육 (early childhood education)[73]	• 유아기, 교육 및 서비스 소개 • 미취학 아동의 성장 및 발달 개요 • 관찰 및 기록: 아동 평가 • 성격 발달 • 아동 중심 환경 • 프로그램 계획 및 일정 수립 • 놀이 활동지도 • 읽기 쓰기 활동지도 • 지역사회 연결 및 직업 인식	• 예술 체험 지도 • 음악 및 움직임 경험 지도 • 영양, 건강 및 건강생활 경험 지도 • 과학 경험 지도 • 수학 경험 지도 • 유아 지도 • 영재 아동 지도 • 센터 운영 관리 • 교사, 학부모 및 지역사회 관계

69) NYS Education Department(2008). Lifespan studies core. (http://www.nysed.gov/, 2021. 11. 21. 인출.)

70) 세부 내용은 하위범주 안에 속하는 주제들이며 주제와 관련하여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을 다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아(IN: infancy)' 주제와 관련하여 학생들은 1. 성장과 발전, 2. 발달적으로 적절한 관리 및 실제, 3. 영양, 건강 및 안전, 4. 현재 이슈, 참고사항 및 기술 발전 등을 학습할 수 있다. 고등학교급에서 다루어지는 인간서비스 및 가족 연구의 세부 내용은 직업 및 기술교육을 위한 선택과목이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다.

나. 영국

영국은 연합국가(United Kingdom)로 구성국마다 교육정책이 다르게 시행되고 있고 주 안에서도 학교의 자율성과 자치회의 권한이 높다. 네 개의 구성국 중 잉글랜드(England)의 교육과정은 연령에 따라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다. 잉글랜드는 3세부터 16세까지 교육과정을 5단계로 구성하여 유치원 과정(early years foundation stage)과 4단계의 학년(key stage)으로 구분한다. 이 중 1, 2학년(key stages 1,2)은 초등, 3학년(key stages 3)은 중등, 4학년(key stages 4)은 고등교육이며 모두 의무교육이다. 4개 단계로 이루어진 학교 교육과정은 3개의 핵심 과목과 9개의 기본과목을 배정하며 기타 교과목으로 「개인, 사회, 건강 및 경제 교육(Personal, Social, Health and Economic Education: PSHE)」과 「종교교육(Religious Education)」을 편성하고 있다. 이중 예비부모교육과 관련된 과목은 「개인, 사회, 건강 및 경제 교육(PSHE)」이다.

예비부모교육 관련 영역에서 기본 학제에 따른 교육과정은 연령별로 나뉜다.[74] 개인, 사회, 건강 및 경제 교육 과목은 '신체 및 정신 건강(Physical Health and Mental Wellbeing)', '관계 교육(Relationship Education: RE)'과 '관계 및 성(Relationships and Sex Education: RSE) 교육'으로 나뉜다. 보건 교육의 한 형태인 신체 및 정신 건강 교육은 초중고등학교 전체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초등학생은 관계를, 11세 이상인 모든 중고등학생은 관계 및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단 초등학교에서도 '관계 및 성교육'은 개별 학교에서 학부모와 논의를 거쳐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71) NYS Education Department(2009). Child development and psychology. (http://www.nysed.gov/, 2021. 11. 21. 인출.)

72) NYS Education Department(2011). Parenting. (http://www.nysed.gov/, 2021. 11. 21. 인출.)

73) NYS Education Department(2010). Early childhood education. (http://www.nysed.gov/, 2021. 11. 21. 인출.)

74) 「개인, 사회, 건강 및 경제 교육(PSHE)」의 하위 과목인 관계교육과 성교육, 신체및정신건강 자료(Relationships Education Relationships and Sex Education and Health Education, 2019)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national-curriculum, 2021. 11. 21. 인출.)

〈표 Ⅲ-31〉 영국 학교급별 예비부모교육 시기와 교육과정

시기(연령)		기본학제	예비부모교육 관련 교육과정		
초등	5/6-6/7	Key Stage 1	개인, 사회, 건강, 경제 교육 (PSHE)	-관계 교육 (Relationship Education)	-신체 및 정신 건강(Physical health & mental wellbeing)
	7/8-10/11	Key Stage 2			
중등	11/12-13/14	Key Stage 3		-관계 및 성 교육 (Relationship & Sex Education)	
고등	14/15-15/16	Key Stage 4			

잉글랜드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및 성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우정, 가족관계, 다른 어린이 및 성인과의 긍정적인 관계의 기본 구성 요소와 특성을 알고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청소년들에게 친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건강하고 양육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관계교육과 관계 및 성교육의 하위범주와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의 관계교육의 '나를 돌보는 가족과 사람들' 범주는 가족의 중요성과 가족생활의 중요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존중, 돌봄과 아동 안전, 결혼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안전' 범주에는 또래와 타인의 우정의 종류, 프라이버시, 자기결정권, 불쾌한 감정 인식, 학대신고 등이 포함된다.

〈표 Ⅲ-32〉 초등[75]: 관계교육

하위범주	세부 내용
나를 돌보는 가족과 사람들 (families & people who care for me)	• 사랑, 안정의 제공처인 가족의 중요성 • 건강한 가족생활의 특징, 가족 구성원의 보호 및 보살핌, 가족생활 공유의 중요성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이점을 존중 • 안정적인 돌봄의 유형, 행복한 가정과 아동 안전의 중요성 • 결혼의 개념과 정의 • 가족관계의 긍, 부정적 측면 인식하는 방법, 타인에게 도움이나 조언을 구하는 방법
안전 (being safe)	• 또래 및 타인과의 우정의 다양한 종류(디지털 맥락 포함). • '프라이버시'의 개념과 그 긍정, 부정적 영향 • 신체의 자기결정권: 안전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과 기타 접촉의 차이

	• 타인(온라인 포함)에게 안전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 • 성인에 대해 불안과 불쾌의 감정 인식 및 신고 • 조언이나 도움을 요청하고 유지하는 방법 • 학대 신고 방법 및 신고를 위한 용기 • 조언이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대상 파악

다음으로 중등학교 관계 및 성교육은 초등의 관계교육에서 연계 확장된다. 즉 '가족'과 '안전' 하위범주는 관계교육 내용과 연결되며 성교육으로 심화되어 '성 건강을 포함한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 범주가 추가로 제시되어 있다. '가족' 범주에는 다양한 가족의 유형과 가족관계, 결혼, 양육과 부모 역할 등의 내용이 구성되며 '안전' 범주에는 성적 동의, 성적 착취, 학대 등과 같은 신변안전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그리고 '성적인 관계교육' 범주의 세부 내용은 상호 존중, 동의, 충성, 신뢰 등과 같은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와 성관계를 통한 긍·부정적 영향, 남녀의 성 건강, 성적 관계 거절, 피임, 유산, 임신 관련 지식, 성병 관련 지식 등이다.

〈표 Ⅲ-33〉 중고등: 관계 및 성교육

하위범주	세부 내용
가족 (families)	• 서로 다른 유형의 헌신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다양한 가족 유형) • 가족 관계를 통한 인간의 행복과 자녀 양육의 중요성 • 결혼과 결혼을 통해 얻게 되는 법적 지위 • 결혼의 중요성과 자유 • 결혼 외에 다른 유형의 관계 특성 및 법적 지위 • 양육과 관련된 부모의 역할과 책임 • 안전하지 않은 관계 인식, 관계문제에 대한 도움 및 조언을 구하는 방법
안전 (being safe)	• 성적 동의, 성적 착취, 학대, 글루밍, 강압, 희롱, 강간, 가정 학대, 강제 결혼, 명예 기반 폭력 및 여성 할례의 개념과 관련 법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현재 및 미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 성적 동의 전달 및 타인의 동의 인식 방법, 동의 철회 방법 및 시기(온라인 포함)
성 건강을 포함한 친밀하고	• 상호 존중, 동의, 충성, 신뢰, 공통된 관심사와 전망, 성적 관계와 우정 관계를 포함하는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의 특성과 긍정적인 측면을 인식하는 방법

75) 성교육은 초등학교에서 의무 사항이 아니나 단위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계획 및 실행할 수 있다. 다만, 성교육 선택 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남녀의 신체 성장 발달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교육해야 하며 관련 자료는 교육부 온라인 자료를 활용한다.

성적인 관계 (intimate & sexual relationships, including sexual health)	• 성 및 관계의 선택에 따른 건강의 긍정적이든 부정적 영향.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성적 및 생식 건강 및 복지 • 생식 능력을 포함한 성 건강과 남성과 여성의 생식 능력, 생식 불능에 대한 이해 • 또래 간 압력과 성적 압력 등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다양한 전략 • 성적 관계의 거절, 성관계 없이 친밀감을 즐길 수 있는 선택권 인식 • 다양한 피임 선택, 효능 및 사용 가능한 선택에 대한 지식 • 유산을 포함한 임신에 관한 지식 • 임신과 관련된 선택 사항에 대한 지식(출산, 입양, 낙태 및 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포함하여 모든 선택권에 대한 의학적으로 및 법적으로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 • HIV/AID를 포함한 다양한 성병(STI)의 전염 경로, 안전한 성관계(콘돔 사용 포함) 및 검사의 중요성과 관련 지식 • 일부 성병의 유행, 성병에 걸린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치료에 대한 주요 지식 • 알코올 및 약물 사용과 위험한 성행위의 관계 • 은밀한 성 및 생식 기관의 건강을 위한 조언과 치료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

다. 호주

여타의 국가와 유사하게 호주 연방정부 역시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과거의 연방정부 교육부는 재정만 지원하고 6개 주 교육부에서 각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을 담당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2015년부터 호주교육과정평가원(ACARA)을 통해 점진적으로 국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개정을 거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연방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직접 관장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각 주의 권한에 따라 학제와 운영에 차이가 있다. 호주의 일반적인 교육 편제는 초등학교 6~7년(7년일 경우, 유치원과정 포함)과 중학교 3~4년으로 이루어진 10년의 기본 의무교육과정과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선택교육 2년 과정으로 구성된다. 1학년부터 10학년까지는 호주 교육과정(Australian Curriculum, Version 8.4)이 모든 주와 지방에서 적용되고 있다[76].

호주 교육과정은 영어, 수학, 과학 등 9개의 학습영역을 중심으로 문해력, 산술능력 등 7가지 역량을 갖추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다. 이중 예비부모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목은 「보건 및 신체 교육(Health and Physical

76) 2020년 6월, 호주 교육과정(Australian Curriculum)은 version 9.0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나 승인 및 적용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여기서는 현재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했다.

Education)」 영역의 '개인, 사회, 지역사회의 건강(Personal, Social and Community Health)' 부분이다. 호주 교육과정에 포함된 예비부모교육 영역과 내용은 유사한 내용이 연령에 따라 확장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예비부모교육이 포함된 영역은 '개인, 사회, 지역사회의 건강(Personal, Social and Community Health)' 이며 이 영역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공통적인 주제이다. 그리고 '개인, 사회, 지역사회의 건강' 영역은 다시 '건강, 안전(Being Healthy, Safe and Active)'과 '의사소통과 상호작용(Communicating and Interacting for Health and Wellbeing)'의 하위범주로 구성된다.

〈표 Ⅲ-34〉 호주 학교급별 예비부모교육 시기와 교육과정

시기(연령)		기본학제	예비부모교육 관련 교육과정	
초등	5/6-11	year 1-6/7	개인, 사회, 지역사회의 건강	-건강, 안전 (being healthy, safe & active)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communicating & interacting for health & wellbeing)
중등	12-15	year 7/8-10		
고등	16-17	year 11,12		

호주 학교 예비부모교육에 포함된 내용은 1~10학년까지 5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다. 각 범주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아 정체감'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변화와 전환'은 성장과 발달에 따른 변화 및 관리 전략의 내용을 포함한다. '도움 구하기'는 안전하지 않거나 불편한 관계를 인식하고 도움을 구하는 내용이다. '의사소통'은 소속감을 느끼면서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감과 존중을 근거로 한 교육으로 확장된다. '감정이해'는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파악하고 표현하는 연습과 감정표현을 통한 결과를 경험하는 교육이다.

〈표 Ⅲ-35〉 1학년~10학년의 연계 확장된 내용[77]

하위범주		세부내용				
		1-2학년	3-4학년	5-6학년	7-8학년	9-10학년
건강, 안전과 활동 (being healthy, safe & active)	자아 정체성 (identities)	자신과 타인의 강점과 행동과 자아정체성	성공, 도전 및 실패와 자아정체성 함양	자아정체성의 사람과 장소에 따른 영향	정체성 전환 및 변화의 영향	정체성 형성 요인 평가, 개인이 타인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변화와 전환 (changes & transitions)	성장에 따른 신체적 및 사회적 변화, 가족과 지역사회의 인정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변화관리 전략	사춘기와 관련된 변화 및 변화에 따른 자기관리 자원과 전략	성장에 따른 개인적, 신체적, 사회적 변화 관리 전략	관계에 대한 변화 및 전환의 영향
	도움 구하기 (help-seeking)	불편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일, 문제 상황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전략	불편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하는 전략	지역사회 자원과 건강, 안전 및 복지에 대한 도움을 구하는 방법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도움을 구하는 전략 실제 및 적용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 안전 및 복지가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 연습 및 평가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communi-cating & interacting for health & wellbeing)	의사소통 (interacting with others)	소속감을 느끼도록 다른 사람을 포함하는 방법	존중, 공감 및 가치 존중이 관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관계 맺기 및 관리 기술	관계의 이점 조사,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	공감과 윤리적 의사 결정이 존중하는 관계에 미치는 연관성
	감정이해 (understanding emotions)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설명하는 정서적 반응 파악 및 연습	감정적 반응의 깊이와 강도의 차이	행동과 관계에 대한 정서적 반응의 영향	감정에 영향 미치는 요인, 공감과 감수성을 보여주는 전략	상황에 따른 적절한 정서적 반응, 다양한 반응 결과

77) ACARA(2015).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Sequence of content F-10 Strand): Personal,

(2) 국가별 예비부모교육 내용 분석

최근 전 세계적인 교육 개혁의 흐름은 국가경쟁력 성장을 위한 지표로 국제적 공통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과 미래 사회의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기르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다(Sahlberg, 2010; Savage & O'Connor, 2015). 이에 서구권에서는 지방 및 주 정부 차원에서 실시했던 개별화된 교육 체계를 국가 수준에서 재정립하고 있다. 즉 지방 및 주 정부 차원의 권한은 유지하면서도 일률적인 핵심 학습 표준과 역량을 제시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면, 주별로 개발 적용된 호주 교육은 2008년도에 공통 교육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2010년에 영어, 수학, 과학 및 역사 과목에서 호주 커리큘럼 버전 1.0이 개발되었고 최근 2021년 4월까지 버전 9.0이 개발된 상태이다.[78)]

미국, 영국, 호주에서도 핵심역량 중심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 및 프로그램, 활용 자료 등은 개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실시하도록 권장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제시된 영역 및 핵심 개념, 일반적 지식을 근거로 개별 출판사에서 개발된 교과서(인정교과서)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가. 예비부모교육과정 일반적 특징

미국 뉴욕주 교육과정에 포함된 예비부모교육과정의 특징은 중등과 고등에서 각각 공통과 선택으로 나뉜다는 점이다. 초등 5학년부터 중학교까지는 '인간발달과 관계 교육'이 공통으로 실시되며 고등학교에서는 직업 및 진로와 연결하여 매우 구체적인 내용의 예비부모교육과 유아교육 전문교육이 실시된다. 특히 고등학교에는 유아교육 전문교과(「아동발달과심리학」, 「육아」, 「유아교육프로그램」)를 편성하여 자녀 양육과 가족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충족과 더불어 학생들이 졸업 후 보육교사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과정까지 개설하고 있다.

영국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관계 및 성교육을 학습하도록 편성하고 있어, 기초

---

social and community health. (https://www.acara.edu.au/ 2021. 11. 21. 인출.)

78) 호주교육과정평가원의 호주교육과정의 역사 부분에서 발췌(https://www.acara.edu.au/, 2021. 10. 24. 인출.)

적인 예비부모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의 교육과정에 포함된 예비부모교육은 초등입학부터 대학진학 전까지 체계적으로 연계 확장된 관계 및 성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관계와 성이라는 두 가지 영역이 예비부모교육 내용으로 활용된다. 구체적으로 영국 교육과정은 아동기에는 존중받는 안전한 관계에 대한 학습을, 청소년기에는 결혼 및 출산의 가능성을 고려한 성적 관계의 안전과 책임을 다루고 있다.

호주에서 예비부모교육은 의무교육 동안 '개인, 사회, 지역사회의 건강' 영역에서 학년 간 연계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은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개인에 대한 이해와 성장 발달, 관계 문제해결, 의사소통 방식 등의 내용을 하나의 연계 확장된 주제 내에서 학습한다. 그런 점에서 호주의 예비부모교육은 특정 기간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아동기 초기부터 자신에 대한 이해와 타인과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반복적이고 지속해서 실시한다는 특징이 있다.

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관련 내용

미국 뉴욕주의 교육과정에서 예비부모교육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가족 및 소비자 과학 과정」 과정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만 뉴욕주의 3단계 학습 표준은 「보건 교육」에서 아동학대 및 존중하는 교육에 대한 부분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보건 교육의 첫 번째 학습 표준에서 '학대 등과 같은 위험을 피하는 방법과 위협적인 상황을 판단하는 방법, 자신과 타인을 돌보고 존중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학습 표준 단계에서 '위협적인 관계 및 상황을 피하거나 줄이는 전략,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다루며 세 번째 단계에서 '폭력과 폭행에 대한 상황 분별 및 대처 방법과 보다 심화된 자신과 타인을 돌보고 존중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전략을 배운다.

영국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교육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모두 이루어진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관계교육'은 '안전' 범주에서 '성인에 대해 불안과 불쾌의 감정을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과 개인의 신변안전에 대해 '조언이나 도움을 요청하기', '학대 신고 방법', 신변안전이 위협받을 때 '조언이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을 파악'하는 교육을 한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을 위한 '성, 관계 교육'의

‘가족’과 ‘안전’ 범주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와 영향, 대처 및 지원을 다룬다. 즉 가족 내에서 안전하지 않은 관계를 인식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도움을 세부 내용으로 포함한다. 더불어 ‘안전’ 영역에서 성적 착취와 학대 등을 다루고 있어 신변안전 내용을 담고 있다.

호주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존중하는 관계 및 동의에 대한 교육으로 “Keeping Safe; Child Protection Curriculum(KS: CPC)”과 호주 교육과정 내의 「보건 및 신체 교육」 등 두 개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79] CPC는 아동을 연령별 그룹 3~5세(유아기), 1~2학년, 3~5학년, 6~9학년, 10~12학년으로 나누어 ‘안전할 권리, 관계교육, 학대 인식 및 신고, 보호 방법’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 과정에는 학부모와 교사가 모두 참여하게 된다. 또한, 교육과정 상에서 학대 예방 및 대처 교육은 ‘건강, 안전’ 범주에서 불편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관계나 문제 상황에 대해 학습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인간관계에 대한 파악과 도움 요청, 상황 대처 전략, 도움 구하기, 도움 구하는 전략에 대한 실제 및 적용과 평가’ 등으로 역량을 점차 증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범주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긍·부정적 감정을 파악하고 이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과 존중하는 관계 맺기 전략,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감정 변화 이해’ 등을 다루어 가정 및 타인과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방식을 파악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하고 있다.

다. 부모됨준비(아동 돌봄, 자녀 돌보기 등) 관련 내용 특징

뉴욕주의 3단계 학습 표준의 「보건 교육」 과정에 따르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생애별 양육기술과 상호작용 방법, 두 번째로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 원칙, 세 번째로 아동 발달단계별 발달 지원 활동 등을 다룬다. 이러한 표준에 기초하여 ‘가족 및 소비자 과학’ 과정에서는 세부 교육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초중등 학생은 ‘인간발달과 관계’ 영역을 통해 가족의 역할과 육아 범주에서 가족의 개념과 역할, 영양과 아동양육 지식을 학습하게 된다. 고등학생은 ‘인간발달과 심리학’을 통해 아동의 생애주기별 발달 특성을, ‘육아’를 통해 부모됨을, ‘유아교육’을 통해 예

79) 남호주 교육부 커리큘럼 역사에서 발췌(https://www.education.sa.gov.au/, 2021. 10. 24. 인출.)

비유아교사 교육을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다.

영국 교육과정에 나타난 부모됨준비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은 '관계 교육'의 '가족' 범주를 통해 건강한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학습한다. 중고등학생은 '관계 및 성 교육'의 '가족' 범주에서 가족의 중요성을 다루고 가족의 역할을 확장하여 자녀 양육 및 양육책임 내용을 의무적으로 경험한다.

끝으로 호주 교육과정에서 부모됨준비와 관련된 내용은 해당 교육과정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즉 '개인, 사회, 지역사회의 건강' 과정에서 양육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다만 간접적으로 '건강, 안전' 범주에서 인간의 신체, 사회, 정서적 발달과 성장을 통해 개인의 발달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관리 전략을 학습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 호주의 교육과정에 포함된 예비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첫째, 미국, 영국, 호주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예비부모교육 내용은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내용과 큰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교과서 및 교재 키워드 분석에서 핵심 키워드로 도출된 부모됨준비, 건강가족관계 등에 관한 내용은 세 국가 교육과정에 모두 포함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 체계가 타 국가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표 Ⅲ-36과 같이 국가별 실시 방법과 시기에 대한 차이가 있다. 영국과 호주의 경우 학교 교육 전 과정에서 예비부모교육 관련 내용을 다루는 것과 달리, 미국과 한국은 10세에서 11세에 시작되며 고등학교에서는 선택과목으로 제시된다. 또 조사된 국가에서 예비부모교육으로 볼 수 있는 교육과정의 실시 시기에 차이가 있다. 영국과 호주에서는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전체 학교급에서 단계별로 예비부모교육이 이루어진다. 즉 영국에서는 의무교육 기간인 16년 동안 관계교육과 성교육을 실시하며 호주에서는 10학년까지 의무교육이므로 11, 12학년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로 진학할 경우, 연계된 예비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미국 뉴욕주의 경우 예비부모교육은 중급과 고급으로 분류하여 중등 및 고등학교급에서 실시하도록 제시하되 단위학교별로 5, 6학년에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미국의 이수 시기 및 방법은 우리나라 교육 체계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Ⅲ-36〉 국가별 예비부모교육 관련 교육과정 영역과 운영 시기 비교

<table>
<tr><th>학교급</th><th>연령(세)</th><th>미국</th><th>영국</th><th>호주</th><th>한국</th></tr>
<tr><td rowspan="6">초등</td><td>6</td><td rowspan="4"></td><td rowspan="3">신체및정신건강
/관계교육</td><td rowspan="5">건강,안전과활동
/의사소통과상
호작용
(의무교육기간)</td><td rowspan="4"></td></tr>
<tr><td>7</td></tr>
<tr><td>8</td></tr>
<tr><td>9</td></tr>
<tr><td>10</td><td rowspan="4">인간발달과관계
(초등5학년부터)</td><td rowspan="5">신체및정신건강
/성과관계교육
(11세부터의무)</td><td rowspan="5">인간발달과가족
/가정생활과안
전
(초등5학년부터)
(고등은선택)</td></tr>
<tr><td>11</td></tr>
<tr><td rowspan="3">중등</td><td>12</td></tr>
<tr><td>13</td></tr>
<tr><td>14</td></tr>
<tr><td rowspan="3">고등</td><td>15</td><td rowspan="3">인간서비스및
가족연구
(일부내용선택)</td><td rowspan="2"></td></tr>
<tr><td>16</td></tr>
<tr><td>17</td><td></td></tr>
</table>

셋째, 아동보호를 위한 학대 및 폭력 내용 측면에서 세 국가와 우리나라는 차이가 있다. 미국, 영국, 호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교과서 및 교재에 포함하고 있다. 이는 아동인권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하지만 해외 교육과정에서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등 관련 내용이 학대나 폭력에 대한 대처보다는 인간에 대한 존중과 태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가정문제가 일어나는 구체적인 상황 및 대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폭력에 대한 대처보다 예방에 초점을 두어 구성하되, 인권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모든 국가별 교육과정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부분은 교육과정 및 비교과로 병행하여 실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과정에서 부부, 아동, 노인에 대한 폭력을 다루면서 신변안전교육은 별도의 비교과 활동으로 운영한다. 호주 역시 학교의 모든 학생은 교육과정 외 CPC(안전유지: 아동보호과정)를 이수하고 있다. 이처럼 조사된 국가에서는 교육과정 및 비교과과정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반복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방어적 측면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Ⅳ.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실태조사

1. 설문조사
2. 부모 및 전문가 면담

1. 설문조사

부모를 위한 아동권리교육의 실태 및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부모교육 실태, 부모의 인권 및 아동권리 인식, 부모의 아동학대 및 체벌 인식,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변인 탐색, 부모를 위한 아동권리교육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에서 아동권리교육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까지 포함한다.

1) 조사대상 일반적 특성

이 조사의 연구대상은 조사 시점 기준 수도권,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 및 초등 자녀를 둔 부모 603명이다. 설문 응답자 603명 중 여성은 315명(52.7%)이며 남성은 285명(47.3%)이다. 응답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가 342명(56.7%)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37명(39.3%), 50세 이상이 18명(3.0%), 20대가 6명(1.0%)이었다. 응답자의 거주지역은 호남권이 203명(33.7%)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권이 158명(26.2%), 수도권이 133명(22.1%), 중부권이 109명(18.1%)이었다. 응답자의 월소득은 350만원~450만원이 135명(22.4%)으로 가장 많았고 450만원~550만원이 118명(19.6%), 650만원 이상이 121명(20.1%), 250만원~350만원이 108명(17.9%), 550만원~650만원이 87명(14.4%), 250만원 미만이 34명(5.6%)이었다. 응답자의 최종학력은 대학 졸업이 427명(70.8%)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이 102명(16.9%), 대학원 졸업이 65명(10.8%), 기타(초중 졸업, 대학 중퇴 및 휴학)가 9명(1.5%)이었다. 응답자의 직업은 회사원및은행원이 180명(29.9%)으로 가장 많았고 전업주부가 115명(19.1%), 자영업및판매서비스가 86명(14.3%), 공무원이 75명(12.4%), 제조및생산업이 52명(8.6%), 기타(무직, 프리랜서, 강사, 건설업, 운송업 등)가 51명(8.5%), 교육서비스가 44명(7.3%) 순이었다.

응답자 자녀의 연령대는 초등 고학년(만9~11세)이 192명(31.8%)으로 가장 많았고 유아(만3~5세)가 177명(29.4%), 초등 저학년(만6~8세)이 128명(21.2%),

영아(만0~2세)가 106명(17.6%)이다. 자녀의 성별은 여아가 291명(48.3%)이며 남아가 312명(51.7%)이었다. 응답자의 자녀 수는 2명이 349명(57.9%), 1명(외동)이 171명(28.4%), 3명이 74명(12.3%), 3명 이상이 9명(1.5%)이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가족에 대한 응답(중복)은 아버지가 36.5%, 어머니가 36.1%이며 기타(자녀의 형제, 이모, 고모 등)가 26.2%, 친조부/친조모가 1.2%, 외조부/외조모가 1.1%를 차지했다. 자녀의 주 양육자에 대한 응답(중복)은 어머니가 51.1%로 가장 많았고 부부공동이 38.7%, 아버지가 5.9%, 조부모가 3.9%, 조부모 외 기타 친인척이 .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양육 시 도움받는 곳에 대한 응답(중복)은 자녀의 외조부모가 34.6%로 가장 많았고 '도움주는사람이없다'가 27.7%, 자녀의 친조부모가 25.6%, 아이돌봄서비스가 5.0%, 기타(보육교사, 이웃사촌, 자녀의 형제 등)가 4.7%, 지역아동센터가 1.6%, 베이비시터가 .7% 순이었다.

〈표 Ⅳ-1〉 설문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전체 사례수: 603명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성별	여성	318	52.7	자녀 성별	여아	291	48.3
	남성	285	47.3		남아	312	51.7
연령대	20대	6	1.0	자녀 연령	영아(만0~2세)	106	17.6
					유아(만3~5세)	177	29.4
	30대	237	39.3		초등 저학년 (만6~8세)	128	21.2
	40대	342	56.7				
	50세 이상	18	3.0		초등 고학년 (만9~11세)	192	31.8
거주 지역	수도권	133	22.1	자녀 수	1명(외동아)	171	28.4
	호남권	203	33.7		2명	349	57.9
	중부권	109	18.1		3명	74	12.3
	영남권	158	26.2		3명 이상	9	1.5
월 소득	250만원 미만	34	5.6	자녀와 함께 사는 가족 (중복)	아버지	585	36.5
	250만원~350만원	108	17.9		어머니	596	36.1
	350만원~450만원	135	22.4		친조부/친조모	19	1.2
	450만원~550만원	118	19.6		외조부/외조모	18	1.1
	550만원~650만원	87	14.4				
	650만원 이상	121	20.1		기타	432	26.2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102	16.9	자녀의 주 양육자 (중복)	아버지	36	5.9
	대학 졸업	427	70.8		어머니	313	51.1
					부부공동	237	38.7
	대학원 졸업	65	10.8		조부모	24	3.9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기타	9	1.5		조부모 외 기타 친인척	3	.5
직업	전업주부	115	19.1	양육 시 도움 받는 곳 (중복)	자녀의 친조부모	178	25.6
	회사원및은행원	180	29.9		자녀의 외조부모	241	34.6
	공무원	75	12.4		아이돌봄서비스	35	5.0
	자영업및 판매서비스	86	14.3		베이비시터	5	.7
					지역아동센터	11	1.6
	제조및생산업	52	8.6		도움주는 사람이없다	193	27.7
	교육서비스	44	7.3				
	기타	51	8.5		기타	33	4.7

2) 부모교육 실태조사

(1) 부모교육 필요성

가. 부모교육 필요 여부

영유아 및 초등 자녀를 둔 부모에게 부모교육 필요 여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 603명 중 '필요하다'가 568명(94.2%), '필요하지 않다'가 35명(5.8%)으로 조사되었다. 부모교육 필요 여부는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 거주지역,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거주지역은 호남권, 부모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568명 중 여성은 312명(98.1%)이고 남성은 256명(89.8%)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응답자의 거주지역과 관련해서는 호남권이 응답자의 98.5%, 영남권이 95.6%, 수도권이 90.2%, 중부권은 89.0%가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부모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99.1%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은 98.7%, 교육서비스는 95.5%, 자영업및판매서비스는 95.3%, 회사원및은행원은 91.7%, 제조및생산업은 88.5%, 기타는 88.2% 순이었다. 부모교육 필요 여부는 부모의 성별, 거주지역,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대부분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2〉 부모교육 필요 여부

전체 사례수: 603명

구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x^2(df)$
전체		568(94.2)	35(5.8)	-
성별	여성	312(98.1)	6(1.9)	18.886(1)***
	남성	256(89.8)	29(10.2)	
거주 지역	수도권	120(90.2)	13(9.8)	16.731(3)**
	호남권	200(98.5)	3(1.5)	
	중부권	97(89.0)	12(11.0)	
	영남권	151(95.6)	7(4.4)	
직업	전업주부	114(99.1)	1(.9)	16.748(6)*
	회사원및은행원	165(91.7)	15(8.3)	
	공무원	74(98.7)	1(1.3)	
	자영업및판매서비스	82(95.3)	4(4.7)	
	제조및생산업	46(88.5)	6(11.5)	
	교육서비스	42(95.5)	2(4.5)	
	기타	45(88.2)	6(11.8)	

*p<.05, **p<.01, ***p<.001

나. 부모교육으로 필요한 내용

부모교육으로 필요한 내용에 대한 요구도를 살펴본 결과 주로 자녀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 ‘긍정적 훈육 방법 및 양육태도’, ‘자녀의 인성, 문제행동’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다음으로 부모 자신의 ‘정신건강 및 심리지원’, ‘부모의 자기 계발을 위한 교양 문화’에 대한 요구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아동학대 예방’, ‘부모의 권리 인식 및 인권감수성’에 대한 요구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568명(94.2%)에게 부모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자녀와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이 2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긍정적 훈육 방법 및 양육태도’가 18.2%, ‘자녀의 인성, 문제행동’이 17.7%, ‘부모의 정신건강 및 심리지원(우울증, 스트레스 대처법)’이 7.8%, ‘자녀의 건강과 안전관리’가 7.5%, ‘자녀의 진로 및 교육’이 6.6%, ‘자녀 발달에 대한 이론적 내용’이 5.8%, ‘원만한 부부관계(상담, 성격 차

이, 관계 개선)'가 4.5%, '아동권리교육(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2.7%, '아동학대 예방'이 2.2%, '부모의 자기 계발을 위한 교양, 문화 등'이 1.5%, '부모의 권리 인식 및 인권감수성 향상'이 1.4%, '기타(성교육, 경제교육)'가 .1%로 조사되었다.

〈표 Ⅳ-3〉 부모교육으로 필요한 내용(중복 응답)

중복 응답 계: 1,651

구분	사례수(명)	비율(%)
자녀 발달에 대한 이론적 내용	96	5.8
부모의 정신건강 및 심리지원(우울증, 스트레스 대처법)	128	7.8
자녀와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	396	24.0
부모의 자기 계발을 위한 교양, 문화 등	25	1.5
자녀의 건강과 안전관리	124	7.5
원만한 부부관계(상담, 성격 차이, 관계 개선)	74	4.5
자녀의 인성, 문제행동	293	17.7
부모의 권리 인식 및 인권감수성 향상	23	1.4
자녀의 진로 및 교육	109	6.6
아동학대 예방	36	2.2
긍정적 훈육 방법 및 양육태도	301	18.2
아동권리교육(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45	2.7
기타	1	.1

*기타 : 성교육, 경제교육

다) 부모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부모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를 질문했다. 부모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 응답자들은 '교육을 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 '교육을 받지 않아도 자녀 양육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형식적인 부모교육으로 태도나 인식 변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 순으로 답했다. 부모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부모 대부분은 부모교육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지 않아서 부모교육에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35명(5.8%)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교육을 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가 2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을 받지 않아도 자녀 양육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가 21.9%, '책, 매스컴,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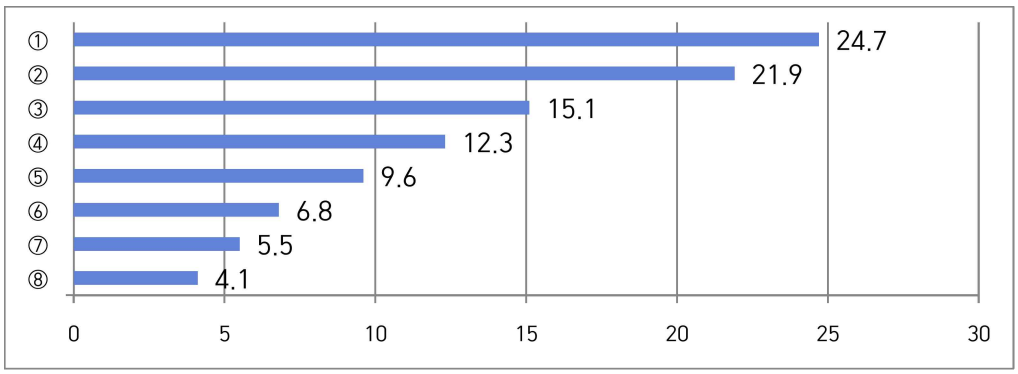
터넷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가 15.1%, '형식적인 부모교육으로 태도나 인식 변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12.3%, '부모교육보다는 양육과 관련한 법, 정책개선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가 9.6%, '부모교육의 내용과 수준이 자녀 양육에 별로 도움이 안 돼서'가 6.8%, '기타(해당 사항 없음)'가 5.5%,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양육하고 있어서(조부모, 육아도우미 등)'가 4.1% 순이었다.

〈표 Ⅳ-4〉 부모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중복 응답)

중복 응답 계: 73

구분	사례수(명)	비율(%)
교육을 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	18	24.7
교육을 받지 않아도 자녀 양육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16	21.9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양육하고 있어서(조부모, 육아도우미 등)	3	4.1
책, 매스컴,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11	15.1
형식적인 부모교육으로 태도나 인식 변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	9	12.3
부모교육의 내용과 수준이 자녀 양육에 별로 도움이 안 돼서	5	6.8
부모교육보다는 양육과 관련한 법, 정책개선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7	9.6
기타	4	5.5

*기타 : 해당 사항 없음



① 교육을 받지 않아도 자녀 양육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② 책, 매스컴,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③ 형식적인 부모교육으로 태도나 인식 변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 ④ 부모교육보다는 양육과 관련한 법, ⑤ 정책개선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⑥ 부모교육의 내용과 수준이 자녀 양육에 별로 도움이 안 돼서, ⑦ 기타(해당 사항 없음), ⑧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양육하고 있어서

[그림 Ⅳ-1] 부모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중복 응답) (단위 : %)

(2) 부모교육 참여 경험

가. 부모교육 참여 여부

영유아 및 초등 자녀를 둔 부모에게 부모교육 참여 여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3.7%(203명)가 부모교육에 참여했다고 답했다. 부모교육 참여 여부는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 연령대, 최종학력, 직업, 자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교육 참여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부모의 연령대와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대체로 부모교육에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교육 참여 비율은 부모의 직업 중 교육서비스, 전업주부, 공무원이 다른 직업군보다 높았다. 그리고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교육에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교육 참여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교육에 참여한 203명 중 여성은 160명이고 전체 여성 응답자 중 50.3%가 부모교육에 참여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남성은 43명이고 전체 남성 응답자 중 15.1%가 부모교육에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부모교육 참여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응답자의 연령대와 관련해서는 40대가 응답자의 37.4%, 30대는 30.4%, 20대는 16.7%, 50세 이상은 11.1%가 부모교육에 참여했다고 응답했다. 50세 이상의 부모를 제외하면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교육의 참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교육에 참여한 응답자의 최종학력을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은 44.6%, 대학 졸업은 34.2%, 고등학교 졸업은 22.5%로,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교육 참여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모교육에 참여한 응답자의 직업은 교육서비스가 63.6%로 가장 많았고 전업주부는 57.4%, 공무원은 44.0%, 자영업및판매서비스는 24.4%, 회사원및은행원은 21.1%, 기타(무직, 프리랜서, 강사, 건설업, 운송업 등)는 19.6%, 제조및생산업은 13.5% 순이었다. 교육서비스, 전업주부, 공무원의 직업군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부모교육 참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교육 참여율은 초등 고학년 전체 부모 192명 중 77명(40.1%), 초등 저학년 전체 부모 128명 중 44명(34.4%), 유아 전체 부모 177명 중 59명(33.3%), 영아 전체 부모 106명 중 23명(21.7%)이 부모교육에 참여했다고 응답했다. 자녀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모교육 참여 비율이 높은 것은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부모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

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Ⅳ-5〉 부모교육 참여 경험 여부

전체 사례수: 603명

구분		있다(%)	없다(%)	$x^2(df)$
전체		203(33.7)	400(66.3)	-
성별	여성	160(50.3)	158(49.7)	83.518(1)***
	남성	43(15.1)	242(84.9)	
연령대	20대	1(16.7)	5(83.3)	8.189(3)*
	30대	72(30.4)	165(69.6)	
	40대	128(37.4)	214(62.6)	
	50세 이상	2(11.1)	16(88.9)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23(22.5)	79(77.5)	11.118(3)*
	대학 졸업	146(34.2)	281(65.8)	
	대학원 졸업	29(44.6)	36(55.4)	
	기타	5(55.6)	4(44.4)	
직업	전업주부	66(57.4)	49(42.6)	80.288(6)***
	회사원및은행원	38(21.1)	142(78.9)	
	공무원	33(44.0)	42(50.6)	
	자영업및판매서비스	21(24.4)	65(75.6)	
	제조및생산업	7(13.5)	45(86.5)	
	교육서비스	28(63.6)	16(36.4)	
	기타	10(19.6)	41(80.4)	
자녀 연령	영아(만0~2세)	23(21.7)	83(78.3)	10.400(3)*
	유아(만3~5세)	59(33.3)	118(66.7)	
	초등 저학년(만6~8세)	44(34.4)	84(65.6)	
	초등 고학년(만9~11세)	77(40.1)	115(59.9)	

*p<.05, **p<.01, ***p<.001

나. 가장 최근에 참여했던 부모교육 경험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부모가 가장 최근에 참여했던 부모교육의 경험을 조사했다. 부모가 참여한 교육은 주로 평일(월~목요일) 오전 시간대에 실시되었으며 부모는 자녀의 교육기관을 통해 참여했다. 응답자들은 부모교육의 개선점으로 '부모교육 주제 및 내용'을 가장 많이 답했다. 여러 개선점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부모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가장 최근 참여한 부모교육 경험에 관한 결과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203명(33.7%)을 대상으로 가장 최근에

참여했던 부모교육의 경험을 질문하여 부모교육의 실태를 조사했다. 가장 최근에 참여했던 부모교육의 경험은 월~목요일(69.0%), 오전(50.7%) 시간대가 많았으며 소요시간은 1시간~1시간30분(45.3%)의 비율이 높았다. 교육횟수는 1년에 1~2회(63.1%), 수강형태는 소집단(15명 이내) 43.8%, 참여경로는 교육기관의 가정통신문 및 홈페이지(63.1%), .이참여했던 기관은 자녀 교육기관(50.2%)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했던 부모교육의 개선점으로는 '부모교육 주제 및 내용'이라고 응답한 부모가 27.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교육 시간 중 자녀의 보호'가 17.2%, '부모교육 실시 시간'이 15.3%, '사전 안내 및 홍보 방식'이 13.3%, '강사'가 10.3%, '기타(일방적인 교육 형태, 장소 접근성의 불편함)'가 10.3%, '부모교육 실시 장소'가 5.9% 순으로 조사되었다. 참여했던 부모교육의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50.2%)'했다고 응답했으며 효과는 '도움이 되었다(49.8%)'라고 응답했다.

〈표 Ⅳ-6〉 가장 최근에 참여했던 부모교육 경험

응답 사례수: 203명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참여했던 요일	월~목요일	140	69.0	참여했던 시간대	오전	103	50.7
	금요일	16	7.9		오후	51	25.1
	토요일	34	16.7		저녁	35	17.2
	일요일및공휴일	13	6.4		기타	14	6.9
1회 실시 소요시간	30분	10	4.9	참여했던 교육횟수	수시참여	19	9.4
	30분~1시간 미만	53	26.1		1년에 1~2회	128	63.1
	1시간~1시간 30분	92	45.3		한학기에 1~2회	31	15.3
	1시간 30분~2시간	39	19.2		한학기에 3~4회	6	3.0
	2시간~2시간 30분	5	2.5		한학기에 4회이상	8	3.9
	2시간 30분 이상	4	2.0		기타	11	5.4
참여했던 수강형태	개인	13	6.4	참여경로	교육기관의 가정통신문 및 홈페이지	128	63.1
	소집단	89	43.8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15명이내)				교육기관의 교사 권유	28	13.8
	중집단 (15~30명)	48	23.6		주변 지인의 권유	17	8.4
	대집단 (30명이상)	45	22.2		인터넷 및 방송 매체 홍보	21	10.3
	기타	8	3.9		기타	9	4.4
참여했던 기관	공공기관(교육청, 시청, 구청 등)	58	28.6	참여했던 부모교육 개선점	부모교육 주제 및 내용	56	27.6
	자녀의 교육기관	102	50.2		강사	21	10.3
	직장(찾아가는 학부모교육)	5	2.5		부모교육 실시 시간	31	15.3
	방송매체	8	3.9		부모교육 실시 장소	12	5.9
	NGO단체 (유니세프, 초록우산 등)	1	.5		교육시간 중 자녀의 보호	35	17.2
	개인 혹은 사설기관	22	10.8		사전 안내 및 홍보 방식	27	13.3
	기타	7	3.4		기타	21	10.3
참여했던 부모교육 만족도	매우 불만족	1	.5	참여했던 부모교육 효과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2	1.0
	대체로 불만족	6	3.0		도움이 되지 않았다.	0	.0
	보통이다	64	31.5		보통이다.	72	35.5
	대체로 만족	102	50.2		도움이 되었다.	101	49.8
	매우 만족	30	14.8		매우 도움이 되었다.	28	13.8

가) 참여했던 부모교육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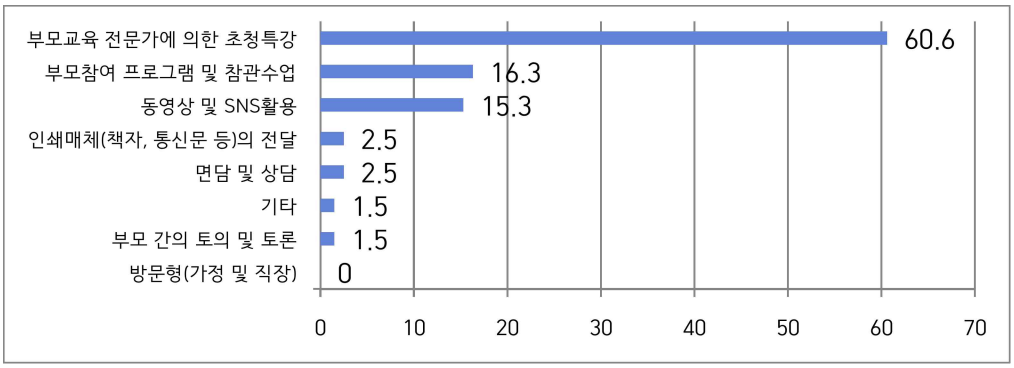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203명(33.7%)에게 가장 최근에 참여했던 부모교육의 유형을 질문한 결과 '부모교육 전문가에 의한 초청 특강'이라고 응답한 부모가 60.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모참여 프로그램 및 참관수업'이

16.3%, '동영상 및 SNS활용'이 15.3%, '면담 및 상담'이 2.5%, '인쇄매체(책자, 통신문)의 전달'이 2.5%, '부모 간의 토의 및 토론'이 1.5%, 기타가 1.5%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방문형(가정 및 직장)' 형태의 부모교육에 참여했던 부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7〉 가장 최근에 참여했던 부모교육의 유형

응답 사례수: 203명

구분	사례수(명)	비율(%)
부모교육 전문가에 의한 초청 특강	123	60.6
부모 간의 토의 및 토론	3	1.5
부모참여 프로그램 및 참관수업	33	16.3
면담 및 상담	5	2.5
인쇄매체(책자, 통신문 등)의 전달	5	2.5
동영상 및 SNS활용	31	15.3
방문형(가정 및 직장)	0	.0
기타	3	1.5



[그림 Ⅳ-2] 가장 최근에 참여했던 부모교육의 유형 (단위 : %)

나) 참여했던 부모교육 주제와 내용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203명(33.7%)에게 가장 최근에 참여했던 부모교육의 주제와 내용을 질문한 결과 '자녀와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이라고 응답한 부모가 30.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자녀 발달에 대한 이론적 내용'이 16.7%, '자녀의 진로 및 교육'이 16.3%, '긍정적 훈육 방법 및 양육태도'가

12.8%, ‘자녀의 인성, 문제행동’이 8.4%, ‘자녀의 건강과 안전관리’가 3.0%, ‘아동권리교육’이 3.0%, ‘부모의 정신건강 및 심리지원’이 2.5%, ‘부모의 자기 계발을 위한 교양, 문화 등’이 2.5%, ‘아동학대 예방’이 2.0%, ‘기타’가 2.0%, ‘부모의 권리 인식 및 인권감수성 향상’이 .5% 순으로 조사되었다. ‘원만한 부부관계’를 주제와 내용으로 한 부모교육 경험은 없었다.

〈표 Ⅳ-8〉 가장 최근에 참여했던 부모교육의 주제와 내용

응답 사례수: 203명

구분	사례수(명)	비율(%)
자녀 발달에 대한 이론적 내용	34	16.7
부모의 정신건강 및 심리지원	5	2.5
자녀와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	62	30.5
부모의 자기 계발을 위한 교양, 문화 등	5	2.5
자녀의 건강과 안전관리	6	3.0
원만한 부부관계	0	.0
자녀의 인성, 문제행동	17	8.4
부모의 권리 인식 및 인권감수성 향상	1	.5
자녀의 진로 및 교육	33	16.3
아동학대 예방	4	2.0
긍정적 훈육 방법 및 양육태도	26	12.8
아동권리교육	6	3.0
기타	4	2.0

다.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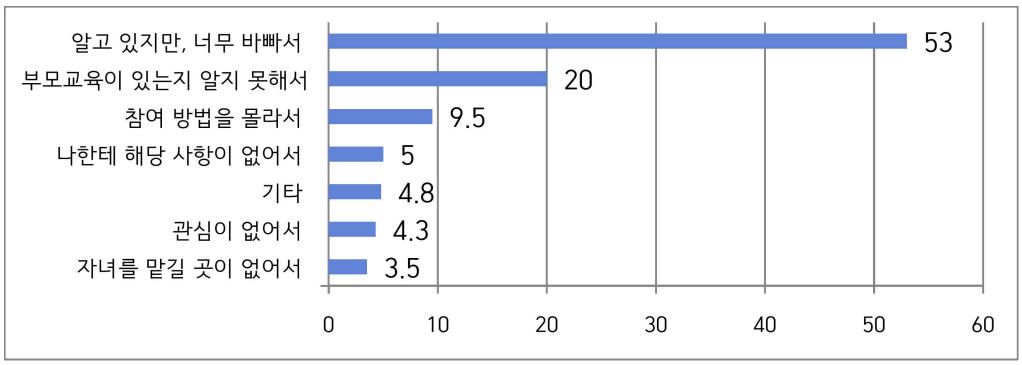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응답자 400명(66.4%)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알고 있지만, 너무 바빠서’라고 응답한 부모가 53.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모교육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가 20.0%, ‘참여 방법을 몰라서’가 9.5%, ‘나한테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해서’가 5.0%, ‘기타’가 4.8%, ‘관심이 없어서’가 4.3%,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서’가 3.5% 순으로 조사되었다.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기타 이유로는 직장 생활로 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없어서, 부모교육 시간이 주중 오전이 대부분이어서,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고 있어서(친구, TV, 유튜브, 블로그 등), 부모교육의 내용이 부담스러워서, 부모교육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배우자가 참여해서, 부모교육 장소

와에 접근이 어려워서 등이 있었다.

〈표 Ⅳ-9〉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응답 사례수: 400명

구분	사례수(명)	비율(%)
알고 있지만, 너무 바빠서	212	53.0
부모교육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	80	20.0
관심이 없어서	17	4.3
나한테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해서	20	5.0
참여 방법을 몰라서	38	9.5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서	14	3.5
기타	19	4.8



[그림 Ⅳ-3]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단위 : %)

3) 부모의 인권 및 아동권리 인식

(1) 인권 인식

가. 평소 '인권'을 접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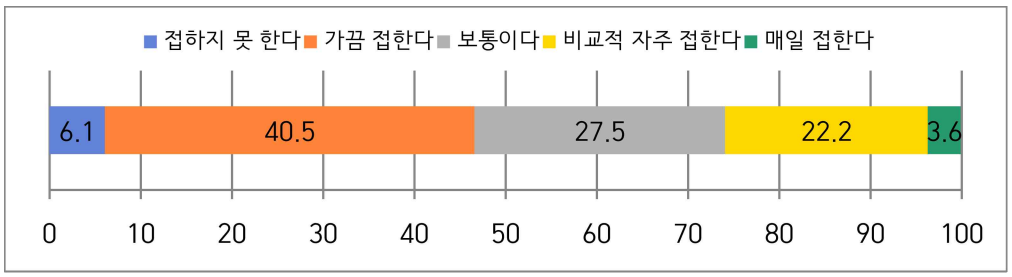
부모가 평소 '인권'이라는 단어를 접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가끔 접한다'가 40.5%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가 27.5%, '비교적 자주 접한다'가 22.2%, '접하지 못한다'가 6.1%, '매일 접한다'가 3.6%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영유아 및

초등 자녀를 둔 부모들은 평소 '인권'이라는 단어를 가끔 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10〉 평소 '인권'을 접하는 정도

단위 : 명(%)

구분	접하지 못 한다	가끔 접한다	보통이다	비교적 자주 접한다	매일 접한다
전체 603명	37(6.1)	244(40.5)	166(27.5)	134(22.2)	22(3.6)



[그림 Ⅳ-4] 평소 '인권'을 접하는 정도 (단위 : %)

나. 평소 '인권'을 접하는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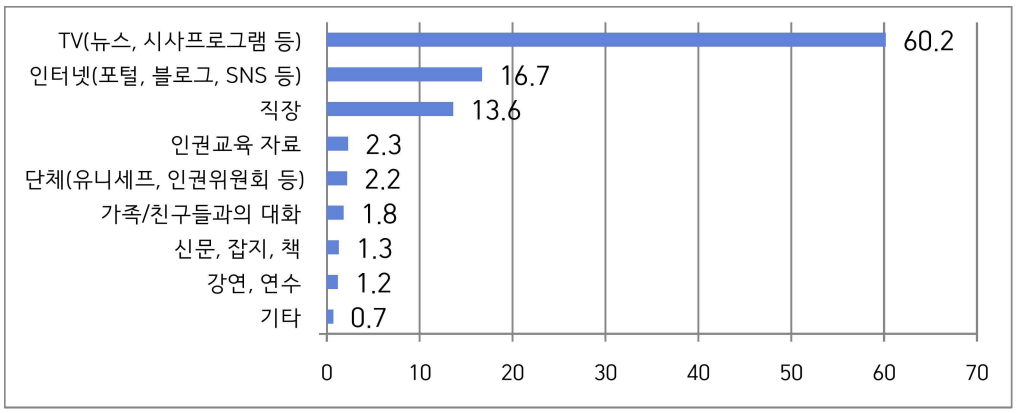
설문에 응답한 영유아 및 초등 자녀를 둔 부모들은 TV(뉴스, 시사프로그램 등) 및 인터넷(포털, 블로그, SNS 등)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주로 '인권'을 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가 평소 '인권'을 접하는 경로를 조사한 결과 'TV(뉴스, 시사프로그램 등)'가 60.2%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포털, 블로그, SNS 등)'이 16.7%, '직장'이 13.6%, '인권교육 자료'가 2.3%, '단체 및 기관(유니세프, 인권위원회 등)'이 2.2%, '가족/친구들과의 대화'가 1.8%, '신문, 잡지, 책'이 1.3%, '강연, 연수'가 1.2%, '기타(유아교육기관, 성경)'가 .7%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11〉 평소 '인권'을 접하는 경로

전체 사례수 : 603명

구분	사례수(명)	비율(%)
TV(뉴스, 시사프로그램 등)	363	60.2
직장	82	13.6
인권교육 자료	14	2.3
인터넷(포털, 블로그, SNS 등)	101	16.7
강연, 연수	7	1.2
가족/친구들과의 대화	11	1.8
단체 및 기관(유니세프, 인권위원회 등)	13	2.2
신문, 잡지, 책	8	1.3
기타	4	.7

*기타 : 유아교육기관, 성경



[그림 Ⅳ-5] 평소 '인권'을 접하는 경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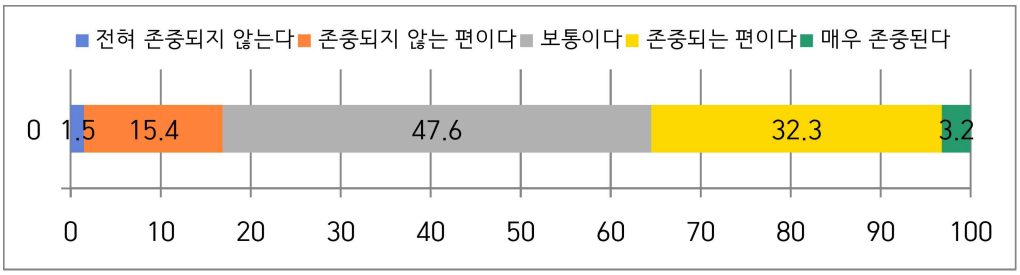
다. 우리 사회에서 '인권' 존중 정도

우리 사회에서 인권이 어느 정도 존중되고 있다고 느끼는지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다'가 47.6%로 가장 많았고 '존중되는 편이다'가 32.3%,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가 15.4%, '매우 존중된다'가 3.2%,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가 1.5%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영유아 및 초등 자녀를 둔 부모들은 '보통이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인권'이 존중되는 편이라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12〉 우리 사회에서 '인권' 존중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존중되는 편이다	매우 존중된다
전체 603명	9(1.5)	93(15.4)	287(47.6)	195(32.3)	19(3.2)



[그림 Ⅳ-6] 우리 사회에서 '인권' 존중 정도 (단위 : %)

라. 인권교육 경험 여부

영유아 및 초등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인권교육 경험 여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 603명 중 '있다'가 145명(24.0%), '없다'가 458명(76.0%)으로 나타나 인권교육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권교육 경험 여부는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최종학력,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인권교육 경험이 있으며 부모의 직업은 공무원과 교육서비스 직업군이 다른 직업군보다 인권교육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권교육 경험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최종학력을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은 38.5%, 대학 졸업은 24.1%, 고등학교 졸업은 15.7%, 기타(초중 졸업, 대학 중퇴 및 휴학)는 11.1%로,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인권교육 경험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응답자의 직업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이 응답자의 64.0%, 교육서비스는 38.6%, 기타(무직, 프리랜서, 스포츠 강사, 건설업, 운송업 등)는 23.5%, 회사원및은행원은 18.9%, 전업주부는

15.7%, 자영업및판매서비스는 14.0%, 제조및생산업은 7.7%가 인권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공무원과 교육서비스 직업군이 다른 직업군 보다 인권교육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3〉 인권교육 경험 여부

전체 사례수: 603명

구분		있다(%)	없다(%)	$x^2(df)$
전체		145(24.0)	458(76.0)	-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16(15.7)	86(84.3)	12.124(3)**
	대학 졸업	103(24.1)	324(75.9)	
	대학원 졸업	25(38.5)	40(61.5)	
	기타	1(11.1)	8(88.9)	
직업	전업주부	18(15.7)	97(84.3)	90.155(6)***
	회사원및은행원	34(18.9)	146(81.1)	
	공무원	48(64.0)	27(36.0)	
	자영업및판매서비스	12(14.0)	74(86.0)	
	제조및생산업	4(7.7)	49(92.3)	
	교육서비스	17(38.6)	27(61.4)	
	기타	12(23.5)	39(76.5)	

**p<.01, ***p<.001

(2) 아동권리 인식

가. 부모의 '아동권리'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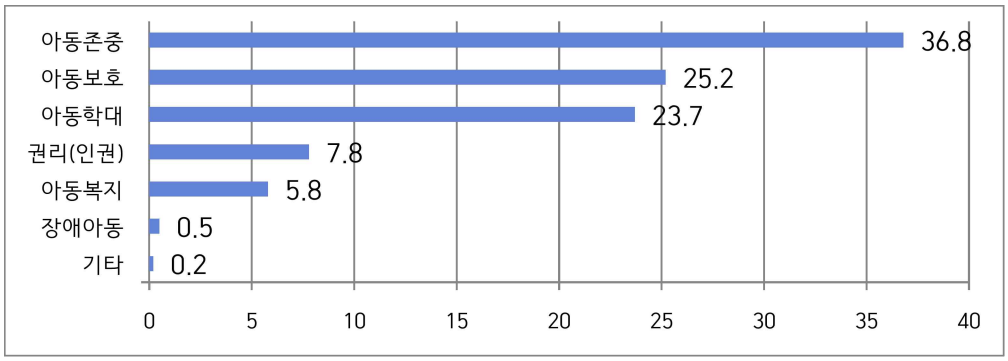
영유아 및 초등 자녀를 둔 부모가 '아동권리'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아동존중'이 36.8%로 가장 많았고 '아동보호'가 25.2%, '아동학대'가 23.7%, '권리(인권)'가 7.8%, '아동복지'가 5.8%, '장애아동'이 .5%, '기타(법, 제도)'가 .2% 순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및 초등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동권리'를 주로 아동존중, 아동학대, 아동보호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동권리'를 아동복지, 권리(인권)로 인식하는 비율은 낮았다.

〈표 Ⅳ-14〉 부모의 '아동권리' 인지도

전체 사례수: 603명

구분	사례수(명)	비율(%)
아동존중	222	36.8
아동학대	143	23.7
아동보호	152	25.2
장애아동	3	.5
아동복지	35	5.8
권리(인권)	47	7.8
기타	1	.2

*기타 : 법, 제도



[그림 Ⅳ-7] 부모의 '아동권리' 인지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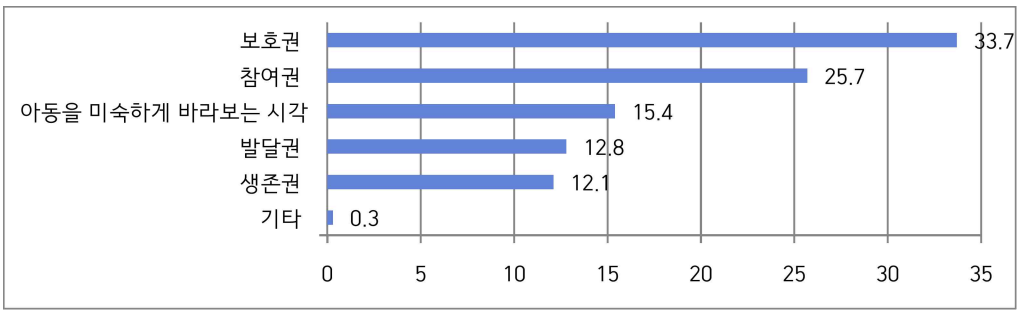
나. 우리 사회에서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아동권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아동권리는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보호권(모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이 33.7%로 가장 많았고 '참여권(의사존중 및 참여)'이 25.7%, '아동을 미숙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15.4%, '발달권(잠재능력 발달, 놀이시간 보장)'이 12.8%, '생존권(건강과 위생, 적절한 생활수준)'이 12.1%, '기타'가 .3%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영유아 및 초등 자녀를 둔 부모들이 우리 사회에서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아동권리는 보호권과 참여권이었다.

〈표 Ⅳ-15〉 우리 사회에서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아동권리

전체 사례수: 603명

구분	사례수(명)	비율(%)
생존권(건강과 위생, 적절한 생활 수준)	73	12.1
보호권(모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203	33.7
발달권(잠재능력 발달, 놀이시간 보장)	77	12.8
참여권(의사존중 및 참여)	155	25.7
아동을 미숙하게 바라보는 시각	93	15.4
기타	2	.3



[그림 Ⅳ-8] 우리 사회에서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아동권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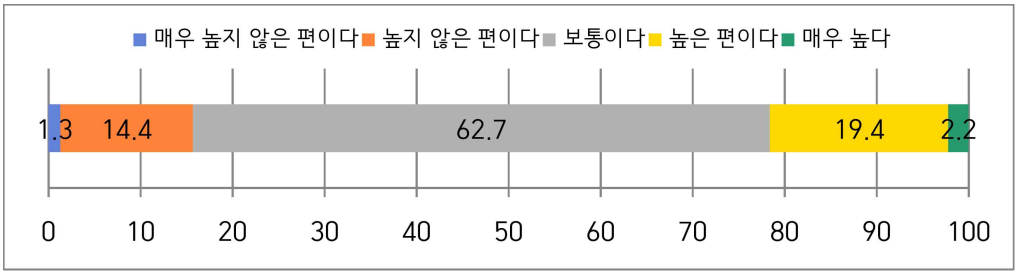
다. 부모가 인지하는 '아동권리' 인식 정도

부모가 인지하는 '아동권리' 인식 정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다'가 62.7%로 가장 많았고 '높은 편이다'가 19.4%, '높지 않은 편이다'가 14.4%, '매우 높다'가 2.2%, '매우 높지 않은 편이다'가 1.3%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영유아 및 초등 자녀를 둔 부모들은 '보통이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Ⅳ-16〉 부모가 인지하는 '아동권리' 인식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높지 않은 편이다	높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높은 편이다	매우 높다
전체 603명	8(1.3)	87(14.4)	378(62.7)	117(19.4)	13(2.2)



[그림 Ⅳ-9] 부모가 인지하는 '아동권리' 인식 정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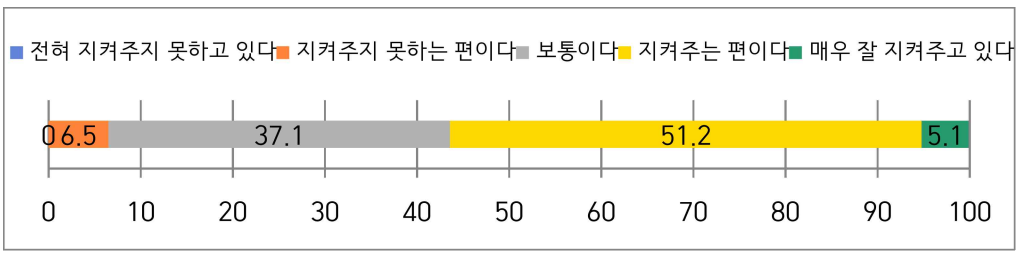
라. 부모가 인지하는 자녀의 '아동권리' 존중 정도

부모가 자녀의 권리를 어느 정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지켜주는 편이다'가 51.2%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가 37.1%, '지켜주지 못하는 편이다'가 6.5%, '매우 잘 지켜주고 있다'가 5.1%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영유아 및 초등 자녀를 둔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의 권리를 지켜주는 편이라고 생각했으며 '전혀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17〉 부모가 인지하는 자녀의 '아동권리' 존중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지켜주지 못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지켜주는 편이다	매우 잘 지켜주고 있다
전체 603명	0(.0)	39(6.5)	224(37.1)	309(51.2)	31(5.1)



[그림 Ⅳ-10] 부모가 인지하는 자녀의 '아동권리' 존중 정도 (단위 : %)

마. 아동권리교육 경험 여부

영유아 및 초등 자녀를 둔 부모에게 아동권리교육 경험 여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 603명 중 '있다'가 134명(22.2%), '없다'가 469명(77.8%)으로 나타나 아동권리교육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권리교육 경험 여부는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 최종학력,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교육 경험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부모의 최종학력은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권리교육 경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의 직업은 교육서비스와 공무원이 다른 직업군보다 아동권리교육 경험 비율이 높았다. 아동권리교육 경험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권리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 134명 중 여성은 99명이고 전체 여성 응답자 중 31.1%가 아동권리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남성은 35명이고 전체 남성 응답자 중 12.3%가 아동권리교육 경험 있다고 응답해 여성이 남성보다 아동권리교육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권리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최종학력을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은 응답자의 35.4%, 대학 졸업은 23.0%, 고등학교 졸업은 11.8%, 기타(초중 졸업, 대학 중퇴 및 휴학)는 11.1%로,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권리교육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직업과 관련해서는 교육서비스가 응답자의 56.8%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은 53.3%, 전업주부는 23.5%, 회사원및은행원은 12.8%, 기타(무직, 프리랜서, 스포츠 강사, 건설업, 운송업 등)는 11.8%, 자영업및판매서비스는 10.5%, 제조및생산업은 7.7% 순으로 아동권리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교육서비스와 공무원 직업군이 다른 직업군보다 아동권리교육 경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8〉 아동권리교육 경험 여부

전체 사례수: 603명

구분		있다(%)	없다(%)	$x^2(df)$
전체		134(22.2)	469(77.8)	-
성별	여성	99(31.1)	219(68.9)	30.903(1)***
	남성	35(12.3)	250(87.7)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12(11.8)	90(88.2)	13.743(3)**
	대학 졸업	98(23.0)	329(77.0)	

구분		있다(%)	없다(%)	$x^2(df)$
	대학원 졸업	23(35.4)	42(64.6)	
	기타	1(11.1)	8(88.9)	
직업	전업주부	27(23.5)	88(76.5)	98.320(6)***
	회사원및은행원	23(12.8)	157(87.2)	
	공무원	40(53.3)	35(46.7)	
	자영업및판매서비스	9(10.5)	77(89.5)	
	제조및생산업	4(7.7)	48(92.3)	
	교육서비스	25(56.8)	19(43.2)	
	기타	6(11.8)	45(88.2)	

*p<.05, **p<.01, ***p<.001

4) 부모의 아동학대 및 체벌 인식

(1)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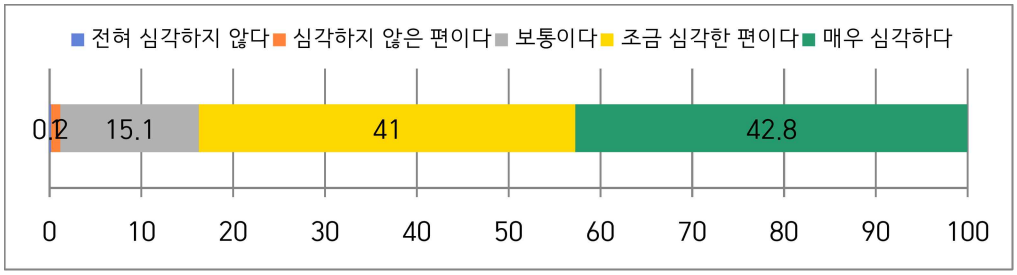
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의 심각성 정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의 심각성 정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 심각하다'가 42.8%로 가장 많았고 '조금 심각한 편이다'가 41.0%, '보통이다'가 15.1%,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가 1.0%, '전혀 심각하지 않다'가 .2%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영유아 및 초등 자녀를 둔 부모들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19〉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의 심각성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조금 심각한 편이다	매우 심각하다
전체 603명	1(.2)	6(1.0)	91(15.1)	247(41.0)	258(42.8)



[그림 Ⅳ-11]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의 심각성 정도 (단위 : %)

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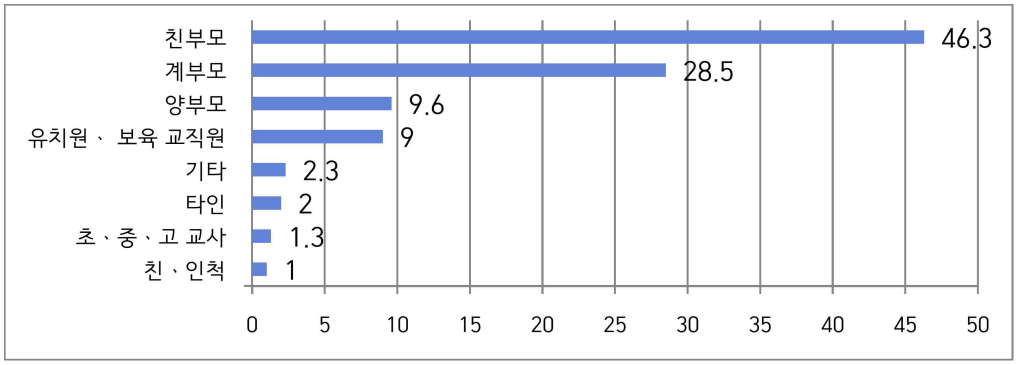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6.3%가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한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계부모가 28.5%, 양부모가 9.6%, 유치원・보육 교직원이 9.0%, 기타(주양육자, 취약계층, 학교 교사 등)가 2.3%, 타인이 2.0%, 초・중・고 교사가 1.3%, 친・인척이 1.0% 순이었다. 설문에 응답한 영유아 및 초등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부모(친부모, 계부모, 양부모)인 경우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Ⅳ-20〉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인식

전체 사례수: 603명

구분	사례수(명)	비율(%)
친부모	279	46.3
계부모	172	28.5
양부모	58	9.6
친・인척	6	1.0
초・중・고 교사	8	1.3
유치원・보육 교직원	54	9.0
타인	12	2.0
기타	14	2.3

*기타 : 주양육자, 취약계층, 학교 교사 등



[그림 Ⅳ-12]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인식 (단위 : %)

(2)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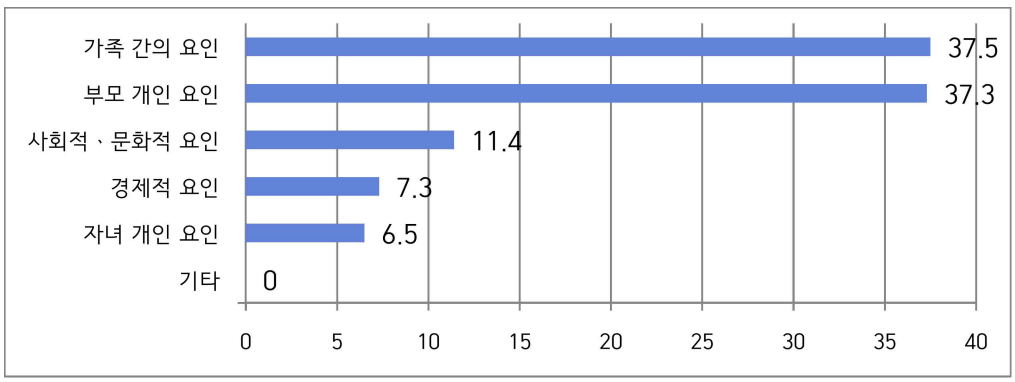
가. 가정 내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

설문에 응답한 영유아 및 초등 자녀를 둔 부모들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을 자녀나 사회·문화적 요인보다 부모와 가족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부모가 인식하고 있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은 '가족 간의 요인(가정폭력,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부모-자녀 간의 애착 부족 등)'이 37.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모 개인 요인(장애, 학대 경험, 중독,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 부족 등)'이 37.3%, '사회적 · 문화적 요인(사회적 지지의 체계 부족, 체벌에 대한 인식 및 수용, 학대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및 미비 등)'이 11.4%, '경제적 요인(실업, 빈곤 등)'이 7.3%, '자녀 개인 요인(장애, 자녀의 고집, 떼쓰기와 같은 특성)'이 6.5% 순이었다.

〈표 Ⅳ-21〉 가정 내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

전체 사례수: 603명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부모 개인 요인 (장애, 학대 경험, 중독,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 부족 등)	225	37.3
가족 간의 요인 (가정폭력,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부모-자녀 간의 애착 부족 등)	226	37.5
자녀 개인 요인(장애, 자녀의 고집, 떼쓰기와 같은 특성)	39	6.5
경제적 요인(실업, 빈곤 등)	44	7.3
사회적·문화적 요인(사회적 지지의 체계 부족, 체벌에 대한 인식 및 수용, 학대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및 미비 등)	69	11.4
기타	0	.0



[그림 Ⅳ-13] 가정 내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 (단위 : %)

나.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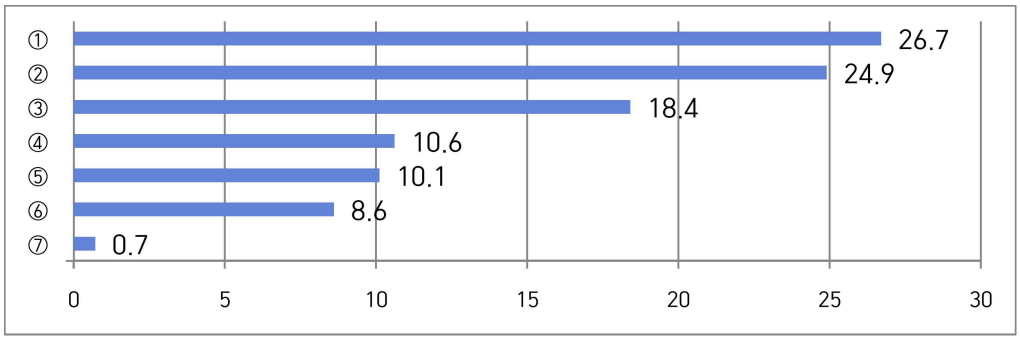
설문에 응답한 영유아 및 초등 자녀를 둔 부모들은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양육 어려움에 대한 부모의 스트레스 해소'를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할 방안을 조사한 결과 '양육 어려움에 대한 부모의 스트레스 해소(상담 및 관리

방법)'라고 답한 응답자가 26.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학대 부모의 처벌 강화 및 대응 체계 등 제도 개선'이 24.9%, '부모에 대한 인권교육 및 아동권리교육'이 18.4%, '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아동학대예방교육'이 10.6%,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10.1%, '아동학대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방법 개선'이 8.6%, '기타'가 .7% 순이었다.

〈표 Ⅳ-22〉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

전체 사례수: 603명

구분	사례수(명)	비율(%)
학대 부모의 처벌 강화 및 대응 체계 등 제도 개선	150	24.9
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아동학대예방교육	64	10.6
부모에 대한 인권교육 및 아동권리교육	111	18.4
양육 어려움에 대한 부모의 스트레스 해소(상담 및 관리방법)	161	26.7
아동학대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방법 개선	52	8.6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61	10.1
기타	4	.7



① 양육 어려움에 대한 부모의 스트레스 해소, ② 학대 부모의 처벌 강화 및 대응 체계 등 제도 개선, ③ 부모에 대한 인권교육 및 아동권리교육, ④ 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아동학대예방교육, 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⑥ 아동학대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방법 개선, ⑦ 기타

[그림 Ⅳ-14]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 (단위 : %)

(3) 부모의 체벌에 대한 인식

가. 자녀에게 가하는 체벌 행위에 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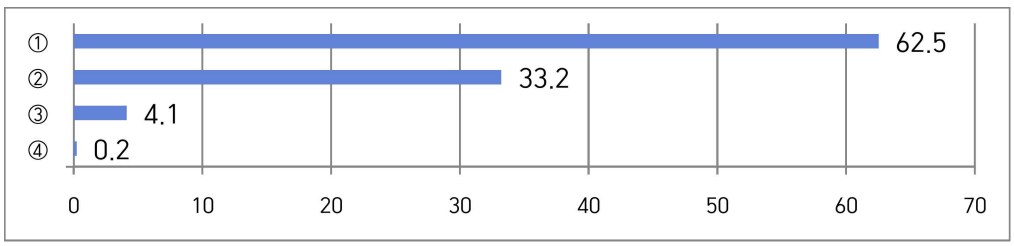
설문에 응답한 영유아 및 초등 자녀를 둔 부모들은 대부분 훈육을 위한 체벌이 필요하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에게 체벌하는 행위에 대한 부모의 생각을 조사한 결과 '체벌이 올바르다고 할 수 없지만, 훈육이나 교육의 목적이 있을 경우 허용될 수 있다'가 62.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어떤 경우에도 체벌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가 33.2%, '체벌은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는 데 효과적이므로 필요하다'가 4.1%, '기타(체벌은 허용되지 않지만 하게 된다, 체벌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행하는 것 같다)'가 .2% 순이었다.

〈표 Ⅳ-23〉 자녀에게 가하는 체벌 행위에 관한 생각

전체 사례수: 603명

구분	사례수(명)	비율(%)
체벌은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는 데 효과적이므로 필요하다.	25	4.1
체벌이 올바르다고 할 수 없지만, 훈육이나 교육의 목적이 있을 경우 허용될 수 있다.	377	62.5
어떤 경우에도 체벌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200	33.2
기타	1	.2

*기타 : 체벌은 허용되지 않지만 하게 된다, 체벌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행하는 것 같다



① 체벌이 올바르다고 할 수 없지만, 훈육이나 교육의 목적이 있을 경우 허용될 수 있다, ② 어떤 경우에도 체벌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③ 체벌은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는 데 효과적이므로 필요하다, ④ 기타

[그림 Ⅳ-15] 자녀에게 가하는 체벌 행위에 관한 생각 (단위 : %)

나. 양육과정에서 자녀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의심한 상황

부모가 양육과정에서 자녀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의심한 상황을 조사한 결과 '자녀를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거나 자녀의 의견을 무시할 때'가 45.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자녀의 놀이, 휴식 및 여가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가 25.4%, '자녀의 권리를 침해한 적 없다'가 20.4%, '자녀를 유해한 환경(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약물)으로부터 보호해 주지 못할 때'가 4.8%, '자녀에게 적절한 의식주를 해결해 주지 않거나 자녀를 위생적으로 관리해 주지 못할 때'가 2.3%, '기타'가 1.3% 순이었다. 자녀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의심한 상황의 기타 내용에는 낮잠을 강제로 재울 때, 자녀의 의견을 모두 들어주지 못할 때, 자녀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강제로 학습을 시킬 때, 어떤 행동을 제한할 때 등이 있었다.

〈표 Ⅳ-24〉 양육과정에서 자녀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의심한 상황

전체 사례수: 603명

구분	사례수(명)	비율(%)
자녀의 권리를 침해한 적 없다.	123	20.4
자녀에게 적절한 의식주를 해결해 주지 않거나 자녀를 위생적으로 관리해 주지 못할 때	14	2.3
자녀를 유해한 환경(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약물)으로부터 보호해 주지 못할 때	29	4.8
자녀의 놀이, 휴식 및 여가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153	25.4
자녀를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거나 자녀의 의견을 무시할 때	276	45.8
기타	8	1.3

*기타 : 낮잠을 강제로 재울 때, 자녀의 의견을 모두 들어주지 못할 때, 자녀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강제로 학습을 시킬 때, 어떤 행동을 제한할 때 등

다. 양육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상황

부모가 양육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상황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자녀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폭언을 했을 때'가 40.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자녀를 학대한 적 없다'가 34.2%, '자녀를 체벌할 때(아동을 때리거나 벌하는 행위)'가 18.2%, '자녀를 돌보지 못하거나 보호자 없이 방치할 때'가 6.1%, '기타'가 1.0%, '자녀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을 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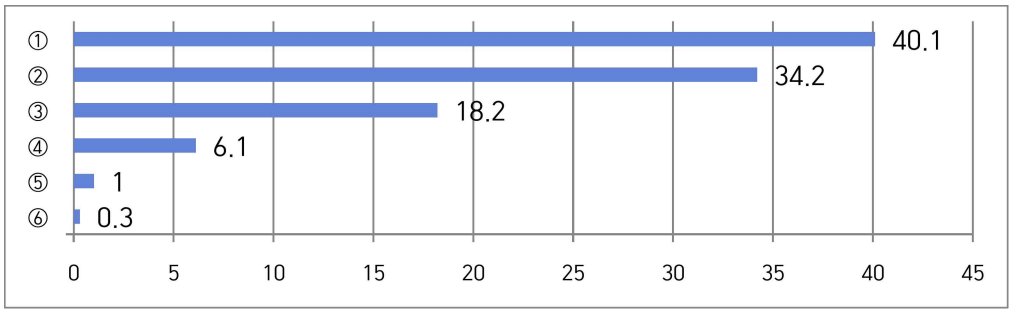
.3% 순이었다. 아동학대로 의심될 상황의 기타 내용에는 훈육 시, 간식을 원하는 만큼 주지 않을 때, 부부 싸움할 때, 정서적 불안감을 줄 때, 큰 소리를 낼 때 등이 있었다.

〈표 Ⅳ-25〉 양육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상황

전체 사례수: 603명

구분	사례수(명)	비율(%)
자녀를 학대한 적 없다.	206	34.2
자녀를 체벌할 때(아동을 때리거나 벌하는 행위)	110	18.2
자녀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폭언을 했을 때	242	40.1
자녀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을 때	2	.3
자녀를 돌보지 못하거나 보호자 없이 방치할 때	37	6.1
기타	6	1.0

*기타 : 훈육 시, 큰 소리를 낼 때, 간식을 원하는 만큼 주지 않을 때, 부부 싸움 할 때, 정서적 불안감을 줄 때



① 자녀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폭언을 했을 때, ② 자녀를 학대한 적 없다, ③ 자녀를 체벌할 때(아동을 때리거나 벌하는 행위), ④ 자녀를 돌보지 못하거나 보호자 없이 방치할 때, ⑤ 기타, ⑥ 자녀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을 때

[그림 Ⅳ-16] 양육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상황 (단위 : %)

(4) 부모교육, 인권교육, 아동권리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및 체벌에 대한 인식 정도의 차이

가. 부모교육 참여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및 체벌에 대한 인식 정도의 차이

부모교육 참여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및 체벌에 대한 인식 정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아동학대 인식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부모들이 참여한 경험이 없는 부모보다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부모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도는 '매우 심각하다'가 5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조금 심각한 편이다'가 37.9%, '보통이다'가 10.8%,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가 .5% 순이었다. 반면,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부모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도는 '조금 심각하다'가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매우 심각하다'가 38.5%, '보통이다'가 17.3%, '조금 심각하다'가 1.3%, '전혀 심각하지 않다'가 .3% 순이었다.

〈표 Ⅳ-26〉 부모교육 참여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및 체벌에 대한 인식 차이

응답 사례수: 603명,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x^2(df)$
아동학대 인식			
전혀 심각하지 않다	.0	.3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5	1.3	
보통이다	10.8	17.3	10.163(4)*
조금 심각한 편이다	37.9	42.5	
매우 심각하다	50.7	38.5	
전체	100(203)	100(400)	
체벌 행위 인식			
체벌은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는 데 효과적이므로 필요하다.	4.4	4.0	
체벌이 올바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훈육이나 교육의 목적이 있는 경우 허용될 수 있다.	56.2	65.8	6.145(3)
어떤 경우에도 체벌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39.4	30.0	
기타	.0	.2	
전체	100(203)	100(400)	

*p<.05

나. 인권교육 참여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및 체벌에 대한 인식 정도의 차이

인권교육 참여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및 체벌에 대한 인식 정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체벌 행위에 대한 인식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교육 참여 여부에 상관없이 부모의 체벌 행위에 대한 인식 정도는 '체벌이 올바르

다고 할 수는 없지만, 훈육이나 교육의 목적이 있는 경우 허용될 수 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어떤 경우에도 체벌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체벌은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는 데 효과적이므로 필요하다', '기타' 순이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체벌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에서 인권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부모는 42.8% 동의하였고 인권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부모는 30.1% 동의했다. 인권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부모들은 체벌을 허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Ⅳ-27〉 인권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및 체벌에 대한 인식 차이

응답 사례수: 603명,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x^2(df)$
아동학대 인식			
전혀 심각하지 않다	.0	.1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0	1.3	
보통이다	11.0	16.4	5.580(4)
조금 심각한 편이다	46.2	39.3	
매우 심각하다	42.8	42.8	
전체	100(145)	100(458)	
체벌 행위 인식			
체벌은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는 데 효과적이므로 필요하다.	1.4	5.0	
체벌이 올바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훈육이나 교육의 목적이 있는 경우 허용될 수 있다.	55.9	64.6	10.490(3)*
어떤 경우에도 체벌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42.8	30.1	
기타	.0	.2	
전체	100(145)	100(458)	

*p<.05

다. 아동권리교육 참여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및 체벌에 대한 인식 정도의 차이

아동권리교육 참여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및 체벌에 대한 인식 정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체벌 행위에 대한 인식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교육 참여 여부에 상관없이 부모의 체벌 행위에 대한 인식 정도는 '체벌이 올바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훈육이나 교육의 목적이 있는 경우 허용될 수 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어떤 경우에도 체벌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체벌은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는 데 효과적이므로 필요하다', '기타'

순이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체벌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에서 아동권리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부모는 46.3% 동의하였고 아동권리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부모는 29.4% 동의했다. 아동권리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부모들은 체벌을 허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Ⅳ-28〉 아동권리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및 체벌에 대한 인식 차이

응답 사례수: 603명,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x^2(df)$
아동학대 인식			
전혀 심각하지 않다	.7	.0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0	1.3	
보통이다	12.7	15.8	6.041(4)
조금 심각한 편이다	42.5	40.5	
매우 심각하다	44.0	42.4	
전체	100(134)	100(469)	
체벌 행위 인식			
체벌은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는 데 효과적이므로 필요하다.	.7	5.1	
체벌이 올바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훈육이나 교육의 목적이 있는 경우 허용될 수 있다.	53.0	65.2	16.510(3)**
어떤 경우에도 체벌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46.3	29.4	
기타	.0	.2	
전체	100(134)	100(469)	

**p<.01

5)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변인 탐색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Shaefer의 이론에 기초한 거부적, 통제적 양육태도를 말한다. 거부적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하거나 벌을 가하는 등의 모습으로 자주 나타나며 통제적 양육태도는 부모가 양육에서 권위를 강조하거나 생활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특성이 있다.

(1)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정적 양육태도 차이

이 조사에 참여한 영유아 및 초등 자녀를 둔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정적 양육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 거주지역, 직업, 자녀 연령, 자녀 수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의 연령대는 20대와 40대에서 부정적 양육태도가 높았으며 거주지역은 수도권이 거부적 양육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은 전업주부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가장 높았으며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통제적 양육태도가 높았다.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정적 양육태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의 연령대와 관련해서는 20대(M=2.80)와 40대(M=2.80)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가장 높았으며 50대 이상(M=2.78), 30대(M=2.68) 순으로 나타났다(F=4.69, p<.01). 부정적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거부적(F=2.78, p<.05), 통제적 양육태도(F=3.52, p<.05)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모의 거주지역과 관련해서는 부정적 양육태도의 차이가 없었으나 하위요인 중 거부적 양육태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적 양육태도는 수도권(M=2.60)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부권(M=2.57), 호남권(M=2.48), 영남권(M=2.47) 순이었다(F=2.74, p<.05).

부모의 직업과 관련해서는 전업주부(M=2.84)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가장 높았으며 교육서비스(M=2.78), 회사원및은행원(M=2.77), 기타(M=2.76), 자영업및판매서비스(M=2.72), 공무원(M=2.68), 제조및생산업(M=2.62) 순으로 나타났다(F=2.96, p<.01). 부정적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거부적(F=2.29, p<.05), 통제적 양육태도(F=2.31, p<.05)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녀의 연령과 관련해서는 초등 고학년(M=2.83)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가장 높았으며 초등 저학년(M=2.78), 유아(M=2.69), 영아(M=2.68) 순으로 나타났다(F=6.19, p<.001). 부정적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거부적 양육태도는 차이가 없었으나 통제적 양육태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적 양육태도는 초등 고학년(M=3.08) 부모가 가장 높았으며 초등 저학년(M=3.02), 유아(M=2.93), 영아(M=2.88) 순으로 나타났다(F=6.65, p<.001).

마지막으로 자녀의 수와 관련한 부정적 양육태도는 차이가 없었으나 하위요인 중 통제적 양육태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수가 세 명(M=3.04)인 부모가 가장 높았으며 두 명(M=3.02), 세 명 이상(M=2.94), 한 명(M=2.90) 순이었다(F=3.28, p<.05).

〈표 Ⅳ-29〉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정적 양육태도 차이

응답 사례수: 603명

구분	부정적 양육태도(전체)			거부적 양육태도			통제적 양육태도		
부모 연령대	*N*	*M*	*SD*	*N*	*M*	*SD*	*N*	*M*	*SD*
20대	6	2.80	.22	6	2.57	.50	6	3.03	.44
30대	237	2.68	.38	237	2.45	.48	237	2.92	.43
40대	342	2.80	.36	342	2.57	.48	342	3.03	.42
50대이상	18	2.78	.36	18	2.49	.36	18	3.07	.51
F		4.69**			2.78*			3.52*	
부모 거주지역	*N*	*M*	*SD*	*N*	*M*	*SD*	*N*	*M*	*SD*
수도권	133	2.79	.40	133	2.60	.48	133	2.97	.47
호남권	203	2.73	.35	203	2.48	.46	203	2.99	.43
중부권	109	2.80	.32	109	2.57	.44	109	3.02	.38
영남권	158	2.72	.40	158	2.47	.53	158	2.97	.44
F		1.44			2.74*			.26	
부모 직업	*N*	*M*	*SD*	*N*	*M*	*SD*	*N*	*M*	*SD*
전업주부[a]	115	2.84	.39	115	2.62	.52	115	3.06	.42
회사원및은행원[b]	180	2.77	.35	180	2.56	.48	180	2.99	.43
공무원[c]	75	2.68	.36	75	2.40	.45	75	2.97	.43
자영업및 판매서비스[d]	86	2.72	.30	86	2.49	.39	86	2.96	.39
제조및생산업[e]	52	2.62	.45	52	2.42	.53	52	2.82	.53
교육서비스[f]	44	2.78	.36	44	2.48	.45	44	3.07	.41
기타[g]	51	2.76	.36	51	2.52	.52	51	2.99	.41
F		2.96**(a>e)			2.29*			2.31*	
자녀 연령	*N*	*M*	*SD*	*N*	*M*	*SD*	*N*	*M*	*SD*
영아[a]	106	2.68	.40	106	2.49	.49	106	2.88	.45
유아[b]	177	2.69	.35	177	2.45	.47	177	2.93	.44
저학년[c]	128	2.78	.36	128	2.55	.49	128	3.02	.42
고학년[d]	192	2.83	.36	192	2.58	.48	192	3.08	.40
F		6.19***(a,c<d)			2.43			6.65***(a,c<d)	
자녀 수	*N*	*M*	*SD*	*N*	*M*	*SD*	*N*	*M*	*SD*
한 명	171	2.71	.42	171	2.52	.54	171	2.90	.47

구분	부정적 양육태도(전체)			거부적 양육태도			통제적 양육태도		
두 명	349	2.76	.35	349	2.51	.46	349	3.02	.41
세 명	74	2.79	.35	74	2.53	.45	74	3.04	.41
세 명 이상	9	2.77	.26	9	2.59	.37	9	2.94	.52
F		1.00			.13			3.28*	

*p<.05, **p<.01, ***p<.001

(2) 아동학대 및 체벌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른 부정적 양육태도 차이

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도에 따른 부정적 양육태도 차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도에 따른 부정적 양육태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거부적 양육태도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도가 '보통이다(M=2.65)'라고 생각하는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금 심각한 편이다(M=2.53)',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M=2.49)', '매우 심각하다(M=2.46)', '전혀 심각하지 않다(M=2.00)' 순이었다(F=2.90, p<.01).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도가 '보통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높고 '매우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는 부모일수록 거부적 양육태도가 낮다고 추측할 수 있다.

〈표 Ⅳ-30〉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도에 따른 부정적 양육태도 차이

응답 사례수: 603명

구분	부정적 양육태도(전체)			거부적 양육태도			통제적 양육태도		
	N	*M*	*SD*	*N*	*M*	*SD*	*N*	*M*	*SD*
전혀 심각하지 않다	1	2.50	.00	1	2.00	.00	1	3.00	.00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6	2.69	.54	6	2.49	.73	6	2.90	.41
보통이다	91	2.82	.32	91	2.65	.42	91	3.00	.36
조금 심각한 편이다	247	2.76	.38	247	2.53	.50	247	2.99	.44
매우 심각하다	258	2.73	.37	258	2.46	.48	258	2.99	.45
F		1.36			2.90**			.07	

**p<.01

나. 체벌 행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른 부정적 양육태도 차이

체벌 행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른 부정적 양육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정적 양육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체벌 행위에 대한 인식 정도 중 '체벌은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는 데 효과적이므로 필요하다(*M*=3.14)'라고 생각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체벌이 올바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훈육이나 교육의 목적이 있는 경우 허용될 수 있다(*M*=2.80)', '기타(*M*=2.71)', '어떤 경우에도 체벌은 허용되지 않는다(*M*=2.62)' 순이었다(*F*=21.60, *p*<.001). 부정적 양육태도의 하위요인도 거부적(*F*=12.42 *p*<.001), 통제적 양육태도(*F*=14.99 *p*<.001)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평균 차이의 순서도 같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체벌 행위에 대해 관대한 부모일수록 부정적 양육태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Ⅳ-31〉 체벌 행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른 부정적 양육태도 차이

응답 사례수: 603명

구분	부정적 양육태도(전체)			거부적 양육태도			통제적 양육태도		
	N	*M*	*SD*	*N*	*M*	*SD*	*N*	*M*	*SD*
체벌은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는 데 효과적이므로 필요하다.	25	3.14	.50	25	2.91	.61	25	3.36	.52
체벌이 올바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훈육이나 교육의 목적이 있는 경우 허용될 수 있다.	377	2.80	.35	377	2.56	.45	377	3.03	.42
어떤 경우에도 체벌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200	2.62	.34	200	2.39	.49	200	2.85	.39
기타	1	2.71	.00	1	2.67	.00	1	2.75	.00
F	21.60***			12.42***			14.99***		

***p<.001

6) 부모를 위한 아동권리교육에 대한 요구

(1) 아동권리교육 필요성

가. 아동권리교육 필요 여부

영유아 및 초등 자녀를 둔 부모에게 아동권리교육 필요 여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 603명 중 '필요하다'가 544명(90.2%), '필요하지 않다'가 59명(9.8%)으로 조사되었다. 아동권리교육 필요 여부는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 최종학력,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최종학력은 대학원 졸업, 직업은 공무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권리교육 필요 여부에 관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권리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544명 중 여성은 297명(93.4%)이고 남성은 247명(86.7%)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아동권리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응답자의 최종학력과 관련해서는 대학원 졸업이 응답자의 92.3%, 대학 졸업은 91.1%, 고등학교 졸업은 88.2%, 기타(초중 졸업, 대학 중퇴 및 휴학)는 55.6%로,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권리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부모의 직업을 살펴보면 공무원이 응답자의 96.0%로 가장 많았고 전업주부는 95.7%, 교육서비스는 95.5%, 회사원및은행원은 90.6%, 자영업및판매서비스는 84.9%, 기타(무직, 프리랜서, 스포츠 강사, 건설업, 운송업 등)는 82.4%, 제조및생산업은 80.8% 순이었다. 아동권리교육 필요 여부는 부모의 성별, 최종학력,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대부분 아동권리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32〉 아동권리교육 필요 여부

전체 사례수: 603명

구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x^2(df)$
전체		544(90.2)	59(9.8)	-
성별	여성	297(93.4)	21(6.6)	7.711(1)**
	남성	247(86.7)	38(13.3)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90(88.2)	12(11.8)	13.403(3)**
	대학 졸업	389(91.1)	38(8.9)	
	대학원 졸업	60(92.3)	5(7.7)	
	기타	5(55.6)	4(44.4)	
직업	전업주부	110(95.7)	5(4.3)	19.684(6)**
	회사원및은행원	163(90.6)	17(9.4)	
	공무원	72(96.0)	3(4.0)	
	자영업및판매서비스	73(84.9)	13(15.1)	
	제조및생산업	42(80.8)	10(19.2)	
	교육서비스	42(95.5)	2(4.5)	
	기타	42(82.4)	9(17.6)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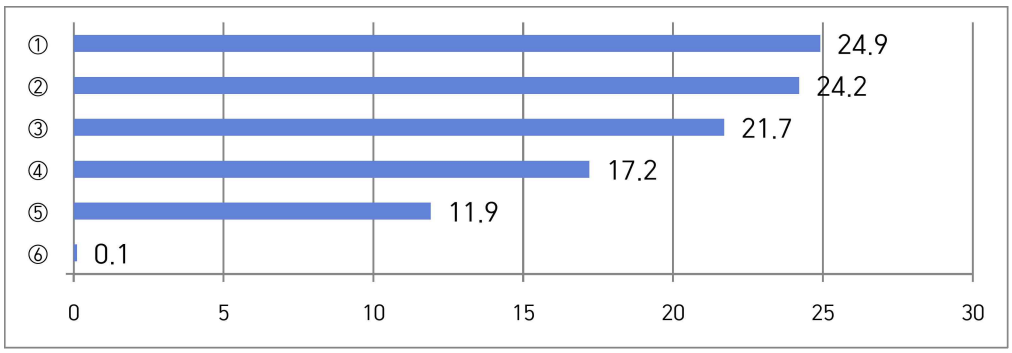
나. 아동권리교육이 필요한 이유

아동권리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544명(90.2%)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아동권리존중 양육 방법을 습득하기 위해서'가 2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권리실현을 위해서 부모의 태도 및 인식 변화가 필요하니까'가 24.2%, '부모는 아동권리실현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가 21.7%, '아동권리침해의 원인을 알고 예방하기 위해서'가 17.2%, '훈육을 위한 체벌이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고 해서'가 11.9%, 기타가 .1% 순이었다. 영유아 및 초등 자녀를 둔 부모들이 아동권리교육이 필요한 이유로 '아동권리존중 양육 방법을 습득하기 위해서'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지만, 다음으로 '아동권리실현을 위해서 부모의 태도 및 인식 변화가 필요하니까'와 '부모는 아동권리실현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의 응답 비율이 높은 것은 부모가 아동권리실현에 책임이 있고 이를 실현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아동권리교육을 요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Ⅳ-33〉 아동권리교육이 필요한 이유(중복 응답)

중복 응답 계: 1,165

구분	사례수(명)	비율(%)
훈육을 위한 체벌이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고 해서	139	11.9
부모는 아동권리실현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253	21.7
아동권리침해의 원인을 알고 예방하기 위해서	200	17.2
아동권리존중 양육 방법을 습득하기 위해서	290	24.9
아동권리실현을 위해서 부모의 태도 및 인식 변화가 필요하니까	282	24.2
기타	1	.1



① 아동권리존중 양육 방법을 습득하기 위해서, ② 아동권리실현을 위해서 부모의 태도 및 인식변화가 필요하니까, ③ 부모는 아동권리실현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④ 아동권리침해의 원인을 알고 예방하기 위해서, ⑤ 훈육을 위한 체벌이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고 해서, ⑥ 기타

[그림 Ⅳ-17] 아동권리교육이 필요한 이유(중복 응답) (단위 : %)

(2) 아동권리교육에 대한 요구

가. 아동권리교육 참여 의향

영유아 및 초등 자녀를 둔 부모에게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 603명 중 '있다'가 384명(63.7%), '없다'가 219명(36.3%)으로 조사되었다. 아동권리교육 참여 의향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아동권리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권리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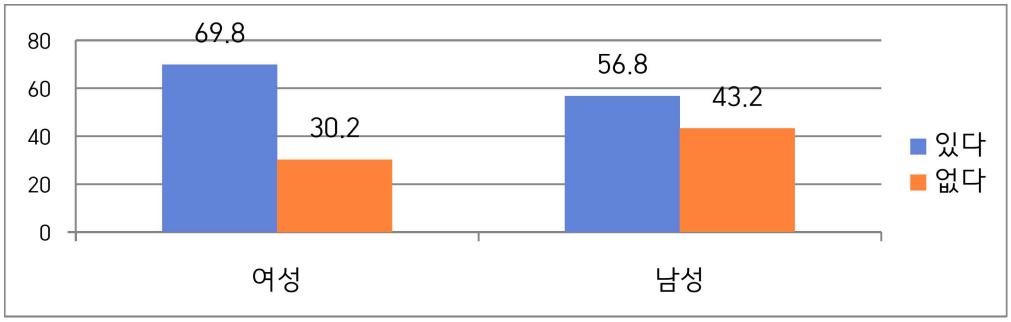
참여 의향이 있는 응답자 384명 중 여성은 222명이고 전체 여성 응답자 중 69.8%가 아동권리교육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남성은 162명이고 전체 남성 응답자 중 56.8%가 아동권리교육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해 여성이 남성보다 아동권리교육 참여 의향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34〉 아동권리교육 참여 의향

전체 사례수: 603명

구분		있다(%)	없다(%)	$x^2(df)$
전체		384(63.7)	219(36.3)	-
성별	여성	222(69.8)	96(30.2)	10.931(1)**
	남성	162(56.8)	123(43.2)	

**p<.01



[그림 Ⅳ-18] 아동권리교육 참여 의향 (단위 : %)

나.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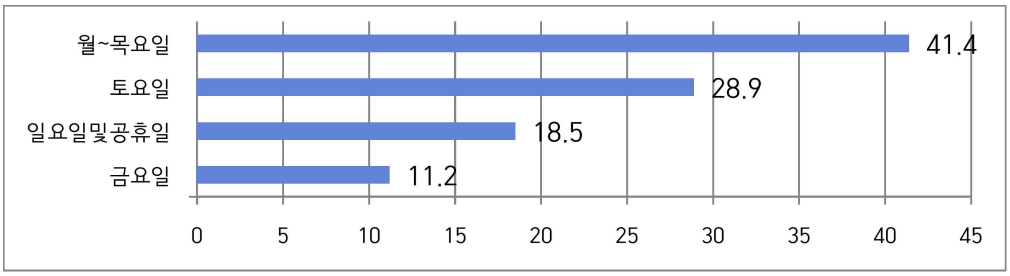
아동권리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 384명(63.7%)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요일을 조사했다.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요일은 월~목요일이 41.4%로 가장 많았고 토요일은 28.9%, 일요일 및 공휴일은 18.5%, 금요일은 11.2% 순이었다. 응답자의 성별 및 자녀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요일에 대해 여성은 응답자의 54.1%가 월~목요일을 선호하였으나 남성은 응답자의 35.8%가 토요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과 남성이 선호하는 요일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35〉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요일

응답 사례수: 384명, 단위 : %(명)

구분	월~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및 공휴일	계(수)
전체	41.4	11.2	28.9	18.5	100(384)
성별					
여성	54.1	10.4	23.9	11.7	100(222)
남성	24.1	12.3	35.8	27.8	100(162)
$x^2(df)$			38.344(3)***		
자녀 연령					
영아	45.6	10.3	22.1	22.1	100(68)
유아	44.5	14.3	25.2	16.0	100(119)
초등 저학년	38.0	7.6	34.2	20.3	100(79)
초등 고학년	38.1	11.0	33.1	17.8	100(118)
$x^2(df)$			7.248(9)		

***p<.001



[그림 Ⅳ-19]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요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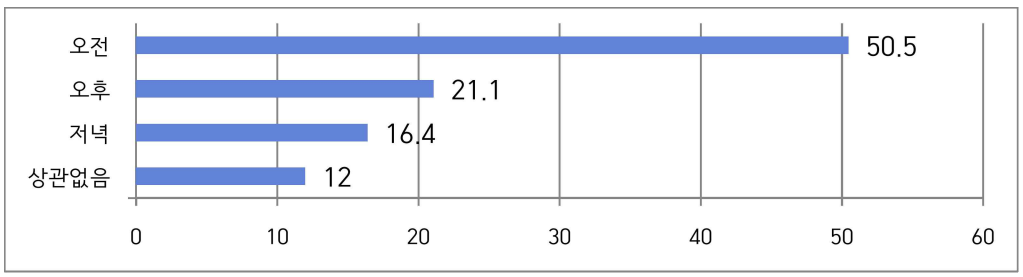
다.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시간대

아동권리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 384명(63.7%)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시간대를 조사했다.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시간대는 오전이 50.5%로 가장 많았고 오후는 21.1%, 저녁은 16.4%, 상관없음은 12.0% 순이었다. 응답자의 성별 및 자녀의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 및 자녀의 연령에 상관없이 부모 대부분이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시간대는 오전임을 알 수 있다.

〈표 Ⅳ-36〉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시간대

응답 사례수: 384명, 단위 : %(명)

구분	오전	오후	저녁	상관없음	계(수)
전체	50.5	21.1	16.4	12.0	100(384)
성별					
여성	55.4	20.7	13.5	10.4	100(222)
남성	43.8	21.6	20.4	14.2	100(162)
$x^2(df)$			6.355(3)		
자녀 연령					
영아	45.6	23.5	16.2	14.7	100(68)
유아	51.3	21.0	17.6	10.1	100(119)
초등 저학년	55.7	16.5	15.2	12.7	100(79)
초등 고학년	49.2	22.9	16.1	11.9	100(118)
$x^2(df)$			2.981(9)		



[그림 Ⅳ-20]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시간대 (단위 : %)

라.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소요시간

아동권리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 384명(63.7%)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소요시간을 조사했다.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소요시간은 30분~1시간미만이 44.0%로 가장 많았고 1시간~1시간30분은 39.1%, 1시간30분~2시간은 8.1%, 30분은 7.6%, 2시간~2시간30분은 .8%, 2시간30분이상은 .5% 순이었다. 응답자의 성별 및 자녀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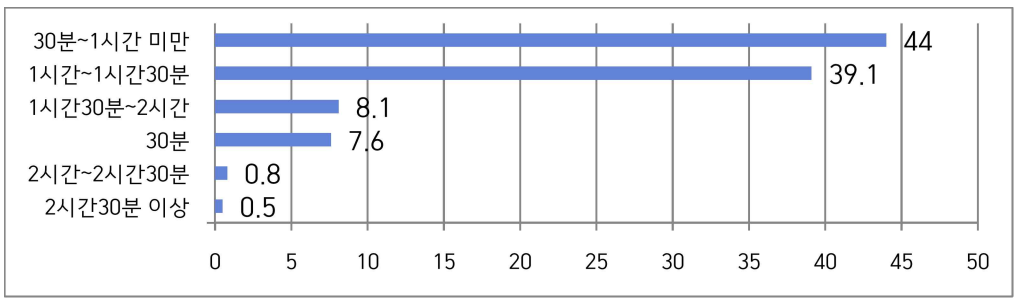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소요시간에 대해 여성은 응답자의 45.5%가 1시간~1시간30분을 선호하였으나 남성은 응답자의 48.8%가 30분~1시간미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과 남성이 선호하는 소요시간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37〉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소요시간

응답 사례수: 384명, 단위 : %(명)

구분	30분	30분~ 1시간미만	1시간~ 1시간30분	1시간30분 ~2시간	2시간~ 2시간30분	2시간30분 이상	계(수)
전체	7.6	44.0	39.1	8.1	.8	.5	100(384)
성별							
여성	5.0	40.5	45.5	8.6	.5	.0	100(222)
남성	11.1	48.8	30.2	7.4	1.2	1.2	100(162)
$x^2(df)$				15.346(5)**			
자녀 연령							
영아	10.3	51.5	33.8	2.9	1.5	.0	100(68)
유아	7.6	49.6	35.3	6.7	.0	.8	100(119)
초등 저학년	10.1	46.8	32.9	8.9	1.3	.0	100(79)
초등 고학년	4.2	32.2	50.0	11.9	.8	.8	100(118)
$x^2(df)$				21.433(15)			

**p<.01



[그림 Ⅳ-21]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소요시간 (단위 : %)

마.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교육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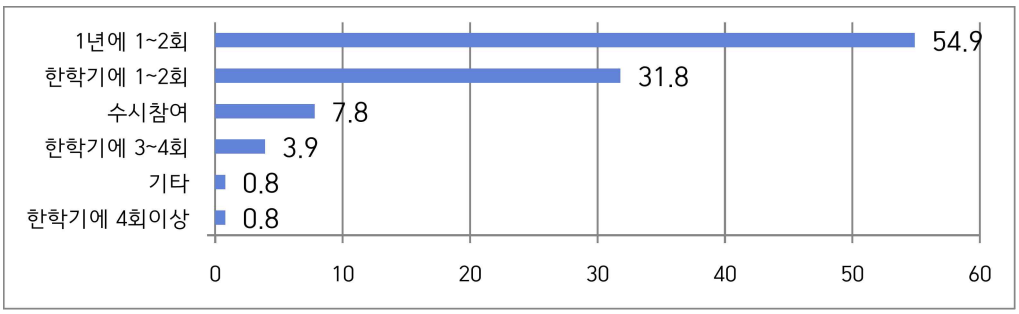
아동권리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 384명(63.7%)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교육횟수를 조사했다.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교육횟수는 1년에 1~2회가 54.9%로 가장 많았고 한 학기에 1~2회는 31.8%, 수시참여는

7.8%, 한 학기에 3~4회 3.9%, 한 학기에 4회 이상은 .8%, 기타(월1회 이상, 1년에 1회)는 .8% 순이었다. 응답자의 성별 및 자녀의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 및 자녀의 연령에 상관없이 부모 대부분이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교육횟수는 1년에 1~2회임을 알 수 있다.

〈표 Ⅳ-38〉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교육횟수

응답 사례수: 384명, 단위 : %(명)

구분	수시참여	1년에 1~2회	한 학기에 1~2회	한 학기에 3~4회	한 학기에 4회 이상	기타	계(수)
전체	7.8	54.9	31.8	3.9	.8	.8	100(384)
성별							
여성	7.2	52.7	33.3	4.5	1.4	.9	100(222)
남성	8.6	58.0	29.6	3.1	.0	.6	100(162)
$x^2(df)$				3.902(5)			
자녀 연령							
영아	5.9	63.2	30.9	.0	.0	.0	100(68)
유아	10.9	44.5	37.0	5.0	2.5	.0	100(119)
초등 저학년	8.9	62.0	22.8	5.1	.0	1.3	100(79)
초등 고학년	5.1	55.9	33.1	4.2	.0	1.7	100(118)
$x^2(df)$				23.065(15)			



[그림 Ⅳ-22]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교육횟수 (단위 : %)

바.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수강형태

아동권리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 384명(63.7%)을 대상으로 아동권

리교육 시 선호하는 수강형태를 조사했다.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수강형태는 소집단이 62.8%로 가장 많았고 중집단은 21.6%, 개인은 8.1%, 대집단은 6.3%, 기타(자녀 동반, 가족 단위, 온라인)는 1.3% 순이었다. 응답자의 성별 및 자녀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 및 자녀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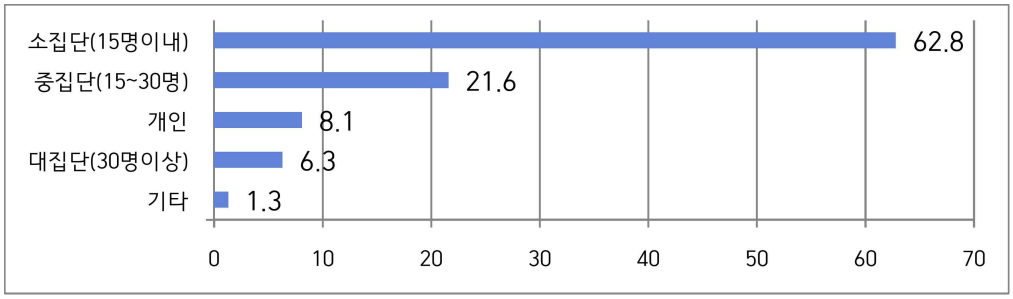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수강형태에 대해 여성과 남성의 1순위는 소집단, 2순위는 중집단으로 동일했지만, 3순위에 차이가 있었다. 3순위로 선호하는 수강형태가 여성은 대집단이나 남성은 개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과 관련해서는 1순위 소집단, 2순위 중집단으로 동일했지만, 3순위에 차이가 있었다. 3순위로 선호하는 수강형태가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은 개인이었으나 초등 고학년은 대집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순위로 개인을 선호하는 자녀의 연령을 보면 영아는 13.2%, 유아는 8.4%, 초등 저학년은 7.6%로 나타나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개인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39〉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수강형태

응답 사례수: 384명, 단위 : %(명)

구분	개인	소집단	중집단	대집단	기타	계(수)
전체	8.1	62.8	21.6	6.3	1.3	100(384)
성별						
여성	5.9	59.5	25.2	7.7	1.8	100(222)
남성	11.1	67.3	16.7	4.3	.6	100(162)
$x^2(df)$			9.969(4)*			
자녀 연령						
영아	13.2	57.4	22.1	2.9	4.4	100(68)
유아	8.4	74.8	10.9	5.0	.8	100(119)
초등 저학년	7.6	64.6	22.8	5.1	.0	100(79)
초등 고학년	5.1	52.5	31.4	10.2	.8	100(118)
$x^2(df)$			31.190(12)**			

*p<.05, **p<.01



[그림 Ⅳ-23]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수강형태 (단위 : %)

사.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강사

아동권리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 384명(63.7%)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강사를 조사했다.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강사는 육아관련 전문가가 58.1%로 가장 많고 심리교육 전문가는 31.8%, 가족상담사는 8.9%, 교사는 .8%, 기타(강의 목적에 맞는 전문가, 전문의)는 .5% 순이었다. 응답자의 성별 및 자녀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강사에 대해 1순위 육아관련 전문가, 2순위 심리교육 전문가, 3순위 가족상담사 순으로 같았지만, 요구하는 비율에 차이가 있었다. 영아와 유아는 육아관련 전문가의 비율이 60% 이상으로 매우 높았으나 초등 저학년과 초등 고학년은 육아관련 전문가(각 48.1%, 48.3%)와 심리교육 전문가(각 36.7%, 38.1%)를 선호하는 비율이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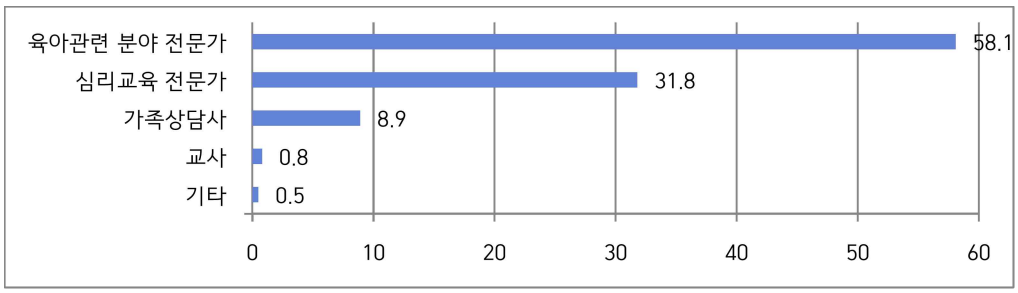
〈표 Ⅳ-40〉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강사

응답 사례수: 384명, 단위 : %(명)

구분	교사	육아관련 전문가	가족상담사	심리교육 전문가	기타	계(수)
전체	.8	58.1	8.9	31.8	.5	100(384)
성별						
여성	1.4	55.4	10.4	32.0	.9	100(222)
남성	.0	61.7	6.8	31.5	.0	100(162)
$x^2(df)$	5.649(4)					

구분	교사	육아관련 전문가	가족상담사	심리교육 전문가	기타	계(수)
자녀 연령						
영아	.0	77.9	4.4	17.6	.0	100(68)
유아	.0	63.0	6.7	30.3	.0	100(119)
초등 저학년	1.3	48.1	12.7	36.7	1.3	100(79)
초등 고학년	1.7	48.3	11.0	38.1	.8	100(118)
$x^2(df)$			23.941(12)*			

*p<.05



[그림 Ⅳ-24]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강사 (단위 : %)

아.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교육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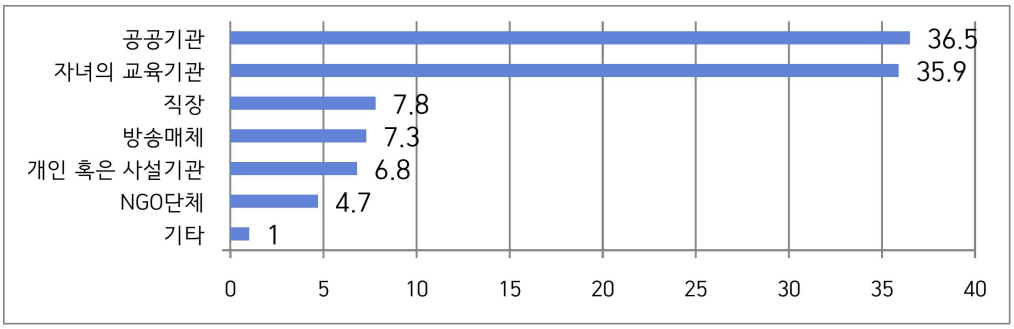
아동권리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 384명(63.7%)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교육기관을 조사했다.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교육기관은 공공기관이 36.5%로 가장 많았고 자녀의 교육기관은 35.9%, 직장 7.8%, 방송매체 7.3%, 개인혹은사설기관은 6.8%, NGO단체는 4.7%, 기타는 1.0% 순이었다. 응답자의 성별 및 자녀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성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교육기관에 대해 여성은 응답자의 41.0%가 자녀의 교육기관을 선호하였으나 남성은 응답자의 38.9%가 공공기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과 남성이 선호하는 교육기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41〉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교육기관

응답 사례수: 384명, 단위 : %(명)

구분	공공기관	자녀의 교육기관	직장	방송매체	NGO단체	개인 혹은 사설기관	기타	계(수)
전체	36.5	35.9	7.8	7.3	4.7	6.8	1.0	100(384)
성별								
여성	34.7	41.0	6.8	6.3	2.3	7.7	1.4	100(222)
남성	38.9	29.0	9.3	8.6	8.0	5.6	.6	100(162)
$x^2(df)$				13.398(6)*				
자녀 연령								
영아	32.4	36.8	13.2	7.4	4.4	5.9	.0	100(68)
유아	33.6	35.3	9.2	6.7	8.4	6.7	.0	100(119)
초등 저학년	38.0	39.2	2.5	7.6	5.1	6.3	1.3	100(79)
초등 고학년	40.7	33.9	6.8	7.6	.8	7.6	2.5	100(118)
$x^2(df)$				19.561(18)				

*p<.05



[그림 Ⅳ-25]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교육기관 (단위 : %)

자.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교육유형

아동권리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 384명(63.7%)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교육유형을 조사했다.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교육유형은 '부모교육 전문가에 의한 초청 특강'이 61.7%로 가장 많았고 '부모참여 프로그램 및 참관수업'은 12.2%, '면담 및 상담'은 10.4%, '동영상 및 SNS활용'은 9.4%, '부모 간의 토의 및 토론'은 3.9%, '방문형(가정 및 직장)'은 1.3%, '인쇄매체의 전달'은 .5%, '기타(다회성 참여, 온라인)'는 .5% 순이었다. 응답자의 성별 및 자녀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교육유형에 대해 1순위는 부모교육 전문가에 의한 초청 특강이었으나 2순위에 차이가 있었다. 2순위로 영아와 유아는 부모참여 프로그램 및 참관수업이었으나 초등 저학년과 초등 고학년은 면담 및 상담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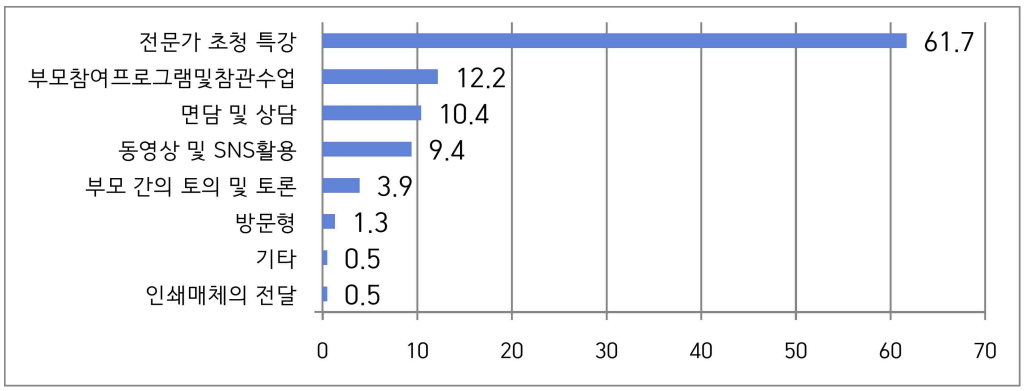
〈표 Ⅳ-42〉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교육유형

응답 사례수: 384명,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계(수)
전체	61.7	3.9	12.2	10.4	.5	9.4	1.3	.5	100(384)
성별									
여성	62.2	3.2	13.5	9.9	.5	9.0	1.4	.5	100(222)
남성	61.1	4.9	10.5	11.1	.6	9.9	1.2	.6	100(162)
$x^2(df)$					1.793(7)				
자녀 연령									
영아	51.5	2.9	19.1	13.2	.0	13.2	.0	.0	100(68)
유아	53.8	6.7	16.8	7.6	.8	10.9	3.4	.0	100(119)
초등 저학년	63.3	2.5	8.9	12.7	.0	8.9	1.3	2.5	100(79)
초등 고학년	74.6	2.5	5.9	10.2	.8	5.9	.0	.0	100(118)
$x^2(df)$					38.312(21)*				

*p<.05

① 부모교육 전문가에 의한 초청 특강, ② 부모 간의 토의 및 토론, ③ 부모참여 프로그램 및 참관수업, ④ 면담 및 상담, ⑤ 인쇄매체의 전달, ⑥ 동영상 및 SNS활용, ⑦ 방문형(가정 및 직장), ⑧ 기타



[그림 Ⅳ-26]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교육유형 (단위 : %)

차.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교육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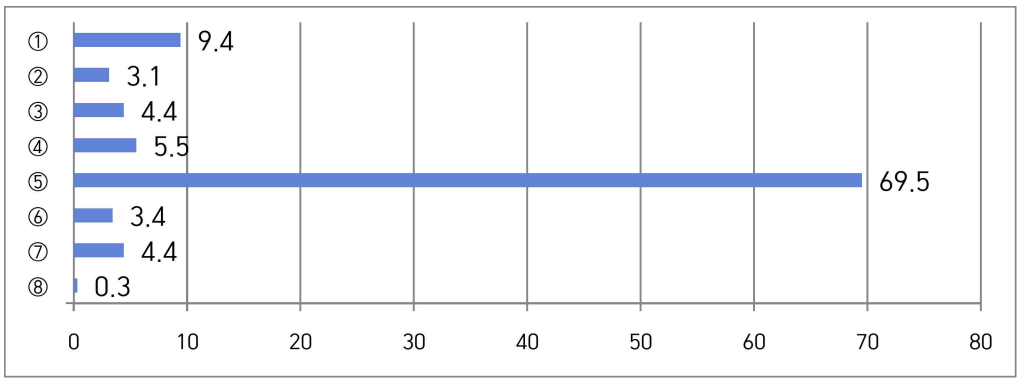
아동권리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 384명(63.7%)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교육내용을 조사했다.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교육내용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양육 방법 및 실제'가 69.5%로 가장 많았고 '아동학대의 개념(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방임)'이 9.4%, '아동의 발달 특성'이 5.5%, '아동권리를 판단할 수 있는 부모용 체크리스트 및 기준'이 4.4%,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4.4%, '아동학대의 실제(사례, 법제와 정책, 신고 절차 및 기관 정보)'가 3.4%,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역사적 배경 및 이해)'이 3.1%, '기타'가 .3% 순이었다. 응답자의 성별 및 자녀의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 및 자녀의 연령에 상관없이 부모 대부분이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교육내용은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양육방법과 실제임을 알 수 있다.

〈표 Ⅳ-43〉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교육내용

응답 사례수: 384명,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계(수)
전체	9.4	3.1	4.4	5.5	69.5	3.4	4.4	.3	100(384)
성별									
여성	9.0	1.8	3.2	4.1	73.0	3.2	5.9	.0	100(222)
남성	9.9	4.9	6.2	7.4	64.8	3.7	2.5	.6	100(162)
$x^2(df)$					11.655(7)				
자녀 연령									
영아	10.3	.0	2.9	2.9	75.0	2.9	5.9	.0	100(68)
유아	8.4	4.2	4.2	6.7	68.1	3.4	5.0	.0	100(119)
초등 저학년	10.1	3.8	2.5	3.8	69.6	5.1	5.1	.0	100(79)
초등 고학년	9.3	3.4	6.8	6.8	67.8	2.5	2.5	.8	100(118)
$x^2(df)$					12.341(21)				

① 아동학대의 개념(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방임), ②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역사적 배경 및 이해), ③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④ 아동의 발달 특성, ⑤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양육 방법 및 실제, ⑥ 아동학대의 실제(사례, 법제와 정책, 신고 절차 및 기관 정보), ⑦ 아동권리를 판단할 수 있는 부모용 체크리스트 및 기준, ⑧ 기타



① 아동학대의 개념(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방임), ②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역사적 배경 및 이해), ③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④ 아동의 발달 특성, ⑤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양육 방법 및 실제, ⑥ 아동학대의 실제(사례, 법제와 정책, 신고 절차 및 기관 정보), ⑦ 아동권리를 판단할 수 있는 부모용 체크리스트 및 기준, ⑧ 기타

[그림 Ⅳ-27]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교육내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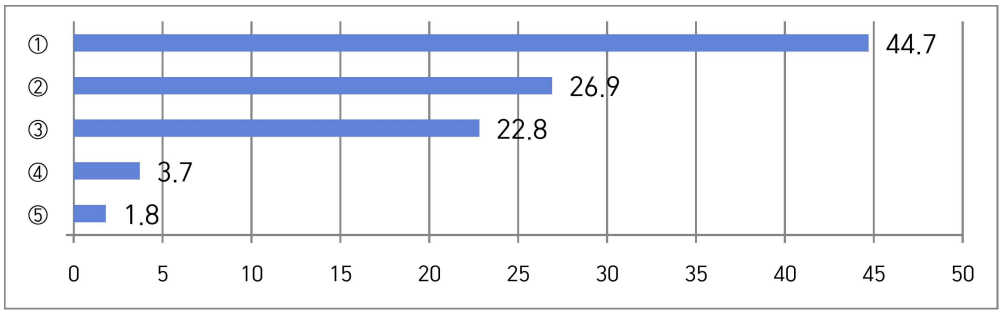
카. 아동권리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아동권리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없는 응답자 219명(36.3%)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너무 바빠서'가 44.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이미 아동권리존중을 실천하고 있어서'가 26.9%, '기타'가 22.8%, '관심이 없어서'가 3.7%, '이미 충분히 알고 있어서'가 1.8% 순이었다. 아동권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기타 이유로는 코로나19 때문에, 유튜브나 카드 뉴스로 도움을 받고 있어서, 이미 충분히 알고 있어서, 교육의 효과가 없어서, 근무시간과 겹쳐서, 접근이 어려워서, 아동권리교육 보다 자녀와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교육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등이 있었다.

〈표 Ⅳ-44〉 아동권리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응답 사례수: 219명

구분	사례수(명)	비율(%)
너무 바빠서	98	44.7
관심이 없어서	8	3.7
이미 충분히 알고 있어서	4	1.8
이미 아동권리존중을 실천하고 있어서	59	26.9
기타	50	22.8



① 너무 바빠서, ② 이미 아동권리존중을 실천하고 있어서, ③ 기타, ④ 관심이 없어서, ⑤ 이미 충분히 알고 있어서

[그림 Ⅳ-28] 아동권리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단위 : %)

이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대상 아동권리교육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교육의 필요 여부는 부모의 성별, 거주지역,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대부분 부모가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동의했다. 그리고 부모교육으로 필요한 내용은 자녀와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 긍정적 훈육 방법 및 양육태도, 자녀의 인성, 문제행동 순이었다. 반면, 아동학대 예방, 부모의 권리 인식 및 인권감수성에 대한 요구는 매우 낮았고 부모들이 가장 최근에 참여했던 부모교육에서 아동권리교육을 주제로 다룬 빈도도 매우 낮았다. 아동권리교육은 아동권리실현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부모에게 필요한 교육이다. 하지만 부모교육 실태조사 결과 영유아 및 초등 자녀를 둔 부모에게 아동권리교육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부모의 아동권리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권리교육의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교육에 참여한 비율은 응답자의 33.7%에 불과했고 남성의 참여율은 여성보다 매우 저조했다. 구체적으로 여성은 응답자 중 50.3%, 남성은 응답자 중 15.1%가 부모교육에 참여했다고 응답했다. 부모들이 가장 최근에 참여했던 부모교육 경험을 보면, 주로 평일(월~목요일) 오전 시간대 실시되었으며 수강 기관은 자녀의 교육기관이 가장 많았다. 이 설문의 응답자 중 전업주부가 115명(19.1%)인 점과 전업주부 응답자 중 57.4%가 참여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직업을 가진 부모들은 참여하기 어려웠다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대부분이 '알고 있지만 너무 바빠서'인 점을 고려하면 직업을 가진 부모들의

참여율을 높일 방법과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부모들은 평소 '인권'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지 못하며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도 부족했다. 부모들이 '인권'이라는 단어를 접하는 경로는 주로 TV(뉴스, 시사프로그램 등) 및 인터넷(포털, 블로그, SNS 등)이었다. 대중매체를 통해서 비치는 '인권'의 이미지와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은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대중매체의 활용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인권교육은 자신의 권리 인식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까지 존중하는 태도를 교육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녀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이행자인 부모에게 필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캠페인으로 부모에게 '인권'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자주 노출 시켜야 하며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카드 뉴스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라도 부모에게 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부모들이 인식한 아동권리는 주로 아동존중, 아동학대, 아동보호와 관련이 있었고 아동권리교육 경험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에게 '아동권리'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아동존중'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동학대', '아동보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아동존중'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적극적인 실천을 의미한다면, '아동학대'와 '아동보호'는 보호받을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다. 많은 부모가 아동권리를 아동학대와 아동보호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권리를 보호권에 초점을 맞춘 협소한 의미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신이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자녀의 권리를 지켜주는 편이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아동권리교육 경험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권리교육 경험이 있는 부모들은 주로 교육서비스나 공무원과 같이 아동과 관련된 직업이나 의무적으로 인권 관련 주제의 교육을 수강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아동권리를 보다 넓은 의미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를 위한 아동권리교육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를 위한 양육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부모들은 아동학대의 가해자를 주로 부모(친부모, 계부모, 양부모)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생각했다. 특히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을 자녀 및 사회·문화적 요인보다 부모 및 가족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양육 어려움에 대한 부모의 스트레스 해소'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종합하면,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것은 아동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양육지원 및 상담과 같은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부모들은 대부분 훈육을 위한 체벌은 필요하며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자녀에게 체벌하는 행위에 대한 부모의 생각을 조사한 결과 '체벌이 올바르다고 할 수 없지만, 훈육이나 교육 목적이 있을 경우 허용될 수 있다'가 62.5%로 가장 많았다. 부모들은 체벌이 자녀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억제하거나 개선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체벌을 교육 방법의 하나로 인식했던 사회통념으로 인해 부모들은 체벌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징계이고 아동학대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부모들은 아동학대 및 권리침해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생각했다. 부모들이 양육과정에서 아동학대로 가장 의심한 상황은 '자녀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폭언을 했을 때'였다. 이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보다 응답 비율이 높았다. 양육과정에서 자녀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의심한 상황에 대해서는 '자녀를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거나 자녀의 의견을 무시할 때'가 가장 많았다. 이는 참여권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보다 응답 비율이 높았다. 부모들의 응답은 자신의 양육행동을 아동학대 및 권리침해로 의심하면서도 각 기준이 모호하다고 생각해서 혼란스러워 보인다. 따라서 부모를 위한 아동권리교육은 부모들이 체벌, 아동학대 및 권리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보 전달과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자녀의 권리침해 및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의 내용으로 인권교육 및 아동권리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부모들은 그렇지 않은 부모보다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체벌 행위에 대한 인식 정도는 두 집단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인권교육과 아동권리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부모들도 '체벌이 올바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훈육이나 교육의 목적이 있는 경우 허용될 수 있

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인권교육 및 아동권리교육이 부모의 체벌 행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인권교육 및 아동권리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부모들도 '체벌이 올바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훈육이나 교육의 목적이 있는 경우 허용될 수 있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는 체벌에 대한 암묵적인 허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인권교육과 아동권리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여덟째, 부정적 양육태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관련 변인을 탐색한 결과 부정적 양육태도가 낮은 부모일수록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부정적 양육태도가 높은 부모일수록 체벌 행위에 대해 관대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부정적 양육태도가 높은 부모일수록 아동학대 및 체벌의 심각성을 낮게 인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부정적 양육태도와 부모의 일반적 특성과의 차이를 탐색한 결과 연령대, 거주지역, 직업, 자녀 연령, 자녀 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연령대는 20대와 40대, 거주지역은 수도권, 직업은 전업주부, 자녀 연령은 초등 고학년, 자녀 수는 많을수록 부정적 양육태도가 높았다. 특히 부모의 직업에서 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시간이 긴 전업주부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높은 것과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부정적 양육태도가 높아지는 것은 양육스트레스와 연관 지을 수 있다. 부정적 양육태도가 높은 경우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권위적으로 통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녀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자녀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해소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홉째, 아동권리교육의 필요 여부는 부모의 성별, 최종학력,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대부분 부모가 아동권리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동의했다. 아동권리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최종학력은 대학원 졸업, 직업은 공무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부모가 전체 603명 중 384명으로 63.7%를 차지했다. 아동권리교육이 필요한 이유로는 '아동권리존중 양육 방법을

습득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지만, 다음으로 '아동권리실현을 위해서 부모의 태도 및 인식 변화가 필요하니까'와 '부모는 아동권리실현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의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부모가 아동권리실현에 책임 있고 이를 실현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아동권리교육을 요구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열 번째, 부모를 위한 아동권리교육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성별에 따른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아동권리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부모는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요일, 시간, 수강형태, 교육기관에 차이를 보였다.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한다면 주로 평일(월~목요일) 오전 시간대를 원했고 소요시간은 30분~1시간미만, 교육횟수는 1년에 1~2회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선호하는 요일과 소요시간에 있어서는 부모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여성의 경우 평일 1시간~1시간30분을 선호했지만 남성의 경우 토요일 30분~1시간미만을 선호했다. 수강형태에서도 부모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여성과 남성의 1순위는 소집단, 2순위는 중집단으로 동일했지만 3순위에서 여성은 대집단이나 남성은 개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기관도 여성은 자녀의 교육기관을 선호하였으나 남성은 공공기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권리교육 시 부모의 성별에 따른 요구의 차이를 고려하여 요일, 시간, 수강형태, 교육기관을 다르게 계획해야 함을 알려준다.

열한 번째, 부모를 위한 아동권리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령에 따른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아동권리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부모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수강형태, 강사, 교육유형에 차이를 보였다. 아동권리교육에 참여한다면 주로 수강형태는 소집단, 강사는 육아관련 전문가, 교육유형은 부모교육 전문가에 의한 초청 특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호하는 수강형태의 경우 1순위 소집단, 2순위 중집단으로 동일했다. 하지만 3순위에서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는 개인을,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는 대집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3순위로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개인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호하는 강사는 1순위 육아관련 전문가, 2순위 심리교육 전문가, 3순위 가족상담사 순으로 동일하나 요구하는 비율에 차이가 있었다. 영아와 유아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관련 전문가의 비율이 60%이상으로 매우 높았으나 초등 저학년과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관

련 전문가와 심리교육 전문가를 선호하는 비율이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선호하는 교육유형은 자녀 연령과 무관하게 1순위가 부모교육 전문가에 의한 초청 특강이었다. 하지만 2순위에서 영아와 유아 자녀를 둔 부모는 부모참여 프로그램 및 참관수업이었으나 초등 저학년과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는 면담 및 상담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아동권리교육 시 자녀의 연령에 따른 요구의 차이를 고려하여 수강형태, 강사, 교육유형을 다르게 계획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열두 번째, 부모를 위한 아동권리교육의 내용은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양육 방법과 실제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아동권리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교육내용으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양육 방법 및 실제를 69.5%로 가장 많이 요구했다. 아동권리교육 시 선호하는 교육내용은 응답자의 성별 및 자녀의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을 고려하면 부모 대부분이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양육방법과 실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의 발달 특성, 아동권리를 판단할 수 있는 부모용 체크리스트 및 기준,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아동학대의 실제(사례, 법제와 정책, 신고 절차 및 기관 정보),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역사적 배경 및 이해) 순이었다. 부모들은 아동권리교육의 내용으로 아동학대 예방보다 구체적인 아동권리존중 방법 및 실제와 같은 인권친화적 양육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는 부모를 위한 아동권리교육이 아동학대 예방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 양육태도 형성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요컨대, 설문에 응답한 부모들은 대부분 아동권리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동의했다. 그리고 아동권리교육은 부모가 자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체벌 행위에 대한 부모의 인식 변화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현재 영유아 및 초등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에서 아동권리교육의 내용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부모들은 자신의 양육행동을 아동학대 및 권리침해로 의심하면서도 각 기준이 모호하다고 생각해서 혼란스러워했다. 그래서 아동권리교육이 실시된다면 부모들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양육 방법과 실제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를 위한 아동권리교육의 내용에 아동학대 예방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 양육을 포함해야 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부모를 위한 아동권

리교육의 참여율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성별 및 자녀의 연령에 따른 요구를 반영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2. 부모 및 전문가 면담

부모를 위한 아동권리교육의 실태 및 요구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부모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을 했다. 부모 면담에서는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교육에 관한 인식과 요구를 살피기 위해 영유아와 초등 자녀의 부모를 면담했다. 다양한 계층의 부모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특별한 요구를 가진 부모를 대신하여 이들을 상담하거나 관리한 경험이 있는 현장 전문가가 부모 면담에 참여했다. 전문가 면담에서는 다양한 양육지원 서비스 체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이론 및 현장 전문가를 면담했다.

1) 부모 대상 면담조사

(1) 부모 면담 진행 과정 및 참여자 정보

부모 면담은 2021년 9월 3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 참여자는 부모 5명과 특별한 요구를 가진 부모를 상담하거나 관리한 전문가 3명이다. 면담 방법은 연구 참여자들의 상황과 요구에 맞추어 원격화상회의 프로그램(ZOOM) 또는 전화를 활용하여 개별로 이루어졌다. 부모 면담은 참여자별로 각 2회 실시되었으며 면담 시간은 약 40분~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2회 면담이 종료된 후 자료 전사 과정 중 추가 질문의 필요성이 발견되면 해당 부모에게 문의하여 의견을 보충했다. 부모 면담 참여자 정보는 표 Ⅳ-45와 Ⅳ-46과 같다.

〈표 Ⅳ-45〉 부모 면담 참여자 정보

	부모 연령	결혼 연차	가족 구성	거주 지역	가정의 주양육자	부재 시 양육도움	자녀 수	자녀 성별	자녀 연령	자녀기관 유무
A어머니	32세	2년차	어머니, 아버지, 딸 한 명	서울 경기	어머니	없음	외동	여아	4개월 21일	없음

B어머니	45세	11년 차	어머니, 아버지, 아들 한 명	서울 경기	어머니	없음	외동	남아	11세	초등 학교
C아버지	35세	2년차	어머니, 아버지, 딸 한 명	서울 경기	부부 공동	없음	외동	여아	4개월 21일	없음
D아버지	40대 초	10년차	어머니, 아버지, 아들 두 명	대구 경북	어머니	장모님	두명	남아	8세, 10세	초등 학교
E아버지	30대 후	7년차	어머니, 아버지, 딸 한 명	대구 경북	부부 공동	외조부모	외동	여아	7세	유치원

〈표 Ⅳ-46〉 특별한 부모를 상담하거나 관리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성별	소속 (가칭)	초빙분야	거주 지역	관련경력	학력
I전문가	여	장애전담 어린이집	특별한요구 (장애)/영유아	경기	보육경력 30년, 장애전담 어린이집 원장 8년	유아특수교육 박사수료
J전문가	여	상담지원 센터	특별한요구 (다문화)/초등	전남	여성지원 센터 경력 6년, 부모교육 및 상담 경력 10년	아동상담전공 박사
K전문가	여	상담지원 센터	특별한요구 (한부모)/초등	전남	부모교육 및 상담 경력 12년	교육학 박사수료

면담 내용은 일반적 부모교육 참여 경험,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 관련 인식과 경험, 체벌과 관련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및 권리 존중 양육 실천,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참여형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과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부모의 응답 내용에 따라 부모교육 참여 경험, 부모교육 요구도, 부모를 위한 아동권리교육 요구도와 의견, 아동권리교육에 대한 의견으로 나누어 기술했다. 부모 면담의 구체적인 질문 목록은 부록 3에 제시했다.

(2) 결과

가. 부모교육의 필요성 및 참여 경험

가)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참여경험

면담에 참여한 부모와 전문가들은 모두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부모 대부분은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려고 했으며 모르는 부분을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전문적인 지원을 얻어 해결하기를 바랐다. 구체적으로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관련 전문가 혹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주최하는 전문적인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내용 측면에서 부모들은 놀이 방법, 생활지도, 성교육 등과 같이 자녀 양육에 적용 가능한 내용의 교육을 요구하고 있었다. 어린 연령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일수록 자녀의 발달 특성에 따른 놀이 행동 이해와 생활지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교육을 받고 싶죠. 전문가 말은 들어보면 또 다른 포인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좋은 기회가 있으면 받으면 좋죠.” C아버지, 1차 면담

> “고학년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사춘기로 접어들면서는 이후에 아이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B어머니, 1차 면담

> “(자녀가)여자아이고 저는 아빠이기 때문에 이런 성교육이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아이가 어리지만 나중에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대처 방안 이런 거와 관련된 부모교육이 있으면 듣고 싶어요.” E아버지, 1차 면담

> “주로 아이의 발달을 도와주는 놀이와 훈육이나 생활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교육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들었으면 좋겠네요. 훈육과 같은 통제에 대해 같이 교육받고 싶네요.” C아버지, 1차 면담

특별한 요구를 가진 부모와 협력했던 전문가들은 부모의 역량 강화와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는 양육방법을 안내해주는 부모교육을 요구했다. 면담에 참여한 전문

가들은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가 자녀를 안내하고 지도할 때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자녀의 행동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J전문가는 한부모 가정 부모가 외부로부터 받은 상처가 자녀 양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부모의 정서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이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 "아이들을 훈육할 때 있어서 올바른 양육 방법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아이들의 기본적인 발달 단계에 맞춰서 하는 교육이 필요하죠." K전문가, 1차 면담

> "자녀의 발달과정에 따른 양육 방법과 정서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 부모 가정이 되다 보니 한 부모님께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태예요. 이혼 과정이나 혼자 하는 양육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본인이 받은 상처로 인해서 아이들이 발달과정에 따라서 보이는 행동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측면이 많아요." J전문가, 1차 면담

나) 부모교육 참여 경험

면담에 참여한 부모 중 일부는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지만, 일부는 참여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던 부모들도 스스로 부모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로 부모교육의 경험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모들이 참여한 부모교육 형태는 개별 부모의 상황에 따라 다양했다. 예를 들면 D아버지는 직장에서 필수로 들어야 하는 교육이 있어서 온라인 실시간 강의나 오프라인 대면 형태로 교육받은 경험이 있었다. 영아를 양육하는 A어머니의 경우 집합 형태의 부모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수면과 같은 기본생활 습관 지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유튜브 영상, 육아 관련 프로그램, 책 등을 활용했고 이를 부모교육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부모의 역할을 하려면 계속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참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B어머니, 1차 면담

> “유튜브 통해서 전 패턴 잡아주는 방식 같은 거 많이 공부해서 실제로 적용을 해줬어요. 유튜브 영상을 바탕으로 제가 공부를 했으니까 저는 그것도 부모교육이 맞다고 생각해요.” A어머니, 1차 면담

> “저는 직장에서 1년에 필수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 한 대여섯 가지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장애아동과 관련된 교육을 사이버로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마지막에 시험 치는 형태에요. 강당에서 실제로 하는 소집 교육도 있어요.” D아버지, 1차 면담

부모가 참여한 부모교육은 대체로 대규모 인원이 모인 장소에서 초청된 외부 강사가 사전에 정해진 주제의 교육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참여형 부모교육이 현장에서 시도되기도 했다. B어머니는 가장 최근에 참여한 부모교육에 대해 답변하면서 자녀와 신체가 닿고 안아주는 활동이 포함된 부모교육이 강의식 교육보다 의미 있었다고 평가했다. 즉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강의식 교육이 아닌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고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높이 평가했다.

>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직장에서 1년에 무조건 필수로 받아야 하는 교육들이 있어요. 실제로 강당에서 강사가 하는 소집 교육도 있는데요.” D아버지, 1차 면담

> “이론적인 교육이 아니더라도 직접 하면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몸으로 같이 놀아주면서 하는 교육이 의미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같이 부딪히고 이렇게 서로 안아주고 그런 것을 현장에서 해보면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B어머니, 1차 면담

특별한 요구를 가진 부모들의 부모교육 경험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은 자녀의 장애 유형 특성 이해나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방식과 함께 비장애 자녀가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와 이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했다. 다문화 가정 부모에게는 자녀의 언어 발달과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가정폭력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지원 체계에 대해서도 교육했다. 그리고 한 부모 가정

부모를 위한 교육은 주로 자녀 동반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경제적 지원을 위한 물품도 함께 제공했다.

> “장애아 가족에서도 또 장애아만 있는 게 아니니까 (장애 자녀의 형제인)비장애 영유아가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 장애 아이한테 집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장애 아이들이 겪는 그런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한 스트레스와 대안 방법에 대한 내용을 한 게 기억에 남고요.” I전문가, 1차 면담

> “(다문화 가정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엄청 큰 양상들이 나타나서 그런 부분을 좀 중재하는 데 집중을 하면서 부모교육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다루는 방법들을 대처하는 방법들을 조금 부모님에게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J전문가, 1차 면담

> “한 부모 가정일 경우에는 ...상담과 여러 가지 활동 또 그 기관에서 어떤 물품까지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또 경제적인 취약성을 파악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 좀 참여율이 그래도 나타나더라고요. 교육이 4회기 정도밖에 안 됐지만 빼먹지 않고 저녁 시간에 꼭 오시려고 하고 자녀를 동반해서 오시다 보니 좀 이렇게 참여율도 좀 높았던 것 같아요.” K전문가, 1차 면담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서 부모들은 대부분 바쁘거나 부모교육 시간이 맞지 않았다고 말했다. 면담 참여자 중 직장을 가진 부모들은 부모교육이 주로 평일 낮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참여하기 어렵다고 했다. 자녀가 다니는 교육기관에서 실행한 부모교육도 대부분 평일 오전에 진행되어 참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면담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대체로 직장생활로 인해 양육에 참여할 시간도 부족하여 부모교육 참여는 더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어린 자녀의 부모는 자녀 동반이 가능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거나 교육에 참여하는 동안 자녀 돌봄을 대신할 기관이나 장소가 없어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했다. 가정 밖에서 시행되는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없었던 부모는 부모교육 시행 여부조차 몰랐다고 답했다. 이 부모는 가정양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모교육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 “지금 생각나는 게 예전에 어린이집에서 가보라는 이런 (부모)교육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한 10시 11시쯤 평일에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E아버지, 1차 면담

> “주로 교육하는 시간이 평일 낮 시간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랑 있다 보니까 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B어머니, 1차 면담

> “사실 그런 교육은 광고를 하지 않으니까 쉽게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C아버지, 1차 면담

특별한 요구를 가진 부모 분야의 전문가들은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권리를 실현하는 부모 역할이 부모교육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의 민감성 증진, 감정조절, 자녀와의 친밀감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예를 들면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모에게는 장애 정도 및 유형에 적합한 치료 서비스 정보 등을 제공하는 부모교육을 통해 아동의 발달권이 실현될 수 있다.

> “아동권리존중을 위해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부모교육과 더불어 발달단계에 적합한 참여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사례를 통해 제시함으로 구체적인 방법이 제공되었으면 하네요.” J전문가, 1차 면담

> “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시기와 장애 정도나 유형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도 아동의 발달권을 보장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많은 치료로 아동을 오히려 힘들게 하고, 유익하지 못한 상황도 발생되어 치료 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필요하지요.” I전문가, 1차 면담

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대상 아동권리교육 요구도

가) 체벌과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의 인식

면담에 참여한 부모들은 아동학대를 ‘잘못하는 것’ 혹은 ‘그만해야 할 것’이라고 표현하며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B어머니는 아동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학대도 “절대” 허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될 필요성을 주장했다.

"요즘 뭐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체벌이나 징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것들이 있으니까요." C아버지, 2차 면담

"아동학대가 요즘 너무 심해져서 예전에도 매스컴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요즘에 그게 불거져서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단은 사회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B어머니, 2차 면담

특별한 요구를 가진 부모와 협력한 전문가들은 면담에 참여한 부모에 비해 아동권리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아동권리교육을 통해 부모는 자녀가 권리 주체임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K전문가는 다문화 가정 부모를 위한 아동권리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하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다문화 가정 부모는 신체적·언어적 체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꼭 필요한데...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자녀에게 이런 권리가 있고 이런 권리를 존중해야 되겠다.' 이런 교육이 필요하죠. 자녀 양육 방법도 얻어갈 수도 있고요." J전문가, 1차 면담

"문화적인 측면 안에서 그들이 결핍을 경험하고 오셨다고 해도 이제 내 자녀를 잘 키우고자 하는 욕구는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체벌하는 경우가 있죠. 벌을 세우시기도 하고요." K전문가, 1차 면담

아동학대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면담에 참여한 부모는 동일했지만 체벌에 대한 견해에서는 서로 차이를 보였다. B어머니를 제외한 모든 부모들은 훈육이나 교육 목적의 체벌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 태도가 자신의 자녀를 체벌하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D아버지는 과거와는 달리 자녀를 지도하는 방식으로 체벌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사회 분위기가 변화하면서 D아버지는 체벌이 "가정폭력"에 해당될 수 있다고 인식했다. 면담 참여자 중에서 C아버지는 체벌에 대해 가장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C아버지에 따르면 체벌로 인한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심리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으면 체벌은 아동학대와는 구별된다.

> "제가 한 1년 전만 해도 크게 뭐라 하면서 효자손이나 빗자루 가지고 회초리를 들었어요. ...(중략)... 요즘 분위기도 그렇고 때려서 가르치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폭력이 될 수도 있겠다. 가정폭력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새는 좀 안 하려고 해요." D아버지, 2차 면담

> "몸에 뭔가 이상이 생기면 그건 학대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그냥 잘못한 거에 대해서 괴롭긴 하지만, 아예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을 정도면 괜찮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특별한 이상 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학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C아버지, 2차 면담

특별한 요구를 가진 부모를 대신해서 면담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만났던 부모들이 훈육이나 행동 수정의 목적으로 체벌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이들에 따르면 부모들은 체벌, 강압적 행동과 태도, 감정적인 행동과 태도 등이 학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했다. 특별한 요구를 가진 부모들은 갈등 상황에서 자녀의 권리를 침해하기도 하지만 이들이 부모 역할을 방임하거나 자녀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부모들이 "자녀를 잘 키우고자 하는 욕심"을 가진 존재라고 묘사했다.

> "생각보다 이주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이 자녀에게 굉장히 권위적 부모의 양육태도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자녀를 잘 키우고자 하는 욕심이 더 크고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내가 잘 키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이 몇 번 반복되면 소리가 커지고 아주 심각한 경우 감정조절이 안 돼서 체벌하기도 하더라고요." K전문가, 1차 면담

> "가끔 보면 체벌도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 정도가 아동학대 신고 정도의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부모님들이 얘기를 하세요...뭘 못하게 한다거나 혹은 무엇인가를 제한하거나 이런 것까지는 학대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I전문가, 1차 면담

나) 부모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면담에 참여한 부모 대부분은 일상에서 자녀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었다. 부모들은 자녀의 권리 존중을 위한 노력으로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의견을 수용해 주는 것, 자녀와 의논을 많이 하는 것,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과 같은 사례를 언급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자녀의 연령과 무관하게 참여권 존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A어머니는 음식이나 수면과 같이 생존에 직결되는 요구의 충족이 자녀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녀가 성장하면 "생각이나 마음을 존중"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참여권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C아버지는 기본생활습관의 하나인 수면을 예로 들면서 부모의 기대에 반하는 자녀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아동권리의 실현이라고 답했다. 유아기부터 초등기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참여권 실현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함께 의논하며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나아가 부모들은 자녀들도 사회적 존재임을 인식하고 독립된 인격체라고 말했다.

> "제가 생각하는 인권은 뭐 의식주라고 해야 되나? 잠은 이때 재워야 하고 하지만 얘가 그때 잘 성향이 아니고 좀 더 늦게 잠을 자는 게 좋아한다면 좀 더 늦게 재운다거나 그게 아동권리인 것 같네요." C아버지, 2차 면담

>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려고 하는 걸로는 일단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어주는 게 그것 중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수용을 많이 하죠. 그 얘기를 듣고 아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같이 이제 의논을 많이 하는 편이고 결정해서 그냥 이렇게 하자라고 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럴 건데 어때 너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B어머니, 2차 면담

> "아이들도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사회 활동을 하잖아요. 친구들 만나고 집에 와서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고, 그 와중에서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겠고, 말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말하지 않고 싶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걸 물어봐도 아이가 대답을 안 하면은 끝까지 묻지 않

> 고, '그렇구나. 대답을 지금 하고 싶지 않겠구나' 생각해서 더 물어보지는 않아요" E아버지, 2차 면담

특별한 요구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와 협력한 전문가들은 부모들이 자녀가 어리다는 이유로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모들은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생각했다. 어린 자녀가 고집을 부릴 때 부모들은 자녀와 대화하지 않고 해당 상황을 빨리 모면하기 위해 자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자기 입장을 강요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이해하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녀와 협의를 통해 의견을 결정하고 있었다.

다) 부모가 인식하는 아동권리교육 필요성과 참여 의향

면담에 참여한 부모들은 부모 대상 아동권리교육의 필요성에 대부분 동의했다. 이들은 "때려서 가르치는"(D아버지) 것에 허용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 사회적 분위기가 부모에게 비폭력적인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아동기에 가정이나 사회에서 권리를 존중받은 경험이 거의 없었던 부모들은 자기 자녀의 권리를 존중하는 양육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한 정보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훈육이 아동학대로 이어질까 염려했으며 자녀의 권리를 존중하는 양육의 기준을 찾고자 희망했다.

> "아직까지도 제가 하는 방식이 제대로 됐다고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검증되고 좀 체계적인 교육이 있으면 좋겠네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후기를 쭉 몇 개를 읽어보고 사듯이 어느 정도 이렇게 검증이 되고 확실히 저는 그런 교육이라면 참여할 의지는 있습니다. 저는 그 교육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D아버지, 2차 면담

> "아동학대가 요즘 너무 심해져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막상 집 안 내부에 있는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생각은 많이 바뀌지 않은 것 같아 보이거든요." B어머니, 2차 면담

아동권리교육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였으나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부모도 있었다. A어머니는 현재 생활지도와 관련한 부모교육이 더 필요해서 아동권리교육까지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즉 아동권리가 현재 자신의 자녀와의 연관성

이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참여 필요성을 낮게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A어머니는 영아기 자녀의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는 등 부모교육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어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지원을 찾기 어려워 집합 형태의 부모교육에는 참여할 수 없었다.

> "사실 그 부분은 안 들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유식을 시작해야 된다면 이제 이유식 관련한 영상과 같이 지금 당장 시급하게 더 필요한 정보들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볼 여유는 없을 것 같아요." A어머니, 2차 면담

면담 참여한 부모 대부분은 아동권리교육 참여 의향이 있었다. 그러나 아동권리교육의 의무화에 대해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생각에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들은 전반적으로 아동권리교육의 의무화에 대해 찬성했다. B어머니는 아동권리교육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는 부모들을 강제하기 위해 의무교육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면담참여자 중 아버지들은 아동권리교육이 의무화되었을 때 자신의 선택권이 침해당한다고 생각했다. E아버지는 아동권리교육을 의무화했을 때 부모들의 참여 동기 저하로 교육의 효과가 낮아질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면담에 참여한 모든 부모는 아동권리교육 참여를 위한 공가, 수당, 연차 사용 등 혜택이 보장된다면 아동권리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것에 찬성했다.

> "꼭 필요한 사람들이 안 듣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더 들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만 안 듣는 분들은 강제적으로라도 해야지 그나마 인식이 바뀌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부모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연차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죠." B어머니, 2차 면담

> "의무적으로 받는 거는 힘들 것 같고 자기가 필요할 때 받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무로 하게 되면은 필요에 의해 받는 것보다는 교육의 효과나 아니면 참석하는 그 마음가짐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치만, 편의성이 보장된다면 아동권리교육이나 다른 부모교육들에 참석할 것 같아요." E아버지, 2차 면담

특별한 요구를 가진 부모를 지원했던 전문가들은 대부분 아동권리교육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추가적인 지원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아동권리교육의 의무화를 통해 부모라면 누구나 참여하도록 하되 부모의 요구나 상황에 따라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연차 사용, 근무시간 인정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아동권리교육의 의무화가 실효성이 있다는 의견이었다. I전문가는 아동권리교육의 의무화는 찬성했으나 특별한 요구를 가진 부모들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불안이 크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의무화에는 우려를 표했다. 초기에는 원하는 부모만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고 특별한 요구를 가진 부모들의 아동권리교육에 대한 불안이 낮아지게 되면 전면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저는 (아동권리교육의 의무화가) 굉장히 제도적 마련으로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근데 그건(특별한 요구를 가진 부모 대상 부모교육의 의무화는) 또 차별이죠... 필요에 의한 교육이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K전문가, 1차 면담

> "그분들은 이제 어떤 직장이나 일을 하고 일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직장에서의 이 시간을 좀 빼주는 거... 부모교육을 듣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것들이 좀 더 바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J전문가, 1차 면담

>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또 다른 무언가를 의무적으로 요구하면 반대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기관에 있는 부모님들은 어쨌든 부모님들이 원하든 안 하든 저희가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원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시작을 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거는 괜찮다고 봐요." I전문가, 1차 면담

라) 부모가 요구하는 아동권리교육의 요건

면담참여자들이 선호한 부모 대상 아동권리교육의 실행 시간은 모두 주말이었다. 다수의 부모는 직장 때문에 평일 낮에 진행되는 부모교육에 참여가 어려웠다. 부모를 대신해서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대안이 없는 부모들은 자녀 동반이 가능한 부모교육을 요구했다. 부모 대부분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대면 교육을 선호했

지만, 목적과 상황에 따라 비대면 교육을 요구하는 부모도 있었다. 예를 들면 A어머니는 자녀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대면 교육보다 유튜브 영상과 같이 접근이 용이한 형태의 교육을 선호했다. 면담에 참여한 부모들은 자녀가 다니는 교육기관이나 가까운 거리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선호했고 배우자 또는 자녀와 함께 교육받기를 원했다. 부모가 선호하는 교육의 방식은 구체적인 사례를 토론하거나 역할극으로 간접 체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교육방식은 부모 역할과 자녀 권리가 충돌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역량을 증진하게 한다. 부모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D아버지는 교육 시간은 1시간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 “주말이고 남편이 아기를 볼 수 있는 날이 좋죠.” A어머니, 2차 면담

> “비대면이 필요하고 대면이 필요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면이 필요한 거는 소그룹이였으면 좋을 것 같고, 비대면은 인원수랑 상관이 없으니까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실천 사례로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 토론은 아무래도 대면이면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 B어머니, 2차 면담

> “장소에 대해서는 집 근처에 가깝고 접근이 쉬운 곳이 좋을 것 같네요. 영유아 교육기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시간만 맞으면은 갈 수 있죠.” C아버지, 2차 면담

> “같이 교육받으면 같은 내용을 들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니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고쳐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같이 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같이 들을 때 아기도 같이 들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E아버지, 2차 면담

> “질문보다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은 실제 사례들을 강사가 가지고 와서 설명해 준다든지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배역이나 이런 실제 상황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좋을 것 같아요.” C아버지, 2차 면담

특별한 요구를 가진 부모를 지원했던 J전문가는 부모교육과 함께 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추가적인 지원이 함께 제공되는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일회성 교육으로 부모의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일반적인 부모교육 외에

도 추가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J전문가는 개별 상담이나 집단 상담,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된 지원과 지속적인 관리를 제안했다.

> "일회성의 부모교육으로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부모교육은 한부모 가정의 부모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복지기관을 통해서 한다면 이런 교육 플러스 복지적인 측면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좀 파악을 해야 하고... 한부모 교육일 경우에 이제 자녀를 어디다 맡겨놓고 올 데가 없어서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도 같이 와서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과 같은 방안이 좀 논의되면 좀 실효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J전문가, 1차 면담

2) 전문가 대상 면담 조사

(1) 전문가 면담 진행 과정 및 참여자 정보

전문가 면담 기간은 2021년 10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였다. 면담참여자는 다양한 양육지원 서비스 체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이론 및 현장 전문가 8명이다. 면담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원격화상회의 프로그램(ZOOM)과 이메일을 활용하여 개별로 이루어졌다. 전문가 면담은 총 2회 실시되었으며 1회차는 원격 개별 면담이었고 2회차는 이메일을 통한 서면 검토 방식의 디브리핑(debriefing)을 했다. 1회차의 면담 시간은 약 40분~1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면담이 종료된 후 내용을 요약했다. 요약한 면담 내용을 토대로 2회차 디브리핑이 이루어졌다. 전문가는 1회차 면담 요약본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추가 혹은 수정 의견을 회신하였다. 면담참여자 정보는 표 Ⅳ-47과 같다.

〈표 Ⅳ-47〉 전문가 면담 참여자 정보

	성별	소속 (가칭)	초빙분야	거주 지역	관련경력	학력
A전문가	여	대학교	부모교육연구자 (교수)	경기	유치원교사 3년 6개월, 연구경력 13년	유아교육학 박사

B전문가	남	대학교	부모교육연구자 (교수)	서울	유치원교사 3년, 연구경력 7년	유아교육학 박사
C전문가	여	국가인권 기관	부모교육 (초등, 중고등) 강사	대구	상담경력 16년 부모교육경력 16년	문학치료학과 박사졸업
D전문가	여	육아지원 전문기관	부모교육 (영유아)강사	충북	보육관련 업무 10년, 부모교육 5년	박사과정
E전문가	여	육아지원 전문기관	부모교육 (영유아)관리자	경기	보육관련 업무 8년, 보육전문요원 7년	유아교육학 석사
F전문가	여	○○시청	공무원(행정가)	경남	사회복지 공무원 30년	사회복지학 박사수료
G전문가	남	○○시청	공무원	경남	사회복지 공무원 27년, 아동학대 조사 전담 공무원 1년	사회복지학 학사
H전문가	남	○○시청	공무원	경남	사회복지 공무원 10년, 아동학대 조사 전담 공무원 1년	사회복지학 학사

면담 내용은 일반적 양육지원 서비스 특징, 학대 예방 부모교육 및 서비스 지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대상 아동권리교육과 관련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전문가의 응답 내용에 따라 교육대상과 내용,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의무화에 대한 의견으로 나누어 기술했다. 전문가 면담의 구체적인 질문 목록은 부록 4에 제시했다.

(2) 전문가 면담 결과

가.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위한 부모 대상 아동권리교육의 대상과 내용

가) 교육대상 선별방식

면담에 참여한 전문가 대부분은 보편적 부모교육을 선호하였다. 전문가들은 양육에 어려움이 많은 가정을 특정하여 교육대상으로 선별하는 것이 사회적 편견과 낙인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염려했다. 유사한 어려움을 가진 부모만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진행하면 다양한 문제해결 방안을 공유할 기회가 적어서 교육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일부 전문가는 보편적 부모교육을 선호하면서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많은 가정을 선별하여 우선하여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예방적 차원에서 선별적 부모교육을 먼저 시행하고 점차 교육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교육이 필요하지만,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가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는 기대했다.

> "고위험군만 이렇게 모아놓고서 뭔가를 하면 ...나랑 똑같은 사람들이라면 얻어가는 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부모들이랑 섞여서 한다면 그 들한테 어깨너머 배우는 양육의 기술이라든지 감정조절의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내가 이거는 잘못하고 있고 이 방법도 쓸 수 있겠구나'라고 자연스럽게 배워가지 않을까요." D전문가, 1차 면담

> "...꼭 필요한 가정에게 일단은 먼저 집중적으로 해주는 방식인 거고... 이건 꼭 필요한 거니까요. 그렇게 한 다음 점점 넓혀 나가야 되겠죠." C전문가, 1차 면담

전문가 중 일부는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교육의 대상이나 목적에서 차이가 있었다. A전문가는 대학, 산부인과 또는 산후조리원, 교육지원청, 육아종합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예비부모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자녀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한 실제적인 필요가 없는 경우 자녀의 발달 특성이나 구체적인 양육기술을 다루는 교육은 효과가 낮다고 A전문가는 보았다. 따라서 예비부모교육의 내용은 인간관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중심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E전문가는 예비부모교육이 자녀 임신·출산·양육의 부담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E전문가는 자녀 출산 이후부터 부모의 교육 참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부모 역할을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대학 교양 교과로 시민교육 등을 통해 아동뿐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중의 필요에 대해서 다룰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산부인과와의 협약을 통한 예비부모교실이나 산후조리원과의 협약을 통해서 부모교실을 여는거죠...교육지원청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예비부모교실을 열어도 좋을 것 같아요." A전문가, 2차 면담

> “예비 부모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더 절실하게 요즘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결혼했지만 아직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들은 양육에 대한 두려움, 육아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어요. ” E전문가, 1차 면담

나) 교육내용

면담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부모의 아동관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교육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녀를 성인과 동등한 권리주체로 인식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부모교육의 주요한 방향이며 가정 내에서 아동권리를 실현하는 토대가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부모의 가부장적인 태도와 가치를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A전문가는 아동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가 부모교육 이론이나 목적과 무관하게 부모교육의 기본 전제라고 말했다. C전문가는 자녀의 의견이나 의지를 고려하지 않은 부모의 지원이나 요구는 아동을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못하고 부모 자신의 욕구를 자녀에게 투사한 결과로 보았다. A전문가는 자녀를 부모와 동일한 존재 혹은 부모에게 소속된 존재가 아니라 개별적인 존재로 “분리”하여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아동을 약간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을 많이 하고 자기의 욕구 실현의 대상처럼 이제 보는 경우도 아직도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족했던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막 아이한테 이제 투사해서 해주려고 하고 요구하고 이런 게 많거든요. 아이의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되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C전문가, 1차 면담

> “사실 우리가 지금 서구랑...가장 다른 게 자녀를 소유물로 봐요...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가져야 되는 건 (자녀가 부모와 동일체가 아니라 독립된 존재로) 분리시키는 거잖아요...(부모인) 나를 투영시켜서 되는 양육보다는 그 아이(자녀) 자체를 인정했을 때 그 아이가 더 건강하게 성장한다. 라는 거를 (부모에게) 알려줘야겠죠.” B전문가, 1차 면담

면담에 참여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학대예방을 위한 부모 대상 아동권리교육은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된 아동의 권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H전문가는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과 참여권에 대한 교육을 “기본적인 교육”이라고 언급했다.

개별 부모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부모교육의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융통성이 필요하지만 K전문가는 부모 역할 수행의 기본 토대인 아동권리에 관한 이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K전문가는 "...아동 권리 내용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상과 "권리라는 맥락[하고] 연결"하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J전문가는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과 참여권을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권리실현 방안이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권인 아동권리(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에 대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한 다음 학대예방교육이 덧붙여졌으면 좋겠고, 아동들의 생애발달주기에 대한 교육도 함께 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전문가, 2차 면담

> "그리고 산부인과와의 협약을 통한 예비부모교실이나 산후조리원과의 협약을 통해서 부모교실을 여는거죠. 생존, 발달, 보호 이런 것들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해랑 부모의 역할에 대한 내용으로요." A전문가, 2차 면담

> "아동권리존중을 위해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부모교육과 더불어 발달단계에 적합한 참여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사례를 통해 제시함으로 구체적인 방법이 제공되었으면 함." J전문가, 2차 면담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대상 아동권리교육의 내용으로 자녀의 발달 특성을 언급했다. G전문가는 자녀의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녀의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는 효율적인 부모역할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정옥분, 정순화, 2016: 나종혜, 2005, 재인용). 아동기는 급격한 성장과 변화가 진행되는 시기이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가 자신의 양육방식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C전문가는 영아의 부모를 예로 들어 자녀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양육이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부모는 영아 자녀의 "적극적[으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국가인권위원회, 2006)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성인과 다른 영아의 자기표현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는 자녀의 요구에 "반응을 해주는"(C전문가)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자꾸 지시하게”(C전문가) 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학대가 발생한다.

> “..아동의 발달 과정 발달 특성을 좀 이해하는 측면하고요. 또 자녀의 발달 과정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그 어떤 개입하는 방법들. 그리고 어떤 상황에 따른 또 개입하는 방법들...” J전문가, 2차 면담

면담에 참여한 모든 전문가는 부모교육에서 자녀의 문제행동을 수정하기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식을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훈육이라는 목적이 있을 경우 자신의 행동을 학대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체벌뿐만 아니라 자녀의 정서적·심리적 안녕을 위협하는 강압적 훈육이 학대가 될 가능성에 대해 부모가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내용의 교육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발달단계에 맞는 훈육 방법, 체벌로 인한 권리침해 등과 관련한 사례를 제시하여 부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2021년 1월 8일 민법 제915조 징계권이 삭제되어 과거에 “자녀 훈육을 위한” 목적의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되었다는 것과 그 (징계권 삭제의) 취지(F전문가)”를 부모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 “부모님들이 뭐가 존중이고 뭐가 학대인지 그런 지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알고 내가 깨쳐야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교육도 찾게 되고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공중이 뭐고 학대가 뭔지를..” D전문가, 2차 면담

> “징계권이 학대로 이어진 사례 및 과도한 징계가 아동존중에 어떻게 위배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해요.” A전문가, 2차 면담

> “자녀징계권이 삭제된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부모를 위한 아동권리교육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문제행동을 수정하기 위해 아이의 발달단계에 맞는 훈육방법과 비폭력적인 효과적인 양육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자녀의 발달상황에 맞는 주기적인 양육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전문가, 2차 면담

나. 아동학대예방교육(아동권리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가) 교육의 문제점

면담에 참여한 전문가 대부분은 일회성 부모교육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오랜 시간에 걸쳐 사회화되기 때문에 단발적인 부모교육으로 양육태도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심화 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D전문가는 내용의 계열성을 고려하여 조직한 최소 3~5차시 정도의 부모교육을 계획하여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B전문가는 부모교육의 회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반복"교육을 언급했다. 아동권리와 발달에 관한 정보가 부모의 흥미를 유발하는 주제가 아니지만 필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반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처음부터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친근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여 관심을 유도한 후 점차 심화 과정으로 발전시키면 좋겠습니다. ...(중략)... 최소 5차시 정도는 계획하여 교육의 내용을 점차 심화시키면 좋겠습니다." D전문가, 1차 면담

> "발달 단계상 이런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이래서 우린 이걸 이렇게 받아들여...일반인들 그분들이 절대 무지해서가 아니라 별로 재미있어 할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알아야 되는 내용이잖아요...계속 반복하는 방법이 일단은 첫 번째고 쉽게 다가가야 되겠죠. 쉽고 반복하고 그리고 사례 중심이 돼야겠죠." B전문가, 1차 면담

전문가들은 집합식 대규모 강의 형식으로 진행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대상 아동권리교육에 우려를 표현했다. E전문가는 부모교육을 대규모, 소규모와 워크숍 형태로 구분했다. 대규모 집합 강의에서는 전문가 집단이 사전에 결정한 양육정보와 지식을 부모에게 전달했다. 이는 부모를 자신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수행할 역량이 부족한 존재로 보는 과거의 부모교육 관점이 반영된 형식이다. A전문가는 강의 형태의 부모교육에 대해 지속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D전문가는 강의 형식의 교육에 부모의 참여가 저조했던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부모의 주도적 참여가 가능한 교수법을 적용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D전문가는 “지루하고 따분”한 강의 형식은 예민한 주제와 내용을 포함하는 부모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C전문가는 여러 차시의 부모교육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대규모 집합 강의식 교육으로 진행된다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교육이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기술적인 측면, 방법론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강의는 지속성의 문제에서나 효과성의 문제에서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은 좀 단편적이거나 형식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A전문가, 1차 면담

> “같은 공간에서 강의실만 다르게 체험활동을 했었고 권리 존중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여기는 갔다가 저기는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런 데다가 권리 존중에 아동학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니 불편할 수도 있고 체험활동 같은 경우에는 아이랑 같이 할 수 있는데 권리 존중은 엄마만 들어야 되는 교육이거든요.” D전문가, 1차 면담

> “집단 교육을 여러 차례 한다고 꼭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또 없고... 형식적인 집단 교육 스타일보다는 바우처 제도 같은 것으로 해서 개인 상담처럼 부모교육 시스템이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C전문가, 1차 면담

위에 제시한 내용 외에도 전문가들은 부모의 개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 참여가 어려운 시간이나 장소에서 운영되는 교육이나 자녀 동반이 어려운 경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교육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나) 교육의 개선 방안

면담에 참여한 전문가 대부분은 부모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개별화 맞춤 교육을 제안했다. 대규모 집합 강의 형식의 부모교육은 성장배경과 신념이 다른 부모의 개별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부모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일대일 상담 형식의 부모교육과 “솔루션 형태의 정보”(E전

문가) 제공을 제안했다.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교육에서 부모는 자신의 고민을 깊이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전문가는 부모의 상황에 적용 가능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소규모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부모에게 각자 가지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을 공유하고 "부모들끼리 배워보는 시간"(D전문가)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자기가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에 바우처와 같은 지원을 통해 개인 상담처럼 개인 부모 교육 이런 시스템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C전문가, 1차 면담

> "어머님들은 굉장히 이렇게 뭔가 본인들에게 득이 되는 거를 우선으로 하시더라고요. 저희 센터에서는 권리 교육할 때 항상 선물 드리거든요." D전문가, 1차 면담

> "자신의 양육태도를 계속해서 점검하기 위해서는 양육과 관련해서 글을 쓴다든가 소그룹 형태의 워크숍과 같은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소그룹으로 부모들이 모여서 서로의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다른 부모는 어떻게 양육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E전문가, 1차 면담

> "저는 집합 이런 거보다는 가정 양육 상담을 많이 늘리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상담이라는 건 자기에 대한 부분을 다 이제 내놓고 거기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해 가는 거죠...자녀 인권, 양육태도는 교육과 상담이...같이 가면 되게 이상적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E전문가, 1차 면담

면담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부모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운영시간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낮에 운영되는 부모교육은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마음의 여력이 있는 부모"(A전문가)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부모의 상황이나 환경을 고려하여 교육 시간대와 횟수를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자녀 돌봄 서비스 혹은 연차와 같은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에 대한 보상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체

험 형식의 교육 확대 역시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언급됐다.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교육은 부모에게 자녀를 객관적으로 바라 볼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긍정적이다(D전문가).

> “참여율을 높이려면 접근을 각자 부모들의 상황이나 환경에 맞춰서 좀 다양화해서 접근하는 것들이 일단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순간 드네요.” A전문가, 1차 면담

> “횟수와 시간을 이제 다양하게 해서 부모님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올 수 있도록 운영하면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E전문가, 1차 면담

> “교육을 들으러 가고 싶은데 부모들이 교육에 참여하면 아이를 맡아줄 데가 없는 거예요. (자녀와) 같이 들을 수 있는 교육이 있으면 조금 더 참여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D전문가, 1차 면담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대상 권리교육에 부모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제안했다. 교육에 대한 정보를 부모들에게 자주 노출하여 교육의 내용과 참여 방법을 안내하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위치와 관계없이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공익광고와 전문가를 초빙한 간담회 등 아동권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다양한 양육지원 서비스가 있다는 정보를 많이 주고 노출하는 것이 필요함.” J전문가, 1차 면담

> “카톡 문자나 sns, 카드 형식,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계속 가정으로 부모교육을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아요.” G전문가, 1차 면담

> “공익광고와 전문가 초빙 간담회 등 지속적인 아동권리교육 필요한 것 같아요.” H전문가, 2차 면담

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대상 아동권리교육 활성화

면담 참여 전문가는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부모교육이 예비부모단계를 포함하여 자녀의 생애주기를 반영한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J전문가는 영유아기, 초등 저학년과 고학년, 청소년기 등 자녀의 연령대별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방법이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K전문가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자녀성장에 따라 양육태도와 방법을 차별화하는 것 외에도 자신이 성장한 문화와 자녀가 성장하는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부모 역할 수행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예비부모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부모 역할에 요구되는 지식, 기술, 가치와 태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부모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더 심각하게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예비부모교육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애들이 사춘기가 빠르게 지금 오니까 고학년이 돼서는 이제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울 수가 있는데 저학년은 그냥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부모님한테 교육을 한 번 더 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이렇구나’ 하는 부모교육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전문가, 1차 면담

> “어린 자녀일 경우에 청소년 아동일 경우에 학년기. 또 청소년기. 좀 (소통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양육태도 방법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J전문가, 1차 면담

> “예비부모교육을 통해서 양육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E전문가, 1차 면담

> “저도 엉겁결에 부모가 되었고, ‘아이는 이렇게 키우는 것이다’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부모가 되어서 저도 힘들었거든요. 그 시기별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을 겪게 되니까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F전문가, 1차 면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대상 아동권리교육의 의무화 방안에 대해서 다수의

전문가는 부모의 교육 참여를 지원하는 여건 조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의무화에 찬성했다. 영유아 및 초등학교 재학 아동은 청소년기 아동보다 부모의 보살핌과 보호에 더욱더 의존적이다.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7호는 “유아의 부모는...유아의 권리[의] 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부모교육은 부모의 양육 역량을 증진하여 가정 내에서 아동권리가 실현되게 하는 기본 토대이다. 전문가의 부모교육 의무화 찬성 의견은 부모교육의 긍정적 효과가 의무화를 통해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의 반영으로 보인다. 실제로 E전문가는 의무화된 부모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았던 부모에게 아동학대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이렇게 혼자서 할 수 없을 때 부모님들이 도와주어야 하잖아요. 그 이후에는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겠지만 그 전에는 부모님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I전문가, 1차 면담

> “의무화 교육의 장점이 더 큰 것 같아요. 교육이 필요한데 못 느끼는 사람들을 알게끔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사실은 들거든요.” E전문가, 1차 면담

> “의무화가 필요하죠. 의무화를 하려면 사람들이 기본 생계를 다 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 놓고 이제 의무화하는 건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의무화하는 거는 이건 좀 과한 법률적 개입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A전문가, 1차 면담

전문가들은 부모교육의 의무화가 반발을 유발할 수 있다며 자발적 부모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양육지원 서비스 연계를 제안했다. 부모의 교육 참여 의지나 요구와 무관하게 부모의 사회·경제적 여건은 교육 참여를 어렵게 하는 현실적 요인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부모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휴가 및 연차 사용을 제공해주거나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교육에 참여한 부모에게 “수당을 지원”(C전문가)하여 부모교육이 “강제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보편적인 서비스”(E전문가)로 느끼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전문가는 기존 양육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모교육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

도록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영유아건강검진을 받는 동안 부모에게 맞춤형 부모교육이나 상담을 지원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자녀와 부모에 대한 동시 지원은 부모가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B전문가는 추가서비스 제공을 통한 참여독려가 아닌 기존 서비스 이용 조건으로 부모교육을 부과하는 참여강요는 오히려 기존 서비스의 이용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요즘같이 맞벌이 부모가 많은 시기엔 기업에서 양육하는 부모들을 위해서 부모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휴가를 주거나 연차를 쓸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부모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연차 항목을 별도로 마련해준다면 부모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A전문가, 1차 면담

> "보편적인 심리가 이제 바로 물질하고 연결 짓는 것이 제일 수월하니까 어떤 유인책 중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교육이라는 게 막상 가기는 싫어도 가서 들어보면 잘왔다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육 수당과 연계지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F전문가, 1차 면담

> "'내 멋대로 키울 건데 왜 국가에서 난리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교육을 들은 가정은 의료보험료를 좀 낮춰주는 것과 같은 지원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아이들 존중하는 사회가 될 거고 아동학대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D전문가, 1차 면담

> "독려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해요. '수당을 받으려면 이 교육을 들어라'와 같은 형태는 지양해요. 기존의 양육지원방안이 아닌 새로운 부모교육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전문가, 1차 면담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발생한 문제에 따른 대증 요법적 부모교육보다 아동존중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우수한 내용과 교수법을 적용한 부모교육 체계의 구축을 제안했다. C 전문가는 부모교육과 관련 있는 정부 부처가 학계나 현장의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E전문가는 부모나 아동의 요구에 부합되는 교육을 주제별·수준별로 안내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대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H전문가는 학대 발생 후 사후조치보다 학대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H전문가는 학대예방을 위해 마련

되어야 할 제도로 “부모교육”을 예로 들었다.

> “...하는데도 문제가 일어난 거를 해결하는 방식에 급급하고 질적으로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네요...보건복지부라든지 여성가족부라든지 이런 데서 전문가의 조언을 많이 받으셔서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받아들이셔서 사전에 질적으로 좋은 부모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해요.” C전문가, 1차 면담

> “개별 부모들의 요구도를 파악해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부모에게는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알려주고, 해당 교육의 다음 단계는 심화 과정으로 어떤 교육을 추천해 줄 수 있는지 등 체계적인 관리도 함께 필요하겠죠.” E전문가, 1차 면담

> “그거보다는 아동학대가 일어나 나기 전에 미리 부모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부모님들이 인식이 아이들이 자기 소유물이 아니고 한 개체로 보고 아이들을 대했으면 좋겠다로 변화할 수 있도록...” H전문가, 1차 면담

이상으로 부모 및 전문가 면담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면담참여자 대부분은 부모로서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높이고자 전문성이 있고 체계적인 부모교육을 요구하였다. 구체적으로 감정조절과 친밀감 형성, 격려와 지지 방법 등 양육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듣고 싶어 하였다. 이에 따라 부모교육의 심화 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최소 3~5차시로 계획하여 내용의 계열성을 고려한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일회성의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 3~5차시로 계획하여 교육의 체계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때, 부모들이 접근하기 쉬운 기초적인 내용에서 점차 심화된 내용으로 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되었다.

둘째, 부모들은 훈육과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체벌이 아동학대와 연결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녀에게 강압적인 형태로 가하는 훈육을 권리침해로 접근하지 않고 바르게 키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가정에서부터 자녀의 존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녀의 발달단계에 대한 부모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부모들이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고 부모와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교육의 주요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대와 훈육의 차이에 관련된 내용을 아동권리교육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셋째, 면담참여자들은 아동권리교육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였으나 의무화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었다. 아동권리교육 의무화에 동의한 참여자들은 아동권리교육이 필요한 부모를 교육에 참여시키려면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영유아 및 초등시기의 아동은 발달 특성상 다른 연령대의 아동보다 부모의 보살핌과 보호가 더욱 필요하며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우므로 부모교육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의무화에 우려를 표한 참여자들은 부모교육 참여 시 마음가짐과 동기 저하로 인한 효과의 감소와 자기 결정권 침해를 염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직장에서의 공가, 수당, 연차 사용 등 부모의 편의성이 보장될 경우 의무화 교육에 모두가 긍정적이었다.

넷째, 예비부모부터 단계별로 적합한 아동권리교육이 의무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예비부모들이 부모의 역할에 대해 배우지 않은 채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의무적으로라도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자녀의 성장·발달단계에 따라 부모가 양육과정에서 겪게 되는 상황이 다양하므로 자녀의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때, 부모교육을 의무화한다면 경제적 지원이나 혜택을 주는 등 부모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정책과 연결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을 듣는 부모의 편의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경제적 지원, 혜택, 양육지원과의 결합 등과 같은 지원이 동반되어야 함을 제안했다.

다섯째, 면담참여자들은 경제적·사회적 위치와 관계없이 모든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적합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를 위해 아동권리교육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부모들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고 연구자 또는 전문가에게 지속적인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권리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공익광고와 전문가를 초빙한 간담회 등 아동권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부모들이 아동권리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고 질적으로 우수한 부모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설문조사와 면담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교육을 개선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 내에서 아동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아동권리실현 의무이행자인 부모의 부모교육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 현황 조사에 따르면 다양한 정부부처가 산하 기관을 통해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 중 603명 중 400명(66.3%)이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하지 않은 부모들은 부모교육 실행을 알고 있지만 참여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 운영 측면에서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함께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가족구조와 역할 변화 등으로 인한 실질적 양육 담당자의 부모교육 접근성 역시 제고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의 대상은 '부모(부부공동)'가 가장 많았고 '부모-자녀', '아버지', '조부모', '기타(다문화, 한부모, 예비부모 등)' 순서였다. 양육에 대한 아버지와 조부모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은 어머니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아버지에게 양육 및 가사참여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아버지들은 자녀 양육과 가사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다(육아정책연구소, 2018). 그러므로 아버지의 요구를 반영한 부모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현재 아버지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부모교육은 '자녀와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 및 양육', '자녀와의 놀이법' 등으로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실시횟수가 현저히 낮고 아버지의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면담에서 아버지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과거 양육방식과 현재 양육방식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이 외에도 어머니와의 양육갈등, 일과 양육 사이의 스트레스 증가와 같은 문제도 있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아버지를 위한 부모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 양육에 있어 조부모의 역할도 중요하다. '부모를 위한 아동권리교육의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양육 시 도움받는 곳은 '자녀의 친ㆍ외조부모'가 전체 비율의 60.2%를 차지하였다. 이 중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215명,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204명이 친ㆍ외조부모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하여 비슷한 수로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조부모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조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하는 기관은 주로 영유아를 자녀로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었다.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서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자녀의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기관에서 조부모를 위한 부모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COVID-19로 인하여 모든 기관에서 대면으로 하는 부모교육의 횟수는 현저히 감소하였다. 부모교육 횟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부모들이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기회도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부모교육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대면으로 시행하였던 부모교육을 온라인 화상 방식으로(ZOOM, edwith)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 화상 방식은 COVID-19 상황을 고려하면 안전하고 접근성이 좋으며 가정에서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조부모를 대상으로 하거나,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가정, 전자기기가 익숙하지 않은 부모들은 온라인 화상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은 직접 대면으로 부모교육을 시행하지 않으면 부모교육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므로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서는 부모교육 참여 횟수가 감소하지 않도록 참여 방식, 환경 등을 고려한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부모가 자녀의 권리실현을 위한 의무이행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이 포함된 부모교육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부모들이 인식한 아동권리는 주로 아동존중, 아동학대, 아동보호와 관련이 있었다. '아동존중'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적극적인 실천을 의미한다면, '아동학대'와 '아동보호'는 보호할 권리를 의미한다. 많은 부모가 아동권리를 아동학대와 아동보호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권리를 보호권에 초점을 맞춘 협소한 의미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신이 자녀의 권리를 지켜주는 편이라고 응답했으나 아동권리교육에 참여한 비율은 22.2%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주로 교육서비스나 공무원과 같이 아동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인권교육을 받은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해 체벌에 대한 허용도가 낮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모교육은 아동권리 혹은 부모 자신의 인권에 대한 교육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이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여 인권친화적 양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서비스나 공무원과 같은 직업군 외 모든 부모를 위한 아동권리교육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셋째, 가정 내 아동권리실현을 위해 부모교육을 체계화할 수 있는 관계부처 협

동 기구 혹은 위원회가 필요하다. 현재 실행되는 부모교육은 부모의 요구에 따라 시행되지만, 중앙부처 산하 기관의 경우 설립 근거와 목적에 맞는 부모교육에 주력한다. 아동권리보장원과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는 부모교육에 아동권리가 충실히 다루어지지 않는 것도 시행 기관의 설립 목적과 관련이 있다. 현재 조사된 중앙부처 기관 중 개인의 인권실현을 주요 목적으로 부모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은 아동권리보장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이다. 그러나 아동권리보장원의 경우 아동의 인권뿐만 아니라 아동보호·학대·입양과 같은 특별한 요구를 가진 부모를 위한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공공기관 및 언론사와 같은 특정 직군에 한하여 집중적인 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교재·교육 자료실을 통하여 6편 정도의 영상만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영유아와 아동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여 이들의 존엄과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통해 의무이행자인 부모의 역할 수행을 위한 인권친화적 양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부모들은 평소 '인권'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지 못하며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도 부족했다. 부모들이 '인권'이라는 단어를 접하는 경로는 주로 TV(뉴스, 시사프로그램 등) 및 인터넷(포털, 블로그, SNS 등)이었다. 대중매체를 통해서 비치는 '인권'의 이미지와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은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대중매체의 활용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인권교육은 자신의 권리 인식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까지 존중하는 태도를 교육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녀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이행자인 부모에게 필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캠페인으로 부모에게 '인권'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자주 노출시켜야 하며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카드뉴스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라도 부모에게 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를 위한 양육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부모들은 아동학대의 가해자를 주로 부모(친부모, 계부모, 양부모)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생각했다. 특히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을 자녀 및 사회·문화적 요인보다 부모 및 가족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아동학대가 부모 자신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

정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양육 어려움에 대한 부모의 스트레스 해소'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종합하면,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것은 아동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양육지원 및 상담과 같은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부모가 체벌을 포함한 아동학대는 물론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권리침해를 민감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체벌을 교육 방법의 하나로 인식했던 사회통념으로 인해 부모들은 체벌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징계이고 아동학대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자녀에게 체벌하는 행위에 대한 부모의 생각을 조사한 결과 '체벌이 올바르다고 할 수 없지만, 훈육이나 교육 목적이 있을 경우 허용될 수 있다'가 62.5%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부모들은 아동학대 및 권리침해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생각했다. 부모들이 양육과정에서 아동학대로 가장 의심한 상황은 '자녀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폭언을 했을 때'였고 자녀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의심한 상황에 대해서는 '자녀를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거나 자녀의 의견을 무시할 때'가 가장 많았다. 이는 정서적 학대와 참여권 관련 내용으로 법적으로 학대로 판정받는 사례와는 거리가 있다. 부모들의 응답은 자신의 양육행동을 아동학대 및 권리침해로 의심하면서도 이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따라서 인권과 아동권리를 포함한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 스스로 인권감수성을 갖고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 양육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침을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및 권리침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보 전달과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한 부모 대상 아동권리교육 안내서(안)를 부록에 제시한다.

V. 결론 및 제언

1. 예비부모교육 관련 제언
2. 부모교육 관련 제언

이 연구의 선행연구 검토, 국외 사례조사, 부모대상 설문조사, 부모 및 전문가 면담, 국내 부모교육 현황 조사를 토대로 부모교육 개선 방안을 예비부모교육과 부모교육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각 개선방향을 상술한 다음 부모 대상 아동권리교육 안내서(안)을 제시하였다.

1. 예비부모교육 관련 제언

첫째,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친화적인 기초적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기초적 예비부모교육이란 명확하게 예비부모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부모됨의 기본적인 관점을 형성할 수 있는 내용 및 태도 학습을 의미한다. 기초 교육으로 볼 수 있는 초중고등학교 실과와 기술가정 교과는 발달에서부터 결혼과 임신, 출산, 부모역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해외 교육과정에서 인간발달, 성과 관계 교육, 상호작용 등을 제시하는 것과 동일하다. 학교 예비부모교육 실태를 조사한 선행연구(육아정책연구소, 2010)는 고등학생들이 '예비부모교육'으로 인지하지는 않았으나 「기술가정」 교과를 통해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 가족 구성과 부모역할을 학습했다고 보고했다. 학교 체계 속에서 실과 및 기술가정 교과 등의 교과 수업을 활용하여 예비부모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 기술가정의 내용이 초등학교 실과 및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와 연계 확장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광범위한 관점을 형성할 수 있는 기초적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인권친화적 예비부모교육이란 권리를 중심으로 상호적 관계를 강조하는 예비부모교육을 뜻한다. 예비부모교육의 방향은 개인의 인격적 성숙을 통한 인성교육과 자아이해와 가족관계 증진의 목적이 포함된다(남민우, 이운지, 2017; 육아정책연구소, 2010; 정순화 2017). 예비부모교육은 기본적으로 자기이해와 존중에서 타인에 대한 존중 나아가 가족과 아동에 대한 존중에 기반해야 한다. 이 관점에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및 대학교재는 부모됨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내용과 자기 이해와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배려를 익히는 내용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초

중등학교 시기의 학생들은 자녀 관점에서 예비부모교육을 접하게 되므로 건강한 자아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개인적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더 적합할 것이다. 즉 예비부모교육의 효과를 거두려면 전체 학교 교육 내에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는 인권교육이 포괄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예비부모교육의 효과 검증을 위해 공통의 목표, 내용, 성취기준 개발을 제안한다. 초중고등학교의 실과 및 기술가정 교과목은 과목 그 자체로 고유한 학습 목표와 성취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과목들을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기초적 내용으로 분류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영역의 예비부모교육인지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간접적 혹은 잠재적으로 이루어지는 예비부모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예비부모교육의 일반적 내용에 근거하여 각 교과 및 비교과의 활동을 통해 예비부모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등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로 볼 수 있다[80]. 예컨대, 초등학교 실과 교과의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의 성취기준은 '아동의 전인적 발달 특징과 개인차에 따라 자신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발달하는 조건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성취기준은 실과 교과 목표인 '자기 발달, 가족관계 이해하여 긍정적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기, 배려와 돌봄 실천으로 행복한 삶을 위한 관계형성능력과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을 기르기'와 관련되어 있다. 동시에 이 내용은 예비부모교육 관련 요소로도 볼 수 있다. 예비부모교육의 기본적 내용을 "자기이해, 결혼과가정, 가정폭력, 부모교육이론및프로그램, 부모됨준비(자녀발달과 부모역할) 등(여성가족부, 2016)"으로 본다면, 제시된 사례는 "자기이해"와 "부모됨준비" 등의 내용이다. 그밖에 예비부모교육을 위한 별도의 성취기준으로 "자신의 발달을 통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정체감을 형성하여 예비부모로서의 기초적 역량을 갖춘다"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 개발을 통해 교육 시기별로 이루어지는 예비부모교육의 지속성과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학교 밖의 예비부모교육은 유아교육기관, 건강가족센터, 종교단체 등에서 각기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육아정책연구소, 2010). 그러므로 하나의 목표와 내용, 성취기준 등을 관계부처에서 공통으로 개발한다면 예비부모교육 운영이 별도로 이루어지더라도 같은 내용이 전달될 수 있어 효과적일 것이다. 또 각 기관

80) 기존 학교 교육과정은 각 교과목의 성격과 더불어 목표(총괄, 세부),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을 제시한다(교육부, 2018a, 2018b). 이러한 기준에 따라 예비부모교육 영역을 체계화할 수 있다.

에서 이루어지는 예비부모교육을 서로 교차하여 교육을 받더라도 내용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셋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대학교육에서 예비부모교육 강좌 및 가정폭력 관련 내용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예비부모교육의 다양한 효과 중에는 젊은 부모들이 어린 자녀에 대한 양육의 어려움을 이해하여 양육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학대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포함된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가 전체 학대 발생 사례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보건복지부, 2021)은 부모 및 예비부모 시기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예비부모교육의 목적은 아니지만,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안전교육의 일환으로 폭력예방및신변보호교육이 연간 8~10시간 실시되고 있다(교육부, 2016). 폭력예방및신변보호는 자살예방교육, 학교폭력교육 등과 함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다루는 것이며 학생 자신에 대한 학대 피해와 부모의 학대 행위를 진단하도록 돕는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 역시 포괄적인 관점에서 아동학대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조적인 예비부모교육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부모기로 진입할 가능성이 가장 큰 대학교 시기에 예비부모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대학에서 예비부모교육 관련 강좌는 대다수 선택교양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일반-심화 등으로 조직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 폭도 넓지 않다(육아정책연구소, 2010). 최근 대학의 교양과목 대형화 추세와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하면 관련 강좌는 더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이 조사에 포함된 대학교재에는 아동학대 등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학생의 학대에 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 예비부모교육, 특히 아동학대와 관련된 교육의 확대가 요구된다.

2. 부모교육 관련 제언

부모교육이 부모의 양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가정 내 아동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모 대상 아동권리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제도화,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양질의 콘텐츠 제공, 전 국민이 인권교육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국내 부모교육 내용 및 현황조사,

부모를 위한 아동권리교육 설문조사, 부모 및 전문가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교육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모 대상 아동권리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제도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모교육에 아동권리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영유아보육법」, 「건강가정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복지법」, 「교육기본법」 등 부모교육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정부 각 부처에서는 부모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중앙부처 기준으로 교육부(유아교육진흥원, 전국 학부모지원센터), 보건복지부(육아종합지원센터,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아동권리보장원), 여성가족부(건강가정지원센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육아정책연구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모교육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와 아동권리보장원과 같이 아동권리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제외하고 아동권리와 관련한 내용을 부모교육 주제로 다루는 비율은 현저히 낮았다. 일부 기관에서만 아동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부모교육에서 다루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아동학대 예방과 안전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가정 내에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부모역량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 부모 및 전문가 면담 결과, 부모는 아동권리를 인식함으로써 자녀를 보다 긍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동권리교육은 부모의 무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아동권리 침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모교육의 내용에 아동권리실현을 위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가정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부모의 교육참여를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국내외 부모교육의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는 부모교육이 선언적 측면에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부모교육은 의무를 기반으로 한 보편적 형태의 부모교육이 아니라 선택에 의한 임의적 부모교육이다(민하영, 2016). 선별적

이고 임의적인 부모교육에서 협약의 실천으로 진화하는 것은 '삶의 주체자로서 아동의 능동성'을 인정하고 보장하는 것과 직결된다. 따라서 부모교육에 대한 참여가 선별적이고 선언적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제고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권리교육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종사자의 참여만 강제하고 있다. 즉 아동학대의 전조를 보이는 부모를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참여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최근 양육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부모의 아동권리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20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에 아동의 보호자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부모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동권리교육을 받은 경험 비율은 낮았다. 이 조사에서도 공무원이나 교육서비스와 같이 특정 직업군을 가진 부모만이 아동권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대상 아동권리교육의 실질적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면담에 참여한 다수의 전문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의 의무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의무화된 부모교육에 부모가 반발하거나 비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교육 효과가 낮아질 가능성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부모의 자발적인 교육 참여와 높은 교육 참여율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 교육 참여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는 부모가 아동권리실현의 의무이행자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부모교육에 참여 의사가 있지만, 여건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모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부모교육 참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 여기에는 부모교육 참여를 위한 시간과 비용 지원, 직장 내 부모교육 실시, 아동권리와 인권친화적 양육에 대한 홍보 등이 해당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대상 아동권리교육의 참여율과 만족도를 높이려면 부모교육의 주제와 운영방식을 다양화하고, 전문성을 가진 강사진과 내용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한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모는 규정에 따라 강제된 교육이 아니라 필요와 만족에 따라 선택한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이 연구의 국내 부모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부모를 위한 아동권리교육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성별에 따른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아동권리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부모는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요일, 시간, 수강형태, 교육기관에 차이를 보였으므로 이를 반영한 아동권리교육을 계획해야 한다.

둘째, 직업을 가진 부모들의 참여율을 높일 방법과 대책이 필요하다. 부모들이 가장 최근에 참여했던 부모교육 경험을 보면, 주로 평일(월~목요일) 오전 시간대 실시되어서 직업을 가진 부모들은 참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부모교육 실시시간과 장소를 다양화하거나 기업에서 휴가 및 연차를 제공해주는 등 직업을 가진 부모들의 참여율을 높일 방법과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부모를 위한 아동권리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령에 따른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른 인권친화적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교육의 내용뿐만 아니라 부모가 선호하는 부모교육 수강형태, 강사, 교육유형 등을 반영한 부모 대상 아동권리교육을 구성해야 한다.

넷째, 부모를 위한 아동권리교육의 내용은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양육 방법과 실제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부모들은 아동권리교육의 내용으로 아동학대 예방보다 구체적인 아동권리존중 방법 및 실제와 같은 인권친화적 양육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는 부모를 위한 아동권리교육이 아동학대 예방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 양육태도 형성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2)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양질의 콘텐츠 제공

아동이 가정에서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자신의 권리를 누리려면 부모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부모교육은 부모가 아동권리실현이라는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와 태도를 갖추도록 지원한다. 부모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부모교육을 시행하는 여러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부처 간 협력을 통한 양질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증가해야 한다. 현재 중앙부처기관에서는 각 기관의 설립 목적에 근거하여 부모교육을 운영하고 있어서 시행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기관별로 차이가 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및 여성가족부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이다. 그러나 이들은 각각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안에 속해있는 하위 기관 사이의 협력이므로 범부처 간 부모교육 프로그램 협력으로 보기는 어렵다. 여성가족부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개발한 「부모교육 매뉴얼」은 부처 간 협력을 통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제공 성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기관에서 개발하고 운영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상호보완적이라기보다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다. 올바른 부모 역할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동권리실현의 원칙에 부합되는 포괄적인 주제와 내용을 아우르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른 목적을 가진 중앙부처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둘째, 아동권리교육을 체계화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대부분 중앙부처기관에서는 아동학대 및 권리·인권 관련 주제의 교육을 다른 부모교육 주제보다 낮은 비율로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아동권리교육보다 더 많이 실시되고 있었다. 아동권리교육이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다루어지기보다는 다른 주제와 함께 묶여서 교육되는 경우가 많았다. 아동권리보장원과 국가인권위원회만 아동학대와 권리·인권을 주제로 독립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가정 내에서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려면 부모가 아동권리에 대한 지식, 기술, 가치와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부모 대상 아동권리교육을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를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려면 부모교육을 체계화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권리보장원의 경우 아동보호·입양과 같이 법적 체계 안에 특별한 요구를 가진 부모를 위한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양한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권리 및 인권교육을 하고 있다. 인권교육 관점에서 부모교육을 체계화하고 관리하는 과정에 국가인권위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셋째, 아동권리교육과 관련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아동권리교육을 위해서는 부모와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한 실제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효과적인 아동권리교육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모두 포함하는 아동권리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권리교육은 아동의 ‘보호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실제 부모의 요구를 살펴보면 자녀가 영유아인 경우 생존권과 보호권, 초등자녀인 경우 발달권과 참여권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부모가 아동권리를 실현하려면 4개 권리를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4개 권리에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아동관이나 자녀의 발달단계 이해와 같은 이론적인 내용과 자녀와의 대화법, 소통 방법, 놀이 행동 이해, 생활지도, 성교육 등 실제적인 권리실천 방법을 함께 포함해야 한다.

훈육과 학대 및 징계권 삭제에 대한 부모의 정확한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 다수 부모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교육이나 훈육을 목적으로 하는 체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신체적 상해나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없다면 체벌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았다. 이는 부모들이 훈육과 학대에 대해 구분하지 못하고 ‘징계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 스스로 훈육과 학대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고, 자녀의 문제행동 수정을 위한 바람직한 안내와 지도 방법에 대한 실질적 내용을 포함한 아동권리교육이 필요하다.

아동권리교육 운영방식의 변화를 통해 부모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부모교육은 부모 참여프로그램, 동영상, 전문가 강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일회성’ 교육이 다수를 차지했다. 부모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구체적 사례 이야기 나누기’, ‘역할극과 같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나 접근이 용이한 ‘동영상 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에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교육을 계획하거나, ‘자녀의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많은 부모는 아동권리교육이 낯설고 어렵고 재미없다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었다. 교육의 효과를 높이려면 일회성 교육이 아닌 기초에서부터 일반, 심화로 넘어가는 ‘체계화된 과정’으로 최소 ‘3~4차시’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담센터, 병원, 동사무소,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여 부모들에게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제안한다.

3) 전 국민 인권교육을 통한 아동권리증진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 연구의 실태조사에서는 인권교육과 아동권리교육에 참여한 경험 있는 부모의 체벌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인권교육과 아동권리교육에 참여했던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보다 '어떤 경우도 체벌을 허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훈육과 교육 목적의 체벌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보인 부모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인권교육과 아동권리교육이 부모의 체벌 행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체벌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징계이며 아동학대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부모 대상 인권교육과 아동권리교육의 확대를 통해 체벌을 교육이나 훈육 방법의 하나로 인식하여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사회적 통념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인권교육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는 수단적 도구임을 밝히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회구성원의 인식이 아동을 권리를 가진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아동의 권리 실현은 어렵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며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의 초석이 될 것이다.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인권교육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제도화해야 한다. 인권교육은 개인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를 습득하여" 자신의 "인성과 존엄성"이 충분히 실현되도록 하는 교육활동이다. 이를 통해 개인 간 혹은 사회 간 갈등과 충돌을 초래하는 차별과 편견을 줄일 수 있다. 또한, 1994년 유엔에서 발표한 인권교육10년(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UNDHRE)에 의하면 인권교육을 통해 "평등한 관계와 관용, 이해와 우호 및 평화가 증진" 될 수 있다(이미식, 2007: 189, 재인용). 그러므로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 의식이 증진되면 개인이 가지는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에 대한 도덕적 의무도 함께 확보(서울특별시교육청, 2015; 조효제, 2015)된다. 또한,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권적 가치와 태도를 보이게 되고 사회적으로 공유된 가치와 태

도는 공동체를 유지 및 발전시키는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립하고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향상하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영유아, 아동·청소년, 이주여성, 노인 등 간 분야의 종사자 교육에 주로 한정되어 있고 종사자 외 교육은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해당 분야의 종사자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서비스 대상자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교육을 받는 것처럼, 서비스 대상자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하고 주장하기 위해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인권을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는 규범이라고 본다면 서로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자신의 생애주기에 따른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아동기 인권교육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체적 인간으로 성장을 돕는다. 노년기 인권교육은 노후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최근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5-6차 국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인권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적절한 재원 할당하여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모든 시민이 권리향유자이면서 권리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차원에서 인권교육을 제도화하고 인권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강서연, 김낙홍 (2019).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가정 내 성교육에 대한 어려움 및 요구. **아동교육, 28**(4), 35-43.

강지훈 (2019). 부모용 아동신체활동 증진 교육모듈이 아동의 신체활동량과 심리적 요인에 미치는 효과. **한국스포츠학회, 17**(2), 457-471.

고경필 (2017). 유아기 부모교육 관련 연구 동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4), 433-459.

고영자 (2018). 유아교사의 유아학대 인식 및 학대예방노력, 유아권리존중 실행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5**(3), 79-105.

교육부 (2016).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18a). **별책2 초등학교 교육과정(2018-162호).**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18b). **별책3 중학교 교육과정(2018-162호).**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20). **별책10 고등학교 기술가정 가정과학 교육과정(제2020-236호).** 세종: 교육부.

구희정 (2016). 영유아기 자녀를 둔 군인가정 어머니를 위한 사이버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태도 및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8**(2), 21-36.

국가인권위원회 (2006). **유엔 인권조약 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20). **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김금희 (2020).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아동권리존중 인식 정보 및 프로그램 제공 효과와 그 적용에 관한 연구. **부모교육연구, 17**(4), 5-27.

김길숙 (2017).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현황 및 내용분석 연구. **열린부모교육연구, 9**(4), 273-292.

김길숙, 김지현, 이혜민 (2016).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분석 및 활용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김봉제, 권기남 (2018).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인성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18**(4), 109 - 121.

김선주 (2016).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효과 연구. **교양교육연구, 10**(3), 383-414.

김선희 (2021).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인권 친화적 양육태도 척도 개발 및 적용.**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선희, 윤재희 (2020).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인권 친화적 양육태도에 관한 인식과 요구. 유**아교육학논집, 24**(2), 325-355.

김성은 (2017).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연구동향. **열린부모교육연구, 9**(4), 75-100.

김세원, 이봉주, 김현수, YOO JOAN PAEK, 이상균, 장화정 (2019). 아동학대행위자 및 학대피해아동 유형화 및 관계에 대한 연구: 잠재계층분석을 적용하여. **한국가족복지학, 66**, 115-146.

김수경 (2018). **고등학생의 예비부모교육 실태 및 요구도 분석.**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수연, 김석주 (2020). 사회복지종사자 인권교육이 인권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경상북도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한국사회복지교육, 49**, 57-82.

김신영, 임동선 (2021). 건청 자녀를 둔 청각장애 부모를 대상으로 한 이야기 상호작용 교육의 효과: AI 스피커를 활용한 사례 연구. **언어치료연구, 30**(1), 89-101.

김윤숙, 신문자 (2016). 부모교육이 학령전기 말더듬 아동의 비유창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 15**(3), 59-74.

김윤희 (2017).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필요성에 대한 부모의 인식.**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정, 장미경 (2020). 부모놀이치료를 이용한 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이 양육시설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공감, 자기수용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상징과 모래놀이치료, 11**(1), 147-189.

김은정, 정세미, 정지영 (2017). 부모참여형 다문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정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 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57**, 217-253.

김정미 (2004).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적용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정아, 이쌍철 (2021). 인권교육 및 인권보호 실태에 따른 학교 유형 분류 및 인권의식 차이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9**(1), 193-216.

김정화 (2020). 유아교사의 유아인권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유아교육연구, 22**(2), 138-162.

김정화, 이영애 (2013). 부모의 교육신념과 유아권리 실천도 인식 간의 관계. **영유아교육연구, 16**, 39-55.

김종민, 최은아 (2018).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경향과 자기체계 역량 증진에 대한 메타분석.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2**(2), 275-305.

김지숙, 이경숙 (2016). 미래자녀와의 준비된 만남을 위한 가정과 수업 속 예비부모교육

수업사례. 한국가정과교육학회 2016년도 학술대회자료집, 89-111. 서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진숙, 서영숙, 서혜정 (2010). 아동권리교육이 예비교사의 아동권리 인식에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4**(6), 35-60.

김하정 (201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기경험, 아동권리인식 및 아동권리존중 실행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경 (2010). **가정형태에 따른 양육스트레스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경운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련, 정명숙 (2017).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과 공감에 미치는 효과. **노인복지연구, 72**(2), 275-297.

김희진 (2014).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교육과 지원.** 서울: 파란마음.

나종혜 (2005).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는 새로운 부모역할 제안. **한국생활과학회지, 14**(3), 411-421.

남미경, 박봉환 (2019). 아동권리존중 양육에 대한 유아기 부모의 중요도-실행도 분석(IPA). **복지상담교육연구, 8**(1), 309-329.

남민우, 이운지 (2017). 예비부모교육 관련 중등 교육과정 분석 및 교사·학생 인식 조사 연구. **교육연구논총, 38**(4), 139-160.

남지영, 정혜원 (2016). 가정어린이집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요구 및 활성화 방안. **열린유아교육연구, 21**(2), 29-53.

노희연, 조재순, 채정현 (2017). 고등학생을 위한 가정교과 기반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9**(4), 161-193.

대한민국정부 (2017).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연구보고 11-1352000-002119-13).** 세종: 대한민국정부.

도미향 (2016).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인성 코칭 프로그램 개발. **코칭연구, 9**(2), 81-102.

민하영 (2016).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편적 부모교육. 한국생활과학회 2016년도 학술대회 논문집, 53-63. 청주: 충북대학교.

박은주 (2020). 대학 예비부모교육 강좌의 수강 전후에 나타나는 여대생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 능력의 차이. **인문사회 21, 11**(2), 1875-1884.

박은주 (2021). 고등학생의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인식. **인문사회 21, 12**(2), 2015-2024.

박창현, 김근진, 이은혜, 배율미 (2019). **장애 영유아 양육 실태 및 요구 조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박현숙, 최혜경 (2020). 교류분석 부모교육이 한부모가족 어머니들의 양육태도와 가족기

능에 미치는 효과. **사회복지정책과실천, 6**(2), 135-173.

박혜진, 김용영 (2019). 부모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 인식 및 요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0**(5), 173-180.

배문주 (2004).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태도 일체에 따른 유아의 정서지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배옥현 (2018). **부모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경북: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배태상, 이희영 (2021). 학대피해아동 분리조치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치안정책연구, 35**(4), 171-202.

백승선, 곽경화, 안연경 (2017). 감정코칭 부모교육 프로그램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정서반응태도 변화 탐색. **유아교육학논집, 21**(3), 289-313.

보건복지부 (201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제도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1133-01).**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report&wr_id=9867에서 2021년 11월 30일 인출.

보건복지부 (2021). **2020 아동학대 주요 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20). **아동수당-부모교육 연계방안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2017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교육청 (2015). 2015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사 직무연수 심화과정(발간등록번호 서울교육-2015-66).**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성영화, 이숙자 (2018). 영유아 학대예방 관련 부모교육 및 가정에서의 자녀교육 실태. **한국보육학회지, 18**(1), 125-146.

송영혜, 김경선, 이경하 (2001). 기초연구: 신체학대 받은 아동의 놀이치료 접근 방향. **놀이치료연구, 5**(1), 21.

신용주, 김혜수 (2011). **대학생을 위한 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신지현, 김경화 (2005). 어린이집 학부모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조사. **한국보육학회지, 5**(1), 123-140.

신혜영 (1997).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심미경 (2018). 신체접촉놀이를 통합한 부모상담교육 참여에 따른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및 인식 변화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18**(4), 91-108.

심의선 (2021). 아동학대 현황과 대응 정책. **육아정책포럼, 67**, 6-13.

안사라 (2012). **아동권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성신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순경 (2012). 유아권리에 대한 교사의 의식에 관한 연구. **아동교육, 21**(2), 181-196.

여성가족부 (2016). **대학 부모교육 강의 사례집.** 서울: 여성가족부.

오은영, 최새은 (2019). 학교부적응 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 수업 적용 사례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31**(3), 117-134.

오지영, 홍용희 (2018). 캄보디아 다문화가족 부모의 자녀 언어교육 지원을 위한 실행연구. **유아교육연구, 38**(6), 191-228.

오향숙 (2017). 아동학대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가정방문지원: 미국의 Healthy Families America(HFA)의가정방문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30**(2), 53-87.

원성희, 유영달 (2006).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1), 1-33.

우진경 (2020). 아동권리 관련 연구 동향분석: 부모 및 가정 연구대상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 161-187.

우후남, 정종화 (2016). 장애인부모 동료상담교육의 효과성 비교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34**, 71-94.

유희정. (2019). 손자녀 양육에 대한 조부모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연구동향: 국내 학위논문과 학술지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6), 961-984.

육아정책연구소 (2010). **예비부모교육 실태와 내실화 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2018). **영유아 부모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범사업: 맞벌이 및 아버지 대상 부모교육.**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윤수경 (2021). 가족재결합 이후 아동학대 재발생에 관한 실증연구. **사회복지연구, 52**(1), 169-194.

윤재희, 이효정, 김성숙, 김영희(2015). **영유아 인권 길라잡이.** 국가인권위원회: 서울.

이미식 (2007). 아동의 인권능력(capacity)을 신장시키기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연구. **열린교육연구, 15**(1), 185-212.

이미영 (2017). 아동인권과 아동학대에 대한 소고. **사회복지법제연구, 8**(1), 99-123.

이선화, 이주희(2020). 학대받은 아동의 부모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복지상담교육연구, 9**(1), 47-80.

이선희, 이운경, 윤지연, 강하라, 김태선, 도현심 (2018).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 어머니들의 부모존경-자녀존중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가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3**(2), 161-192.

이세현, 양인화, 박병기 (2018). 부모 및 자녀의 배경변수와 아동학대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아동교육, 27**(3), 71-93.

이수상 (2018). **네트워크 분석방법의 활용과 한계.** 서울: 청람.

이승아 (2020). **ARCS 모형을 적용한 웹기반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동기향상 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원영 (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계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윤진, 김아름, 임준범 (2016).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및 역량 강화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이윤진, 이정림, 임준범 (2017). **영유아기 부모교육 참여 실태 및 내실화 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이은미, 김현례 (2017).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를 위한 자녀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7**(2), 222-232.

이은주 (2012). **부모의 아동 권리 인식과 양육태도와의 관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주, 정계숙 (2012). 부모의 아동 권리 인식과 양육태도와의 관계. **생애학회지, 2**(2), 33-50.

이인선 (201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외국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젠터리뷰, 31**, 56-60.

이재림, 김지애, 차동혁, 이향희 (2012).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메타분석: 국내 학술지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2012년도 제 51차 공동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11-236.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이재림, 김지애, 차동혁, 이향희 (201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메타분석: 국내 학술지 연구를 중심으로. **가정과삶의질연구, 31**(3), 27-47.

이재연, 윤선화 (2004).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탐색. **아동권리연구, 8**(2), 237-252.

이재희, 박원순 (2020). 영유아 아버지 및 맞벌이 부모 대상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25**(6), 275-293.

이정주, 이종연 (201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동향. **상담학연구, 15**(2), 943-967.

이주희, 이선화 (2020). 아동학대 가해 부모의 재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경험에 관한 현상학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4**(2), 5-32.

이 진, 임선아 (2020). 부모교육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교육학연구, 58**(3), 117-143.

이현자, 김성길 (2017).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조사. **미래교육연구, 7**(1), 37-57.

이현진, 장혜진 (2017). 부모의 사회문화적 변인에 따른 아동권리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실천. **열린부모교육연구, 9**(4), 1-20.

이호균, 고유희, 김철홍, 장화정, 전미선, 조인섭, 황옥경 (2014). 아동관련 종사자에 대한

아동권리교육 현황 및 개선방안. **아동과 권리, 18**(3), 387-409.

이희영, 김문정. (2018). REBT 기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감소와 양육효능감 증진에 미치는 효과. **수산해양교육연구, 30**(3), 896-906.

임은미, 김종운 (2014). 다문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태도 및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효과. **동북아 문화연구, 1(39)**, 61-82.

임현정, 문정희, 김성순 (2017). **부산지역 부모교육 현황과 발전방안.** 부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장혜진, 이현진 (2018). 아동권리 부모교육에 대한 부모 변인별 참여 양상. **열린부모교육연구, 10**(4), 165-182.

전미경 (2016). 가정교과에서의 부모교육: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대상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한국가정과교육학회 2016년도 학술대회자료집, 19-51. 서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미경, 이은주, 유난숙, 왕석순, 최새은 (2017). 청소년 대상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9**(4), 31-47.

전선옥 (2019). **(행복한 가족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서울: 창지사.

전혜인, 손지영, 심은정 (2020). 발달장애아동 부모교육을 위한 내용 체계 개발: ICF 모델을 중심으로. **특수교육, 19**(3), 147-172.

정보미, 김낙흥 (2016). 영아기 첫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부모교육 경험 및 요구. **아동교육, 25**(3), 377-393.

정선영 (2003). 신체학대를 받은 아동의 놀이치료 사례. **놀이치료연구, 7**(2), 91-104.

정순화 (2017). 가정과 교육에서의 부모교육: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9**(4), 15-30.

정숙향, 정희정 (2020). SNS 기반 영아기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조사. **한국보육학회지, 20**(2), 65-85.

정옥분, 임정하, 정순화, 박연정, 김경은 (2008).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부모됨의 동기 및 부모역할인식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15**(4), 67-91.

정옥분, 정순화 (2016). **부모교육(2판).** 서울: 학지사.

정익중, 강지영, 이수진 (2020). 한국 아동권리의 현주소: 동상이몽, 부모자녀 아동권리인식 비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19**(15), 1-144.

조은영, 이신동 (2020). 다문화 부모교육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7), 377-396.

조혜영 (2018). 예비유아교사의 인권존중과 자아존중감, 인권의식 간의 구조적 관계. **유아**

교육학논집, 22(5), 139-160.

조효제 (2015). 인권 달성의 근본조건. **민주주의와 인권, 15**(3), 229-273.

지수연 (2012). 보호시설 청소년미혼모의 학습된 무기력 감소를 위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상담평가연구, 5**(1), 13-20.

지은혜, 최새은 (2020). 기술 · 가정교과를 이수한 고등학생의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이해 :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29**(2), 151-170.

천성혜, 임동선 (2016). 발화분석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자폐범주성장애 아동과 부모의 발화 개시 및 반응과 대화차례 주고받기에 미치는 영향. **언어치료연구, 25**(3), 87-103.

최경혜, 한유진 (2020).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국내 부모교육 관련 학술지 연구동향 분석. **놀이치료연구, 24**(1), 87-101.

최경화, 홍상욱 (2016). 감정코칭 부모교육프로그램이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코칭연구, 9**(3), 53-76.

최미숙, 전인수 (2021). 국내 장애 부모교육 연구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55**(4), 169-185.

최연화 (2020). APT부모교육프로그램이 자기분화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아내폭력피해여성을 대상으로. **에니어그램연구, 17**(2), 61-88.

최은영, 이윤진, 김보미, 장은미, 김미옥 (2019). **영유아 부모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범사업(Ⅱ): 한부모 및 재혼 가정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최인숙 (2019). 대학생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결혼관 및 자녀양육관 변화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1), 795-804.

최정혜 (2017).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부부의 부모역할 및 부모교육 경험에 관한 연구. **코칭연구, 10**(1), 45-65.

최주현, 김인홍 (2019). 감정코칭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유아기 어머니의 정서반응태도, 양육 효능감 및 감정코칭 양육태도에 미치는 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7**(12), 297-307.

최준혁 (2021).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의 형법: 2020년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22**(4), 31-61.

최지현 (2020). 유아 부모교육 연구 주제의 시대적 분석: 누리과정의 시기별, 대상별, 주제별 분석을 중심으로. **상담심리교육복지, 7**(2), 259-270.

최총명 (2014). **학교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청소년 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희선, 최정혜 (2020). 영유아교육기관의 부모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도, 선호도 및 요구도. **코칭연구, 13**(5), 147-169.

한국유아교육학회 (1997). **유아교육사전[용어편].** 용인: 한국사전연구사.

한유진, 강민수, 안복희 (2019). 유아기 자녀와 부모 간 의사소통 촉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열린부모교육연구, 11**(4), 87-109.

현정희, 정채옥 (2015). 몽골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모교육이 어머니의 아동권리인식과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7**(3), 141 – 160.

Anthony, J. F., Oehme, K., Bruker, M., Arpan, L., & Opel, A. (2018). The impact of training videos on attitudes about parenting after divorce.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59* (7), 590-600.

Archard, D. (1993). Do parents own their children? *The Interm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1*, 293-301.

Asawa, L. E., Hansen, D. J., & Flood, M. F. (2008).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program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preventing child maltreatment. *Education and Treatment of Children*, 73-110.

Bamberger, K. T., Coatsworth, J. D., Fosco, G. M., & Ram, N. (2014). Change in participant engagement during a family-based preventive intervention: Ups and downs with time and tens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8* (6), 811-820.

Barth, R. P. (2009). Preventing child abuse and neglect with parent training: Evidence and opportunities. *The Future of children, 19* (2), 95-118.

Brock, G. W., Oertwein, M., & Coufal, J. D. (1993). Parent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In M. E. Arcus, J. D. Schvaneveldt, & J. J. Moss(Eds.), *Handbook of family life education* (Vol. 2, pp. 87-114). Newbury Park, CA: Sage.

Brownlie, J., & Anderson, S. (2006). 'Beyond Anti-Smacking' Rethinking parent – child relations. *Childhood, 13* (4), 479-498.

Caron, S. L., & Wynn, R. L. (1992). The intent to parent among young, unmarried college graduates, families in societ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Human Service, 73* (8), 480-487.

Carter, N. (1996). *See how we grow: A report on the status of parenting education in the U.S.* Philadelphia, PA: The Pew Charitable Trusts.

Cash, S. J. (2001). Risk assessment in child welfare: The art and scienc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3 (11), 811-830.

Chen, M., & Chan, K. L. (2016). Effects of parenting programs on child maltreatment prevention: A meta-analysis. *Trauma Violence Abuse, 17* (1), 88-104.

Day, D. M., Peterson-Badali, M., & Ruck, M. D.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attitudes and young people's attitudes toward children's rights. *Journal of Adolescence, 29* (2), 193-207.

Dunst, C., Trivette, C., & Thompson, R. (1990). New directions for family resource and support programs. In D. G. Unger, & D. R. Powell(Eds.), *Families as nurturing systems: Support across the life span* (pp. 19-44). New York: Haworth Press.

Ehrensaft, M. K., Knous-Westfall, H. M., Cohen, P., & Chen, H. (2015). How does child abuse histroy influence parenting of the next generation? *Psychology of Violence, 5* (1), 16-25.

Ferraro, A. J., Oehme, K., Bruker, M., Arpan, L., & Opel, A. (2018). The impact of training videos on attitudes about parenting after divorce.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59* (7), 588-598.

Fortson, B. L., Klevens, J., Merrick, M. T., Gilbert, L. K., & Alexander, S. P. (2016). Preventing child abuse and neglect: A technical package for policy, norm, and programmatic activities. Retrieved November, 30, 2021 from www.cdc.gov/violenceprevention.

Gallitto, E., Veilleux, G. J., & Romano, E. (2019). How Do Knowledge and Attitudes About Children's Rights Influence Spanking Attitud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6* (17-18), NP8974-NP8991.

Grindal, T., Bowne, J. B., Yoshikawa, H., Schindler, H. S., Duncan, G. J., Magnuson, K., & Shonkoff, J. P. (2016). The added impact of parenting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grams: A meta-analysi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70*, 238-249.

Grogan-Kaylor, A., Castillo, B., Pace, G. T., Ward, K. P., Ma, J., Lee, S. J., & Knauer, H. (2021). Global perspectives on physical and nonphysical discipline: A Bayesian multilevel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45* (3), 216-225.

Gubbels, J., van der Put, C. E., Stams, G. J. J. M., Prinzie, P. J., & Assink, M. (2021). Components associated with the effect of home visiting programs on child

maltreatment: A meta-analytic review. *Child Abuse & Neglect, 114*, 1-19.

Heilmann, A., Mehay, A., Watt, R. G., Kelly, Y., Durrant, J. E., van Turnhout, J., & Gershoff, E. T. (2021). Physical punishment and child outcomes: a narrative review of prospective studies. *The Lancet, 398* (10297), 355-364.

Lee, L. E., Wilsie, C. C. & Brestan-Knight, E. (2011). Using 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to develop a pre-parent education modul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3* (7), 1254-1261.

Lee, S. J., Altschul, I., & Gershoff, E. T. (2015). Wait until your father gets home? Mother's and fathers' spanking and development of child aggress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52*, 158-166.

Lundahl, B. W., Nimer, J., & Parsons, B. (2006). Preventing child abuse: A meta-analysis of parent training programs.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16* (3), 251-262.

Marcus, R., Rivett, J., & Kruja, K. (2021). How far do parenting programmes help change norms underpinning violence against adolescents? Evidence from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Global Public Health, 16*(6), 820-841.

Matusicky, C., & Russell, C. C. (2009). Best practices for parents: What is happening in Canada? *Paediatrics & Child Health, 14* (10), 664-665.

McDermott, D. R. (2004). Building better human connections: Parenting/caring education for children and teens in school. *Childhood education, 80* (2), 71-75.

Morine, S. L. (2000). Children's and parents' attitudes towards children's rights and perceptions of family relationships(Master's thesis). University of Toronto, Canada.

Pears, K. C., & Capaldi, D. M. (2001).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abuse: a two-generational prospective study of an at-risk sample. *Child Abuse & Neglect, 25* (11), 1439‐1461.

Ponzetti, J. J. (2016). *Evidence-based parenting Education: A global perspective*. New York, NY: Routledge.

Prinz, R. J. (2016, May 18). *Parenting and family support within a broad child abuse prevention strategy: Child maltreatment prevention can benefit from public health strategies.* Child abuse & neglect, Retrieved January 21, 2022, from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4871147/

Reynaert, D., Bouverne-de-Bie, M., & Vandevelde, S. (2009). A review of children's rights

literature since the adop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hildhood, 16*(4), 518-534.

Sahlberg, P. (2010). Rethinking accountability in a knowledge society. *Journal of Educational Change, 11* (1), 45-61.

Sanders, M. R. (2003). Triple P-Positive Parenting Program: A population approach to promoting competent parenting. *Australian e-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Mental Health, 2* (3), 127-143.

Savage, G. C., & O'Connor, K. (2015). National agendas in global times: Curriculum reforms in Australia and the USA since the 1980s. *Journal of Education Policy, 30* (5), 609-630.

Sherr, L., Skar, A. M. S., Clucas, C., Tetzchner, S. V., & Hundeide, K. (2014). Evaluation of the International Child Development Programme (ICDP) as a community-wide parenting programme.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1* (1), 1-17.

Spencer, C. M., Topham, G. L., & King, E. L. (2020). Do online parenting programs create change?: A meta-analysi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4* (3), 364–374.

Stewart-Brown, S., Patterson, J., Mockford, C., Barlow, J., Klimes, I., & Pyper, C. (2004). Impact of a general practice based group parenting programm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ults from a controlled trial at 12 months. *Archives of Disease in Childhood, 89*(6), 519-525.

Ward, K. P., Grogan-Kaylor, A., Ma, J., Pace, G., & Lee, S. J. (2021). Associations Between 11 Parental Discipline Behaviors and Child Outcomes Across 60 Countries. Retreived November, 20, 2021 from https://psyarxiv.com/f5t8x/.

Whittaker, K. A., & Cowley, S. (2012). An effective programme is not enough: A review of factors associated with poor attendance and engagement with parenting support programmes. *Children & Society, 26*(2), 138-149.

참 고 사 이 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https://www.law.go.kr/에서 2021년 10월 30일 인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2021). https://edu.humanrights.go.kr/academy/academy/main/main.do에서 2021년 10월 30일 인출.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2021). https://ncrc.or.kr/ncrc/main.do에서 2021년 10월 30일 인출.

여성가족부 (2021). https://www.mogef.go.kr/index.do에서 2021년 10월 30일 인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2021). https://www.childcare.go.kr/cpin/main1.jsp에서 2021년 10월 30일 인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21). https://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600061/600221.jsp에서 2021년 10월 30일 인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유튜브 (2021). https://www.youtube.com/channel/UCkxbAUwPcX5EF_XmCHQWoGg에서 2021년 10월 30일 인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 (2021). https://www.kyci.or.kr/userSite/index.asp에서 2021년 10월 30일 인출.

학부모ON누리 홈페이지 (2021). https://www.parents.go.kr/에서 2021년 10월 30일 인출.

End Corporal Punishment 홈페이지 (2021). https://endcorporalpunishment.org/countdown/에서 11월 30일 인출.

학교급별 분석 대상 교과서 및 교재 목록

학교급	교과서 및 교재	목록
초등학교	실과5	류청산 외 (2019). 실과5. (주)금성출판사 서우석 외 (2019). 실과5. 동아출판(주) 송현순 외 (2019). 실과5. (주)비상교육 이철현 외 (2019). 실과5. (주)미래엔 이춘식 외 (2019). 실과5. (주)천재교과서 정성봉 외 (2019). 실과5. (주)교학사
	실과6	류청산 외 (2019). 실과6. (주)금성출판사 서우석 외 (2019). 실과6. 동아출판(주) 송현순 외 (2019). 실과6. (주)비상교육 이철현 외 (2019). 실과6. (주)미래엔 이춘식 외 (2019). 실과6. (주)천재교과서 정성봉 외 (2019). 실과6. (주)교학사
중학교	기술가정1	김기수 외 (2017). 기술가정1. (주)원교재사 김지숙 외 (2017). 기술가정1. (주)비상교육 문성환 외 (2017). 기술가정1. (주)씨마스 왕석순 외 (2017). 기술가정1. 동아출판(주) 윤인경 외 (2017). 기술가정1. (주)미래엔 이봉구 외 (2017). 기술가정1. (주)교학도서 이춘식 외 (2017). 기술가정1. (주)천재교과서 정성봉 외 (2017). 기술가정1. (주)교학사 조강영 외 (2017). 기술가정1. (주)금성출판사 채정현 외 (2017). 기술가정1. (주)삼양미디어 최완식 외 (2017). 기술가정1. (주)교문사 최유현 외 (2017). 기술가정1. (주)지학사
	기술가정2	김기수 외 (2017). 기술가정2. (주)원교재사 김지숙 외 (2017). 기술가정2. (주)비상교육 문성환 외 (2017). 기술가정2. (주)씨마스 왕석순 외 (2017). 기술가정2. 동아출판(주) 윤인경 외 (2017). 기술가정2. (주)미래엔 이봉구 외 (2017). 기술가정2. (주)교학도서 이춘식 외 (2017). 기술가정2. (주)천재교과서 정성봉 외 (2017). 기술가정2. (주)교학사 조강영 외 (2017). 기술가정2. (주)금성출판사 채정현 외 (2017). 기술가정2. (주)삼양미디어 최완식 외 (2017). 기술가정2. (주)교문사 최유현 외 (2017). 기술가정2. (주)지학사
고등학교	기술가정	계광선 외 (2017). 고등학교 기술가정. (주)이오북스 김기수 외 (2017). 고등학교 기술가정. (주)비상교육 박미정 외 (2017). 고등학교 기술가정. (주)삼양미디어 유창열 외 (2017). 고등학교 기술가정. 동아출판(주) 이봉구 외 (2017). 고등학교 기술가정. (주)교학도서

		이창훈 외 (2017). 고등학교 기술가정. (주)씨마스 이철현 외 (2017). 고등학교 기술가정. (주)미래엔 이춘식 외 (2017). 고등학교 기술가정. (주)천재교과서 정성봉 외 (2017). 고등학교 기술가정. (주)교학사 조강영 외 (2017). 고등학교 기술가정. (주)금성출판사 최완식 외 (2017). 고등학교 기술가정. (주)교문사 최유현 외 (2017). 고등학교 기술가정. (주)지학사
대학교	예비부모교육	김영희 외 (2018). 결혼과 가족. 파워북. 문혁준 외 (2020). 결혼과 가족. 창지사. 박성연 외 (2017). 인간의 성장과 발달. 파워북. 연미희 외 (2020). 예비부모교육. 동문사. 이희경 외 (2021). 예비부모교육. 신정. 이희영 외 (2021). (대학생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사랑, 결혼 그리고 부모됨. 동문사. 전선옥 외 (2019). (행복한 가족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창지사. 정옥분 외 (2019). 예비부모교육. 학지사. 정옥분 외 (2020). 결혼과 가족. 학지사. 조성연 (2021). 예비부모교육. 학지사. 함승애 외 (2020). 예비부모교육을 위한 결혼과 가족. 양서원.

부 록

1. 부모교육 안내서(안)
2. 설문문항
3. 부모 대상 면담 문항
4. 전문가 대상 면담 문항
5.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에 나타난 부모교육 관련 내용

1. 부모교육 안내서(안)

1) 인권으로 본 자녀와 부모[81]

아동은 출생과 함께 세계인권선언과 아동권리협약에서 밝히는 모든 권리를 가진 존재이며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흔히 성인은 아동을 수동적이고 나약하고 의존적이거나 순수하지만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세계인권선언과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성인과 동등한 권리의 주인으로 대할 것을 당부합니다.

아무리 어린 연령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권리를 성인과 동일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은 출생부터 특별한 이익과 능력을 갖춘 존재이며 동시에 취약성(vulnerability)을 가진 존재입니다. 성장하면서 아동의 취약성은 줄어들지만, 부모의 역할을 여전히 결정적입니다. 예를 들면 출생 직후 신생아는 생존을 위한 모든 돌봄을 성인에게 의존합니다. 중고등학생은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있지만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실현을 부모와 국가의 책임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부모 및 법적 보호자는 아동의 능력과 발달 정도에 적합하게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과 권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가진 존재로서 무엇이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지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아동이 취약성을 가진 존재라고 해서 이들이 불완전한 존재는 아닙니다. 어린 영유아는 전적으로 성인에게 의존해서 권리를 실현하지만, 아동의 권리가 이들을 돌보는 책임을 가진 성인의 권리에서 파생되거나 종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인에게 돌봄을 받을 수 밖에 없지만 아동은 '비어있는 용기가 아니라...[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2006)는 '영유아가 자신을 돌보는 성인들로부터 생존, 성장과 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양육, 이해를'(p.134) 적극적으로 구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영아들도 부모나 다른 성인이 제공하는 보호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부모나 성인과 눈을 마주치고 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비록 성인의 방식과는 다르지만 아동은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상호작용하며 그 세계에 참여하는 사회적 구성원입니다.

81) 이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보육교직원 인권 역량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및 교재 개발' 사업에서 개발된 「영유아인권 길라잡이」(윤재희, 이효정, 김성숙, 김영희, 2015)의 일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2) 아동의 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기본권으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명시하고 있다. 생존권은 아동이 생명을 유지하고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이며 보호권은 모든 형태의 차별, 학대, 방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이다. 발달권은 아동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이며 참여권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모든 권리는 똑같이 중요하며 서로 의존성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다.

3) 인권친화적 양육을 위한 부모역할

인권친화적 양육태도란 양육자가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양육행위 전반에 걸쳐 아동 권리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권리 옹호행동을 실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의 권리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말합니다.

인권친화적 양육태도라고 하면 부모들은 **"자녀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인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모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권리실현의 책임자이면서 동시에 자녀에 대한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친화적 양육은 부모의 무조건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인권친화적 공동체 형성을 지향합니다. 만약 양육과정에서 자녀의 권리와 부모의 권리가 충돌되는 상황이 있다면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의 의견충돌 상황에서 부모가 내린 결정이 자녀를 위한 결정인지 부모를 위한 결정인지를 생각해보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권친화적 양육을 실천하기 위한 **부모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모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식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부모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존재라는 점을 인식해야 양육과정에서 자녀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시각에서는 자녀의 행동이나 결정이 다소 미숙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동기를 거치지 않고 성인이 된 사람은 없듯이 자녀는 현재 발달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유능한 존재이며 동시에 성인과 같이 독립된 인격체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둘째, 부모는 자녀의 발달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녀의 권리 실현은 어렵습니다. 발달이란 연령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으로, 각 단계에서 충족되어야 할 욕구가 있으며 그것이 충족되어야 아동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연령의 아동이라도 개별적 특성에 따라 성장과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셋째, 부모는 자녀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긍정적 훈육을 해야 합니다. 긍정적 훈육이란 비폭력적이며 아동을 학습자로서 존중하는 것[82]을 의미합니다. 아동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한 목적으로 훈육을 할 때도 아동의 권리는 지켜져야 합니다. 훈육을 위

82) Durrant (2007). *Positive discipline: What it is and how to do it* [3th ed., DX Reader version]. Retrieved from https://resourcecentre. savethechildren.net/sites/default/files/documents/6757.pdf.

한 체벌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으며 아동에게 가하는 체벌이나 폭언 등은 아동학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넷째, 부모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알고 존중해야 합니다.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서 국가 및 성인은 이를 실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각각의 권리의 내용을 따로 생각해서 보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참여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성인이 있습니다. 아동의 4대 권리는 모두 중요하며 상호의존성이 있습니다. 상호의존성은 모든 권리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권리라도 제한한다면 다른 권리도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른 하나의 권리를 제한하기보다 모든 권리가 다 지켜질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진정으로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다섯째, 부모는 자녀의 참여권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안을 결정할 때 자녀를 참여시키는 것이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상호존중이 핵심입니다. 의견충돌이 있을 때 상호존중이 바탕이 된다면 협력적인 갈등 해결이 가능합니다.

여섯째, 부모는 자녀의 권리에 대해 민감성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권리 민감성은 부모가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 상황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모가 아동권리 옹호자가 되는 것이지요. 옹호자란 흔히 편들어 주고 두둔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내 편은 바로 부모이며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곧 아동권리 옹호자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4) 인권친화적 양육을 위한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부모용)[83]

이 체크리스트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권리존중을 실천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인 자가 체크를 통해 부모-자녀 간 긍정적 상호작용 및 아동권리 민감성 향상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83) 김선희(2021).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인권 친화적 양육태도 척도'를 재구성한 것임.

연번	내용	예	아니오
1	자녀를 성인과 다름없는 독립된 인격체라고 생각하며 존중한다.		
2	자녀의 발달 특성에 따른 사고와 정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3	자녀의 잠재적 능력 개발을 위해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4	나는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정책이나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예 : 무상교육, 영유아건강검진, 아동양육수당 등)		
5	자녀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 : 책이나 휴대폰을 활용해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 제공,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한 정보 제공, 여가를 즐기기에 좋은 콘텐츠 제공)		
6	자녀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한다.		
7	자녀에게 다양한 놀이, 오락, 문화 예술과 같은 여가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8	충분히 놀이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놀이시간을 보장한다.		
9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자녀가 참여하도록 한다.		
10	일상생활에서 자녀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허용한다.		
11	원하는 일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자녀를 돕는다.		
12	자녀의 선택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자녀를 지지한다.		
13	선택에 대한 책임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공유한다.		
14	나와 자녀 간에 갈등이 있으면 대화를 통해 조율한다.		
15	규칙이 필요한 경우 자녀와 함께 정한다.		
16	자녀와 함께 정한 규칙을 나의 편의에 따라 바꾸지 않는다.		
17	자녀와 관련된 정보나 비밀은 자녀의 사생활로 인식하고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18	자녀를 평가하는 비아냥거림과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19	훈육 시 나의 가치관(생각)을 자녀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20	신체적 체벌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사용하지 않는다.		

5)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 안내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s://www.childcare.go.kr)

임신 · 출산 · 육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비부모님의 여건에 따라 상시로 부모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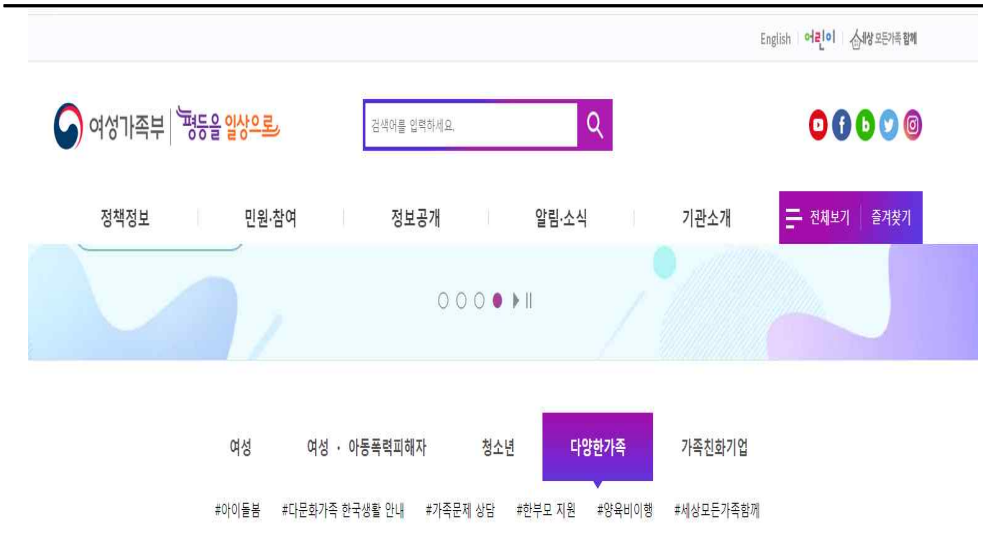


임신정보	임신계획	임신 전 관리에 필요한 검사, 임신 전 위험(음주, 흡연, 약물상담), 영양 및 식습관, 운동, 여성질환별 관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관련된 기관과의 연계를 지원
	고위험 임신	19종의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 정의를 통해 효과적인 치료와 예방 방법에 대해서 설명
	유산, 난임	유산과 난임의 원인, 유산 후 관리, 난임 치료 및 정부지정 시술기관을 소개
출산정보	출산 준비	출산 전 필요한 용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출산 징후	분만 전에 나타나는 3가지 증상에 대해서 설명
	분만	조산, 분만방법(자연, 유도, 재왕절개술), 난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분만 시 통증을 줄이는 라마즈분만법을 소개
	산후관리	출산 후 나타나는 신체변화를 알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

상담실	산부인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국제모유수유 전문가로 이루어진 상담위원이 각 분야에서 상담 
임밍아웃 하세요!(임신신고하기)	온라인으로 임신신고를 하면 산전·산후관리를 지원 (임신→임산부신고→임산부 신고 바로가기 클릭!) 지원은 엽산·철분제 지원 및 표준모자보건수첩 발급, 산전·산후관리에 필요한 교육홍보 실시
지원 꼭 확인하세요(지원제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는 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 휴가 등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임신, 출산→근로자 지원제도'를 통하여 상세하게 확인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여성가족부는 양육 · 부양 등 가족 기능을 지원하고 성폭력 ·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교육, 가족관계 등 프로그램 및 자조 모임을 지원하고 생애주기를 고려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table>
<tr><td>부모교육</td><td colspan="2">전체보기→유형별 서비스→교육정보→교육자료실→부모교육자료를 통하여 시기별 부모교육(예비부모, 영유아기, 초등기)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음</td></tr>
<tr><td rowspan="2">예비부모교육</td><td>임신 · 출산
좋은부모되기</td><td>여성가족부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함께 개발한 자료로 좋은 부모되기 준비, 함께하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 출산 전 후 나타나는 심리적 문제, 함께 해결하기, 임신 · 출산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소개
 

 
</td></tr>
<tr><td>부모교육 매뉴얼
4권
(성인예비부모)</td><td>자기이해, 친밀하고 평등한 교제, 결혼의 이해, 부모됨의 의미와 준비, 임신과 출산에 관한 개념 및 정보 소개</td></tr>
<tr><td>상담실</td><td colspan="2">여성가족부의 전체보기→유형별 서비스→상담코너→가족상담전화를 통하여 가족과 관련된 정책, 서비스를 상담
1644-6621로 전화하세요! 365일 24시간(분야별로 이용시간이 다름)</td></tr>
</table>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s://www.familynet.or.kr/web/index.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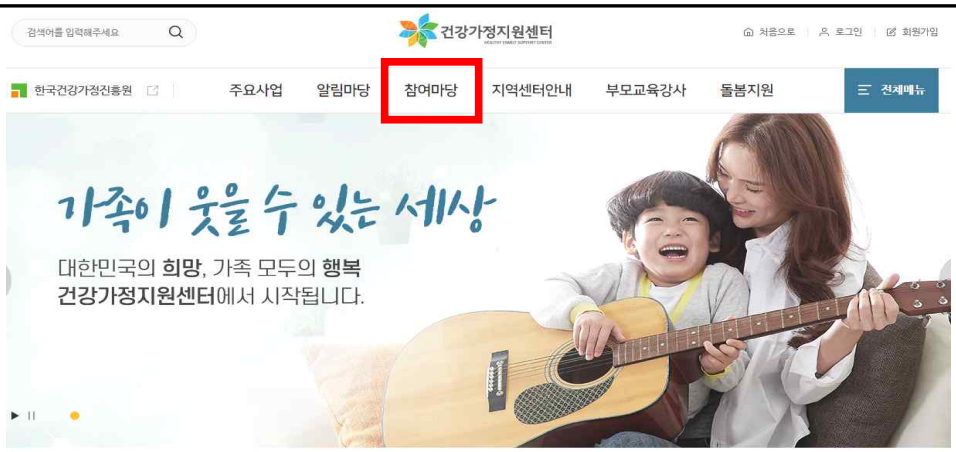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가족돌봄나눔사업, 생애주기별 가족 교육 사업, 가족 상담사업,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교육	건강가정지원센터 참여마당→프로그램 안내→권역선택, 지역선택을 통하여 지역별 예비부모교육 정보
상담실	건강가정지원센터 참여마당→상담실을 통하여 부부상담, 기타 상담 모든 상담은 개인 상담으로 익명 처리되니 안심하고 상담받으세요!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필두로 각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예비부모님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다양한 예비부모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방법

구분	임신출산갈등상담	양육비상담	한부모상담	심리·정서상담	가족서비스 종합 안내
지원 내용	- 정보 제공 - 심리·정서 초기상담 - 기관 연계 등	-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 양육지원(면접교섭) - 주심지원 - 사건진행사항 - 법률지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	- 미혼모·부 초기상담 - 한부모지원서비스 - 정부 지원 자격 안내 - 출산 및 양육 - 시설 안내 - 기관 연계 등	- 심리·정서상담 - 코로나 대응 정부 지원 안내 - 기관 연계 등	- 건강가정사 자격 안내 -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 지역 가족센터 운영 서비스 안내
	가족센터를 통한 심층·대면상담				
지원 방법	전화, 문자, 온라인, 대면	전화, 문자, 온라인, 대면	전화, 문자, 온라인	전화, 문자, 온라인	
번호	1644-6621(0번)	1644-6621(1번)	1644-6621(2번)	1644-6621(3번)	
이용 시간	365일 24시간	평일 9~18시	365일 8~22시	365일 8~22시	



육아종합지원센터(https://central.childcare.go.kr/ccef/main.jsp)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지원 · 관리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통부모교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가정양육지원을 통하여 부모교육 및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음	
온라인부모교육	Youtube 채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영유아 성 행동 이해, 스마트기기 과의존, 아동학대 예방 등 동영상을 시청	
대면(화상) 부모교육	클로버 부모교육	'소중한 나', '멋진 아이', '긍정의 가족', '아름다운 이웃'에 대한 주제로 영유아기 부모를 위한 교육, 부모-자녀가 함께 체험하는 교육
	포괄적 양육정보 안내	자녀를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부의 다양한 육아정책 및 지역 사회 양육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 포괄적 양육 안내 책자를 통하여 양육 및 보육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음 각 지역의 육아정보는 시도센터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확인가능
	가정 내 놀이환경과 부모 양육태도 점검	놀이환경, 놀이행동 체크리스트를 통해 전문가와 부모님이 함께 놀이환경 및 놀이행동을 점검 점검을 통해 연령에 맞는 놀잇감 선택, 자녀와 상호작용을 향상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부모교육 '놀이환경 체크리스트', '우리집 놀이환경은?', '놀이환경 지표 자료', '자녀 놀이에 어떻게 참여하나요?' 자료를 함께 제공
	자녀권리존중 부모교육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양육 솔루션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과 양육방법을 배우고 실천하여 우리 아이가 존중받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교육 '존중받는 아이, 함께 크는 부모' 자료를 함께 제공

	아동학대 예방교육	가정 내 양육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아동학대 유형을 살펴보고,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 전환의 기회를 가져보는 부모교육 '아동학대 0%, 가족행복 100%' 자료를 함께 제공
	영유아 발달 이해 부모교육	우리 아이의 특성을 체크리스트를 통해 알아보고 아이의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가족 놀이방법을 안내 '연령별 체크리스트', '발견! 아이강점, 키움! 가족놀이' 자료를 함께 제공
	양육 스트레스 관리	영유아기 부모님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양육 스트레스를 점검하고 집단 상담 기법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교육 스트레스 요인에 따라 4가지 과정의 워크숍에 참여하여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가능 과정별로 '양육 스트레스 관리 부모교육' 자료를 제공
상담실	문제행동, 영유아발달, 양육 방법과 관련한 전문상담위원을 위촉하여 전문적인 온라인 상담을 제공	
	아이와 함께 놀아요!(양육지원 서비스)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장난감 및 도서대여 서비스 및 놀이(체험)실을 이용 장난감 및 도서대여, 놀이(체험)실 이용은 각 시도별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신청 한 뒤 이용할
	가정양육수당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음 지원금액, 지원시점, 지원기간, 지급방법 등 양육수당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확인가능
	어린이집이 궁금해요(어린이집 이용정보)	어린이집 종류, 입소순위, 이용시간, 일과를 소개하여 영유아기 부모님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를 돕고있음 각 시도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별 어린이집을 검색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음

유형소개

(Module 1) 정체성 스트레스	아직은 낯선 이름, 엄마	엄마라는 역할에 대한 정체성 혼란을 이해하고 개인적인 삶과 엄마의 삶을 통합 하여 균형 잡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Module 2) 완벽한 부모 스트레스	엄마라는 무거운 짐	현대사회의 높은 기준에 따라 양육과 부모역할에 대한 강박적인 완벽성을 추구 하려는 부담감을 해소하도록 돕는 프로그램
(Module 3) 현실 육아 스트레스	알아야 쉬워지는 육아	아이의 불안 및 애착에 대한 이해, 떼쓰기 유형별 접근법 등 현실적인 육아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돕는 프로그램
(Module 4) 관계 갈등 스트레스	함께하는 육아의 어려움	배우자, 조부모를 비롯한 육아에 참여하는 다양한 관계에서 겪는 갈등을 효과 적인 의사 소통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 모듈별 워크숍은 3회기(1회기 당 2시간 내외)로 구성되어 있음


이용방법
상담요청
지역내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에 상담의뢰
상담진행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접수 및 전문 상담진행
(최소 2일 ~ 최대 5일 소요)
상담완료
상담을 의뢰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답변내용 확인


어린이집검색
· 시/도 선택
· 시/군/구 선택
· 읍/면/동 선택
· 도로명 전체
· 유형 전체
· 특성 전체
· 공공형 전체
· 평가정보 전체
· 어린이집명
검색
* 사고 발생·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신고가 접수되거나 행정 처분이 진행 중인 어린이집의 경우 검색 결과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평가참여 인증(1회) 재인증(2회) 재인증(3회) 재인증(4회) 재인증(5회)
총 0 건

2. 설문문항

부모를 위한 아동권리교육의 실태와 개선 방안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에 인권 의식을 확산함으로써 인권 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부모님들의 생각과 경험을 여쭙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현재 부모교육 실태를 알아보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부모를 위한 효과적인 아동권리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 대상 인권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며 부모 대상 인권교육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콘텐츠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설문은 현재 영유아 및 초등학생(만0세~만12세)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합니다. 질문에 관한 정해진 답은 없으니 부모님의 생각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모든 설문내용은 관련 법(개인정보보호법 및 통계법 제33조 및 34조)에 의하여, 누가 어떤 응답을 했는지 알 수 없게 익명으로 처리되고, 조사가 완료된 후 모든 식별정보 자료는 폐기합니다. 귀하의 모든 응답은 분석 자료로만 활용되며, 자료처리 과정에 있어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구기관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

▣ 연구수행기관: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책임 연구자: 윤재희 (jhyoon463@yu.ac.kr/ 000-000-0000)

▣ 설문 문의: 김선희 (sh5892771@hanmail.net/ 000-000-0000)

▣ 국가인권위원회 담당: ○○○ (☆☆☆☆@nhrc.go.kr/ 000-000-0000)

[응답자의 일반적 배경조사]

※ 다음에 제시되는 각 문항을 읽으시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기(√)하시거나 간단한 기타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 자녀가 한 명 이상일 경우 설문 응답 시 떠올리게 될 영유아 및 초등시기 자녀(만0~12세) 한 명에 대한 특성을 표기(√)하시거나 적어 주십시오.	
자녀의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 해당 자녀의 현재 연령
자녀의 성별	□① 여아 □② 남아
자녀 수 및 대상 자녀의 출생순위	남 녀 : 모든 자녀의 수를 기입하고, 해당 자녀가 몇째인지 선택 □① 첫째 □② 둘째 □③ 셋째 이상 □④ 외동아
자녀와 함께 사는 가족 (중복응답)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친조부/친조모 □④ 외조부/외조모 □⑤ 기타:( )
응답자의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응답자의 연령대	□① 20세 미만 □② 20~24세 □③ 25~29세 □④ 30~34세 □⑤ 35~39세 □⑥ 40~44세 □⑦ 45~49세 □⑧ 50세 이상
응답자의 거주지역	□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② 호남권(광주, 전라남북, 제주) □③ 중부권(대전, 충청남북, 강원) □④ 영남권(대구, 부산, 경상남북)
응답자의 최종 학력	□① 고등학교 졸업 □② 대학 졸업 □③ 대학원 졸업 □④ 기타:( )
응답자 가정의 월 소득 수준	□① 250만원 미만 □② 250만원~350만원 □③ 350만원~450만원 □④ 450만원~550만원 □⑤ 550만원~650만원 □⑥ 650만원 이상
응답자의 직업	□① 무직 □② 전업주부 □③ 회사원 및 은행원 □④ 공무원 □⑤ 자영업및판매서비스 □⑥ 농축수산업 □⑦ 제조 및 생산업 □⑧ 교육서비스(학원, 보육교사, 방문교사 등) □⑨ 기타:( )
자녀의 주 양육자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부부공동 □④ 조부모 □⑤ 조부모 외 기타 친인척 □⑥ 타인
자녀가 다니는 교육기관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학교 □④ 기타:( )
양육 시 도움받는 곳 (중복응답)	□① 자녀의 친조부모 □② 자녀의 외조부모 □③ 아이돌봄서비스 □④ 베이비시터 □⑤ 지역아동센터 □⑥ 도움 주는 사람이 없다. □⑦ 기타( )

[부모교육 실태조사]

1. 귀하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1-1번으로)　　□② 필요하지 않다(☞1-2번으로)

1-1.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대 3개까지만 선택)

□① 자녀 발달에 대한 이론적 내용
□② 부모의 정신건강 및 심리지원 (우울증, 스트레스 대처방법)
□③ 자녀와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
□④ 부모의 자기 계발을 위한 교양, 문화 등
□⑤ 자녀의 건강과 안전관리
□⑥ 원만한 부부관계(상담, 성격 차이, 관계 개선)
□⑦ 자녀의 인성, 문제행동
□⑧ 부모의 권리 인식 및 인권감수성 향상
□⑨ 자녀의 진로 및 교육
□⑩ 아동학대 예방
□⑪ 긍정적 훈육 방법 및 양육태도
□⑫ 아동권리교육(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⑬ 기타:(　　) : 직접 적어 주십시오.

1-2. 부모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대 3개까지만 선택)

□① 교육을 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
□② 교육을 받지 않아도 자녀 양육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③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양육하고 있어서(조부모, 육아도우미 등)
□④ 책, 매스컴,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⑤ 형식적인 부모교육으로 태도나 인식 변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
□⑥ 부모교육의 내용과 수준이 자녀 양육에 별로 도움이 안 돼서
□⑦ 부모교육보다는 양육과 관련한 법, 정책개선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⑧ 기타:(　　) : 직접 적어 주십시오.

2. 귀하는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2-1번으로)　　□② 없다. (☞2-2번으로)

2-1. 다음은 가장 최근에 귀하가 부모교육에 참여했던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나만 선택)

참여했던 요일	□① 월~목요일	□② 금요일 □③ 토요일 □④ 일요일및공휴일
참여했던 시간대	□① 오전	□② 오후 □③ 저녁 □④ 기타(　　)
1회 실시 소요시간	□① 30분	□② 30분~1시간 미만
	□③ 1시간~1시간 30분	□④ 1시간 30분~2시간
	□⑤ 2시간~2시간 30분	□⑥ 2시간 30분 이상
참여했던 교육 횟수	□① 수시참여	□② 1년에 1~2회
	□③ 한 학기에 1~2회	□④ 한 학기에 3~4회
	□⑤ 한 학기에 4회 이상	□⑥ 기타(　　)

참여했던 수강집단 형태	□① 개인 □② 소집단(15명 이내) □③ 중집단(15~30명) □④ 대집단(30명 이상) □⑤ 기타:( )
참여하게 된 경로	□① 교육기관의 가정통신문 및 홈페이지 □② 교육기관의 교사 권유 □③ 주변 지인의 권유 □④ 인터넷 및 방송 매체 홍보 □⑤ 기타:( )
참여했던 기관 (하나만 선택)	□① 공공기관(교육청, 시청, 구청 등) □② 자녀의 교육기관 □③ 직장(찾아가는 학부모교육) □④ 방송매체 □⑤ NGO 단체(유니세프, 초록우산 등) □⑥ 개인 혹은 사설 기관 □⑦ 기타:( )
참여했던 부모교육의 유형 (하나만 선택)	□① 부모교육전문가에 의한 초청특강 □② 부모 간의 토의 및 토론 □③ 부모참여프로그램 및 참관수업 □④ 면담 및 상담 □⑤ 인쇄매체(책자, 통신문 등)의 전달 □⑥ 동영상 및 SNS활용 □⑦ 방문형(가정 및 직장) □⑧ 기타:( )
참여했던 부모교육의 주제와 내용 (하나만 선택)	□① 자녀 발달에 대한 이론적 내용 □② 부모의 정신건강 및 심리지원 □③ 자녀와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 □④ 부모의 자기계발을 위한 교양, 문화 등 □⑤ 자녀의 건강과 안전관리 □⑥ 원만한 부부관계 □⑦ 자녀의 인성, 문제행동 □⑧ 부모의 권리 인식 및 인권감수성 향상 □⑨ 자녀의 진로 및 교육 □⑩ 아동학대 예방 □⑪ 긍정적 훈육 방법 및 양육태도 □⑫ 아동권리교육 □⑬ 기타:( )
참여했던 부모교육의 만족도	□① 매우 불만족 □② 대체로 불만족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참여했던 부모교육의 효과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되었다. □⑤ 매우 도움이 되었다.
참여했던 부모교육의 개선점 (하나만 선택)	□① 부모교육 주제 및 내용 □② 강사 □③ 부모교육 실시 시간 □④ 부모교육 실시 장소 □⑤ 교육시간 중 자녀의 보호 □⑥ 사전 안내 및 홍보 방식 □⑦ 기타:( )

2-2. 귀하가 부모교육에 참석하지 못했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

□① 알고는 있지만, 너무 바빠서 □② 부모교육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
□③ 관심이 없어서 □④ 나한테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해서
□⑤ 참여 방법을 몰라서 □⑥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서
□⑦ 기타:( ) : 직접 적어 주십시오.

[부모를 위한 아동권리교육 실태조사]

1. 귀하는 평소에 '인권'이라는 단어를 어느 정도 자주 접하십니까?

□① 접하지 못한다. □② 가끔씩 접한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자주 접한다. □⑤ 매일 접한다.

2. 귀하는 평소에 '인권'이라는 단어를 주로 어디에서 접하십니까? (하나만 선택)

□① TV(뉴스, 시사프로그램 등) □② 직장 □③ 인권교육 자료
□④ 인터넷(포털, 블로그, SNS 등) □⑤ 강연, 연수 □⑥ 가족/친구들과의 대화
□⑦ 단체, 기관 (유니세프, 인권위원회 등) □⑧ 신문, 잡지, 책 □⑨ 기타:( )

3.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얼마나 존중된다고 느끼십니까?

□①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②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존중되는 편이다. □⑤ 매우 존중된다.

4. 귀하는 인권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5. 귀하는 아동권리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6. '아동권리' 하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

□① 아동존중 □② 아동학대 □③ 아동보호
□④ 장애아동 □⑤ 아동복지 □⑥ 권리(인권)
□⑦ 기타:( )

7.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장되지 않는 아동권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선택)

□① 생존권(건강과 위생, 적절한 생활 수준) □② 보호권(모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③ 발달권(잠재능력 발달, 놀이시간 보장) □④ 참여권(의사존중 및 참여)
□⑤ 아동을 미숙하게 바라보는 시각 □⑥ 기타:( )

8. '아동권리'에 대한 귀하의 인식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높지 않은 편이다. □② 높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높은 편이다. □⑤ 매우 높다.

9. 귀하 스스로 혹은 가정 내에서 자녀의 권리를 어느 정도 지켜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② 지켜주지 못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지켜주는 편이다. □⑤ 매우 잘 지켜주고 있다.

10.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심각한 편이다. □⑤ 매우 심각하다.

11. 우리 사회에서 누구에 의한 아동학대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선택)

□① 친부모 □② 계부모 □③ 양부모
□④ 친 · 인척 □⑤ 초 · 중 · 고 교사 □⑥ 유치원, 보육 교직원
□⑦ 타인 □⑧ 기타:( )

12.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선택)

□① 부모 개인 요인(장애, 학대 경험, 중독,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 부족 등)
□② 가족 간의 요인(가정폭력,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부모-자녀 간의 애착 부족 등)
□③ 자녀 개인 요인(장애, 자녀의 고집, 떼쓰기와 같은 특성 등)
□④ 경제적 요인(실업, 빈곤 등)
□⑤ 사회적 · 문화적 요인(사회적 지지의 체계 부족, 체벌에 대한 인식 및 수용, 학대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및 미비 등)
□⑥ 기타:( )

13. 평소 자신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양육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입니까?

□① 전혀 느끼지 않는다. □② 느끼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느끼는 편이다. □⑤ 매우 느낀다.

14. 자녀에게 체벌하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선택)

□① 체벌은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는 데 효과적이므로 필요하다.
□② 체벌이 올바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훈육이나 교육의 목적이 있는 경우 허용될 수 있다.
□③ 어떤 경우에도 체벌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④ 기타:( )

15. 귀하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의 권리침해가 발생했다고 의심한 상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① 자녀의 권리를 침해한 적 없다.
□② 자녀에게 적절한 의식주를 해결해 주지 않거나 자녀를 위생적으로 관리해 주지 못할 때
□③ 자녀를 유해한 환경(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약물 등)으로부터 보호해 주지 못할 때
□④ 자녀의 놀이, 휴식 및 여가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⑤ 자녀를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거나 자녀의 의견을 무시할 때
□⑥ 기타:( )

16. 귀하가 자녀를 양육할 때 아동학대로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만 선택)

□① 자녀를 학대한 적 없다.
□② 자녀를 체벌할 때(아동을 때리거나 벌하는 행위)
□③ 자녀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폭언을 했을 때
□④ 자녀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을 때
□⑤ 자녀를 돌보지 못하거나 보호자 없이 방치했을 때
□⑥ 기타:( )

17.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선택)

□① 학대 부모의 처벌 강화 및 대응 체계 등 제도 개선
□② 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아동학대 예방교육
□③ 부모에 대한 인권교육 및 아동권리교육
□④ 양육 어려움에 대한 부모의 스트레스 해소(상담 및 관리방법)
□⑤ 아동학대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방법 개선
□⑥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⑦ 기타:( )

18. 귀하는 부모를 위한 아동권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18-1번으로)　　□② 필요하지 않다(☞19번으로)

18-1. 부모를 위한 아동권리교육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대 3개까지만 선택)

□① 훈육을 위한 체벌이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고 해서
□② 부모는 아동권리실현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③ 아동권리침해의 원인을 알고 예방하기 위해서
□④ 아동권리존중 양육 방법을 습득하기 위해서
□⑤ 아동권리실현을 위해서 부모의 태도 및 인식 변화가 필요하니까
□⑥ 기타:( ) : 직접 적어 주십시오.

19. 만약 부모를 위한 아동권리교육이 실시된다면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꼭 참석할 것이다(☞19-1번으로)　　□②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19-2번으로)

19-1. 다음은 부모를 위한 아동권리교육 운영 방법에 대해 의견을 묻는 문항입니다. 왼쪽에 주어진 문항에 대해서 가장 선호하는 내용에 √표기해 주십시오. (하나만 선택)

선호하는 요일	□① 월~목요일	□② 금요일	□③ 토요일	□④ 일요일 및 공휴일
선호하는 시간대	□① 오전	□② 오후	□③ 저녁	□④ 상관없음
선호하는	□① 30분		□② 30분~1시간 미만	

1회 교육시간	□③ 1시간~1시간 30분 □④ 1시간 30분~2시간 □⑤ 2시간~2시간 30분 □⑥ 2시간 30분 이상
선호하는 교육 횟수	□① 수시참여 □② 1년에 1~2회 □③ 한 학기에 1~2회 □④ 한 학기에 3~4회 □⑤ 한 학기에 4회 이상 □⑥ 기타:( )
선호하는 수강집단 형태	□① 개인 □② 소집단(15명 이내) □③ 중집단(15~30명) □④ 대집단(30명이상) □⑤ 기타:( )
선호하는 강사	□① 교사 □② 육아관련 분야 전문가 □③ 가족상담사 □④ 심리교육 전문가 □⑤ 기타:( )
선호하는 실시기관 (하나만 선택)	□① 공공기관(교육청, 시청, 구청 등) □② 자녀의 교육기관 □③ 직장(찾아가는 학부모교육) □④ 방송매체 □⑤ NGO 단체(유니세프, 초록우산 등) □⑥ 개인 혹은 사설 기관 □⑦ 기타:( )
선호하는 교육의 유형 (하나만 선택)	□① 부모교육전문가에 의한 초청특강 □② 부모 간의 토의 및 토론 □③ 부모참여프로그램 및 참관수업 □④ 면담 및 상담 □⑤ 인쇄매체(책자, 통신문 등)의 전달 □⑥ 동영상 및 SNS활용 □⑦ 방문형(가정 및 직장) □⑧기타:( )
선호하는 부모를 위한 아동권리교육 내용 (하나만 선택)	□① 아동학대의 개념(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방임) □②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역사적 배경 및 이해) □③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④ 아동의 발달 특성 □⑤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양육 방법 및 실제 □⑥ 아동학대의 실제(사례, 법제와 정책, 신고 절차 및 기관 정보) □⑦ 아동권리를 판단할 수 있는 부모용 체크리스트 및 기준 □⑧ 기타:( )

19-2. 부모를 위한 아동권리교육에 참여하실 의향이 없으시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이십니까? (하나만 선택)

□① 너무 바빠서 □② 관심이 없어서
□④ 이미 충분히 알고 있어서 □④ 이미 아동권리존중을 실천하고 있어서
□⑤ 기타:( )

[양육태도 설문조사]

※ 다음은 부모님의 양육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질문에 따라 평소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 가장 가깝다 고생각하는 곳에 √표기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께서는 자녀의 요구를 무시하시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버릇없이 굴 때 벌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으신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께서는 자녀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5	자녀가 바르게 자라려면 부모를 어렵게 알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6	부모님께서는 자녀로 인해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 많으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7	자녀가 속을 썩이는 행동을 보일 때 부모님께서는 참으려 하다가 와락 성을 내거나 큰 소리를 치는 때가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8	부모님께서는 자녀의 행동 및 태도에 고쳐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9	부모님께서는 자녀 양육이 즐거울 때보다 짐스러울 때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0	부모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장손', '맏딸' 또는 집안의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노력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1	부모님께서는 자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아버지가 알고 있어야 제대로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2	부모님께서는 가정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칙과 규율을 많이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3	부모님께서는 자녀의 교육기관 생활에 관심을 갖고 자주 살피시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14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되도록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면 하고 바라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15	부모님께서는 자녀에게 가능한 한 원대한 꿈과 포부를 갖도록 격려하여, 보다 더 성공할 수 있게끔 격려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놀거나 공부할 때 되도록 집안에서 하도록 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7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마음대로 하게되면 버릇들이기가 힘들게 되기 때문에 표현이나 움직임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8	부모님께서는 자녀들이 사귀는 친구와 자녀들이 하는 말을 잘 보살펴서 나쁜 친구나 나쁜 일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 도와주시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19	부모님께서는 자녀를 양육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근심 걱정이 많이 생긴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0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클때까지 다른 사람이 좀 키워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1	부모님께서는 직장일(가사일)을 하다가 권태롭거나 지겹다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2	다른 사람이 부모님을 대할 때 어려워 하거나 까다로운 면이 있다고 하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23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잘못했을 경우 일부러 쌀쌀맞게 대하고 따끔하게 이야기하시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24	부모님께서는 자녀를 일일이 돌봐주지 않고 자기 혼자서 자리를 찾아 놀게 하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3. 부모 대상 면담 문항

[참여자 맥락 관련]
1-1. 부모의 연령, 결혼연차, 현재 가족 구성, 현재 거주지역, 가정에서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 부모의 개인 특성(성격 등), 주 양육자의 부재 시 양육에 도움을 받는 사람(가족 중 주양육자가 아닌 사람, 자녀의 친조모, 외조모, 이모, 고모, 돌봄교실, 종일반, 아이돌보미서비스(국가), 돌봄시터(민간) 등)
1-2. 자녀 수와 성별, 모든 자녀의 연령(월령), 자녀(학령기/영유아기)의 기관/학교 이용유무, 자녀의 개인 특성(기질, 성격)
1-3. 자녀(학령기/영유아기)의 최근 관심은 무엇입니까? 자녀에 대해 다음의 영역에서 알고 계신 것을 예를 들면서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녀의 신체 및 건강, 정서 표현, 사회(친구)관계, 인지 및 학업능력, 언어발달, 기관/학교 적응 등)

자녀를 양육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자녀에게 어떤 부모가 되고 싶었는지, 또 지금은 어떤 부모라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해주십시오.

자녀를 양육하는 데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자녀 양육에서 겪은 어려움을 예를 들어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십시오.

[일반적 부모교육 참여 경험 관련]
자녀에 대한 걱정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으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 외부에서 공식 혹은 비공식적인 부모교육, 상담, 치료, 개입 등과 같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부모교육의 범위는 어디까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온라인 등에서 부모교육에 참여해 본 경험을 이야기해주십시오.
-언제, 어디에서 부모교육을 받으셨습니까?
-당시 부모교육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참여했던 부모교육 중에서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으시면 이야기해주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자신과 자녀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까?

참여했던 부모교육에서 아쉬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앞으로 부모교육에 참여한다면, 주로 어떤 내용에 대해 알고 싶으신지 이야기해주십시오.
(특별한 요구를 가진 부모) 자녀의 특별한 요구에 따라서 필요한 부모교육 있다면 무엇입니까?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못했던 적이 있다면 당시에 왜 참여하지 못했는지 당시 상황과 이유를 이야기해주십시오.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및 권리 존중 양육 실천 관련]
자신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바람직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해주십시오.

자녀와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이 생길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이야기해주십시오.
(아침에 추워서 긴 옷을 꺼내놨는데 유아기 자녀가 짧은 옷을 입겠다고 할 때 / 바쁜 아침시간에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으로 지금 바로 출발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가 미적거리며 텔레비전을 보고만 있을 때 / 내일 학교에서 시험을 친다고 공지를 하고 학습자료까지 주었지만 보지도 않고 잘할 수 있다고 할 때)

위의 상황에서 자녀에게 부정적으로 반응했다면 이것은 자녀의 권리침해라고 보아야 할까요, 부모의 생활지도라고 보아야 할까요?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훈육을 위해 체벌을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무슨 체벌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십시오.

그 일에 대해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 다시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고 싶으십니까?

(다음 상황 중 모두 혹은 일부를 골라 질문) 만약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겪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이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혹시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있었다면 연결해서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영유아	학령기
• 영유아기 자녀가 몰래 동생을 계속 때리고 괴롭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 영유아기 자녀가 밥을 먹지 않고 유튜브 등의 동영상을 계속 보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 영유아기 자녀가 놀이터 등의 공공장소에서 부모님의 머리를 때리고 엉덩이를 꼬집는 등의 장난을 계속 한다면	• 학령기 자녀가 의도적으로 (성적, 용돈 등에서)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 학령기 자녀가 단원평가에서 0점을 맞은 것을 알게 됐다면 • 학령기 자녀가 방에 들어가 3시간째 휴대폰 및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다면
• (두 자녀 이상인 경우 공통 필수)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놀리자 참지 못한 작은 아이가 큰 아이를 때리기 시작하고 둘이서 심각하게 싸운다면	

(특별한 요구를 가진 부모) 자녀의 특별한 요구를 반영한 아동권리존중 양육 실천방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최근 징계권이 삭제되었다는 말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알고 계신다면 징계권이 삭제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해주십시오.
체벌과 학대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체벌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주십시오.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참여형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및 지원 관련]
본인이 바람직한 양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도 전문가 등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런 생각이 드시는지 이야기해주십시오.

자녀의 인권을 어느 정도 존중하고 계시는지 본인이 생각하는 '인권'의 범위 안에서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십시오. 만약 그런 경험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와 반대되는 경험을 이야기하여도 됩니다.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부모교육은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는 바람직한 양육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부모교육이 제공된다면 교육을 받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주십시오. 만약 이러한 부모교육을 일 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야기해주십시오.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부모교육을 받기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방법으로 교육받는 것이 좋을지 최근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이야기해주십시오.
(특별한 요구를 가진 부모) 자녀의 특별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긍정적 훈육을 위해 필요한 부모교육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긍정적 양육을 하기 위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해주십시오. 가족 및 지역사회, 정부 등의 차원에서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모든 차원의 지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응답에 감사드립니다.

4. 전문가 대상 면담 문항

[참여자 배경]
부모교육과 같은 양육지원 서비스 전문가로 준비되기까지 자신의 경력을 중심으로 본인을 소개해주십시오.

양육지원 서비스 전문가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교육 등과 같은 양육지원 서비스 체계에 전문가로 참여한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만 이야기해주십시오.

[일반적 양육지원 서비스 지원 특징]
현재 자신이 운영 및 실시하고 있는 양육지원 서비스는 무엇이며 그 속에서 주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현재 자신이 속한 양육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일반적 체계는 어떠합니까?
(예) 교육청 인력풀에 등록된 부모교육 강사로 지원청의 공무원으로부터 강의 의뢰가 오면 해당 연령의 부모를 대상으로 관련 주제에 대해 강의

현재 자신이 속한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혹은 부모는 주로 누구입니까? 어떤 특성을 가진 부모가 이러한 지원을 주로 이용하는지 이야기해주십시오.

[학대 예방 부모교육 및 서비스 지원]
자신이 하는 양육지원 서비스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야기해주십시오.

부모교육과 같은 양육지원 서비스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해주십시오. 잘되고 있는 점과 그렇지 않은 점이 있다면 각각 무엇입니까?

현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혹은 서비스 지원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및 서비스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지원 체계는 어떻게 변화 혹은 재정비되어야 하는지 이야기해주십시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및 서비스 지원 체계에 가장 중요하게 포함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및 서비스에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이야기해주십시오.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및 서비스 지원을 반드시 받아야 할 가정은 어떤 방식으로 선별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육지원 서비스를 통해 아동 권리침해 및 학대 고위험군 혹은 원가정 보호 등과 같은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이러한 적극적 개입 사례를 경험하신 적이 있다면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 그 장단점을 이야기해주십시오.

[인권친화적 양육태도 형성을 위한 부모교육]
"아동은 인권을 가진 존재다"는 말은 어떤 의미이며, 이것은 현재 부모교육에서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이야기해주십시오.

이벤트성 일회적 부모교육이 아니라 부모의 인권친화적 양육태도와 가치관을 점검하고 긍정적 양육을 실천하도록 지속해서 부모교육을 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해주십시오.

예비 부모로부터 생애주기별 부모가 된 모든 이들에게 단계별로 적절한 부모교육을 받는 것을 의무화하는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주십시오. 실효성 있는 것인지 또한, 그 장단점은 어떠한지 말씀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는 양육지원방안 즉 재정지원(양육수당, 아동수당) 및 영유아 검진, 유아교육기관 이용 무상지원 등과 같은 방안과 결합하여 부모교육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주십시오.

위와 같은 방법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행정적으로 기반을 갖추려면 어떤 정당한 절차를 갖추어야 할지 자신의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할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해주십시오.

응답에 감사드립니다.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 인쇄일 | 2021년 12월 10일
| 발행일 | 2021년 12월 10일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13층
http://www.humanrights.go.kr
| 문의전화 | 인권교육기획과 02)2125-9855
| F A X | 02)2125-0917
| E-mail | hjkimedu@humanrights.go.kr
| 편집 |
| 인쇄 | 금성문화사 02-2266-0571

ISBN : 978-89-6114-858-0 93330 비매품

ISBN : 978-89-6114-858-0 93330 비매품